2024.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검토보고(부처별 Ⅰ)

국 회 운 영 위 원 회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정 무 위 원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http://budget.na.go.kr

CONTENTS

국 회 운 영 위 원 회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 3

Ⅰ. 개 관 ····· 3

1. 예산안 개요 ····· 3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5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5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6

Ⅱ. 사업별 검토 ····· 7

【일반회계】 ····· 7

<세 입> ····· 7

1. 기타경상이전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실적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 7

<세 출> ····· 9

2. 기본경비 사업: 과다계상된 일용임금 예산 조정 필요 ····· 9

❖ 대통령경호처 ·····11

Ⅰ. 개 관 ····· 11

1. 예산안 개요 ····· 11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13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13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4

Ⅱ. 사업별 검토 ····· 15

【일반회계】 ·····15

<세 출> ····· 15

1.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집행실적을 고려한 고용부담금 조정 필요 ····· 15

2.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R&D):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관리 철저 필요 ····· 17

❖ 국회 ·····20

Ⅰ. 개 관 ····· 20

1. 예산안 개요 ····· 20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22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23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24

Ⅱ. 사업별 검토 ····· 25

【일반회계】 ····· 25

<세 출> ····· 25

1.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사업: 안정적인 건립을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25

2. 온라인자료 납본 사업: 안정적인 납본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28

❖ 국가인권위원회 ····· 31

Ⅰ. 개 관 ····· 31

1. 예산안 개요 ····· 31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33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33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34

Ⅱ. 사업별 검토 ····· 35

【일반회계】 ····· 35

<세 출> ····· 35

1. 인권체험관 원상복구 사업(신규): 지역인권체험관 컨텐츠 재활용 필요 ····· 35

2. 군인권 권리구제 강화 사업: 특정업무경비 예산의 조정 필요 ····· 38

3. 인권단체 인권증진 활동 지원 사업: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4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 법무부 ····· 47

Ⅰ. 개 관 ····· 47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47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50
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 51
4.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52

Ⅱ. 사업별 검토 ····· 53

【일반회계】 ····· 53

<세 입> ····· 53

1. 면허료 및 수수료: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연장 여부의 조속한 결정 필요 ····· 53

<세 출> ····· 57

2. 출입국감시정 운영 사업: 면밀한 감시정 건조 계획 마련 필요 ····· 57
3. 외국인 가사사용인 활용 직무교육 사업(신규): 시범사업 결과를 검토하여 내실있는 제도 운영 필요 ····· 61
4.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사업 수행방식에 부합한 예산 편성 필요 ····· 65
5. 승진시험 및 경력채용시험 사업: 승진시험 임차료 예산 조정 필요 ····· 68
6. 전자감독: 전자장치의 여유 보유수량을 고려한 적정 운영·관리 필요 ····· 71

【범죄피해자보호기금】 ·····75

<지 출> ····· 75

7. 위치확인장치: 장치 지급 추세 및 운용 보유 수량을 고려한 신규 구입 계획 검토 필요 ····· 75

8. 민간경호 지원(신규): 경찰청(일반회계)으로부터 사업 이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 ····· 78

❖ 법제처 ·····81

Ⅰ. 개 관 ····· 81

1. 예산안 개요 ····· 81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82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82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83

Ⅱ. 사업별 검토 ····· 84

【일반회계】 ·····84

<세 출> ····· 84

1. 법제교육 사업: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의 무상사용으로 법제교육 강의실 임차료 감액 검토 필요 ····· 84

2. 법령정보 전자점자문자 제공 사업(신규): 다양한 점자문서 출력방식 등을 검토하여 사업 효과성 제고 필요 ····· 86

❖ 감 사 원 ····· 89

Ⅰ. 개 관 ····· 89

1. 예산안 개요 ····· 89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91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91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92

Ⅱ. 사업별 검토 ····· 93

【일반회계】 ····· 93

<세 입> ····· 93

1. 기타경상이전수입: 지방사무소 관사 보증금 환수분을 고려한 세입예산 확대 필요 ····· 93

<세 출> ····· 97

2. 공공기관 회계감리 전문가 자문 사업(신규): 회계감리 전문가 인력운용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97
3.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기관 선발심사 위원회 심사비 사업: 전년과 동일한 포상금 규모를 감안한 위원회 심사비 조정 필요 ····· 102
4. 주요국 감사교육원 교류방문 사업: 국외업무여비 과다계상분 감액 필요 ·· 10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06

Ⅰ. 개 관 ····· 106

1. 예산안 개요 ····· 106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107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107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08

Ⅱ. 사업별 검토 ····· 109

【일반회계】 ·····109

<세 출> ····· 109

1.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1차)사업(신규): 차질없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109

2. 공판역량강화 사업: 대상자 규모 및 활용도를 고려한 교육 예산 검토 필요 ·· 112

❖ 헌법재판소 ·····114

Ⅰ. 개 관 ····· 114

1. 예산안 개요 ····· 114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116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116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16

Ⅱ. 사업별 검토 ····· 117

【일반회계】 ····· 117

<세 출> ····· 117

1. 구내식당 리모델링 사업(신규): 구내식당 리모델링 관련 유사사례 비교 등을 통해 적정한 공사비 산정 검토 필요 ····· 117

2. 헌법재판 업무지원: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 120

❖ 대법원 ····· 122

Ⅰ. 개 관 ····· 122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122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125

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 126

4.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27

Ⅱ. 사업별 검토 ····· 128

【일반회계】 ····· 128

<세 입> ····· 128

1. 변상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128

<세 출> ····· 130

2. 문서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사업(신규): 평가 대상자 규모를 고려한 문서감정장비 구매 예산 조정 검토 필요 ····· 130

3. 법원구성원 전문역량 강화 사업: 연구회 운영 지원 계획 마련 필요 ····· 134
4. 형사전자소송시스템 사업: 시스템 개발일정 준수를 위한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 137

【등기특별회계】 ····· 140

<세 입> ····· 140

5. 일반회계 전출: 일반회계 전출금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 140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143

<수 입> ····· 143

6. 민간출연금: 출연금액 납부액 한도관련 제도개선 검토 필요 ····· 143

<지 출> ····· 146

7. 감정관리절차 지원(신규): 차질없는 감정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준비 철저 필요 ····· 146
8. 형사소송 기록 스캔 및 비실명처리 사업: 전자소송시스템 개통 등 환경변화를 고려한 사업관리 철저 필요 ····· 149

정 무 위 원 회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155

Ⅰ. 개 관 ····· 155

1. 예산안 개요 ····· 155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157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159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60

Ⅱ. 사업별 검토 ····· 161

【일반회계】 ····· 161

<세 출> ····· 161

1.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운영 사업(신규): 디지털기념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편성의 적절성 검토 필요 ····· 161
2.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 추진단의 존속기간을 고려하여 임차료 등 감액 필요 ····· 164
3. 특별자치시·도 지원단 운영 사업: 존속기한 연장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 부적정 등 ····· 168
4. 협동연구지원 사업: 국제행사에 대한 국고 지원 요구 시 관련 절차 준수 필요 ····· 171
5.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청년친화도시와 지역특화 청년사업의 적절한 연계방안 마련 필요 등 ····· 175
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기관의 수시연구사업: 이월액 과다 발생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180

❖ 국가보훈부 ····· 184

Ⅰ. 개 관 ····· 184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184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187
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 189
4.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90

Ⅱ. 사업별 검토 ····· 191

【일반회계】 ····· 191

<세 출> ····· 191

1.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사업(신규): 신규 사업 추진에 대한 종합적 검토 필요 ····· 191
2. 독립의 전당 사업: 2025년도 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 ····· 196
3. 국립연천현충원 조성: 적정 공사비 반영 필요 ····· 199
4.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사업: 실시설계 기간 과소계상 ····· 203
5.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 연례적 집행부진에 따른 사업관리 강화 필요 ···· 207

【보훈기금】 ····· 211

<수 입> ····· 211

6. 기타재산이자외수입: 88골프장 매각 여부의 조속한 확정 필요 ····· 211

【순국선열 · 애국지사사업기금】 ····· 214

<수 입> ····· 214

7. 변상금: 면밀한 수입계획안 편성 필요 ····· 214

❖ 공정거래위원회 ·····217

Ⅰ. 개 관 ····· 217

1. 예산안 개요 ····· 217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219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219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220

Ⅱ. 사업별 검토 ····· 221

【일반회계】 ·····221

<세 출> ····· 221

1. 정책연구개발사업: 정책연구용역의 등록·공개 확대 등 성과관리 강화 필요 … 221
2. 한국소비자원 출연사업: 티메프 사태 관련 집단분쟁조정 소송지원액의 적정예산 편성 및 차질 없는 지원 필요 ····· 225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사업: 분쟁조정의 조속한 성립 및 조정률 제고 노력 필요 ····· 232

❖ 금융위원회 ·····237

Ⅰ. 개 관 ····· 237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237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240
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 243
4.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244

Ⅱ. 사업별 검토 ····· 245

【일반회계】 ····· 245

<세 출> ····· 245

1.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 보증 부실을 고려한 사업 개편 및 협약기관의 보증공급 관리 필요 ····· 245

2. 서민금융진흥원 출연(햇살론15) 사업: 햇살론15 사업의 보증 부실 추세를 고려한 장단기 사업 개편 필요 ····· 249

3.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 정부기여금 유보액 및 정책변경 등을 고려한 적정 예산안 조정 필요 ····· 254

4.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 새출발기금의 과도한 목표 및 캠코채 발행 문제 ····· 261

5.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 사업: 재정모펀드 회수재원을 고려한 예산안 조정 필요 ····· 266

6.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투자 고려 필요 및 자펀드 결성 촉진 필요 ····· 270

7.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생태계펀드) 사업(신규): 반도체생태계 지원을 위한 면밀한 사업설계 필요 ····· 276

8.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 사업(신규): 반도체 설비투자 유도의 필요성 및 산업은행 건전성을 고려한 사업 검토 필요 ····· 282

9. 산업은행 출자(원전산업성장펀드) 사업(신규): 원전산업에 대한 기존 정책지원을 고려한 신규 펀드 조성사업 검토 필요 ····· 288

10.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 구축(신규): 신규 장비 도입 시 장비 활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293

❖ 국민권익위원회 ·····297

Ⅰ. 개 관 ····· 297

1. 예산안 개요 ····· 297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299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300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301

Ⅱ. 사업별 검토 ····· 302

【일반회계】 ·····302

<세 입> ····· 302

1. 기타경상이전수입: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율 제고를 통한 세입 예산 증대 노력 필요 ····· 302

<세 출> ····· 305

2. 행정심판통합추진 사업: 예산 편성 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한 홍보비 통합 필요 ····· 305

3.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운영 사업: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통합 동의 기관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 308

4. 특별민원 중점관리 사업(신규):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 필요 ····· 31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13

Ⅰ. 개 관 ····· 313

1. 예산안 개요 ····· 313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315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316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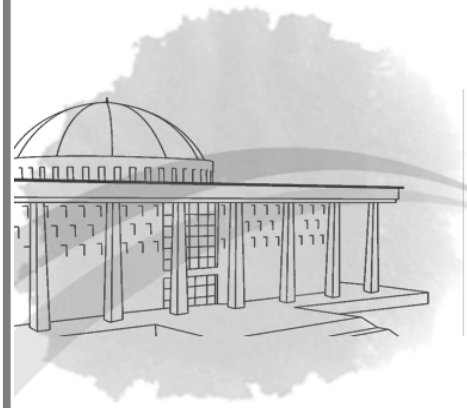
Ⅱ. 사업별 검토 ····· 318

【일반회계】 ·····318

<세 출> ····· 318

1. 국제컨퍼런스 운영 사업: 2025년 GPA 총회 홈페이지 운영사업의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 재검토 필요 ····· 318
2.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규제 대응사업: CBPR 인증제도의 수수료 전액 면제정책의 재검토 필요 ····· 322
3.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사업(신규): 행정조사를 위한 포렌식 장비 설치 필요성 검토 및 공공기관의 포렌식 업무 위탁 부적정 ····· 327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총수입은 2억 9,7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함.[1)]

[2025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2.97	2.97	-	-
총수입	2.97	2.97	-	-

2025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총지출은 1,040억원으로, 전년 대비 9억원(0.9%) 증가함.

[2025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1,031	1,040	9	0.9
총지출	1,031	1,040	9	0.9

문의 : 노성준 예산결산조사관 ysamy@assembly.go.kr (02-6788-5683)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나. 예산안

2025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은 총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2억 9,7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함.

[2025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2.97	2.97	-	-
합 계	2.97	2.97	-	-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1,040억원으로 전년 대비 9억원(0.9%) 증가함.

[2025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031	1,040	9	0.9
합 계	1,031	1,040	9	0.9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025년도 예산안 신규사업은 없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업무지원비’ 사업, ‘국정운영관리’ 사업 등 총 2개임.[2)]

[2025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업무지원비	16,943	17,428	485	2.9
2	국정운영관리	6,472	6,630	158	2.4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음.

2)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은 인건비는 전년과 동액으로 편성되었고, 정부의 건정재정 기조에 맞추어 기본경비와 사업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됨.

2025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2025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안을 전년과 동일하게 2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최근 기타경상이전수입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에 비해 과소계상된 측면이 있으므로 적정한 금액을 세입예산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기본경비 예산안 중 최근 집행실적이 저조한 일용임금을 실소요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1. 기타경상이전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실적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가. 개 요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과년도 반환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2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3)]

[2025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220	220	-	-

나. 검토의견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2025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안을 전년과 동일하게 2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최근 기타경상이전수입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에 비해 과소계상된 측면이 있으므로 적정한 금액을 세입예산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과년도 반환금[4)] 명목의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안을 2023년 및 2024년과 동일하게 2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3) 일반회계-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4) 퇴직자 임용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 관사 계약 종료에 따른 전세보증금 회수, 기타 과년도 과오지급금 반납

그런데 최근 연도별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예·결산 내역을 보면, 연례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이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어, 2025년도 예산안이 과소계상된 측면이 있어 보임.

[2021~2024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예·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1	21	21	21	572	550	2,619.0	96.2	22	-
2022	120	120	120	652	641	534.2	98.4	10	-
2023	220	220	220	250	240	109.1	95.8	10	-
2024.7	220	220	220	491	481	218.4	97.9	10	-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022년에는 예산현액 1억 2,000만원 대비 534.2%인 6억 4,100만원이 수납되었고, 2023년에는 예산현액 2억 2,000만원 대비 109.1%인 2억 4,000만원, 2024년 7월 기준 예산현액 2억 2,000만원 대비 218.4%인 4억 8,100만원이 수납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2021년도 국회 결산심사를 통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과거 수납실적 및 내역을 고려하여 기타경상이전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받은 바 있음.

이에 대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세입과목 특성상(명예퇴직수당 환수 등) 수납액을 예측하기 어려워 2023년 수납실적(2억 4,000만원) 등을 고려하여 2024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입장이나, 각 연도별로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꾸준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할 것임.

따라서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실적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세입예산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세 출>

2. 기본경비 사업: 과다계상된 일용임금 예산 조정 필요

가. 개 요

‘기본경비’ 사업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8,300만원(1.3%) 증액된 218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용임금’**은 전년과 동일한 3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음.[5)]

[2025년도 기본경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기본경비	21,557	21,840	283	1.3
일용임금	341	341	-	-

나. 검토의견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기본경비 예산안 중 최근 집행실적이 저조한 일용임금을 실소요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일용임금은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로서, 2019년 이후 예산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최근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9월 말 현재 예산 3억 4,100만원 중 4,500만원만 집행되고 있어,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상황임.

5) 일반회계-기본경비(1011-200)

[최근 4년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기본경비 일용임금 예·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현액(A)	집행액(B)	불용액	집행률(B/A)
2021	300	262	39	87.3
2022	315	219	96	69.5
2023	331	78	253	23.6
2024	341	45	-	13.2

주) 2024.9. 말 기준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024년 일용임금 예산이 부진한 이유와 관련하여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상반기에는 한시 인력 소요가 감소하였으나, 하반기에는 각종 업무지원, 기록물 정리 등의 인력 소요 발생에 따라 일용임금을 최대한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업무지원, 기록물 정리 등은 매년 발생하는 인력 소요로서 작년과 달리 특별히 소요가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시적·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속기, 자문 등에 대한 수수료 및 사례금은 일반수용비(210-01)로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6] 실소요와 관련 없이 일용임금을 과다편성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최근 집행실적이 저조한 일용임금은 실소요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6)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대통령경호처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총수입은 5억 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00만원(2.8%) 증가함.[1)]

[2025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5.32	5.47	0.15	2.8
총수입	5.32	5.47	0.15	2.8

2025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총지출은 1,390억 9,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200만원(3.7%) 증가함.

[2025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1,340.96	1,390.98	50.02	3.7
총지출	1,340.96	1,390.98	50.02	3.7

문의 : 노성준 예산결산조사관 ysamy0904@assembly.go.kr (02-6788-5683)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나. 예산안

2025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은 총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 예산안은 5억 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00만원(2.8%) 증가함.

[2025년도 대통령경호처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5.32	5.47	0.15	2.8
합 계	5.32	5.47	0.15	2.8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1,390억 9,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200만원(3.7%) 증가함.

[2025년도 대통령경호처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340.96	1,390.98	50.02	3.7
합 계	1,340.96	1,390.98	50.02	3.7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대통령경호처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은 없음.[2][3]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음.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호·경비 안전대책 예산이 반영되었고, ‘경호경비과학화’ 사업과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 2건의 연구개발 사업의 중점 반영을 들 수 있음.

2025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예산안 중 고용부담금은 최근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실소요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R&D) 사업과 관련하여, AI 통합관제 시스템과 무인기 통합대응, 경비로봇 개발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경호 관제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무인기 외에 오물풍선과 같은 위협물질에 대한 대응도 함께 연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집행실적을 고려한 고용부담금 조정 필요

가. 개 요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사업은 대통령경호처 기관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5,300만원(2.4%) 증가한 66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음.[4)]

[2025년도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6,479	6,632	153	2.4
고용부담금	727	749	22	3.0

고용부담금(320-09)은 기타직(110-02), 상용직(110-03), 일용직(110-04) 등을 고용함에 따라 사용자인 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부담금을 지출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2,200만원(3.0%) 증가한 7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음.

4) 일반회계-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1011-201)(기획관리실)

나. 검토의견

대통령경호처의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예산안 중 고용부담금은 최근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실소요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대통령경호처의 고용부담금 예산은 최근 5년간 매년 증가해왔으나, 2021년을 제외하면 집행률이 저조한 편이고, 특히 2023년에는 예산 7억 500만원 중 5억 8,0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2,500만원이 불용되었음.

[대통령경호처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고용부담금 예·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집행액(B)	불용액	집행률(B/A)
2020	593	399	194	67.3
2021	613	580	33	94.6
2022	623	551	72	88.4
2023	705	580	125	82.3
2024	727	221		

주) 2024.9. 말 기준
자료: 대통령경호처

2023년의 고용부담금 집행부진에 대해 대통령경호처는 2023년에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이 많았다는 점, 공무직 공석 채용 과정에서 면접, 신원조회 등으로 인해 기간이 길어져 채용 공백이 발생, 이에 따라 고용부담금 지급액이 줄었다고 설명함.

2025년 예산안은 상용임금이 증액됨(37억 1,200만원→38억 2,900만원)에 따라 고용부담금 역시 증액 편성하였다는 의견이나, 상용임금 또한 매년 예산 대비 불용이 발생하고 있어 고용부담금 역시 예산 대비 당초 예상보다 집행이 부진할 가능성이 있음.

[대통령경호처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상용임금 예·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집행액(B)	불용액	집행률(B/A)
2020	2,900	2,392	508	82.5
2021	3,198	2,915	283	91.2
2022	3,248	3,140	94	96.7
2023	3,612	3,226	387	89.3
2024	3,712	2,097		

주) 2024.9. 말 기준
자료: 대통령경호처

따라서 최근 고용부담금 집행실적, 상용임금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R&D):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관리 철저 필요

가. 개 요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R&D)’ 사업은 경비안전 수요부처(대통령경호처)와 R&D 주무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하여 국가요인에 대한 위협 예방과 대응을 위해 5G, AI 등 국가전략기술을 도입하여 장비-인원-공간이 통합된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0억원(200.0%) 증가한 15억원이 편성되었음.[5)]

[2025년도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R&D)	500	1,500	1,000	200.0

나. 검토의견

AI 통합관제시스템과 무인기 통합대응, 경비로봇 개발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경호 관제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무인기 외에 오물풍선과 같은 위협물질에 대한 대응도 함께 연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기존의 단순 조합 형태의 관제기술을 벗어나, 경비인력 대체와 안전수준 제고가 가능한 지능형 통합관제·안전 기술개발을 위해 AI 통합관제와 이동형 경비로봇, 대공감시·대응장비 등 이기종(異機種) 경비안전 장비를 연동하여 신개념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5)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R&D)(1231-501)(기획관리실)

이 사업은 대통령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부처 R&D 사업으로, 총사업비 320억원을 대통령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각 160억원씩 분담하는 구조임.

[2025년도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소요예산						
	2024	2025	2026	2027	2028	계	비율
대통령경호처	500	1,500	3,500	5,500	5,000	16,000	5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00	1,500	3,500	5,500	5,000	16,000	50.0

자료: 한국연구재단

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I 통합관제, 무인기 통합대응, 경비로봇, 실증지원 R&D까지 총 4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AI 통합관제 과제 착수를 시작으로, 각 과제마다 공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임.[6)]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R&D) 사업 과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과제명	내 용	소요예산	착수 일정
1	AI 통합관제	국가요인 및 중요시설에 대한 위협요인 사전 예측 및 즉각 대응 가능한 입체적 경호 관제시스템 개발	24,000	2024년
2	무인기 통합대응	단일 장비로 지속 추적/대응하기 어려운 소형, 저고도 무인기 대상 다중 센서 기반 탐지-추적-대응 기술 개발	3,500	2025년
3	경비로봇	고정형 CCTV 음영지역 해소와 안정적 실시간 영상 전송을 위한 자율주행 경비로봇 기술개발	2,500	2026년
4	실증지원 R&D	세부과제 간 유기적인 연계(과제 ②, ③ 결과물을 과제 ① 에 통합) 및 경호·경비 환경 실증을 위한 시나리오와 실증기술 개발	2,000	2026년

자료: 대통령경호처 제출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도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해 AI 통합관제시스템과 무인기 통합대응, 경비로봇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의 상황 변화에 따른 연구과제의 보완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6) AI 통합관제 과제 사업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선정(2024.7.)

예를 들어,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 2024년 7월에는 대통령실 청사 경내에도 오물풍선이 추락하는 등 오물풍선에 대한 경호 관제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무인기 외에 오물풍선과 같은 위협물질에 대한 대응도 함께 연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회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국회 소관 총수입은 45억 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300만원(4.0%) 증가함.[1)]

[2025년도 국회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산	43.45	45.18	1.73	4.0
총수입	43.45	45.18	1.73	4.0

2025년도 국회 소관 총지출은 7,762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5억 5,300만원(1.1%) 증가함.

[2025년도 국회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7,676.53	7,762.06	85.53	1.1
총지출	7,676.53	7,762.06	85.53	1.1

문의 : 노성준 예산결산조사관 ysamy0904@assembly.go.kr (02-6788-5683)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나. 예산안

2025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45억 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300만원(4.0%) 증가함.

[2025년도 국회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43.45	45.18	1.73	4.0
합 계	43.45	45.18	1.73	4.0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국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7,762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5억 5,300만원(1.1%) 증가함.

[2025년도 국회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7,676.53	7,762.06	85.53	1.1
합 계	7,676.53	7,762.06	85.53	1.1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국회 2025년도 예산안에는 총 2개(21억 8,2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그 중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 운영’ 사업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인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 운영을 지원하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기본방향 및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문기구인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광복 80주년 및 국회의사당 건립 50주년 기념사업’은 2025년 광복 80주년 및 국회의사당 건립 5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 및 전시 기획, 기념공간 조성 등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및 의회 발전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여야 협치 및 국민 화합에 기반한 대한민국 미래 비전 제시를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9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국회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예산안
[일반회계]		
1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 운영	250
2	광복 80주년 및 국회의사당 건립 50주년 기념사업	1,932
총지출		2,182

한편, 국회의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의회경호및방호 사업’, ‘국회통합 디지털센터 건립’ 사업 등 총 2개 사업임.[3)]

[2025년도 국회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의회경호및방호	5,212	6,877	1,665	31.9
2	국회통합디지털센터 건립	2,613	3,920	1,307	50.0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국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음.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총 85억 5,300만원(1.1%) 증가한 7,762억 600만원으로, 주요사업비는 전년 대비 48억 5,300만원(△1.5%) 감액된 3,186억 9,600만원, 인건비는 전년 대비 120억 5,100만원(2.9%) 증가한 4,215억 2,600만원,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13억 5,500만원(3.9%) 증가한 359억 8,400만원 편성되었음.

2025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협의가 2024년 9월에 완료됨에 따라 2024년 예산에 편성된 설계비는 내년도로 이월되어 집행되고 공사는 2026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변경된 사업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사업단계마다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둘째, 온라인 자료에 대한 안정적인 납본과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국회도서관법」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사업: 안정적인 건립을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가. 개 요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사업은 디지털 열람실, 디지털체험·전시관 등을 포함한 도심형 복합 문화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억 700만원(50.0%) 증액된 39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4)]

[2025년도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2,613	3,920	1,307	50.0

나. 검토의견

총사업비 협의가 2024년 9월에 완료됨에 따라 2024년 예산에 편성된 설계비는 2025년으로 이월되어 집행되고 공사는 2026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국회 통합디지털센터가 변경된 사업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사업단계마다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사업은 대전시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내 생태호수공원 부지에 국회 통합데이터센터, 디지털열람실, 디지털체험·전시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

4) 일반회계-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2033-302)(관리국)

으로, 2025년 예산안에는 건설보상비 35억원과 감리비 4억 1,400만원, 실시설계비 6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 사업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타당성재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사무처는 2024년 9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하였음.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사업 주요경과]

연도	주요 경과
2021	○ 2021. 01. ~ 05.: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 2021. 06.: 입찰방법 심의(설계・시공 일괄입찰,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 2021. 06. ~ 08.: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 2021. 10. ~ 2022. 01.: 입찰공고
2022	○ 2022. 01. ~ 05.: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공사 실시설계 ○ 2022. 06. ~ 08.: 우신시공분 공사 가격협상(결과: 결렬) ○ 2022. 08.: 입찰방법 변경 심의(설계・시공 일괄입찰→설계・시공 분리입찰) ○ 2022. 09. ~ 10.: 타당성재조사 심의자료 제출 및 총사업비 조정 요청 ○ 2022. 10.: 타당성재조사 시행 요청(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2023	○ 2022. 10.~ 2024. 01: 타당성재조사 완료
2024	○ 2024. 09.: 총사업비 협의 완료

자료: 국회사무처

총사업비 협의에 따라 사업비는 당초 467억 7,900만원에서 505억 5,300만원으로 증가되었고, 연면적은 11,811㎡에서 8,609㎡로 감소되었으며, 사업기간은 3년이 늘어나 2027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2025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예정임.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사업 총사업비 협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현행(A)	조정(B)	조정후(A+B)	비 고
〈총사업비〉	46,779	3,774	50,553	
□ 공사비	39,578	△2,123	37,455	
□ 보상비	3,500	-	3,500	
□ 시설부대경비	3,701	1,301	5,002	
○ 설계비	861	1,297	2,158	
○ 감리비	2,754	△39	2,715	
○ 시설부대비	86	43	129	
□ 예비비	-	4,596	4,596	
〈연면적(㎡)〉	11,811	△3,202	8,609	
〈사업기간〉	'21~'24년	+3년	'21~'27년	

자료: 국회사무처

다만, 총사업비 협의가 2024년 9월에 완료됨에 따라 2024년 예산에 편성된 설계비는 2025년으로 이월되어 집행되고 공사는 2026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국회 통합디지털센터가 변경된 사업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사업단계마다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온라인자료 납본 사업: 안정적인 납본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온라인자료 납본’** 사업은 온라인 자료의 수집·보존을 위한 납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억 3,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5)]

[2025년도 온라인자료 납본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도서관운영관리	10,770	11,770	1,000	9.3
도서관 자료확충	5,178	5,928	750	14.5
온라인자료 납본	-	238	238	순증

[온라인자료 납본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손실보상금 200백만원
- 8,000종×2책×25,000원×0.5(납본보상률)
○ 일반용역비 38백만원
- 8,000건×4,763원

자료: 국회도서관

나. 검토의견

온라인 자료에 대한 안정적인 납본과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회도서관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될 필요가 있음.

납본이란 「도서관법」 및 「국회도서관법」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도서관자료가 판매용이거나 공공기관등이 아닌 자가 납본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5) 일반회계-도서관운영관리(3031-300)(정보봉사국)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국회도서관법」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아닌 자로부터 도서관자료를 납본받고 있으나,[6] ‘온라인 자료’는 납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최근 5년간 매년 약 1,100~1,480점의 온라인 자료를 구입하여 수집하는 데 그치고 있음.

이에 반해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국제표준자료번호가 부여된 온라인 자료’를 납본을 통하여 수집하고 있으며,[7] 최근 5년간 약 17,000~24,800점의 온라인 자료를 납본을 통해 수집하고 있음.

[국회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수집 비교]

(단위: 점)

연 도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	
	국회도서관(구입)	국립중앙도서관(납본)
2019	1,102	17,001
2020	1,331	22,598
2021	1,480	23,406
2022	1,480	19,391
2023	1,421	24,856

자료: 국회도서관

출판 생태계의 변화로 전자책(온라인 자료) 출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8] 납본이 아닌 구입을 통해서만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국민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제공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온라인 자료의 납본은 디지털 자원의 국가적 수집·보존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도서관에도 온라인 자료의 납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9]

2025년 예산안에 온라인 자료에 대한 납본 보상금이 편성되어 있으나, 안정적인

6) 「국회도서관법」
제7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등) ③ 공공기관등이 아닌 자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은 납본한 자에게 그 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7) 「도서관법」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8) 전체 출판시장에서 차지하는 전자책 매출 비중: 2021년 22.4% → 2022년 25.6% (문화체육관광부, 「2022 콘텐츠산업조사 보고서」)

9)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2203001) 검토보고서」. 2024.9.

납본과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국회도서관법」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10]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온라인 자료의 납본·수집을 통해 의정활동 지원과 대국민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등)	제7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등)
③ 공공기관등이 아닌 자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은 납본한 자에게 그 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도서관법」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10) 의안번호 2203001호, 서일준의원 대표발의안

국가인권위원회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2,7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함.[1)]

[202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0.27	0.27	-	-
총수입	0.27	0.27	-	-

202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424억원으로 전년 대비 11억원(2.7%) 증가함.

[202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413	424	11	2.7
총지출	413	424	11	2.7

문의 : 신대용 예산결산조사관 sdy1123@assembly.go.kr (02-6788-5678)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나. 예산안

202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2,7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함.

[2025년도 국가인원위원회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0.27	0.27	-	-
합 계	0.27	0.27	-	-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424억원으로 전년 대비 11억원(2.7%) 증가함

[202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413	424	11	2.7
합 계	413	424	11	2.7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의 신규사업은 없음.[2)]

한편, 주요 증액사업은 ‘지역인권문화 확산’ 사업,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사업 및 ‘북한인권 개선’ 사업 등 총 3개임.[3)]

[202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지역인권문화 확산	165	234	69	41.8
2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1,945	2,667	722	37.1
3	북한인권 개선	141	185	44	31.2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인권교육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교육 방향을 재정립하는 한편 국가인권교육원 개원 준비에 주력하는 것이 주요 특징임.

202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인권체험관 원상복구’ 사업은 기존 시설물 철거 과정에서 운영중이던 컨텐츠의 보관 및 재활용 관련 계획이 미비하므로 향후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구체적인 컨텐츠 활용 계획 마련이 필요해 보임.

둘째, ‘군인권 권리구제 강화’ 사업은 신규 편성된 특정업무경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관련 예산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인권단체 인권증진 활동 지원’ 사업은 법적 근거 마련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인권체험관 원상복구 사업(신규): 지역인권체험관 컨텐츠 재활용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인권체험관 원상복구’** 사업은 지자체에서 무상 제공하는 건물 및 시설등을 활용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설치·운영하던 지역별 인권체험관을 임차 전 형태로 원상복구 하고자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1억 2,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4)]

[2025년도 인권체험관 원상복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지역인권문화 확산	165	234	69	41.8
인권체험관 원상복구	-	126	126	순증

이 사업은 MOU체결을 통해 각 지자체에서 건물 및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체험관을 운영하던 ‘인권체험관 운영’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 인권체험관이 소재하던 공간을 조성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5)] 하는 사업임.

기존 체험관 운영 사업의 중단 이유는 효율적인 지역 인권체험관의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함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행한 2024년 초 「인권체험관 종합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인권체험관 운영 중단을 결정하였기 때문임.

---

4) 일반회계-지역인권문화 확산(1031-303)(인권사무소)

5) 시설물 철거, 폐기물 처리 및 임차 공간 도색

[인권체험관 원상복구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인권체험관 원상복구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595천원 ・광주인권체험관: 14,800원×4개월 = 59천원 ・대구인권체험관: 103,930원×4개월 = 416천원 ・대전인권체험관: 30,000원×4개월 = 120천원 - 공사비(420-03) : 124,940천원 ・광주인권체험관: 63,940천원 ・대구인권체험관: 32,000천원 ・대전인권체험관: 29,000천원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나. 검토의견

‘인권체험관 원상복구’ 사업은 기존 지역 체험관에서 운영하던 컨텐츠에 대한 재활용 계획이 미비하므로, 향후 구체적인 재활용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광주・대전 인권체험관의 경우 2024년 12월 말까지 운영 예정이며, 대구・부산 인권체험관은 이미 운영이 종료되었고, 부산 인권체험관은 원상복구까지 완료된 상황임.

[지역 인권체험관별 운영 현황]

연 번	지 역	위 치	현 황
1	강 원	강원인권사무소	운영 중 (2024년 12월 종료 예정)
2	광 주	광주지하철 1호선 역사 (김대중컨벤션센터역)	운영 중 (2024년 12월 종료 예정)
3	대 구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운영 종료
4	대 전	대전지하철 1호선 역사 (시청역)	운영 중 (2024년 12월 종료 예정)
5	부 산	부산지하철 3호선 역사 (물만골역)	운영 종료 및 원상복구 완료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 중 2025년도에 원상복구가 필요한 지역은 광주・대구・대전[6]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각 지자체와 2025년 상반기 내에 철거 및 원상복구를 완료하기로 협의가 완료된 상황임.

6) 강원 인권체험관은 별도 공간을 임차하지 않아 원상복구가 불요함.

이와 관련하여 원상복구 작업은 2025년 초부터 추진 예정이지만 철거 이후 지역 인권문화 사업 운영에 대한 계획이 아직 부재한 상황으로 보임.

원상복구 과정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컨텐츠의 재활용과 관련하여 인권위는 이미 부산 인권체험관에서 운영하던 컨텐츠를 재활용하지 않고 폐기 처분하였고, 2025년 원상복구 대상 지역체험관의 컨텐츠 재활용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지 않음.

지역별 인권체험관의 컨텐츠를 살펴보면, VR체험·인권 전시 작품 등 인권문화 확산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는바, 국가인권위원회는 추후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지역 체험관 철거시 기존 컨텐츠들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보관 계획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지역 인권체험관 운영 컨텐츠 현황]

연번	지 역	컨텐츠 현황	비 고
1	광 주	인권침해 찾기 포스터 등	
2	강 원	시각장애 VR 체험, 인권 룰렛 등	
3	대 구	인권작품 전시, 인권체험관 스탬프투어 등	
4	대 전	지체장애, 시각장애 VR체험 등	
5	부 산	인권주제 기획전시, 각종 인권 관련 도서 등	운영 종료료 인한 폐기 처분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인권체험관 신규 구축을 재추진할 예정이고, 기존 인권체험관의 컨텐츠는 지역 내 인권교육 및 협력사업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향후 원상복구 과정에서 보관된 기존 지역인권체험관 컨텐츠를 자체 인권교육·홍보사업에 재활용하고 타기관과의 협력사업에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 계획을 철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군인권 권리구제 강화 사업: 특정업무경비 예산의 조정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군인권 권리구제 강화’** 사업은 군부대 방문 조사를 통해 복무중인 장병 인권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인권 침해·차별 예방 및 군부대에서의 군인 기본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200만원(48.5%) 증액된 9,800만원이 편성되었음.[7)]

[2025년도 군인권 권리구제 강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군인권 보호 및 증진	512	510	△2	△0.3
군인권 권리구제 강화	66	98	32	48.5

이 사업의 세부내역 중 ‘군인 등 사망사건 입회’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6[8)]에 근거하여 군부대 내 사망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방부장관은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해야 하고, 부대 내 조사 과정에서 필요시 국가인권위원회의 군인권보호관 등이 입회하여야 하는바, 이때 입회활동 조사에 소요되는 특정업무경비 3,200만원이 신규 편성 되었음.

7) 일반회계-군인권 보호 및 증진(1033-304)(군인권보호국)

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6(사망사건의 통보와 조사·수사의 입회)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즉시 위원회등에 사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위원회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군 조사기관 또는 군 수사기관의 장(「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에게 진행 중인 해당 사건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에 군인권보호관 및 소속 직원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군 조사기관 또는 군 수사기관의 장은 진행 중인 조사나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면 그 입회 요구에 따라야 한다.

나. 검토의견

군 사망사건 입회활동과 관련하여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 대비 특정업무경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예산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군인 등 사망사건 입회활동 업무의 특정업무경비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기관의 조사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됨.

입회활동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권보호국은 총 22명의 직원이 3개의 과(군인권조사과, 군인권보호총괄과, 군인권협력지원과)에 나뉘어 근무 중임.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군인권보호국 소속 인원 전원이 매월 1회씩 군인 등 사망사건 입회활동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특정업무경비가 편성된 것으로 보임.[9)]

[2025년도 군인권 권리구제 강화 사업 특정업무경비 산출 내역]

○ 특정업무경비(250-03) : 32,000천원 가. 입회활동 지원 · 사망사건 입회활동비 : 120,000원*22명*12개월=31,680천원 · 단수조정 : 320,000원=320천원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그런데 군인 등 사망사건 입회활동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6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는 '군인권조사과'이며, 소속 과원은 군인권보호국장 포함 8명임. 그 외 2개 과는 주요 업무를 살펴봤을때 같은 법에 따른 입회활동과는 관련성이 낮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9)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 183.
특정분야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정액 지급할 수 있다.

[군인권보호국 소속 각 과별 주요업무]

○ 군인권조사과 - 주요업무 ・군 인권 침해(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 사항 제외)에 관한 조사 및 구제 ・법 제50조의6에 따른 군인 등의 사망사건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에의 입회에 관한 사항 (후략) ○ 군인권보호총괄과 ・군 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제2호의 조사・연구로 확인된 개선 필요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법 제50조의4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 (후략) ○ 군인권협력지원과 ・군 인권 침해를 개선・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이하 이 항에서 “군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협력 및 시행 ・군인권교육과 관련된 법령・제도・정책・관행에 관한 조사・연구 ・군인권교육 실시 등을 위한 협의에 관한 사항 (후략)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통상 입회활동 조사시 군인권조사과 1인 및 같은 국 소속 다른 과원 1인으로 팀을 구성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모든 군인권보호국 소속 인원이 입회활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방문하는 군부대가 오지에 있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필요하므로 특정업무경비 예산(22명분)을 편성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각 과별 지원인력을 살펴본 결과 군인권조사과 소속 인력만 입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2024년의 경우 9월까지 입회활동의 총 조사건수는 47건이었고, 이 중 군인권조사과만 단독으로 입회활동에 참여한 건수는 27건(57.4%)이었음. 같은 해 과별 지원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군인권조사과에서 58명의 인력이 조사활동에 참여할 동안 나머지 2개 과는 각각 총 10명, 11명의 인력이 조사활동에 참여하였음.

또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를 직접 상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자[10]에 대해서는 월정액으로 경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군인권조사과 소속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2개 과 인력은 상시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이 사업의 특정업무경비는 과다 편성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10) 예) 직제상 특정업무수행 부서 소속임에도 특정업무 미수행자 등

[최근 입회활동 조사시 각 과별 지원인력 현황]

구 분	총 조사건수	과별 지원인력 현황			군인권조사과 단독조사 건수
		군인권조사과	군인권보호총괄과	군인권협력지원과	
2023년	53건	60명	21명	21명	11건
2024년	47건	58명	10명	11명	27건

주) 2024년의 경우 9월까지의 조사건수임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인권단체 인권증진 활동 지원 사업: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인권단체 인권증진 활동 지원’** 사업은 인권 현안에 대한 시민 인권단체와의 상호 협력 증진 등을 위해 인권 과제를 공모하여 보조사업 단체를 선정·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1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음.[11]

[2025년도 인권단체 인권증진 활동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국내교류협력	217	210	△7	△3.2
인권단체 인권증진 활동 지원	170	170	-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상호 협력 증진과 인권 저변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인권위가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인권 과제들을 매년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아 인권단체(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나. 검토의견

인권단체 인권증진 활동 지원 사업은 보조금 지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적극적인 보완노력이 요구됨.

최근 3년간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13개, 2023년은 16개, 그리고 2024년은 13개의 시민단체가 신청한 인권과제가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았음.

각 단체의 인권과제 내용들을 살펴보면 분야별로 장애인 문화향유 증진, 기후위기 시대 노동자 인권, 여성인권 증진 등이 있었음.

11) 일반회계-국내교류협력(1036-303)(정책교육국)

[최근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시민단체 수	지원금
2022년	13개	179
2023년	16개	179
2024년	13개	161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민간보조사업의 적용 대상을 ① 보조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 ② 국제협약, 정부약속 등에 의해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③ 국가정책상 지원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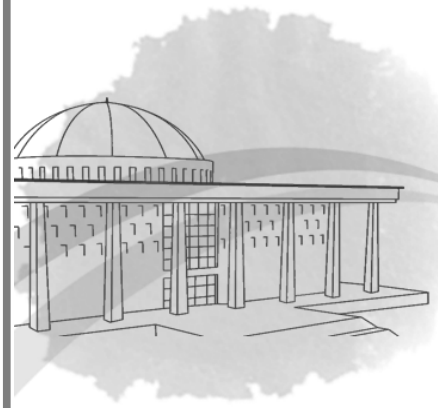
이에 따라 '인권단체 인권증진 활동 지원' 사업은 보조금 예산 편성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사업 추진의 근거 규정이 불분명한 상황임. 지난 예결위 2023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명확한 법적 근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임.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12](발의자: 이재강 의원 등 10인, 2024.8.13.)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 회부(2024.9.25.)되어 있으며, 위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노력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동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2023년 1월에도 제출되었지만 제21대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점을 고려하면, 위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더욱 적극적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임.

1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자: 이재강 의원 등 10인)
제19조의2(보조금) 위원회는 인권현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상호 협력 증진과 인권저변을 확대·강화할 목적으로 제19조제8호에 따른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Ⅰ. 개 관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법무부 소관 총수입은 1조 6,138억원으로, 전년 대비 2,192억원(15.7%) 증가함. 예산은 1조 6,082억원으로 전년 대비 2,185억원(15.7%) 증가하고, 기금은 56억원으로 전년 대비 7억원(13.8%) 증가함.[1)]

[2025년도 법무부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13,898	16,082	2,185	15.7
기 금	49	56	7	13.8
총수입	13,947	16,138	2,192	15.7

문의 : 이은미 예산결산조사관 eunmee@assembly.go.kr (02-6788-5688)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 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법무부 소관 총지출은 4조 4,774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4억원(2.6%) 증가함. 예산은 4조 3,828억원으로 전년 대비 1,075억원(2.5%) 증가하고, 기금은 946억원으로 전년 대비 59억원(6.7%) 증가함.

[2025년도 법무부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42,753	43,828	1,075	2.5
기 금	887	946	59	6.7
총지출	43,640	44,774	1,134	2.6

나. 예산안

2025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은 총 2개 회계(일반회계, 교도작업특별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2개 회계(일반회계, 교도작업특별회계) 1조 6,674억원으로 전년 대비 2,219억원(15.4%) 증가함.

[2025년도 법무부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3,249	15,437	2,189	16.5
교도작업특별회계	1,205	1,237	32	2.6
합 계	14,454	16,674	2,219	15.4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법무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2개 회계(일반회계, 교도작업특별회계) 4조 5,24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01억원(2.5%) 증가함.

[2025년도 법무부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42,936	44,005	1,069	2.5
교도작업특별회계	1,205	1,237	32	2.6
합 계	44,141	45,242	1,101	2.5

주) 총계 기준

다.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법무부 소관 1개 기금(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1,449억원으로 전년 대비 78억원(5.7%) 증가함.

[2025년도 법무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371	1,371	1,449	78	5.7
합 계	1,371	1,371	1,449	78	5.7

주1) 총계 기준이며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법무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신규사업은 없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국가배상금지급’ 사업, ‘검찰청운영인건비(총액)’, ‘교정시설수용관리및공공요금’ 사업 등 총 15개임.[2)]

[2025년도 법무부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국가배상금지급	100,000	131,765	31,765	31.8
2	검찰청운영인건비(총액)	829,262	856,312	27,050	3.3
3	교정시설수용관리및공공요금	269,102	290,348	21,246	7.9
4	외국인등록증발급수입대체경비	5,757	9,849	4,092	71.1
5	기업환경지수개선	253	2,753	2,500	988.1
6	교정본부기본경비	2,932	4,367	1,435	48.9
7	재범징후선제적감지및대응력강화 기술연구개발사업(R&D)	877	2,000	1,123	128.1
8	이민정책연구원운영	2,562	3,455	893	34.9
9	첨단기술융합형 차세대검찰Forensic기술연구개발(R&D)	1,800	2,400	600	33.3
10	검찰국기본경비	563	744	181	32.1
11	교정본부기본경비(총액)	521	698	177	34.0
12	정부부처등국제법무법률지원	381	516	135	35.4
13	국제법무국기본경비	272	362	90	33.1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4	실질적인범죄피해자등의신변보호강화	3,446	5,540	2,094	60.8
15	형사조정을통한피해회복지원	2,500	3,450	950	38.0

2)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법무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교도작업특별회계 등 1개 특별회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등 1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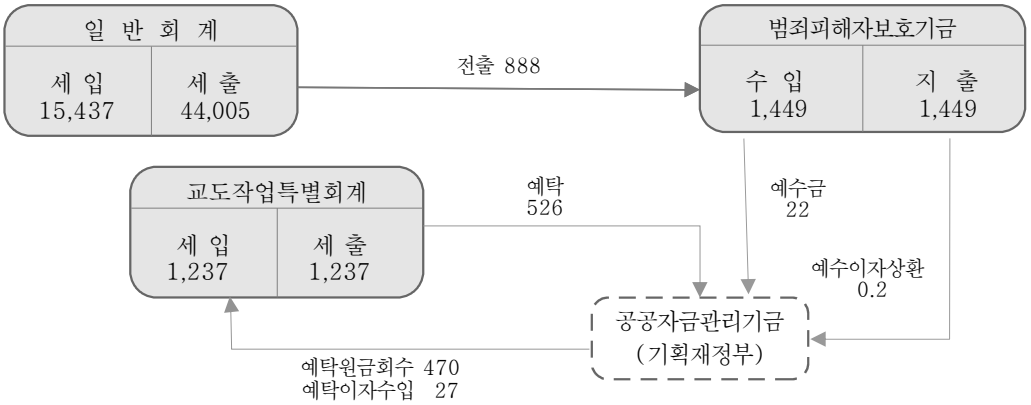
일반회계의 경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888억원이 전출됨.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526억원을 예탁하며, 예탁원금회수 470억원 및 예탁이자수입 27억원이 발생함.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888억원이 전입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원금 22억원 및 이자 0.2억원을 상환함.

[법무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4.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전국민 안심체계 구축을 위한 마약 및 첨단·지능범죄 근절, 범죄피해자 및 취약계층 권리구제, 외국인 사회통합 및 체류질서 확립 등 3대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반영한 것을 들 수 있음

2025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외국인 가사사용인 활용 직무교육 사업은 2024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시범사업에 따라 대상자 규모, 수행절차 등 사업 계획이 결정되므로, 시범사업의 결과를 검토하여 2025년 사업 수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면밀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전자장치(발목형 및 손목형 위치추적기)의 구입량 산정에 있어 부착 대상자 수의 증감률, 여유 보유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손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증감 추세 및 연도말 보유수량 등을 고려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1. 면허료 및 수수료: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연장 여부의 조속한 결정 필요

가. 개 요

‘면허료 및 수수료’는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응시수수료, 전자여행허가제(K-ETA) 수수료 등 각종 출입국 허가증 발급 민원 수수료 등이 수납되는 수입으로, 2025년도 계획안에는 전년 대비 103억 6,600만원(47.0%) 증액된 324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음.[3)]

[2025년도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면허료 및 수수료	22,061	32,427	10,366	47.0

[면허료 및 수수료 2025년 예산안 세부내역]

구분	예산액 (백만원)	산출 근거
법조시험응시, 자격승인심사	782	・최근 3년 수납 평균
검찰・교정 민원 및 정보공개 등	259	・최근 3년 수납 평균
출입전자민원	10,561	・최근 3년 수납 평균
한미자동심사	11	・최근 3년 수납 평균
전자여행허가제(K-ETA) 수수료	20,814	・2024년 세입 예산 × 25.4%(방한 관광객 증가율)
합 계	32,427	

자료: 법무부

3) 일반회계 - 면허료 및 수수료(65-651)(기획재정담당관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나. 검토의견

법무부는 향후 예산심사과정에서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2025년 세입편성 규모의 적정성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 정책 연장과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항목은 법조시험응시 및 자격승인심사 수수료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25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전년 대비 증액된 항목은 검찰·교정 민원 및 정보공개, 출입전자민원 수수료, 전자여행허가제(K-ETA) 수수료(건당 10,000원) 등 3개 항목이고, 감소한 항목은 법조시험응시·자격승인심사와 한미자동심사 수수료 등 2개 항목임.

전자여행허가제(K-ETA) 수수료 항목을 제외한 4개 수납 항목은 최근 3년 평균 수납액을 산출하여 계상하였으나, 전자여행허가제(K-ETA) 수수료의 수납액은 전년 대비 42억 1,600만원(25.4%)이 증가한 208억 1,400만원으로 편성됨.

전자여행허가제(K-ETA) 수수료의 수납액은 방한 관광객의 규모 및 전자여행허가제(K-ETA) 수수료 납부 여부 등 관광정책에 따라 결정되는데, 2023년에는 '한국 방문의 해' 지정(2023~2024년)으로 무사증입국 대상 국가(23개국) 입국자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4]를 실시함에 따라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2022년 대비 233억 2,000만원(△52.2%) 감소한 213억 4,000만원에 불과하였음.

[면허료 및 수수료 수납 실적: 2021~ 2024. 9.]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9.	
	예산액	수납액	예산액	수납액	예산액	수납액	예산액	수납액
법조시험응시, 자격승인심사	808	762	800	796	800	787	800	64
검찰·교정 민원 및 정보공개 등	238	239	222	248	222	290	222	235
출입전자민원	3,570	8,217	4,427	9,724	4,427	13,800	4,427	10,301
한미자동심사	20	3	14	9	14	22	14	26
K-ETA	-	515	12,800	19,417	**44,660**	**21,340**	**16,598**	**7,260**
합 계	4,636	9,221	5,463	30,195	5,463	35,162	22,061	17.886

자료: 법무부

4) 법무부는 '2023~2024년 한국방문의 해' 지정과 관련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으로 112개국 무사증 입국자 중 23개국(대만·미국 및 일본 등) 입국자에 대하여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를 2023. 4. 1. ~ 2024. 12. 31.까지 시행함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도 전자여행허가제(K-ETA) 수수료 수입 예산안 208억 1,400만원은 2024년도 세입 예산액 165억 9,800만원에 방한 관광객 증가률인 25.4%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외국인 입국자 수 예상 상세내역]

(단위: 명)

구분	2019년		2024년 (예상)	2025년 (예상)	2026년 (예상)	2027년 (예상)	2028년 (예상)
외국인 입국자 수	17,880	≈	16,807	19,489	22,529	25,926	30,000
(무사증 입국자수)	(6,396)		(6,012)	(6,971)	(8,059)	(9,274)	(10,745)
비율(2019년 대비)	(100%)		(94%)	(109%)	(126%)	(145%)	(168%)

자료: 법무부

그러나 전자여행허가제(K-ETA) 수수료 세입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방한 관광객의 규모와 함께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 연장 여부 등과 관련한 관광정책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 지정에 따른 무사증 입국자 수수료 면제가 적용된 2024년 1~9월 동안 수납된 전자여행허가제(K-ETA) 수수료는 72억 6,014만원으로 나타났음.

[2024년 전자여행허가제(K-ETA) 수수료 실적]

(단위: 명, 건, 천원)

구 분		무사증 입국자	K-ETA 작성 입국자		
		입국자 수	입국자	K-ETA 신청 건수	금액
무사증 입국자 수수료 면제 적용	1월	473,772	112,472	78,654	786,390
	2월	538,637	122,017	78,493	785,000
	3월	883,273	182,911	96,801	968,020
	4월	804,999	188,597	85,538	855,430
	5월	809,549	159,396	76,877	768,660
	6월	822,304	133,152	75,847	758,450
	7월	801,452	120,320	70,409	704,080
	8월	874,543	113,858	78,057	780,660
	9월	847,038	135,101	85,337	853,450
	합계	6,855,567	1,267,824	726,013	7,260,140

자료: 법무부

2025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전자여행허가제(K-ETA) 세입 예산 규모가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동 조치의 연장 여부가 세입 예산 규모 산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법무부에 따르면 2024년 10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년도에도 방한 관광객 활성을 위하여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한시 면제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관련 부처 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법무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전자여행허가제(K-ETA) 수수료 수입 규모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전자여행허가제(K-ETA) 무사증입국자에 대한 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의 연장 여부를 조속히 결정함으로써 동 수수료의 적정한 수입 규모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세 출>

2. 출입국감시정 운영 사업: 면밀한 감시정 건조 계획 마련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출입국감시정 운영’ 사업은 선박 등 입·출항 시 승무원과 승객의 출입국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승선검색을 위하여 감시정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8억 7,200만원(730.6%) 증액된 44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음.[5)]

[2025년도 출입국감시정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출입국외국인관서시설운영	51,419	55,163	3,744	7.3
소속관서 운영경비	29,647	33,572	3,925	13.2
출입국감시정 운영	530	4,402	3,872	730.6

[출입국감시정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출입국감시정 운영: 4,402백만원

- 현 출입국감시정 운영 : 302백만원 (2척×12.6백×12월)
  - 공공요금 및 제세(보험료 등): 44백만원(2척×22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부품 교체 등): 50백만원(2척×25백만원)
  - 공사비(정기검사 등): 206백만원(2척×104백만원)

- **출입국감시정 건조: 4,100백만원(1척×40톤×103백만원)**
  - 공사비 4,041백만원, 감리비 59백만원

자료: 법무부

5) 일반회계 - 출입국외국인관서시설운영(1232-300)(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나. 검토의견

2024년 출입국 감시정 실시 설계에 따른 2025년 연내 감시정 건조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면밀한 건조계획을 수립하고 건조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법무부는 2022년부터 부산 및 인천 출입국사무소에서 승선검색 및 해상순찰활동을 위하여 출입국감시정을 운영하고 있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출입국감시정 2척은 선령이 22년을 경과하여 노후화된 감시정으로 유지관리비가 연간 1척당 1억 5,120만원이 소요되고 있고, 내·외항 정박 선박이 급증[6]하여 출입국 검색을 위한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출입국감시정 건조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법무부는 감시정 건조를 추진하였음.

법무부는 2024년 실시설계(2024. 4. 26.~11. 30.)를 수행(예산 2억 2,812만원)하고, 2025년에 감시정 건조(예산안 41억원)를 실시할 예정임.

당초 법무부는 감시정 톤수를 50톤으로 건조할 계획이었으나, 실시설계 계획 수립 시 선박제원을 40톤으로 하향하였으며, 실제 실시설계 과정에서 감시정 규모를 39톤으로 다시 하향 조정하였음.

[2024년 계획한 건조대상 감시선 소요 제원]

선종	선질	예상 선박제원						운항특성		친환경선박 적용기술
		총톤수	길이	너비	깊이	주기관 출력	최대 속력	운항구역	승선인원	
감시정	알루미늄 합금	50톤	24.7m	5.4m	2.8m	3,000kW (디젤엔진 2,012HP×2)	35Knots	연해 구역	12명	하이브리드 (배터리,디젤연료 발전기 결합)

자료: 법무부

2025년도 예산안에는 감시정 규모를 40톤으로 하고 톤당 1억 300만원의 비용으로 41억원을 편성하였음.

6) 1983년 당시 외항정박 선박은 연간 약 4만척임에 비해 최근 5년간 15만3,000척으로 280%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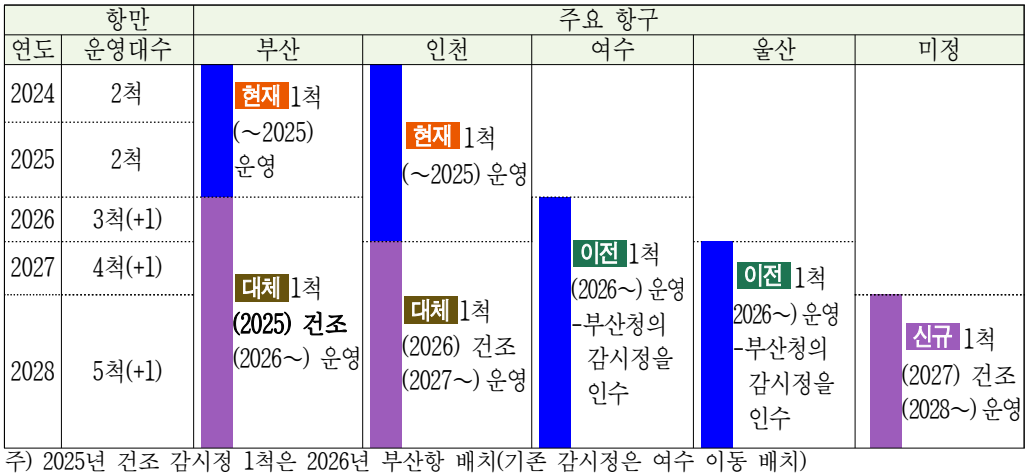
[감시정 실시설계 주요 내용]

구 분	현재 감시정	최초 과업지시서	수정 과업지시서
톤수	32톤(33톤)	40톤급	39톤
최대속도	30노트(55km/h)	30노트(55km/h)	27노트(50km/h)
주기관(엔진)	디젤엔진(1,600마력) 2대	디젤엔진(1,600마력) 2대	디젤엔진(1,100마력) 2대
친환경선박 유형	미적용	미세먼지 저감장치(DPF)	미세먼지 저감장치(DPF)
제원(전장, 폭)	20.3(m)×5(m)	24(m)×5.3(m)	22.7(m)×5(m)
선체 재질	알루미늄	알루미늄	알루미늄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현재 노후 감시정 2척을 부산 및 인천항구에서 2025년까지 운영하고, 2025년에 신규 건조한 감시정 1척을 부산에 배치하면서 기존에 부산에서 운영하던 노후 감시정 1척을 여수항구에 배치를 하는 등 2028년까지 총 3대의 신규 건조 감시정을 포함한 5척의 감시정을 운영할 계획임.

[법무부 감시정 도입·운영 계획(안)]



주) 2025년 건조 감시정 1척은 2026년 부산항 배치(기존 감시정은 여수 이동 배치)
2026년 건조 감시정 1척은 2027년 인천항 배치(기존 감시정은 울산 이동 배치)
2027년 건조 감시정 1척은 2028년 배치 예정(사무소 규모 및 항만보안 고려)

자료: 법무부

다만, 감시정 도입과 관련한 사업계획이 지속적으로 변경되었는데, 사전의 사업계획이 면밀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보이는 바,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특히 해양경찰청의 ‘다목적 화학방제함 1척 건조 사업’에서와 같이 선박건조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7], 2024년 감시정 실시 설계에 따른 2025년 연내 감시정 건조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건조계획을 수립하고 건조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7) 다목적 화학방제함 1척 건조 사업은 2024년 최초 사업 추진 계획 대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당초에는 2024년 5월까지 개념설계를 마치고 2025년 3월까지 기본설계 실시 후 건조를 추진하는 일정이었음. 그러나 2024년 9월 말 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시작하여 기본설계는 2025년 8월 이후 완료가 되어 건조 일정도 계획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

3. 외국인 가사사용인 활용 직무교육 사업(신규): 시범사업 결과를 검토하여 내실있는 제도 운영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외국인 가사사용인 활용 직무교육’** 사업은 국내 체류외국인 중 유학생, 결혼이민자의 가족, 외국인근로자 등의 배우자 등을 가사사용인(가사 ·육아 활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3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8)]

[2025년도 외국인 가사사용인 활용 직무교육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외국인사회통합지원	15,427	17,939	2,512	16.3
외국인 사회통합업무 지원	13,155	14,262	1,107	8.4
외국인 가사사용인 활용 직무교육	-	300	300	순증

[외국인 가사사용인 활용 직무교육 사업 세부내역]

○ 일반수용비: 3억원

- 산출근거

사업대상자 : (4,000명[1)] / 32명[2)])× 40시간[3)]× 60천원[4)]= 300백만원

1) 2025년 계획인원 5,000명 중 2024년 하반기 시범실시 대상자(1,000명)을 제외한 인원
2) 교육반별 인원
3) 교육시간 : 40시간(주말 1일 8시간, 5주) 과정
4) 강사료 단가: 고용부 여성재취업훈련 강사료 기준

자료: 법무부

외국인 가사사용인 활용 직무교육 사업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외국인 유학생 및 졸업생(D-2, D-10 비자), 결혼이민자 가족(F-1~5 비자)의 배우자(F-3 비자) 중 성년인 자를 대상으로, 가사·육아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임.

8) 일반회계 - 외국인사회통합지원(1233-301)(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업 수행 방식을 살펴보면, 법무부는 직무교육의 주제 지정, 시범운영 지방자치단체 선정 및 사업 대상자인 외국인에 대한 활동 허가(체류자격 외 활동을 허가)를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의 외국인 요건, 서비스 이용자(국민) 요건, 직업정보 제공, 교육, 외국인과 서비스 이용 가정의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임.

[외국인 가사사용인 활용 직무교육 사업 개요(안)]

구분	주요 내용	
사업 목적	・유학생, 결혼이민자의 가족, 전문인력의 배우자 등이 가사・육아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	
서비스 제공자 (외국인)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 및 졸업생(D-2, D-10), 결혼이민자 가족(F-1-5), 전문인력의 배우자(F-3) 중 성년인 사람 * 가사 및 육아 업무 범위를 한국어 능력 요건으로 차별화	
서비스 이용자 (국민)	・미성년 자녀 양육 가구(출산 예정 가구 포함) * 이용자 요건은 지자체 자율로 설정하되, 저출생 대응을 위한 대책(육아 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 측면에서도 고려 필요)임을 고려하여 설계(예: 신혼부부, 맞벌이부부,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우대 등)	
직무 교육	・업무 범위・단계별 교육 이수 (지자체 교육 운영) *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 콘텐츠 활용 가능	
관련 부처	법무부	・교육 주제 특정, 기본요건 제시, 시범운영 지방자치단체 선정, 외국인에 대한 활동 허가(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등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요건, 서비스 이용자(국민) 요건, 직업정보 제공, 교육, 외국인과 서비스 이용 가정의 안전 확보 등

자료: 법무부

나. 검토의견

외국인 가사사용인 활용 직무교육 사업은 2024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시범사업에 따라 대상자 규모, 수행절차 등 사업 계획이 결정되므로, 시범사업의 결과를 검토하여 2025년 사업 수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음.

법무부는 2024년 9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2025년 본사업을 수행할 예정으로, 2024년 9월말 현재 중앙부처 차원의 표준계획은 마련하였으나,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별 세부운영(안)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9)]

202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교육대상자 1,000명에 대해 40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2025년도 예산안에는 4,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2025년까지 총 5,00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

이 사업은 시도별로 시범사업 1,000명과 본사업 4,000명에 대한 인원 배분(안)을 수립하여 2025년도 예산안을 수립하였음.

[시도별 시범사업 1,000명 배분(안)]

(단위: 명)

구분	지역	미성년자 수(만 18세 이하)	배분 비율	**배분 인원**
1	경기	2,148,960	29%	**290명**
2	서울	1,138,068	15%	**150명**
3	경남	486,591	7%	**70명**
4	인천	443,790	6%	**60명**
5	부산	422,716	6%	**60명**
6	경북	339,772	5%	**50명**
7	대구	336,209	5%	**50명**
8	충남	321,219	4%	**40명**
9	전남	245,278	3%	**30명**
10	전북	243,367	3%	**30명**
11	충북	228,832	3%	**30명**
12	광주	226,690	3%	**30명**
13	대전	215,153	3%	**30명**
14	강원	201,803	3%	**30명**
15	울산	174,550	2%	**20명**
16	제주	112,858	2%	**20명**
17	세종	90,137	1%	**10명**
총계		7,375,993	100%	**1,000명**

자료: 법무부

이에 따르면, 시범사업의 경우 경기(290명)와 서울(150명), 경남(70명), 인천과 부산(60명) 등으로 지자체별 인원을 배분하고 있고, 본 사업에서는 경기(1,160명), 서울(600명), 경남(280명) 등으로 인원을 배분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별 서비스 수요자인 미성년자 수에 기반한 것으로 실제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신청자 수에 기반하여 실시할 예정임.

9) 법무부에 따르면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대통령실(저출생대응수석실),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 협의 후 제도 시행시기 조정(2 ~ 3개월 후) 후 사업 시행은 11월 중으로 실시예정임.

[시도별 본사업 4,000명 배분(안)]

(단위: 명)

구분	지역	미성년자 수(만 18세 미만)	배분 비율	배분 인원
1	경기	2,148,960	29%	**1,160**
2	서울	1,138,068	15%	**600**
3	경남	486,591	7%	**280**
4	인천	443,790	6%	**240**
5	부산	422,716	6%	**240**
6	경북	339,772	5%	**200**
7	대구	336,209	5%	**200**
8	충남	321,219	4%	**160**
9	전남	245,278	3%	**120**
10	전북	243,367	3%	**120**
11	충북	228,832	3%	**120**
12	광주	226,690	3%	**120**
13	대전	215,153	3%	**120**
14	강원	201,803	3%	**120**
15	울산	174,550	2%	**80**
16	제주	112,858	2%	**80**
17	세종	90,137	1%	**40**
총계		7,375,993	100%	**4,000명**

자료: 법무부

외국인 가사사용인 활용 직무교육 사업은 2024년 하반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5년에도 희망하는 대상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규모를 확대(목표 5,000명)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제도 운영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 후 제도를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4.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사업 수행방식에 부합한 예산 편성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마약범죄 및 그에 따른 2차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관련 부처의 공동대응을 위하여 구성된 조직의 활동비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8,600만원(△27.8%) 감액된 4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음.[10]

[2025년도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마약수사	8,204	9,958	1,754	21.4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668	482	△186	△27.8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예산안 세부내역]

○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482백만원

- 일반수용비 13백만원
- 사업추진비 469백만원

자료: 법무부

나. 검토의견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예산은 일반수용비와 사업추진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도 예산안에는 사업추진비가 97.3%를 차지하고 있는데,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의 활동 목적인 각 지역별·영역별 유관기관과의 효과적인 수사협조 및 정보공유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0) 일반회계 - 마약수사(1335-304)(검찰국)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11](이하 '특수본')는 온라인 마약거래 활성화,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확산 등 마약범죄 및 그에 따른 2차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관련 부처의 공동대응을 위하여 2023년 4월 구성되었음.

특수본의 참여기관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국정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동본부장은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임.

특수본 회의는 2023년 4월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한 후 2024년 9월 현재까지 총 4차례의 공동본부장 참석 공식 회의를 개최하였음.[12]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회의 개최 실적]

구분	일자	주요 내용
제1차	2023. 4. 10.	· 검찰·경찰·관세청의 마약수사 전담 인력 840명으로 구성, 신속 정보 공유 및 적시 공동대응, 청소년 상대 공급사범 철저 단속
제2차	2023. 6. 14.	· 국방부·해양경찰청·국정원 등 참여기관의 확대로 974명 메머드급 인력 확대, 군대 내 마약범죄 적극 대처 및 대규모 마약류 밀수 단속강화 방침
제3차	2023. 12. 6.	· 의료용 마약류 범죄의 엄단 및 검찰경찰 서울시의 유흥시설 마약수사·단속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제4차	2024. 5. 9.	· 특수본 구성 이후 1년간 수사 성과분석 및 향후계획, 특수본 구성기관 간의 수사 협력사항,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재활을 위한「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전국 시행

자료: 법무부

특수본의 예산 구성은 범죄정보 등에 대한 자료 공유를 위한 일반수용비(자료 제작 및 인쇄비)와 사업추진비로 편성되어 있음. 일반수용비 항목은 범죄정보에 대한 자료 제작 및 인쇄비로 편성되었으나, 2024년 상반기에 집행실적이 전무함.[13]

반면 사업추진비 집행은 각 검찰청(61개)에서 경찰 등 마약수사와 관련한 업무협조를 위한 것으로 2024년 8월말 기준으로 2024년 예산 4억 6,916만원 중 98.8%인 4억 6,332만원을 집행함.

11)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참여하는 각 기관의 수사협의체임.「형사소송법」제195조, 제245조의10,「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6조, 제8조, 제9조,「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제2조, 제28조 등 검사와 사법경찰관 등(특별사법경찰관 포함)과의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협력하여야 하는 조항을 근거로 운영함.

12) 특수본 회의는 2024년 9월 현재까지 총 4차례의 공동본부장 참석 공식 회의(관련부처 수사 상황 공유 및 향후 대응 방향 논의)를 개최하였고, 각 지역별로 구성된 유관기관 수사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13) 다만, 법무부는 현재 마약류 범죄정보 자료를 제작 중에 있고 연내 이를 인쇄 및 배포하는 등 관련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 예산액 중 일반수용비 1억 9,916만원의 93.4%를 감액하여 1,316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추진비는 2024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음.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운영 예산(안) 및 집행액]

(단위: 천원)

구분	2024 예산			2025 예산안		
	일반수용비	사업추진비	합계	일반수용비	사업추진비	합계
예산 편성액	199,160	469,160	668,320	13,160	469,160	482,320
예산 집행액 (2024. 8월 말 현재)	- (2024년 하반기 집행 예정)	463,318	463,318	-	-	-

자료: 법무부

2024년도 8월말 기준 일반수용비 및 사업추진비의 집행현황을 보면, 마약류 범죄 정보 등에 대한 자료 제작 및 인쇄 등에 지출하는 일반수용비의 집행 실적은 없는 반면, 각 검찰청(61개: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제외)에서 집행하는 사업추진비는 2024년 8월을 기준으로 예산의 98.8%를 집행하였음.[14]

또한 사업추진비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의하면 외빈초청 여비 및 공식 회의 및 행사경비,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제경비를 대표적인 사용처로 적시하고 있고, 최대한 아껴서 쓰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마약범죄 대응에 있어 각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수사협조, 신속한 정보공유가 필수적임을 감안하더라도 2024. 8월말 기준 98.8%의 예산이 집행된 내용은 다소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철저한 사업 집행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의 활동 목적이 마약 범죄 동향과 수사 성과 분석을 통한 관계기관과의 마약수사 공동대응임을 감안할 때,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의 활동 목적인 각 지역별·영역별 유관기관과의 효과적인 수사협조 및 정보공유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4) 다만, 법무부는 위 사업추진비 집행액에 대하여 각 지역별로 유관기관 수사협의체를 개최한 내역에 더하여 각 지역별 연내 수사협의체 개최 소요에 따라 재배정된 액수가 포함된 것이라는 입장임

5. 승진시험 및 경력채용시험 사업: 승진시험 임차료 예산 조정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승진시험 및 경력채용시험’** 사업은 교정직 공무원의 승진 시험 및 경력채용 시험 실시를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10억 7,800만원(641.7%) 증액된 12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음.[15)]

[2025년도 승진시험 및 경력채용시험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교도본부 기본경비	2,932	4,367	1,435	48.9
승진시험 및 경력채용시험	168	1,246	1,078	641.7

[승진시험 및 경력채용시험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승진시험 및 경력채용시험 사업: 1,246백만원

- (일반수용비) 시험요구서·문제지 인쇄, 각종 포장봉투·박스 및 시험장 내 소모성 물품구입비
  * 산출내역 : 4회 × 4개 지역 × 7.5백만원 = 120백만원
- (임차료) 시험문제 출제 관련 시설 및 장비 임차 경비, 시험장 임차료 등
  * **문제출제 시설·장비 임차 : 4회 × 8명 × 14일 × 1.51백만원 = 675백만원**
  * 시험장 임차 : 4회 × 4개 지역 × 30만원 = 5백만원(순증)
- (기타운영비) ①출제관리비(직급별 난이도 고려한 문제 선정 심의, 감수, 편집 등 경비, 문제/답안지 운송경비) + ②시험관리관 수당(시험장관리관, 시험장 준비 및 안내, 질서유지 등 담당 직원 수당) + ③채점비(채점관리수당 및 채점관리장비 사용 수수료 등)
  * 출제관리비 : 4회 × 8명 × 14일 × 30만원 = 135백만원
  * 시험관리수당 : 4회 × 4개 지역 × 89명 × 6만원 = 85백만원
  * 채점 관련 경비 : 4회 × 4개 지역 × 1.3백만원 = 20백만원
- (일반용역비) 문제은행식 시험문제 출제 관련 외부 용역 및 합숙시설 보안용역비
  * 문제은행 출제용역 : 6과목1) × 500문제 × 5만원 = 150백만원
  * 합숙시설 보안용역 : 4회 × 14일 × 1백만원 = 56백만원
    * 6과목 : 헌법, 행정법, 형소법, 교정학, 형소법개론, 교정학개론

자료: 법무부

15) 일반회계 - 교정본부 기본경비(7011-257)(교정본부)

나. 검토의견

교정공무원 승진시험 출제 관련 시설 임차료 산정에 있어 문제 출제 기간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법무부는 교정공무원의 승진제도가 근속연수에 따른 평정 위주의 제도로 운영되어 승진 적체 및 연공서열 중심의 문화가 고착화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5년부터 승진시험 과목을 확대(1과목 → 헌법 등 2~4과목)하고 5~8급 승진시험을 연 4회 실시할 계획임.

[2025년 교정공무원 승진시험 시행 계획]

구분	시험과목	승진 시험 대상 인원	선발 예정인원
5급 승진시험	헌법, 행정법, 형소법, 교정학	2,503명	50명 내외
6급 승진시험	헌법, 형소법, 교정학	5,270명	150명 내외
7급 승진시험	헌법, 형소법, 교정학	2,654명	150명 내외
8급 승진시험	형소법개론, 교정학개론	2,278명	300명 내외

자료: 법무부

2025년 승진시험의 시험문제 출제와 관련한 시설 및 장비 임차 경비 산정 시 연간 4회 실시를 기준으로 출제자 8명에 대해 1일당 151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하여 총 14일간 임차료로 6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음.[16)]

(임차료) 시험문제 출제 관련 시설 및 장비 임차 경비, 시험장 임차료 등
*** 문제출제 시설·장비 임차 : 4회 × 8명 × 14일 × 1.51백만원 = 675백만원**
* 시험장 임차 : 4회 × 4개 지역 × 30만원 = 5백만원

일반적으로 승진시험의 종류와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 문제출제를 위한 소요기간이나 인원 수가 직급별(5~8급)로 상이할 수 있음에도 법무부는 직급별로 동일하게 인원수와 소요기간을 산출하였음.

또한, 장소의 임차료 산정을 위해서는 유사사례 등을 통하여 임차 예상지의 견적서를 참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고려없이 출제자 1인에 대한 숙박비, 노트북 임차비 등 관련 소요비용을 추정하여 일괄적으로 1인당 151만원을 적용한 문제가 있음.

16) 법무부는 임차료 산정과 관련하여 당초 예산안에는 문제 출제자를 8명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2024년 10월 제출한 자료에서는 문제 출제자를 15명으로 변경하여 1일 소요경비를 1인당 80만원으로 산정하였음.

유사한 사례인 법무부 출입국관리 5급 승진시험에 대한 예산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에는 출입국관리 승진시험(5급 승진시험) 시행을 위하여 출제위원 10~15명이 7일 간 연수원 등 외부 숙박시설을 임차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출입국관리 5급 승진시험 예산 및 집행 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세부사업	예산과목	내역명	예산	집행(~9월)	
외국인본부 기본경비(총액) (7011-203)	기타운영비 (210-16)	5급 승진시험 출제 및 시험관리비	17,000	14,820 ①종사자 수당 3,260 ②출제위원 수당 10,680 ③채점비 880	20,000
외국인본부 기본경비 (7011-255)	임차료 (210-07)	5급 승진시험 출제장, 시험장, 승합차량 임차료	13,000	12,917 ①출제위원 합숙시설 임차료 11,547 ②출제위원 이동차량 임차료 1,100 ③시험장 시설사용료 270	18,000
합계			30,000	27,737	38,000

자료: 법무부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유사 부서의 승진시험이라는 사업 내용은 동일하나, 시험 성격 및 절차, 대상인원 등을 감안하면 출입국 승진시험을 교정본부 승진시험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며, 교정공무원 정원의 불균형이 심각하고 승진에 대한 민감성 등을 고려할 때 철저한 시험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출입국외국인본부와 교정본부 승진시험 비교]

출입국외국인본부	교정본부
- 심사승진제도 운영 - 5급 시험만 실무평가 有 ① 업무상 필요한 관련 규정 등으로 실무평가 → ② 역량평가 → ③ 심사평가 - 출입국 정원 2,763명 - 2024년 기준, 실무평가 대상인원은 45명, 승진인원 10명	- 시험승진제도(변경) - 8~5급 시험승진 - 시험성적(60%) + 근평(40%) - 교정공무원 정원 16,771명 - 2025년 시험승진 대상인원 12,705명, 선발인원 650명

자료: 법무부

6. 전자감독: 전자장치의 여유 보유수량을 고려한 적정 운영·관리 필요

가. 개 요

‘전자감독’ 사업은 전자감독·신상정보등록 전담인력 및 전자감독·신상정보등록을 운영하고,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장치 및 감독시스템을 개선하며, 전자감독·신상정보등록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4억 2,000만원(13.6%) 증액된 368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음).[17)]

[2025년도 전자감독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전자감독	32,427	36,847	4,420	13.6

[전자감독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전자감독·신상정보등록 전담인력 운영: 10,081백만원
- 상용임금: 8,353백만원
- 복리후생비: 95백만원
- 고용부담금:1,633백만원

○ 전자감독·신상정보등록 운영: 6,456백만원
- 전담감독 대상자 심리치료비 등 : 1,139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3,953백만원
- 피복비: 275백만원
- 임차료: 90백만원
- 유류비: 143백만원
- 시설장비 유지비: 279백만원

○ 장치 및 시스템 관리: 19,201백만원
- 관리용역비 : 6,945백만원
- 일반연구비: 430백만원
- **자산취득비: 11,826백만원 (전자감독 장치 구입 4,152백만원 = 2,306세트×1,800천원)**

○ 사업지원 경비: 1,109백만원
- 국내여비 :613백만원
- 국외여비: 430백만원
- 사업추진비: 11,826백만원
- 특정업무경비: 351백만원
- 정책연구비: 40백만원
- 구호 및 교정비: 39백만원

자료: 법무부

17) 일반회계 - 범죄예방정책국(1635-301)(범죄예방정책국)

나. 검토의견

전자장치(발목형 및 손목형 위치추적기)의 구입량 산정에 있어 부착 대상자 수의 증감률, 여유 보유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손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증감 추세 및 연도말 보유수량 등을 고려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전자감독제도는 2008년 9월 성폭력·살인사건의 연이은 발생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와 성폭력범죄의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도입되었으며, 유괴, 살인, 스토킹 등으로 부착 대상이 확대되고 있음.[18)]

[전자감독 실시 사건 및 예산 현황]

구 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7.
보호관찰 (건)	95,198	96,419	100,995	105,705	104,850	101,089	95,861	93,654	94,375	93,366	75,059
전자감독 (건)	3,260	3,598	4,066	4,350	4,668	4,563	6,196	10,827	8,476	7,411	5,810
비율(%)	3.4	3.7	4.0	4.1	4.5	4.5	6.5	11.6	9.0	7.9	7.7
예산액 (백만원)	9,130	10,345	13,657	14,845	17,072	17,500	18,687	22,215	27,449	30,677	32,427

자료: 법무부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장치는 발목형과 손목형 위치추적 장치로 구분되며, 전자장치의 전체 보유 규모는 현재 피부착자가 착용 중인 전자장치 외에도 내용 연수가 지난 전자장치 폐기, 신규 부착, 장치 교체 및 수리 과정을 고려한 전자장치 예비수량 등에 따라 결정됨.

2024년 8월 현재 발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는 4,087명이며, 손목형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는 183명으로 나타남.

18)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 확대 : 성폭력(2008) → 미성년자 유괴(2009) → 살인(2010) → 강도(2014) → 스토킹(2023)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현황]

(단위: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8월
발목형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4,052	4,096	4,205	3,924	4,087
손목형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	220	216	264	183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2025년 발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구입량을 2,000대, 손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구입량을 306대로 예상하여 총 2,306세트(세트당 단가 180만원)를 구입하기 위하여 4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음.

발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2020년부터 부착 대상자 수가 연간 4,000명 정도이며, 당해연도 구입수량과 폐기량의 규모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 이에 따라 2025년도에는 2024년 수준인 2,000대를 신규로 구입하여 연도말 보유수량을 5,600대로 유지할 계획임.

[발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보유수량 현황 및 예상]

(단위: 개)

연도	전년도말 재고 (a)	당해연도 구입수량 (b)	당해연도 사용량 (c=a+b)	당해연도 폐기량 (d)	당해연도말 보유수량 (e=c-d)
2019년	3,634	1,601	5,235	1,271	3,964
2020년	3,964	1,623	5,587	1,066	4,521
2021년	4,521	2,229	6,750	1,800	4,950
2022년	4,950	2,300	7,250	1,601	5,649
2023년	5,649	2,150	7,799	1,623	6,176
2024년(예상)	6,176	**2,000**	8,176	2,229	**5,947**
2025년(예상)	5,947	**2,000**	7,947	2,300	**5,647**

자료: 법무부

그러나 손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19]는 최근 3년 평균 부착 대상자 수가 230명에 불과하나, 2021년부터 연도말 보유 수량은 1,260대로 대상자에 비해 과다한 측면이 있음. 특히, 2024년에는 손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규로 500대를 구매하고, 500대를 폐기하여 연도말에는 1,260대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됨.

1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년 2월 개정)에 따라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가 시행되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손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보유수량을 1,260개로 유지하고 있음

[손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보유수량 현황 및 예상]

(단위: 개)

연도	전년도말 재고 (a)	당해연도 구입수량 (b)	당해연도 사용량 (c=a+b)	당해연도 폐기량 (d)	당해연도말 보유수량 (e=c-d)
2021년	-	1,260	1,260	-	1,260
2022년	1,260	-	1,260	-	1,260
2023년	1,260	-	1,260	-	1,260
2024년(예상)	1,260	**500**	1,760	500	**1,260**
2025년(예상)	1,260	**-**	1,260	500	**760**

자료: 법무부

결국 손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실제 부착 대상자 수에 비해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손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증감 추세 및 연도말 보유수량 등을 고려하여 구입량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 출>

7. 위치확인장치: 장치 지급 추세 및 운용 보유 수량을 고려한 신규 구입 계획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위치확인장치'** 사업은 범죄 발생 직후 신속한 신변보호조치 결정 및 신변보호장치 지급을 통해 보복범죄 등 추가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조속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3억 1,700만원(15.5%)이 증가한 23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음.[20]

[2025년도 위치확인장치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3,446	3,446	5,540	2,094	60.8
위치확인장치	2,045	2,045	2,362	317	15.5

주)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위치확인장치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위치확인장치 : 2,362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2,292백만원
신변보호장치 구입 및 유지비
9,168대 × 250,000원 = 2,292,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70,000천원
신변보호장치 112 관제시스템 연계: 전산운영 : 70백만원

자료: 경찰청

20)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1135-306)(경찰청)

나. 검토의견

위치확인장치 지급 추세, 운용 보유 수량을 고려할 때 2025년 신규 구입 계획량은 과다해 보이므로 위치확인장치 신규 구입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실질적인 범죄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위치확인장치(스마트워치)는 신변보호 요청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위치확인장치를 2024년 7,900대에서 1,268대가 증가한 9,168대를 구입할 계획임.

신변보호 건수는 2021년 24,810건에서 2023년말 30,750건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치확인장치 지급 건수 또한 2021년 10,989건에서 2023년 16,690건으로 증가하였음.

위치확인장치를 지급받은 대상자는 평균 3개월간 장치를 보유(부착)하므로 가장 최근 실적인 2023년말 장치 지급 건수인 총 16,690건에 장치 회전율(4회: 3개월간 부착 기준)을 적용하면 장치 보유를 위한 최소한의 수량은 약 4,500대로 예상됨.[21)]

[연도별 신변보호 및 스마트워치 지급 건수]

(단위: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7.
신변보호 건수	24,810	29,372	30,750	17,914
스마트워치 지급 건수	10,989	14,208	16,690	9,920

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위치확인장치를 2023년 말 기준으로 10,00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에 2019년에 구입하여 내용연수가 도래한 2,300대를 폐기하여도 7,700대를 보유하고 있음.

21) 경찰청은 최근 스마트워치 지원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고, 일시점에 신청이 몰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스마트워치 보유 수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스마트워치 지급 증가율>

구 분	2021	2022	2023
지급건수	10,989	14,208	16,690
증 가 율	-	29.3%	17.5%

자료: 경찰청

[연도별 경찰청 위치확인장치 구매·폐기·보유 현황]

(단위: 대)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안)
구매	2,300	-	1,400	-	6,300	-	-
폐기	2,050	-	-	-	-	2,300	-
보유·운용 (연말기준)	2,300	2,300	3,700	3,700	**10,000**	7,700	9,000

자료: 경찰청

따라서 경찰청 기준으로 위치확인장치의 2023년 말 보유분이 10,000대, 2024년 운용분이 7,700대로 위치확인장치의 운용을 위한 최소 보유분 4,500대를 고려한다면 2025년 운용분 9,000대는 과도한 물량으로 보이며 2025년 위치확인장치의 신규 구매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음.

8. 민간경호 지원(신규): 경찰청(일반회계)으로부터 사업 이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민간경호 지원’** 사업은 가해자 체포·구속영장 기각, 흉기사용, 스토킹·가정폭력 접근금지 지속 위반 등 특히 추가피해 위험이 현저한 피해자에게 가해자 검거 등 조치 시까지 민간경비업체의 밀착 경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24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22)]

[2025년도 민간경호 지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3,446	3,446	5,540	2,094	60.8
민간경호 지원	-	-	2,450	2,450	순증

주)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민간경호 지원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민간경호 지원(민간경상보조) : 2,450백만원 · 350명 × 500,000원 × 14일 = 2,450,000천원 (전국 스토킹·교제폭력 등 고위험 범죄피해자 350명 지원)

자료: 경찰청

이 사업은 2023년 경찰청 소관 일반회계 예산(7억원)으로 약 7개월간 시범운영하였으며 2024년에도 동일하게 경찰청 소관 일반회계 예산 7억원(수도권 100명분)으로 수행하고 있음. 2025년 예산안에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24억 5,000만원(전국 350명분)이 편성됨.

22)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1135-306)(경찰청)

나. 검토의견

민간경호 지원사업은 현재 경찰청(일반회계)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도비-자치경찰)의 재원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재원의 부담 주체 문제, 시범운영 평가·분석 및 민간경호 지원 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음.

민간경호 지원사업은 스토킹 등 집착형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현장대응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2023년 시범운영을 통해 총 98건을 지원하였음.

민간경호 지원사업의 시범운영은 약 7개월(2023. 6. 12.~12.31) 동안 4개 경찰청(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청)에서 실시하였으며 지원 대상자는 위험도가 매우 높거나 가해자가 출소·영장 기각 등 고위험 사건 피해자이며, 지원 단가는 1일 50만원(경호원 2인, 1일 10시간 기준), 14일간(1회 연장 가능) 지원을 하였음.

경찰청에서는 이 사업의 시범운영을 통하여 지원 대상자의 경호 중 또는 종료 이후 피해를 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고, 경호원이 경찰에 신고하여 검거한 사례가 5건(구속·유치 4건)으로 나타나는 등 운영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하였음.

경찰청은 2023년 민간경호 시범운영 이후 2024년에도 일반회계 예산 7억원(지원 대상자 100명 × 1일 50만원 ×14일)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서울, 부산, 경남 등)에서도 2024년에 자체적으로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2024년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경호 지원사업 운영 현황]

구분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지역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청	서울, 부산, 경남
지원대상자	고위험자, 고위험 사건 피해자	스토킹·교제폭력피해자
예산	일반회계 7억원	서울(2억 2,000만원), 부산(5,000만원) 경남(7,000만원)
지원단가(1일)	50만원	서울(50만원), 부산(50만원), 경남(56만원)
지원 기간	14일(1회 연장 가능)	5일

자료: 법무부, 경찰청

이 사업은 2025년부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재원을 이관하여 확대 수행할 예정인데, 경찰청 일반회계에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재원부담을 이관하여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실제 범죄피해자 뿐 아니라 가해자의 출소·영장 기각 등 고위험 사건의 잠재적 피해자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을 하는 범죄피해자지원기금의 사업 대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제6조[23]는 기금의 용도를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과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범죄피해자에 한정하고 있음.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24]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나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잠재적 피해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민간경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재원의 부담 주체 문제 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로부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의 이관이 적절한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25]

한편, 민간경호 사업은 민간의 인력을 활용하는 국가 사업이라는 점, 보호대상자와의 밀착 경호가 실시되어 사생활 노출의 위험이 높다는 점, 보호대상자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간 경호업체의 경호인력이 면밀하게 관리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민간 경호업체에 대한 사업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

23)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3.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 · 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기금의 조성 ·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
5.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 ·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24)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3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5) 경찰청은 민간경호 지원은 범죄피해 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피해 사실이 확인되고 보복범죄를 당할 위험이 현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피해자의 정의에는 반드시 가해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유죄가 확정될 것을 요하고 있지는 않고, 구체적인 피해사례 없이 단순 불안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변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만큼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임

법제처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법제처 소관 총수입은 없음.[1)]

2025년도 법제처 소관 총지출은 463억원으로 전년 대비 9억원(1.9%) 증가함.

[2025년도 법제처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454	463	9	1.9
총지출	454	463	9	1.9

나. 예산안

2025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은 총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없고, 세출예산안은 463억원으로 전년 대비 9억원(1.9%) 증가함.

문의 : 이은미 예산결산조사관 eunmee@assembly.go.kr (02-6788-5688)

---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법제처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454	463	9	1.9
합 계	454	463	9	1.9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법제처 2025년도 예산안에는 신규사업이 편성되지 않음.[2)]

한편, 법제처의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사업으로 총 1개임.[3)]

[2025년도 법제처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1,555	2,281	726	46.7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법제처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보전거래는 없음.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2024년 9월에 완공된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에서 법제교육을 확대·제공하기 위해 강의실 임차료 등 법제교육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을 들 수 있음.

2025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법제교육’ 사업 실시에 필요한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의 강의실은 행정목적(교육운영 등) 사용일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25년 예산안에 편성한 강의실 임차료(4억 7,850만원)의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법제교육 사업: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의 무상사용으로 법제교육 강의실 임차료 감액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법제교육'** 사업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법제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적·체계적 법제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 9,900만원(53.0%)이 증액된 20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음.[4)]

[2025년도 법제교육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1,555	2,281	726	46.7
법제교육	1,318	2,017	699	53.0

4) 일반회계-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1034-300)(법제지원국)

[법제교육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법제교육 사업: 20억 1,700만원 - 법제교육과정 운영 등 820백만원 -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 입주 · 운영 944백만원 **·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 강의실 임차료: 479백만원(29,000원×1,650명×10월)** - 법제업무담당자 단기해외연수 39백만원, - 표준강의안 고도화 등 일반 용역 12백만원 - 법제교육 연구용역 190백만원, - 법정 수업목적 저작권 보상금 12백만원

자료: 법제처

나. 검토의견

법제교육 실시에 필요한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의 강의실은 행정목적(교육운영 등) 사용일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25년 예산안에 편성한 강의실 임차료(4억 7,850만원)의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법제처는 2025년도 법제교육 실시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의 임차료를 4억 7,850만원 편성하였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 사업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원리금 상환이 불필요한 기금개발 사업이며, 해당 사업의 수요부처(기획재정부, 법제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금지원 대상 기관인 점을 고려하여, 2024~2025년 기간동안은 수요부처가 동 연수원을 교육운영 등의 행정목적으로 사용 시 '무상 사용'으로 운영하고, 2026년 이후에는 수요부처 사용비율 등에 따라 관리경비를 분담하기로 함.[5)]

따라서 법제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의 교육사용 목적 등이 명기된 사용협약 등을 조속히 체결[6)]하여 2025년도 법제교육 실시에 필요한 강의실 사용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강의실 임차료(4억 7,850만원)에 대해서는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5)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충청남도 태안군)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활용하여 개발·취득되는 일반재산으로 취득 시 일반회계로 관리됨.

6) 법제처는 2024년 하반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2025년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의 강의실 무상사용에 대한 관련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음.

2. 법령정보 전자점자문자 제공 사업(신규): 다양한 점자문서 출력 방식 등을 검토하여 사업 효과성 제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법령정보 전자점자문자 제공’** 사업은 「점자법」 제12조의2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동일한 내용의 점자문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억 7,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7)]

[2025년도 법령정보 전자점자문자 제공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법제업무정보화추진	8,744	8,046	△698	△8
법령정보 전자점자문자 제공	-	178	178	순증

[법령정보 전자점자문자 제공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법령정보 전자점자문자 제공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 178백만원

- **전자점자문서 소프트웨어 구입: 1억 7,800만원= 2,967만원×6개**

자료: 법제처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법령정보 600만건 전체에 대해 점자문서 전자파일을 제공할 계획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외부망 변환서버 2식(24 core)에 6개의 점자변환 소프트웨어[8)]를 설치할 예정임.

나. 검토의견

법령정보 전자점자문자 제공과 관련하여 전자점자문자를 출력하는 방식(점자 프린터 및 단말기 등)을 고려하여 전자점자 문자로 변환이 용이하도록 하고, 점자문서 요청방식도 다양하게 마련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7) 일반회계-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1033-500)(기획조정관)

8) 전자점자 SW 라이선스는 구매 1개당 CPU 4 Core(업무 처리 단위)를 제공.

법제처는 「점자법」 제12조의2[9]에 따라 2025년 예산안에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10]의 본문 및 첨부파일을 전자점자문서 형태로도 제공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6개(개당 2,967만원)를 구매하기 위하여 1억 7,800만원을 편성함.

동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공개하고 있는데, 대법원의 경우 2023년도 점자문서 요구는 3건이었으며 법무부는 점자문서 요구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11]

법제처에 따르면 이 사업은 현재 대법원이나 법무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점자문서 제공방식인 시각장애인의 요청에 의해 점자문서를 출력하여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령정보 프로그램에 전자점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이 점자 형태로 다운로드 및 출력하여 바로 '보고, 읽을 수' 있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임.[12]

한편, 전자점자파일을 제공하고 있는 타 기관의 제공현황을 살펴볼 때, 점자문서 제공 요청 의뢰를 전화 및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하여 점자변환 자료의 무결성을 확인하고 제공하는 방안도 점자문서의 정확성 측면에서 효과성이 높을 수가 있음.

따라서 법령정보 전자점자문자 제공과 관련하여 전자점자문자를 출력하는 방식(점자 프린터 및 단말기 등)을 고려하여 전자점자문자로 변환이 용이하도록 하고, 점자문서 요청방식도 다양하게 마련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9) 「점자법」
제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①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0)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검색시스템으로 법령, 자치법규,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령해석례 등 총 607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가 구축(2024년 현재)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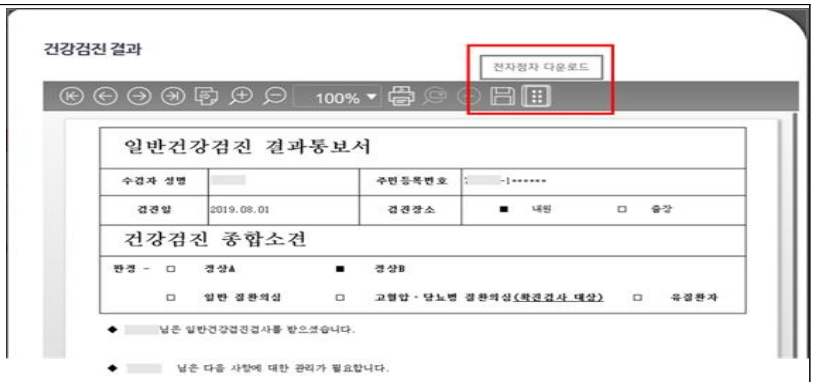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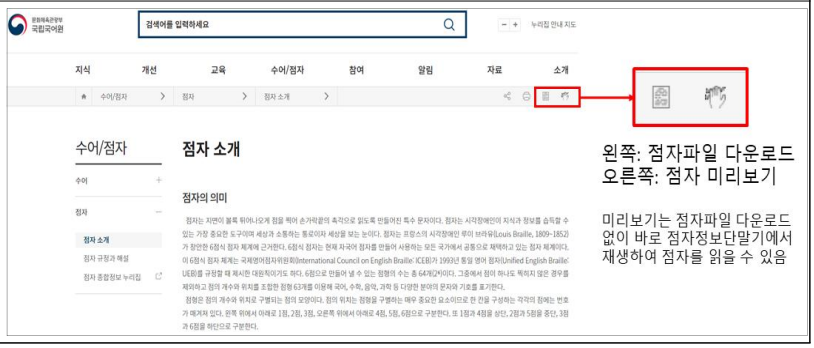
11) [2023년 공공기관 점자문서 요구현황: 대법원]

구분	문서명	요청일자	제공 여부	제공일자	제공 형태	분 량
대법원 (3건)	친족후견인을 위한 후견가이드 (재판양식)	2023. 1. 12.	제공	2023. 3. 25.	전자점자파일, 데이지 파일	각 1개
	판결문	2023. 4. 25.	제공	2023. 5. 12.	점자 인쇄물	46면
	판결문	2023. 4. 25.	제공	2023. 5. 12.	점자 인쇄물	74면

자료: 법원행정처

12) 시각장애인들이 기존 '스크린리더'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들어서' 확인하는 방식에서 점자 프린터 및 점자단말기 등을 활용하여 점자문서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점자 문서를 제공받는 방식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됨.

[전자점자 소프트웨어 활용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	
국립국어원 대표홈페이지	

자료: 법제처

감 사 원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감사원 소관 총수입은 7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00만원(3.4%) 증가함.[1)]

[2025년도 감사원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7.45	7.70	0.25	3.4
총수입	7.45	7.70	0.25	3.4

문의 : 정지현 예산결산조사관 jihyunjung95@assembly.go.kr (02-6788-5696)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감사원 소관 총지출은 1,507억 6,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9,500만원(3.1%) 증가함.

[2025년도 감사원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1,462	1,508	46	3.1
총지출	1,462	1,508	46	3.1

나. 예산안

2025년도 감사원 소관 예산안은 총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1개 회계(일반회계) 7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00만원(3.4%) 증가함.

[2025년도 감사원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7.45	7.70	0.25	3.4
합 계	7.45	7.70	0.25	3.4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감사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1개 회계(일반회계) 1,507억 6,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9,500만원(3.1%) 증가함.

[2025년도 감사원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462	1,508	46	3.1
합 계	1,462	1,508	46	3.1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감사원 2025년도 예산안에는 신규로 편성된 사업과[2] 주요 증액사업은 없음.[3]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감사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개의 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감사원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유도하고 수감자의 권익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행정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이 증액된 것을 들 수 있음.

2025년도 감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타경상이전수입’ 세목은 최근 5년 동안 평균적으로 2억 7,700만원이 수납되고 있는 지방사무소 관사 보증금 환수액을 과소계상하여 세입 예산안 추계가 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세입 예산안 증액이 필요함.

둘째, ‘공공기관 회계감리 전문가 자문 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기존에도 25개 내외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검사를 자체 인력으로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고려할 때 2025년도 예산안에서 계획하고 있는 회계감리 전문가 인력운용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1. 기타경상이전수입: 지방사무소 관사 보증금 환수분을 고려한 세입예산 확대 필요

가. 개 요

‘기타경상이전수입’ 은 지방사무소 관사 보증금 환수,[4] 여비 사후정산에 따른 반납금 등 지출금의 반납이 이루어지는 세입목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3,000만원이 편성되었음.[5]

[2025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30	30	-	-

4) 감사원은 지방행정감사국 산하에 4개 지방사무소(부산, 대구, 광주, 대전)를 설치하고 관할 구역 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공기관에 관한 감사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제보의 조사·처리를 담당하게 하고 있음. 이에 감사원은 지방사무소 근무 직원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사무소 소재지별로 지방관사를 전·월세 형태로 임차하여 직원에게 제공하고 있음. 감사원이 현재 임차중인 관사는 일부 무보증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한 관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500만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계약 갱신 또는 신규 계약 체결시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이러한 감사원의 지방사무소 관사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관사 보증금이 기타경상이전수입 세입목으로 수납됨.

5) 일반회계-기타경상이전수입(59-596)(운영지원과)

나. 검토의견

감사원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최근 5년 동안 평균적으로 2억 7,800만원이 수납되고 있는 지방사무소 관사 보증금 환수액을 과소계상하여 세입 예산안 추계가 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세입 예산안 증액이 필요함.

2019년 이후 감사원의 기타경상이전수입은 2022년을 제외하면 연례적으로 수납률(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100.0%를 초과하고 있음.[6] 2023년의 경우, 예산현액은 3,000만원이었으나 감사원은 1억 6,54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음. 2024년의 경우, 예산현액은 3,000만원이나 9월말 기준 수납액이 이미 7,380만원으로 예산액을 초과하고 있음.

[2019~2024.8. 감사원 기타경상이전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19	20.0	20.0	20.0	1,254.3	983.8	491.9	78.4	270.5	-
2020	20.0	20.0	20.0	389.4	118.9	594.5	30.5	-	270.5
2021	20.0	20.0	20.0	282.8	282.8	1,415.0	100.0	-	-
2022	73.0	73.0	73.0	25.6	25.6	35.1	100.0	-	-
2023	30.0	30.0	30.0	165.4	165.4	551.3	100.0	-	-
2024.9.	30.0	30.0	30.0	73.8	73.8	246.0	100.0	-	-
5년 평균 수납액					**315.3**				
3년 평균 수납액					**473.8**				

자료: 감사원

이러한 감사원의 연례적 초과 수납은 주로 지방사무소 관사 보증금 환수금의 세입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것임.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감사원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액(총 15억 7,636만원)을 수납원인별로 구분하여 보면, 지방사무소 관사 보증금 환수가 총 88.08%(13억 8,852만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

6) 2022년의 경우 전년 대비 급여 등 과년도지출금반납금 1,700만원 감소, 임차료 등 환급금 100만원 감소, 지방사무소관사 보증금 환수액 2억 4,300만원 감소에 따라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저조하게 나타났음.

[2019~2023년 감사원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원인별 구분]

(단위: 천원, %)

구분	수납액	비중
감사교육원 변제금 징수 처리	531	0.03
계약해지 등에 따른 보증금 등 반환금	4,132	0.26
공공요금 및 공제금 관리계좌 이자 등 수입	4,173	0.26
공무 항공마일리지 구매	9,401	0.60
급여 등 과년도 지출금반납금	52,092	3.30
명예퇴직수당 환수	103,474	6.56
보험금 수령 등 보험관련 수입	532	0.03
시간선택제공무원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금에 대한 반환금	8,048	0.51
임차료 등 환급금	5,363	0.34
정보공개수수료	119	0.01
지방사무소 관사 보증금 환수	**1,388,520**	**88.08**
총 합계	**1,576,385**	**100.00**

자료:감사원

연도별로 감사원 기타경상이전수입 중 지방사무소 관사 보증금 환수 수납액을 보면, 매년 최소 2,000만원부터 최대 9억 5,500만원까지 보증금 환수액이 수납되고 있으며, 최근 5개년(2019~2023년)의 지방사무소 관사 보증금 환수 수납액 평균은 2억 7,800만원에 달함. 2024년 9월말에도,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액 7,380만원 중 4,500만원(61.0%)이 지방사무소 관사 보증금 환수액임.

[2019~2023년 지방사무소 관사 보증금 환수 수납액 평균]

(단위: 천원)

연도	수납액
2019	955,000
2020	95,538
2021	262,982
2022	20,000
2023	55,000
2024.9.	45,233
계	**1,433,753**
5개년 평균(2019~2023년)	**277,704**

자료:감사원

이러한 지방사무소 관사 보증금 환수액을 고려할 때, 2025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액 3,000만원은 보증금 환수액의 평균을 고려하지 않아 과소계상된 것으로 보임.[7] 특히, 감사원의 지방사무소 관사 중 2025년 임차기간 만료 예정인 관사가 12곳

7) 이에 대해 감사원은 기타경상이전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년도 지출 반납금 및 관사 보증금 환수금은 다음 연도 발생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워 세입예산안에 면밀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임.

임을 고려하면, 2025년도에도 보증금 환수액으로 인한 초과수납액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면밀한 세입예산안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25년 임차기간 만료 예정인 관사 목록]

(단위: ㎡, 천원)

소재지	임차기간	면적	보증금	임차료	임차 형태
대전	'23.12.30.~'25.12.30.	84.9	60,000	950	전세
	'23.1.11.~'25.1.10.	84.9	150,000	500	전세
	'23.1.10.~'25.1.9.	27	10,000	630	전세
	'24.1.10.~'25.1.9.	36.9	5,000	650	전세
광주	'23.3.25.~'25.3.24.	84.9	100,000	950	전세
	'23.1.28.~'25.1.27.	39.3	190,000	50	전세
부산	'23.4.19.~'25.4.18.	40.2	25,000	600	전세
	'23.8.23.~'25.8.22.	24.4	10,000	600	전세
	'23.8.27.~'25.8.26.	24.6	10,000	600	월세
대구	'23.4.26.~'25.4.25.	74.4	150,000	500	전세
	'24.7.11.~'25.7.10.	29.5	5,000	550	전세
	'23.11.8.~'25.11.7.	27.5	10,000	500	전세

주) 2025년 임차기간 만료 관사 중 보증금이 없는 관사는 제외함
자료: 감사원

<세 출>

2. 공공기관 회계감리 전문가 자문 사업(신규): 회계감리 전문가 인력운용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공공기관 회계감리 전문가 자문’** 사업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감사를 위해 회계감리 전문가를 투입하여 공공기관의 회계감리 자문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신규로 3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음.[8)]

[2025년도 공공기관 회계감리 전문가 자문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감사활동경비	16,938	16,914	△24	△0.1
일반수용비(210-01목)	1,750	2,041	291	16.6
공공기관 회계감리 전문가 자문	-	330	330	순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4항[9)] 및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

8) 일반회계-감사활동경비(1131-303)(기획조정실)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결산서의 제출)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②공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를 각각 제출하고, 4월 10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결산을 의결·확정한다.
1. 재무제표(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매년 5월 15일까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등”이라 한다)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결산서등을 제출받은 감사원은 그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사에 관한 규칙」 제20조[10]에 따르면, 공공기관 결산검사 대상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11]에 해당하는 국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과 함께 자산의 규모나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감사원이 결산검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임.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감사원 규칙에서 회계감리와 결산감사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감사인력 부족 등으로 매년 25개 내외의 기관에 대해서만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상기관은 총 28개 기관(공기업 22개, 준정부기관 6개)이었음.[12]

이 사업은 결산검사 대상이 아닌 60여 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는 등 회계정보의 신뢰성 보장이 곤란하고, 회계감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도 예산안에서 신규 추진되는 사업으

에 따른 법인과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7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회계법인과 감사반의 선정 기준 및 회계감사의 절차,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원의 결산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⑥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결산서등에 제4항에 따른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7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해에 실시하는 결산에 관하여는 지정 당시 법령에 따른다.

10)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20조(결산감사의 대상) ①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감사를 받던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매년 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산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감사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제1항에서 정한 기관 외에 자산의 규모나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결산감사 대상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1) 「감사원법」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국가의 회계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3.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4.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

12) [2023회계연도 감사원 공공기관 결산검사 대상기관 현황]

구분	대상기관
공기업(22개)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준정부기관(6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감사를 위해 회계감리 전문가를 투입하여 공공기관의 회계감리 자문을 실시하기 위한 것임.

감사원은 전체 공기업·준정부기관 87개를 대상으로 약 18.8명의 회계전문가를 투입하여 실효성 있는 공공기관 회계감사를 추진하겠다는 목적으로 3억 3,0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공공기관 회계감리 전문가 자문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3억 3,000만원 = 575일 × 8시간 ×72,000원

- 550일: 회계전문가 인원 18.8명의 자문일수 575일
- 8시간: 회계전문가 인원 1일 당 근무시간
- 72,000원: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계약 시간당 단가 평균 106,120원의 68%로 시급 산정

〈공공기관 회계감리 전문가 자문 사업〉

구분	합계	결산검사 대상 (상반기)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 대상 (하반기)
전문가 투입 인원	18.8명	7명(1명당 4개)	11.8명(1명당 5개)
공기업·준정부기관	87개	28개	59개
기관당 투입 일수		10일	5일
전체 투입 일수	575일	280일	295일

자료: 감사원

나. 검토의견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기존에도 28개 내외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검사를 자체 인력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2025년도 예산안에서 계획하고 있는 회계감리 전문가 인력운용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감사원은 2007년 1월 19일 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20~28개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결산검사를 수행하고 있음.

[2007~2023회계연도 감사원 공공기관 결산검사 대상기관]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 대상기관 수	비고
2007	20개	한국조폐공사 등
2008	21개	한국주택금융공사 추가
2009	21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 한국자산관리공사 신규 추가
2010	20개	한국지역난방공사 제외(정부 출자지분 감소)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 대상기관 수	비고
2011	22개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추가
2012	22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추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제외
2013	23개	울산항만공사 추가
2014	23개	
2015	23개	
2016	23개	
2017	23개	
2018	23개	
2019	23개	
2020	25개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추가
2021	25개	
2022	25개	
2023	28개	부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 제외, 주식회사 에스알 추가,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6개 발전회사 추가

자료: 감사원

그런데 감사원은 2025년도 예산안에서 공공기관 회계감리 전문가 자문 사업을 신규 추진하면서, 기존에 감사원 자체 인력(공공재정회계감사국)으로 수행하고 있던 공기업·준정부기관까지 포함하여 전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리(결산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계획하고, 총 18.8명의 회계감리 전문가를 투입할 예정임.

구체적으로 감사원은 2025년 상반기에는 공공기관 결산검사 관련 회계감리 자문실시를 위한 7명의 회계감리 전문가를, 하반기에는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 심사를 위한 11.8명의 회계감리 전문가를 투입할 계획임.

[공공기관 회계감리 전문가 자문 사업 인력투입계획]

구분	합계	결산검사 대상 (상반기)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 대상 (하반기)
전문가 투입 인원	18.8명	7명(1명당 4개)	11.8명(1명당 5개)
공기업·준정부기관	87개	28개	59개
기관당 투입 일수		10일	5일
전체 투입 일수	575일	280일	295일

주) 굵은 선으로 처리한 상반기 결산검사 대상은 2023회계연도에 자체인력으로 결산검사를 수행한 28개 기관과 동일함
자료: 감사원

그러나 상반기에 감사원이 7명의 회계감리 전문가를 투입하여 수행할 예정인 '공공기관 결산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원이 수행해야 할

고유 업무로, 기존 공공재정회계감사국에서 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이미 이를 실시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4년 3월 26일 개정(2024.9.27.시행)되어 상반기 결산검사 기간이 기존 82일에서 56일로 26일 단축됨에 따라 인력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임.

따라서 2025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감사원이 계획하고 있는 회계감리 전문가 인력운용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기관 선발심사 위원회 심사비 사업: 전년과 동일한 포상금 규모를 감안한 위원회 심사비 조정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기관 선발심사 위원회 심사비’**는 모범사례 포상 제도’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받는 모범공직자·모범기관·부서를 선정하는 위원회의 심사비로,[13]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00만원(100.0%) 증액된 600만원이 편성되었음.[14]

[2025년도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관련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적극행정 지원	263	335	72	27.4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210-01목)	25	48	23	92.0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기관 선발심사 위원회 심사비	3	6	3	100.0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기관 선발심사 위원회 관련 예산안 세부내역]

2024년 예산	2025년도 예산안
○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기관 선발심사 위원회 심사비(3백만원) · 1회x50만원x6인=3백만원	○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기관 선발심사 위원회 심사비(6백만원) · 2회x50만원x6인=6백만원

자료: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기관 선발심사 위원회’는 표창 대상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기관의 공적조서에 의한 공적,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기관 추천 규모 등을 심의하는 업무를 수행함.[15] 참고로, 2025년도 예산안 모범공직자 등 포상금(310-03

13) 감사원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 편익과 행정 능률을 높이는데 앞장서는 모범공직자와 모범부서·기관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는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에 근거함.

14) 일반회계-적극행정 지원(1131-304)(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15)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기관」
제3조(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 · 기관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 · 기관 선발의 심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 · 기관 선발심사위원회

목)은 전년과 동일한 2,500만원으로, 감사원은 20명(개) 내외의 모범공직자·부서 등을 선정할 계획임.

나. 검토의견

감사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 변화가 없음에도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기관 선발심사위원회 심사비 예산안을 전년 대비 2배 증액 편성하고 있으므로, 전년 대비 증액분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예산안에서 감사원은 포상금 지급 규모의 변동없이, 위원회 심사비 예산안만 2배 증액 편성하고 있음. 이에 대해 감사원은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모범사례 발굴 규모를 확대(기존 10명→20명 상당)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모범공직자 등 선발을 연간 2회로 확대 실시할 계획인데, 당초 부처안 요구 과정에서 포상금 예산안도 증액 요구하였으나 이는 반영되지 않아 위원회 심사비만 증액 편성된 상황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동 위원회는 감사원의 타 자문위원회에 비하여 위원회의 업무 부담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워, 포상금 지급규모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위원회 심사 1회 추가를 통한 민간위원 심사비를 지급할 실익이 낮을 것으로 보임. 일례로, 동 세부사업의 타 위원회인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의 경우,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16]을 안건으로 하여 심사를 진행하나, 동 위원회의 경우 '행정능률 향상', '국민편익 증진 및 불편해소', '성실·헌신적 업무 수행' 등 비교적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복잡하지 않은 사안을 안건으로 진행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기관 선발심사 위원회는 기존 1회의 위원회 심사를 통해서도 확대된 모범사례 발굴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전년 대비 증액분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17]

(이하 "심사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1. 표창 대상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 · 기관의 공적조서에 의한 공적
2.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 · 기관 추천 규모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6) 예: 조성계획변경 승인 없이 공공시설인 녹지 무단 매각, 임대주택건설용지에 법령 등을 위반하여 분양주택 건설계획을 부당 승인 협의 관련 등

17) 이에 대해 감사원은 당초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모범공직자·부서 선발을 연간 2회로 확대 실시하기로 하고 포상금 규모와 선발 심사위원 심사비를 확대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안 확정 과정에서 포상금 규모의 확대 없이(선발 규모는 20개로 확대함) 선발 심사위원 심사는 연간 2회로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안이 조정되었다고 설명함. 이에 감사원은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연간 2회에 걸쳐 모범공직자·부서를 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4. 주요국 감사교육원 교류방문 사업: 국외업무여비 과다계상분 감액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주요국 감사교육원 교류방문’** 사업은 감사원의 국제교류 협력강화를 위해 해외 주요국의 감사교육원을 방문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2,500만원이 편성되었음.[18)]

[2025년도 주요국 감사교육원 교류방문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국제교류 협력강화	854	1,062	208	24.4
기타 국제교류	246	313	67	27.2
주요국 감사교육원 교류방문	25	25	-	-

감사원은 매년 다른 국가의 감사교육원을 교류방문하고 있음. 2022년 캐나다, 2023년 이탈리아, 2024년 영국의 감사교육원을 방문하였고, 2025년에는 스웨덴 감사교육원을 교류방문할 예정임.

[주요국 감사교육원 교류방문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주요국 감사교육원 교류방문(스웨덴) : 25,000원

· 항공료 : 17,539천원(고위감사공무원단 9,399,000원×1인×0.6=5,639천원, 3급이하 4,958,300원×4인×0.6 = 11,900천원)
· 숙박비 : 3,838천원
- (고위감사공무원단) $223×5야×1인×0.6 = 923천원
- (3급이하) $176×5야×4인×0.6 = 2,915천원
· 식비 : 2,142천원
- (고위감사공무원단) $107×6일×1인×0.6 = 532천원
- (3급이하) $81×6일×4인×0.6 = 1,610천원
· 일비 : 770천원
- (고위감사공무원단) $35×6일×1인×0.6 = 174천원
- (3급이하) $30×6일×4인×0.6 = 596천원
· 준비금: $150×5인×0.6 = 621천원
· 단수조정 90천원

자료: 감사원

18) 일반회계-국제교류협력강화(1135-322)(기획조정실)

나. 검토의견

주요국 감사교육원 교류 방문 사업의 경우 출장 국가의 등급보다 상위 등급으로 숙박비·식비를 계상하고 있으므로, 과다편성된 국외업무여비를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국가공무원의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산정되어야 함.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도 '국외업무여비 단가는 「공무원 여비 규정」과 관련한 지침의 「기준단가」를 적용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적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5년에 방문이 예정된 스웨덴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4]의 나등급 국가에 해당하는데, 감사원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시 출장 국가의 등급보다 상위 등급인 가등급으로 숙박비와 식비를 편성하였음.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4]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 · 오세아니아주: 베이징,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2) 남 · 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 · 아프리카주: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따라서 고위감사공무원단 및 3급 이하 공무원의 숙박비·식비 기준액을 규정에 맞게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총수입은 없고, 총지출은 252억 6,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8,800만원(22.2%) 증가함.[1)]

[2025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20,680	25,268	4,588	22.2
총지출	20,680	25,268	4,588	22.2

나. 예산안

2025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예산안은 총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됨. 세입예산안은 없고, 세출예산안은 252억 6,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8,800만원(22.2%) 증가함.

문의 : 이은미 예산결산조사관 eunmee@assembly.go.kr (02-6788-5688)

---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20,680	25,268	4,588	22.2
합 계	20,680	25,268	4,588	22.2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신규사업은 없음.[2)]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025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은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임.[3)]

[2025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정보화)	3,851	9,788	5,937	154.2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개로 구성되어 있음.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정보화사업의 비중이 높다는 점임. 정보화사업은 일반회계 총 4개 사업(총 7개 사업 중 기본경비 등 3개 제외) 중 2개이나,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의 87.9%임. 이러한 사업구조는 2024년 예산 77.9%에 비해 2025년 예산안에서는 더욱 심화되었음.

2025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1차) 사업’은 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과의 정보유통, 수사 및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므로, 정보시스템 구축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1차) 사업(신규): 차질없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1차)’** 사업은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2024. 10. 20.)에 따라 사법절차 전과정의 전자화를 구현하기 위한 전자영장 관리체계 및 수사자료 관리시스템 등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고도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75억 2,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4)]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1차)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정보화체계구축 및 운영	3,851	9,788	5,937	154.2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1차)	-	7,529	7,529	순증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1차) 예산안 세부내역]

○ 일반연구비(260-01) : 4,434백만원
- KICS 고도화 구축 개발비 4,434백만원
· 개발비 : 1식 × 3,670백만원 = 3,670백만원
· 감리비 : 1식 × 355백만원 = 355백만원
· PMO : 1식 × 309백만원 = 309백만원
· 개인정보영향평가 : 1식 × 100백만원 = 100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3,095백만원
- KICS 고도화 구축 HW/SW 구입 3,095백만원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4) 일반회계-정보화체계구축 및 운영(1031-300)(수사과)

나. 검토의견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1차) 사업은 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과의 정보유통, 수사 및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므로, 정보시스템 구축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은 2025년에 전자문서 유통을 위한 전자문서 서식 응용기능 개발 등 1차 구축사업을 하고, 2026년에는 전자영장관리체계 등을 개발하는 2차 구축사업을 수행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총 18개월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안) 및 사업기간]

(단위: 억원)

구분	2025년 (1차)	2026년(2차)	합 계
소요 예산	75	74	149
사업 기간	2025. 1.~ 12.(12개월)	2026. 1.~ 6.(6개월)	18개월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획재정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수처는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사업을 2024년 6~9월 동안 추진하여 시스템 목표 모델을 수립하고 단계별 핵심 개선과제를 선정하는 등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음.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사업을 통하여 시스템 구축 일정 및 소요예산을 산출하게 되는데 공수처는 2025년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요구액 산정을 2024년 9월 마스터플랜 사업의 최종 결과물에 따라 산정[5]하지 못하고 2024년 7월 중간 산출물을 기반으로 산정함으로써 실제 시스템 구축 예산 소요액과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그리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1차)의 사업기간을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정보화사업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부터 사업 착수까지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사업이 2025년 1월부터 착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됨.

5)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사업의 최종산출물에서는 2025년(1차) 사업비는 96.1억원, 2026년(2차) 사업비는 114.2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210.3억원으로 산출됨

그런데 이 사업은「형사절차전자문서법」시행(2024. 10. 20.)에 따라 수사 및 공소제기 업무를 전자적으로 시행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므로, 시스템 구축이 지연될 경우 수사기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공수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1차) 사업의 사업 수행에 있어 구축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진행할 필요가 있음.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 주요내용]

구분	개발 프로그램	주요 내용
1차 (2025년)	전자문서 서식 응용기능 개발	・법원과의 온라인 유통・관리를 위한 전자문서 서식 응용기능 개발
	디지털 수사자료 관리・활용 체계 구축	・진술녹화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및 음성파일 등 멀티미디어 수사자료의 관리・활용 체계 구축
	모바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현장중심 업무지원체계 기반, 신속한 형사사법 업무 수행을 위한 모바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도입
	(전송형) 전자영장관리체계	・발부된 전자영장을 집행대상자에게 통보(SMS, 이메일 등)하고 전자영장집행 웹페이지에 게시하여 접속하여 확인하는 서비스 제공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축	・전자문서의 업무 목적에 맞게 등록, 조회, 수정, 삭제, 유통 등을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2차 (2026년)	국민중심 대민서비스	・국민의 민원처리 주제별 화면 구성 및 맞춤형 기능 구현으로 원스톱으로 민원처리가 가능한 국민중심 대민서비스 구축
	음성인식 조서 서비스	・음성 인식기를 통해 실시간 텍스트화된 내용을 활용함으로써 조서작성 등 형사사법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음성인식 기반 서비스 구축
	원격화상조사 서비스	・간단한 진술을 위해서도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공간 및 사용기기의 제약 없이 조사가 가능한 원격화상조사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축적된 형사사법 정보를 활용한 상시적 데이터 분석환경 마련 및 사용자 요구에 따른 정형/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수립 지원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생성형 AI 형사사법 업무 지원 컨설팅	・최신 AI기술을 활용하여 형사사법 업무의 신속・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생성형 AI기반 형사사법업무 컨설팅 계획 수립
	정보인프라/정보보안 개선	・무중단, 고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과 보안체계 강화를 통한 정보인프라 구조 개선 추진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 공판역량강화 사업: 대상자 규모 및 활용도를 고려한 교육 예산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공판역량강화’** 사업은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대비하여 공판역량 강화를 위한 검사 스피치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하게 1,400만원이 편성되었음.[6)]

[2025년도 공판역량강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공판활동지원	30	30	-	-
공판역량강화	14	14	-	-

[공판역량강화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공판역량강화사업: 14백만원
- 공판역량강화 교육: 5명 ×2회 ×1,400,000원
(산출근거: 1,400만원 = (강의 130만원 + 교재 10만원) × 5명 × 2회)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나. 검토의견

공판역량강화 교육 계획을 마련함에 있어 교육 대상자 규모, 교육 실시 횟수 및 활용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바, 2025년 교육대상자 수의 감소 등을 검토하여 관련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6) 일반회계-공판활동지원(1033-301)(인권수사정책관)

공판역량강화 교육은 실제 법정에서 객관적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스피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으로 2024년에 신규 편성되었음. 2024년 스피치 교육은 검사 9명을 대상으로 스피치 발음 연습, 프레젠테이션 실전 등 4시간의 교육을 실시하였음.

[2024년도 공판역량강화 스피치 교육 실적]

교육 일자	교육 인원	주요 내용	예산액 (집행액)
2024. 7. 11.~ 8. 9. (매주 목, 4시간)	검사 9명 (7월: 4명, 8월: 5명)	- 스피치 사전 점검, 발음 연습 - PREP 기법, 스피치 실습 - 프레젠테이션 실전 및 최종 점검	1,400만원 (700만원)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는 2024년도 공판역량강화 스피치 교육에서 교육의 전 과정을 촬영하여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진행하였으며, 시나리오 실습과 전문가 개별 컨설팅을 통하여 스피치 능력 향상 및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고 설명하였음.

2025년 공판역량강화 스피치 교육 대상자는 검사 현원 총 13명[7] 중 올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검사 4명이 대상자로 예상됨. 또한, 공수처는 2024년 9월 현재 공개재판 건수가 4건만 있어 실제 공판역량강화 스피치 교육 이수에 따른 사업성과(활용도 등)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따라서 공수처는 실제 교육대상자 규모를 고려하여 공판역량강화 교육 예산편성 규모를 조정하고 교육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7) 공수처의 검사 인력은 2024. 9. 현재 처장(1), 차장(1), 수사기획관(3), 인권수사정책관(1), 수사부(1부 ~ 4부)(13)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공판업무를 수행하고 공판역량강화 스피치 교육대상인 검사는 수사부 검사 13명으로 파악됨.

헌법재판소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총수입은 2억 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700만원(△61.9%) 감소함.[1)]

[2025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641	244	△397	△61.9
총수입	641	244	△397	△61.9

2025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총지출은 585억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6,000만원(3.1%) 증가함.

[2025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56,766	58,526	1,760	3.1
총지출	56,766	58,526	1,760	3.1

문의 : 이은미 예산결산조사관 eunmee@assembly.go.kr (02-6788-5688)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나. 예산안

2025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은 총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2억 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700만원(△61.9%) 감소함.

[2025년도 헌법재판소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641	244	△397	△61.9
합 계	641	244	△397	△61.9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585억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6,000만원(3.1%) 증가함.

[2025년도 헌법재판소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56,766	58,526	1,760	3.1
합 계	56,766	58,526	1,760	3.1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헌법재판소의 2025년도 신규사업[2] 및 주요 증액사업[3]은 없음.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헌법재판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음.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지능형 헌법재판시스템 구축 사업의 계속 추진, 구내식당 리모델링 등 업무 인프라 개선 등을 들 수 있음.

2025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헌법재판소 구내식당 리모델링’ 사업은 유사사례 비교 등을 통해 공사비 단가 예산이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구내식당 리모델링 사업(신규): 구내식당 리모델링 관련 유사사례 비교 등을 통해 적정한 공사비 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구내식당 리모델링'** 사업은 청사 건립(1993년) 당시 조성된 구내식당이 노후화되어 위생환경 등이 관련 법령상 기준에 위배되어 리모델링 및 노후 집기 교체 등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9억 9,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4)]

[2025년도 구내식당 리모델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본부운영지원	4,624	4,292	△332	△7.2
청사 환경개선공사	-	1,154	1,154	순증
구내식당 리모델링	-	997	997	순증

[구내식당 리모델링 예산안 세부내역]

○ 구내식당 리모델링 사업: 997백만원

- 실시설계비: 27백만원
  - 792백만원(공사비) × 5.69%(설계비 요율)* × 60%(실시설계비 요율) ≒ 27백만원
- **공사비: 792백만원**
  - 건축·기계공사 642백만원, 전기·통신·소방공사 150백만원
- 시설부대비: 5백만원
  - 792백만원(공사비) × 0.68%(기획재정부 시설부대비 요율)* ≒ 5백만원
- 조리·위생기기 구매: 173백만원

자료: 헌법재판소

4) 일반회계-본부운영지원(1032-302)(행정관리국)

나. 검토의견

헌법재판소 구내식당 리모델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유사사례 공사비 단가와 비교하여 공사비가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헌법재판소는 1993년 청사 건립시에 조성되어 노후화된 구내식당(410㎡)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2025년에 실시설계비 2,700만원, 공사비 7억 9,2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및 조리・위생도구 구입비로 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음.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 면적]

(단위: ㎡)

구분	식당Ⅱ	식당Ⅲ	조리실	사무실, 휴게실, 냉장실	합계
면적	146	103	106	55	410

자료: 헌법재판소

이 중 공사비 단가는 ㎡당 1,756천원을 편성하였는데, 공사비는 실시설계비 및 시설부대비 산정 시 기준 금액이 되어 총 공사비의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는바 산정 금액을 엄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 유사사례 현황: 2020 ~ 2024년]

(단위: 천원)

공고 연도	기관명	내용	면적(㎡)	공사비	㎡당 단가 (a)	보정 계수 (b)	보정 단가 (a*b)
2025 예정	**헌법재판소**	**구내식당 리모델링**	**451**	**792,000**	**1,756**	**-**	**1,756**
2024	서울특별시 서울시립대	서울라운지 조성공사[1] (교직원식당 리뉴얼)	919	2,098,712	2,284	-	2,284
2023	울산광역시 북구청	구청사 구내식당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664	863,867	1,301	1.027	1,336
2021	경기도 성남시	중앙도서관 구내식당 등 리모델링공사	850	1,050,553	1,236	1.182	1,461
2020	경상북도 문경시	구내식당 리모델링공사	471	759,894	1,613	1.229	1,982

주) 서울라운지 조성공사는 헌법재판소 구내식당 리모델링 사업보다 광범위한 범위 및 고급화된 마감재를 적용하여 직접 비교에서 제외

자료: 헌법재판소

공사비 단가 산정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관련 업체의 공사 견적서를 참고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됨.

2025년 헌법재판소 구내식당 리모델링 사업의 공사비 단가는 유사사례 중 2023년 울산광역시 북구청 구청사 구내식당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사업, 2021년 경기도 성남시 중앙도서관 구내식당 등 리모델링 공사 사업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5)]

따라서 헌법재판소 구내식당 리모델링 사업의 예산액 산정에 있어 유사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공사비, 실시설계비 및 시설부대비의 예산이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6)]

---

5) 헌법재판소는 타 기관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① 경상북도 문경시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 사업에 대비하여서는 ㎡당 약 226,000원 낮은 점, ② 인건비 및 원자재 가격 등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③ 1993년 청사 건립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지는 리모델링 공사인 만큼 장기적 시각으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한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임.

6) 헌법재판소는 유사사례 중 2020년 경상북도 문경시 구내식당 리모델링 사업이 전면 리모델링으로서 헌법재판소 구내식당 사업과 공사 범위(면적) 및 내용이 가장 유사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2. 헌법재판 업무지원: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헌법재판 업무지원’** 사업은 헌법재판 사건처리의 적시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부 부별 토론, 연구회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00만원(8.1%)이 증액된 2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음.[7)]

[2025년도 헌법재판 업무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재판활동 운영지원	748	671	△77	△10.3
헌법재판 업무지원	247	267	20	8.1

[헌법재판 업무지원 예산안 세부내역]

○ 헌법재판 업무지원: 267백만원

- 공동부·전속부 연구토론 및 운영지원비 등: 194,531천원, 전년수준
- 연구회 운영비 등: 72,523천원 (전년대비 +37.8%)
  · 연구회 운영: 59,523천원
  · **번역료 및 사례금 40,000천원**
  · 헌법실무연구 발간 8,000천원
  · 인쇄 및 제본비 등 11,000천원
  · 연구회 활동지원 13,000천원

자료: 헌법재판소

7) 일반회계-재판활동운영지원(1031-301)(행정관리국)

나. 검토의견

헌법재판 업무지원 사업의 연구회 운영 경비의 집행 실적이 부진함에도 2025년 예산안에 증액 편성되었는바,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헌법재판 업무지원 사업의 연구회 운영 경비 중 번역료 및 사례금 항목이 2024년 2,6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는 등 2025년도 예산안에 연구회 운영 경비가 총 1,992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연구회 운영 예산 세부내역: 2024~2025년(안)]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47,131	○ 일반수용비(210-01): 39,600천원 **- 연구회 운영 (39,600천원)** **· 번역료 및 사례금: 26,000천원** · 헌법실무연구 발간: 6,000천원 · 인쇄 및 제본비: 8,000천원 · 단수조정: △4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207,531천원 - 공동부·전속부 연구토론 및 운영지원경비 등: 194,531천원 - 연구회 활동지원비: 13,000천원	267,054	○ 일반수용비(210-01): 59,523천원 **- 연구회 운영 (59,523천원)** **· 번역료 및 사례금: 40,000천원** · 헌법실무연구 발간: 8,000천원 · 인쇄 및 제본비: 11,000천원 · 단수조정: 523천원 ○ 사업추진비(240-01): 207,531천원 - 공동부·전속부 연구토론 및 운영지원경비 등: 194,531천원 - 연구회 활동지원비: 13,000천원

자료: 헌법재판소

그런데 2023년도 연구회 운영의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수용비 4,000만원 중 2,549만원이 집행되고 1,451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4년 9월 말 기준 2024년 일반수용비 예산액 3,960만원 중 집행액은 2,497만원임.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횟수 증가, 외국판례 번역 확대 등 헌법재판소 연구회의 활발한 활동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나, 과거 집행실적을 고려할 때 2025년도 연구회 운영 경비 중 일반수용비 증액분 등 일부 금액에 대해 감액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

Ⅰ. 개 관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대법원 소관 총수입은 9,604억원으로, 전년 대비 478억원(5.2%) 증가함. 예산은 7,299억원으로 전년 대비 768억원(△9.5%) 감소한 반면, 기금은 2,305억원으로 전년 대비 1,246억원(117.7%) 증가함.[1)]

[2025년도 대법원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8,067	7,299	△768	△9.5
기 금	1,059	2,305	1,246	117.7
총수입	9,126	9,604	478	5.2

문의 : 이은미 예산결산조사관 eunmee@assembly.go.kr (02-6788-5688)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대법원 소관 총지출은 2조 3,127억원으로 전년 대비 1,389억원(6.4%) 증가함. 예산은 2조 2,081억원으로 전년 대비 1,072억원(5.1%) 증가하고, 기금은 1,046억원으로 전년 대비 317억원(43.5%) 증가함.

[2025년도 대법원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21,009	22,081	1,072	5.1
기 금	729	1,046	317	43.5
총지출	21,738	23,127	1,389	6.4

나. 예산안

2025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은 총 2개 회계(일반회계, 등기특별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2개 회계(일반회계, 등기특별회계) 7,814억원으로 전년 대비 2,122억원(△21.4%) 감소함.

[2025년도 대법원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6,105	5,028	△1,077	△17.6
등기특별회계	3,831	2,786	△1,045	△27.3
합 계	9,936	7,814	△2,122	△21.4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대법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2개 회계(일반회계, 등기특별회계) 2조 2,566억원으로 전년 대비 89억원(0.4%) 증가함.

[2025년도 대법원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8,646	19,780	1,134	6.1
등기특별회계	3,831	2,786	△1,045	△27.3
합 계	22,477	22,566	89	0.4

주) 총계 기준

다.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대법원 소관 1개 기금(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3,9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589억원(68.7%) 증가함.

[2025년도 대법원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사법서비스진흥기금	2,314	2,314	3,903	1,589	68.7
합 계	2,314	2,314	3,903	1,589	68.7

주) 총계 기준이며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대법원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신규사업이 편성되지 않았음.[2)]

한편, 대법원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사법업무 전산화’,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구축’,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법원시설관리 등’, ‘소년보호 등 지원’, ‘민원서비스 개선’ 사업 등 총 6개임.[3)]

[2025년도 대법원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사법업무전산화	48,980	72,740	23,760	48.5
2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구축	13,278	23,000	9,722	73.2
3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2,482	6,453	3,971	160.0
4	법원시설관리 등	50,479	64,162	13,683	27.1
[사법서비스진흥기금]					
5	소년보호 등 지원	6,450	9,207	2,757	42.7
6	민원서비스 개선	24,670	32,237	7,567	30.7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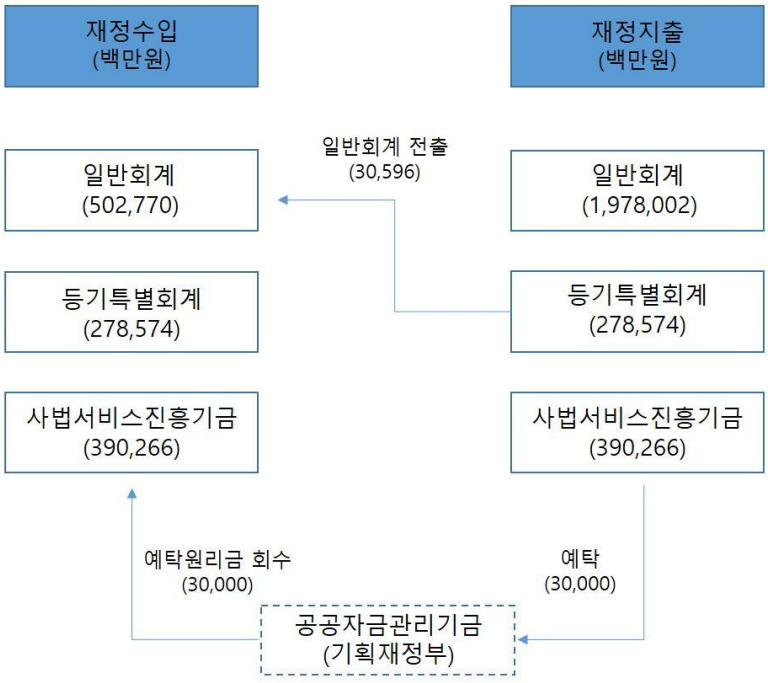
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대법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등기특별회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등기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305억 9,600만원이 전출되었음.

다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300억원이 예탁되었음.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300억원의 예탁금이 상환되었음.

[대법원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주) 총계 기준

4.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신속한 재판구현을 위한 재판제도 개선, 인프라 확충 등을 들 수 있음. 통·번역 제도 개선을 위해 ‘재판일반경비지원’ 사업, 전자소송 확대에 따른 사건기록 전자화 지원을 위해 ‘민원서비스 개선’ 사업을 증액 편성하고, 사법부 데이터의 디지털 전환과 AI 도입을 위해 ‘사법업무전산화’ 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법원 AI플랫폼 구축 및 법률자료 지능형 검색 모델 개발’, 감정절차 지연 해소를 위해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감정관리절차 지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또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사법업무전산화’ 사업에 ‘전자소송’ 사업이 편입되었고,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국민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편입되었으며, ‘국선변호료 지원’ 사업 중 국선전담변호사 보수 등에 관한 부분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이관되었음.

2025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감정절차관리’ 사업은 감정관리 사무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임차건물 선정, 사무 및 회의공간 공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감정절차 관리 지원이 적시에 시행되어 감정관리위원의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은 2023년도 계약 지연 등으로 개발비 등 23억 8,900만원(62.4%) 이월되었고, 2024년에도 구축 일정이 지연되고 있음. 동 구축사업은 2025년에 법무부 등 관련기관과의 시스템 연계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므로 시스템 개발일정 준수를 위하여 면밀한 사업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1. 변상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가. 개 요

‘변상금’은 국가 소유 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해 징수하는 수입 등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2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음.[4)]

[2025년도 변상금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변상금	247	247	-	-

나. 검토의견

변상금은 연례적으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의 추계가 정확하지 못하였고, 징수결정 대비 수납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수납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변상금은 지난 4년간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 2021년부터 예산액은 2억 4,700만원으로 동일하나 징수결정액은 2023년까지 5억원 정도였으며 수납액은 1억원 이하로 나타났음.

4) 일반회계-변상금(57-571)(기획조정실)

[변상금 예결산 내역: 2021 ~ 2024. 8.]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1	235	235	235	470	68	28.9	14.5	402	-
2022	247	247	247	518	106	42.8	20.4	412	-
2023	247	247	247	477	50	20.2	10.5	428	-
2024.8.	247	247	247	5,696	452	129.6	5.8	5,240	4

자료: 대법원

2024년의 변상금 징수현황을 보면, 2024년 8월 현재 변상금의 징수결정액이 56억 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2억 1,900만원(1,094.1%) 증가하였고, 수납액도 예산액보다 2억 500만원(83.0%)이 증가하였으나 2025년 예산액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한 문제가 있음.

[2024년 징수결정액 증가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최초징수 결의일	최초납기일	징수결정액	수납액	사유
부산지법	2024.03.18	2024.04.18.	4,808	0	부산지법 2024차전 105038손해배상 사건 관련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독촉절차비용 확정
부산지법	2024.08.21.	2024.08.21.	129	129	창원지방법원 24가단113830 부당이득금

자료: 대법원

한편, 최근 3개년간 평균 수납률은 15.1%로 나타나는 등 변상금 수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24년의 징수결정액 증가는 부산지법에서 손해배상금 및 독촉절차 비용 등에 대한 판결이 확정됨에 따른 것으로, 2024년 4월이 납기일이었음에도 2024년 9월말 현재까지 전혀 수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대법원은 변상금 수납률이 저조한 사유로 변상금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어렵고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향후 대법원은 변상금의 세입예산 추계를 면밀히 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세 출>

2. 문서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사업(신규): 평가 대상자 규모를 고려한 문서감정장비 구매 예산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문서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 사업은 국가자격이나 공인 자격 없는 문서감정인의 자격을 실질적으로 검증하고 숙련도를 적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숙련도 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2억 6,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5)]

[2025년도 문서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재판일반경비지원	41,610	46,158	4,548	10.9
문서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	-	269	269	순증

나. 검토의견

문서감정인 숙련도 평가 응시자의 규모를 고려하여 평가에 필요한 문서감정장비를 신규 구입하기 보다는 관련 장비를 보유한 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 평가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사업 방식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서감정인 숙련도 평가 사업은 문서감정인에 대한 국가자격이나 공인자격이 존재하지 않아 문서 감정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5조의2[6)]에 따라 문서감정인의 실질적

5) 일반회계-재판일반경비지원(1143-404)(사법지원실)

6)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5조의2 (문서등의 감정인 명단의 효율적인 작성·관리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5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문서등의 감정인 후보자 등재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숙련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숙련도 평가 실시 업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국가기관연구소에 위탁할 수 있다.

인 자격검증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임.

대법원은 문서감정인 숙련도 평가 사업을 위하여 문서감정인 후보자 등재 신청자를 대상으로 문서감정분야(인영, 필적, 문서 위·변조, 지문 등) 전부 또는 일부 분야에 대하여 감정물 시료 및 대조 시료 제작, 답안 작성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 및 운용을 통하여 숙련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임.

법원행정처장은 국가기관연구소 문서감정실에서 5년 이상 감정·연구한 사람 등 일정한 요건[7]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문서감정인 명단에 등재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약 30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대법원은 문서감정인 숙련도 평가를 2023년 10월 국립과학수사연구소[8]의 협조로 시범실시[9] 한 바 있고, 문서감정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숙련도 평가를 통한 자격 검증 필요성이 있어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함.

2025년 예산안에는 문서감정 평가를 위한 시험문제 출제에 인건비(3,200만원), 감정시료 제작비(2,600만원), 현장 감정평가를 위한 영상분광비교측정기[10](1억 9,800만원) 및 평가답안 입력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1,000만원 등 2억 6,900만원이 편

---

7)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판예규 제1854호)」
제5조(감정인 명단) ①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12월 다음 각 호에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감정인 명단』에 등재한다.
1. 시가등의 감정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감정평가사
2. 측량감정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지적측량업자 또는 그 소속 지적기술사·지적기사·지적산업기사
3. 문서등의 감정
가. 국가기관연구소 문서감정실에서 5년 이상 감정·연구한 사람
나. 국가기관연구소 문서감정실에서 5년 이상 감정·연구한 사람으로부터 문서감정 등에 관하여 5년 이상 연수받은 사람
다. 위 가목 및 나목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8)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2018년에 필적 및 문서감정 분야의 숙련도시험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국내에서 유일한 문서감정 분야의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국제 기술 규정 및 표준에 적합성을 평가받아 국제적으로 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 국제 숙련도시험 운영 기관이기도 함

9) 2023년 문서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의 경우 법원의 별도 편성예산이 없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평가 지원을 통해 해당 기관의 연구예산으로 집행된 부분으로 소요비용 추계자료는 대법원에 공유되지 않음
문서감정인 숙련도 평가 시범실시 결과: 응시인원: 28명 중 필적 감정분야 1명, 인영 감정분야 2명에 대해서만 부적격자로 판단.
- 필적 문제(2문항) 중 1문제 이상 오답자 17명(60.7%)
- 인영 문제(2문항) 중 1문제 이상 오답자 11명(39.3%)
- 4문항 100점 만점 기준 50점 미만자 12명(42.8%)

10) 영상분광비교분석기(VCS900: Foster&Freema社)는 자외선, 적외선, 고강도 가시광선을 각도로 비추어 다르게 반응하는 대상의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장비로서 국내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검찰청, 국세청 등에서 사용하고 있음

성되어 있으며, 영상분광비교측정기 구입 비용이 총 예산 편성액의 78.6%인 1억 9,8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문서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일반용역비: 268백만원 - 인건비: 32백만원(책임연구원 1인, 연구원 1인 × 용역기간 5개월) - 감정 시료 제작비: 26백만원(인영, 필적, 지문 제작비) - 시설 장비비: 208백만원(영상분광비교측정기 구입 198백만원 및 시험용 홈페이지 제작 등 10백만원) - 기타 평가 준비 비용: 2백만원(인쇄, 라벨링, 사무용품 등) ○ 업무추진비: 1백만원

자료: 대법원

대법원은 감정 장비에 의존하는 문서감정의 특성상 문서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 응시에 필수적이고,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문서감정인 직무연수 시 교육 장비로 활용할 예정이며 아울러 보유한 장비를 문서감정인이 감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도에도 문서감정인 숙련도 평가 시 관련 장비를 보유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점과 문서감정인 후보자(30여명) 규모가 단기간 동안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가의 장비를 구매하기보다는 숙련도 평가 및 교육 업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장비 구매비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11]

11)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도 인력 등의 문제로 문서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 및 교육 업무를 위탁받아 실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문서감정인 후보자 등재 절차(안)]

구분	진행 절차
8월	다음해 감정인 명단 등재 희망자 모집 공고
9월	‘온라인감정인신청시스템’에 문서감정인 후보자 등재 신청
10월	문서감정인 후보자 등재 신청자를 상대로 한 숙련도 평가 실시
	각 문항별 모범 답안(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채점 완료 자격심사 진행: 숙련도 평가 결과 및 국가기관연구소의 자격심사에 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2월	자격심사 결과를 각급 법원에 송부하여 감정인 명단 등재 요청을 위한 심사에 참고하도록 함
	각급 법원은 송부 받은 명단의 감정인 후보자 중에서 평정기준표에 의해 감정인으로 적정하다고 평가한 자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등재 요청
	법원행정처장이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감정인 명단 등재

자료: 대법원

3. 법원구성원 전문역량 강화 사업: 연구회 운영 지원 계획 마련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법원 구성원 전문역량 강화’** 사업은 법원 구성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발적·자율적인 전문분야 연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3,100만원(14.0%)이 증액된 26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음.[12)]

[2025년도 법원 구성원 전문역량 강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재판일반경비지원	41,610	46,158	4,548	10.9
법원 구성원 전문역량 강화	2,360	2,691	331	14.0

[법원 구성원 전문역량 강화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법원구성원 전문역량 강화: 2,691백만원

- 80개 법원(지법지원 이상) × 10개 연구회 × 3,360,000원(연구회별 평균 연간 지원액)

※ 10개 연구회: 민사, 형사, 가사, 특허, 행정, 등기, 공탁, 신청, 경매, 집행 등 전문분야별 연구회

자료: 대법원

나. 검토의견

법원 구성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각 법원의 업무특성, 활동계획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회 운영 지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법원구성원 전문역량 강화사업은 법관 및 법원구성원의 자발적·자율적인 전문분야 연구회 구성 및 활동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12) 일반회계-재판일반경비지원(1143-404)(기획조정실)

이 사업은 기존 전문재판운영 사업 등 여러 세부사업의 내역사업(각급법원 재판관련 전문분야 연구활동 지원 사업 등)으로 지원하고 있었던 연구회 및 실무연구회 지원 경비를 통·폐합하여 ‘법원구성원 전문역량 강화’ 사업으로 개편한 것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연구회 및 실무연구회 예산 편성 현황: 2021 ~ 2025년 예산안]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1 예산 (결산)	2022 예산 (결산)	2023 예산 (결산)	2024 예산	2025 예산안
사법행정의 효율성증진 (1142-401)	세미나 및 사이버연구회 활동지원	366 (309)	366 (351)	366 (365)	-	
재판일반경비지원 (1143-404)	민사제1심 집중심리 실무연구회 등 활동지원	1,224 (1,159)	1,224 (1,182)	1,224 (1,224)	1,224	재판일반경비 지원 (1143-404)
	형사공판중심주의 실무연구회 등 활동지원					
전문재판운영 (1144-407)	전문분야연구회 지원	1,305 (1,188)	1,205 (1,189)	1,205 (1,199)	1,034	법원구성원 전문역량 강화
	각급법원 재판관련 전문분야 연구활동 지원					
	각급법원 지역학계와의 공동연구 지원					2,691
소년보호 등 지원 (1161-304)	가정보호,아동보호사건 실무연구회	-	-	29 (29)	8	
사법서비스향상 (1161-306)	가사재판실무연구회 운영지원	86 (66)	86 (80)	86 (85)	86	
	후견사업 실무연구회 지원	8 (-)	8 (8)	8 (8)	8	
합 계		2,989 (2,722)	2,889 (2,810)	2,918 (2,910)	2,360	2,691

자료: 대법원

대법원은 기존 연구회가 여러 세부사업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연구회 활동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실시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2025년에는 「법원구성원 전문역량강화 연구회 운영(안)」을 마련하여 연구회 운영에 대하여 통일성을 기하고 각 연구회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연구회의 실질적인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임.

다만, 2025년 예산안에는 법관 및 법원구성원 연구회를 지법지원 이상인 80개 법원에 각 10개 연구회를 구성하고 연구회별 기존에 지원한 평균 단가 336만원을 연간 지

원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대법원이 마련할 예정인 ‘2025년 법원구성원 전문역량강화 연구회 운영(안)’에 따라 각 법원의 업무 특성, 회원 수 및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 활동별로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참고: 2025년 법원구성원 전문역량강화 연구회 운영(안)
① 연구회 결성·회원자격·등록 및 관리 : 각급 법원 사정에 맞게 구성 → 법원행정처에 명단 제출 - 법관 연구회 구성 例: 국제거래법, 국제인권법, 기업법, 노동법, 도산법, 민사집행법, 사법정보화, 언론법, 의료법, 젠더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헌법·행정법, 형사법, 환경법 - 법원공무원 연구회 구성 例: 민사, 형사, 경매, 신청, 등기, 공탁, 개인회생, 가족관계, 송달제도개선 등 ② 제한 사항: 1 전문 분야 1연구회 ③ 연구회 재원 및 배분: i) 편성된 예산 2,691백만원(25년 정부안)을 연구회 회원수에 따라 총재원을 배분하되 60%만 배정 ii) 나머지 40%는 연구회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④ 연구회 평가제도 도입 :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실질적 평가 실시 - 평가대상: 각 연구회 연구 및 발표 자료 평가 - 평가주체: 각급 법원 단위 「전문역량강화 연구회 평가위원회」구성 - 위원회 구성: 각급 법원별 사정에 맞게 구성, 소규모 법원 및 지원의 경우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하여 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과 통합하여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을 권고 - 평가방법: 실질적 심사를 실시하여 과감한 패널티와 인센티브 적용 * 심사기준: 제도개선, 독창성, 실무활용도, 예산절감 등 각급 법원 사정에 맞는 기준 설정 * 등급: 우수 20%, 보통 60%, 미흡 20% 범위 내에서 각 선정 * 패널티 : ‘미흡 등급’의 경우, 2차 지원금 삭감 * 인센티브 : ‘우수 등급’의 경우, ‘미흡 등급’의 2차 지원금을 가산하여 지원 ④ 연구회 경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 - 경비의 모든 지출에 대해 영수증 및 증빙자료를 제출, 관리·보관 - 연구회 경비 집행에 관한 명확한 지침과 절차를 수립, 구성원에 대한 교육

자료: 대법원

4. 형사전자소송시스템 사업: 시스템 개발일정 준수를 위한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가. 개 요

‘형사전자소송시스템’ 사업은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소송서류 제출 및 열람 등 절차진행 과정을 전자적으로 수행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형사사법 업무기관과의 전자적 연계 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3억 8,700만원(△42.8%) 감액된 71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음.[13)]

[2025년도 형사전자소송시스템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형사전자소송시스템	12,585	7,198	△5,387	△42.8

[형사전자소송시스템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71억 9,800만원
- 형사전자소송시스템구축사업 개발: 21억 8,600만원
- 형사전자소송시스템구축사업 감리: 2억 1,400만원
-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 개인정보영향평가 2,500만원
-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 H/W 및 상용S/W 구입: 42억 7,400만원
-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 운영: 4억 8,400만원
- 기타 운영비: 1,500만원

자료: 대법원

13) 일반회계-형사전자소송시스템(1331-304)(사법정보화실)

나. 검토의견

형사전자소송시스템구축 사업은 2023년도 계약 지연 등으로 개발비 등 23억 8,900만원(62.4%)이 이월되었고, 2024년에도 구축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바, 2025년에 법무부 등 관련기관과의 시스템 연계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므로, 시스템 개발일정 준수를 위하여 면밀한 사업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은 법무부 등 형사사법 업무기관과의 전자적 연계 체계를 개선하고, 소송서류 제출 및 열람 등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사용자 편의성 증대 등을 위하여 2023~2026년까지 4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임.

동 시스템 구축과정을 살펴보면 2023년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이 지연(계약일: 2023. 7.)되고, 2024년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과의 오픈일정 연기(2024. 9. → 2025. 1.)로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의 구축 일정이 연장되었고, 이에 따른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일정이 연장 조정되었음.

2024년 9월 현재 시스템 구축에 따른 집행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 이월액 23억 8,907만원(개발비 22억 2,107만원, 감리비 1억 5,016만원, 개인정보영향평가 1,784만원)은 집행이 완료되었고, 2024년 예산액 중 개발비 69억 1,000만원 중 20억 5,595만원(29.3%)이 집행되었음.

[형사전자소송시스템 집행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목	2024년				2025년 예산안
		이월액 (A)	예산액 (B)	예산현액 (C=A+B)	집행액 (2024. 9.)	
구축사업	일반연구비	2,221	6,910	9,131	4,244	2,186
감리	일반연구비	150	448	598	413	214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연구비	18	11	29	49	25
H/W 및 S/W 구입	자산취득비	-	5,216	-	-	4,274
합 계		2,389	12,585	9,758	4,706	6,699

자료: 대법원

대법원은 법무부 등 형사사법 업무기관과의 전자적 연계를 2025년 6월로 계획하고 있어, 2025년 상반기에는 연계작업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과의 연계 등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계획하고 있음.

이 사업은 법무부 등 외부 기관과의 연계뿐만 아니라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전자소송체계를 구축하고 소송서류 제출 및 열람에 있어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사업이므로, 시스템 개발일정 준수를 위하여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등기특별회계】

<세 입>

5. 일반회계 전출: 일반회계 전출금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가. 개 요

‘일반회계 전출’ 은 등기특별회계 잉여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39억 6,900만원(△75.3%) 감소한 305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음.[14]

[2025년도 일반회계 전출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전출	123,965	30,596	△93,369	△75.3

나. 검토의견

「등기특별회계법」에 결산 잉여금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연례적으로 일반회계 전출 예산의 집행이 저조하여 일반회계 세입 부족으로 귀결되고 있고, 최근 반복된 세수결손으로 일반회계 재원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결산상 잉여금의 일반회계 전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일반회계 전출금은「등기특별회계법」 제5조[15]에 따라서 등기특별회계 결산 잉여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것으로, 등기특별회계의 과도한 잉여금을 해소하면서 일반회계의 세입을 확보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장치임.

---

14) 등기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8010-800)

15)「등기특별회계법」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에 있어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잉여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한다.

그런데 최근 5년간 등기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및 2021년에는 예산액 중 32.9% 및 30.5%를 각각 집행하였고, 2023년에는 예산액 대비 6.6%를 집행하는데 그쳤음. 특히 2020년 및 2022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반회계 전출금의 집행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 전액이 불용처리되었음.

[일반회계 전출금 집행현황(2019 ~ 2024. 7.)]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19	74,634	74,634	-	74,634	24,586	32.9	32.9	-	50,048
2020	76,518	81,521	-	81,521	-	-	-	-	81,521
2021	95,701	95,701	-	95,701	29,181	30.5	30.5	-	66,520
2022	49,493	50,305	-	50,305	-	-	-	-	50,305
2023	170,211	170,211	-	170,211	11,176	6.6	6.6	-	159,035
2024.7.	123,965	123,965	-	123,965	-	-	-	-	-

자료: 대법원

또한 연도별 등기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의 처리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총 3,621억 5,9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음에도 해당 기간 동안 일반회계로 전출된 총 금액은 17.9%인 649억 4,300만원으로 결국 일반회계에 세입이 부족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음.

[연도별 등기특별회계 잉여금 처리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잉여금 계	전년대비 증감액	일반회계로 전출	차년도 세입에 이입
2019	65,252	-	24,586	40,666
2020	77,897	12,645	-	77,897
2021	102,886	24,989	29,181	73,685
2022	68,050	△34,836	-	68,050
2023	48,074	△19,976	11,176	36,898
합 계	362,159	-	64,943	297,196

주 1) 차년도 세입에 이입하는 금액은 사실상 등기특별회계 내부로 보유하는 연도말 잉여금으로 볼 수 있음
2) 잉여금은 전년도에 발생한 잉여금의 차년도 이입액에 당해연도 순세입액과 순세출액의 차액을 더한 값임

자료: 대법원

이에 대해 대법원은 특별회계의 차년도 수입이 과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등기특별회계 잉여금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을 과소 집행하여 왔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에서 확정한 일반회계 전출금을 대법원이 집행하지 않고 등기특별회계의 잉여금으로 남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집행방식으로 생각됨.

특히 최근 세수 결손으로 인해 국가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등기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집행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 전체적인 재정 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일반회계 전출금의 집행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법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 입>

6. 민간출연금: 출연금액 납부액 한도관련 제도개선 검토 필요

가. 개 요

‘민간출연금’ 은 공탁금 보관은행으로부터 공탁금 운용수익금을 출연받는 자금으로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당초계획액 대비 1,243억 600만원(117.7%)이 증액된 2,299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음.[16)]

[2025년도 민간출연금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민간출연금	105,636	105,636	229,942	124,306	117.7

주)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민간출연금 계획안 세부내역]

○ (금융기관) 2025년 예상 공탁 출연금 2,303억원(공탁금관리위원회 운영경비 포함)

〈공탁출연금 산정기준〉
○ 운용수익 - 포괄이윤 - 이자비용
- 운용수익 : 공탁금 평균잔액 × 자금운용수익률
- 포괄이윤 : 공탁금 평균잔액 × 순이자마진율
- 이자비용 : 공탁금 평균잔액 × 공탁금이자율

※ 자금운용수익률, 순이자마진율은 금융감독원에서 매년 3월말 공시
※ 각 공탁금보관은행별로 전년도 출연금을 기준으로 30% 상·하한제 적용

자료: 대법원

16) 사법서비스진흥기금-민간출연금(59-594)

나. 검토의견

공탁금 출연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탁금 운영 평균잔고가 증가함에 따라 공탁금 출연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공탁금 출연금액에 대한 한도 규정이 전년도 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액 및 감액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출연금 규모의 증액이 여의치 않으므로 관련 규정의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민간출연금은 공탁금 보관은행의 운영 수익금에 공탁금관리위원회 운영경비를 제외하고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 출연하는 자금으로, 2023년 수납액 1,008억 9,400만원, 2024년 7월 현재 1,415억 5,000만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민간출연금 수납 현황: 2021~2024. 7.]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당초	수정(A)					
2021	77,507	77,507	77,507	83,970	83,970	108.3	100.0
2022	101,596	101,596	101,596	75,530	75,530	74.3	74.3
2023	90,636	90,636	90,636	100,894	100,894	111.3	111.3
2024.7.	105,636	105,636	105,636	141,550	141,550	-	-
2025	229,942	-	-	-	-	-	-

자료: 대법원

공탁출연금의 예산액은 전년도 공탁금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탁금 운용수익금에서 포괄이윤(공탁금 보관은행에 보장하는 이윤)과 이자비용(1만분의 35, 공탁금 권리자에게 지급)을 제외하여 산정함.

2025년도 민간출연금 2,299억 4,200만원은 2024년 3월 기준 공탁금 평균잔액 10조 6,383억원 중 운용수익 4,529억원에서 이자비용 372억원 및 포괄이윤 1,854억원 등을 제외한 2,303억원 규모로 산정이 되었음.

그러나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제1항[17]에 따르면, 해당 연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은 전년도 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18] 2025년 출연금액은 2024년 출연금 계획액 1,415억 5,000만원의 30% 상한액

17)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출연금액의 확정 등) ① 위원회는 매년 4월말까지 보관은행별로 전년도의 공탁금 운용수익금에서 이자비용과 포괄이윤 등을 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은 전년도 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

18) 민간출연금(사법서비스기금) 30% 상·하한제는 각 보관은행의 출연금 과다 출연 우려 등을 반영하고 공탁제도의 안정적 유지(적정 출연금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참고하여

인 1,899억 4,724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제1항의 취지는 각 보관은행의 출연금 과다 출연 우려 등을 반영하고 공탁제도의 안정적 유지(적정 출연금 확보)를 위한 것이나,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공탁금 운영의 평균잔고가 과다하게 증가하여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

결과적으로 2025년 출연금 계획액인 2,299억 4,200만원은 전년도 출연금 30% 상한선을 초과하여 편성되어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 규정과 달리 계획액을 편성하게 된 바, 공탁금 출연금 산정기준이 되는 공탁금 운용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 증대와 안정적 확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음.

[2025년 공탁금 출연금 계획액 산정자료]

(단위: 억원)

구분	신한 은행	우리 은행	농협 은행	하나 은행	국민 은행	광주 은행	대구 은행	부산 은행	경남 은행	전북 은행	합계
공탁금 평균잔액 ('24.3.)	66,893	4,636	10,396	1,960	10,408	1,935	3,075	2,604	3,285	1,193	106,383
운용수익	2,809	222	415	63	459	80	182	98	151	51	4,529
이자비용	234	16	36	7	36	7	11	9	11	4	372
포괄이윤	1,110	87	182	29	190	50	60	52	61	31	1,854
출연금	1,465	118	196	27	232	22	112	37	78	15	2,303
상·하한제 초과금액	224	47	35	-	-	-	68	-	22	7	403

자료: 대법원

신설한 내용임(공탁금 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 : 기존 20%(2020. 3. 4. 부터 시행) ⇨ 2022년 12. 29. 30%로 개정)

<지 출>

7. 감정관리절차 지원(신규): 차질없는 감정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준비 철저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감정관리절차 지원'** 사업은 감정절차 관리 기구를 설치하고 전문가를 감정관리위원으로 위촉하여 개별사건의 감정절차 참여와 통합적인 감정사건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29억 6,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9)]

[2025년도 감정관리절차 지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사법서비스 향상	13,469	13,469	13,894	425	3.2
감정관리절차 지원	-	-	2,963	2,963	순증

주)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나. 검토의견

감정관리 사무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임차건물 선정, 사무 및 회의공간 공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감정절차 관리 지원이 적시에 시행되어 감정관리위원의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은 감정절차의 지연[20)]으로 인한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5년 각 고등법원 6곳에 감정 의뢰가 가장 많은 의료 및 건설분야에 대한 감정관리를 위한 감정관리 센터 설치를 추진할 계획임.

---

19) 사법서비스진흥기금-사법서비스 향상(1161-306)(사법지원실)

20)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3년 민사본안 합의부의 경우 민사본안 전체 평균 처리 기간(1심)은 473일, 의료분야 손해배상 749일, 공사대금 625일, 건설분야 619일 등으로 나타났고, 민사본안 단독 전체 평균 처리 기간(1심)의 경우 민사본안 전체 222일, 의료분야 손해배상 712일, 자동차 손해배상 532일, 산재관련 손해배상 555일, 공사대금 291일, 건설분야 395일 등으로 나타남.

2025년 예산안에는 고등법원 6곳(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에 건설분야 감정위원 각 1명과 의료분야 감정위원 각 1~2명을 두기 위한 인건비 20억 5,200만원과, 고등법원별 감정관리실 설치를 위한 공사비 및 임차료 8억 9,900만원을 편성함.

[감정관리절차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감정관리위원 위촉: 2,052백만원

- 감정관리위원 19명(건설 6명, 의료 13명) × 12개월 × 9백만원

○ 감정관리사무실 설치: 899백만원

- 각 고등법원 권역별로 6곳(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 수원)에 감정관리사무실 설치
  * 공사비 320백만원(서울 120,000천원+그 외 5지역 각 40,000천원)
  * 자산취득비 220백만원
  * 임차료 359백만원(서울 254,256천원+대구 35,905천원+부산 34,024천원+광주 34,456천원)

○ 감정관리사무실 운영비: 12백만원

자료: 대법원

대법원은 각 고등법원 권역별로 감정절차 관리 기구(센터)를 설치하여 개별 감정사건의 관리를 담당하는 감정관리위원과 감정절차 전반의 관리를 담당하는 감정담당판사, 감정인들과의 연락 등 절차를 보조할 직원을 배치할 계획임.

감정관리위원은 감정사건 진행에 있어 감정인 선정 관련 의견 개진, 감정사항 정리, 감정인 감독 등 전반적인 절차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감정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존 상임전문심리위원을 감정관리위원으로 겸직 위촉할 예정임.

[법원별 감정관리위원 배치 인원수(신규 배치 예정 인원수)]

고등법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	계
분야별 인원수 (명)	건설	현원	2	1	1	1	1	1	7
		추가	3	-	-	1	1	1	6
	의료	현원	2	1	1	1	1	1	7
		추가	8	1	1	2	-	1	13
계			15(11)	3(1)	3(1)	5(3)	3(1)	4(2)	33(19)

자료: 대법원

다만, 각 고등법원에 감정관리 사무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임차건물 선정, 사무 및 회의공간 공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감정절차 관리 지원이 적시에 시행되어 감정관리위원의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8. 형사소송 기록 스캔 및 비실명처리 사업: 전자소송시스템 개통 등 환경변화를 고려한 사업관리 철저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형사소송 기록 스캔 및 비실명처리’** 사업은 형사소송 종이기록을 스캔하여 전자화하고, 비실명처리를 한 후, 전자적으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47억 5,600만원(214.8%)이 증액된 69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음.[21)]

[2025년도 형사소송 기록 스캔 및 비실명처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민원서비스 개선	50,479	50,479	64,162	13,683	27.1
사건기록 전자화 사업 및 판결서 공개	9,826	9,826	21,364	11,538	117.4
형사소송 기록 스캔 및 비실명처리	2,214	2,214	6,970	4,756	214.8

주)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나. 검토의견

대법원은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및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의 개통 등 환경변화에 따른 스캔 물량의 증감에 대비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은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의 시행(2024. 10. 20.) 및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오픈에 따라 형사소송 종이기록을 스캔하고 비실명처리 작업을 수행할 계획인 바, 2025년에 84백만 면수를 스캔하고 38만 면수를 비실명처리할 계획임.

21) 사법서비스진흥기금-민원서비스 개선(1161-305)(사법정보화실)

[형사소송 스캔 사업대상 법원 및 재판부 현황]

(단위: 개)

구분		2020~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법원 수		2	13	24	66
구분 (재판부 수)	고법	서울고법 (제한적 활용)	서울고법 등 3개 고법(17)	전국 고법 전체 (전자사본화로 진행되어 항소된 사건)	전국 고법 전체 (전자사본화로 진행되어 항소된 사건)
	제1심 합의	서울중앙지법 합의부 전체(14)	서울중앙지법 등 3개 지법(19)	전국 지법(본원) 전체	전국 지법 및 지원 전체
	항소	서울중앙지법 항소부 전체(7)	서울중앙지법 등 10개 지법(19)	서울중앙지법 등 16개 지법(53)	서울중앙지법 등 16개 지법(59)
	제1심 단독	-	-	서울중앙지법 등 10개 지법(60)	서울중앙지법 등 13개 지법(74) 및 22개 지원(49)

자료: 대법원

[2025년 형사소송 스캔 및 비실명화 대상 물량]

구분	사건 구분	면수(면)	면당 단가	사업금액(원)
스캔	전국법원 합의(1~8월)	9,663,907	80.33원	776,301,649
	전국법원 단독(1~8월)	50,254,879		4,036,974,430
	전국지법 항소사건(1~8월)	20,532,444		1,649,371,227
	전국고법 사건(1~8월)	877,880		70,520,100
	전국법원 합의(9~12월)	357,750		28,738,058
	전국법원 단독(9~12월)	2,089,283		167,832,103
	고법.지법 항소및상고(9~12월)	274,351		22,038,616
	전국법원 약식(9~12월)	127,775		10,264,166
	전국법원 보호(9~12월)	215,087		17,277,939
	소계	84,393,356		6,779,318,287
비실명 처리	서울중앙지법 합의사건	352,620	500원	176,310,000
	서울고법 사건	29,064		14,532,000
	소계	381,684		190,842,000
스캔 및 비실명화 사업금액 합계				6,970,160,287

자료: 대법원

형사소송 자료에 대한 스캔사업에 대한 사업수행은 스캔 예상물량을 산출하고 단가를 곱하여 총액 계약을 체결하므로 스캔 예상 물량 산출 내역에 따라 단가의 차이가 발생하게 됨. 형사소송 스캔사업의 계약 단가는 2022년 101.031원, 2023년 75.94원, 2024년 80.33원으로 결정된 바 있음.

[형사소송 스캔사업 계약현황: 2022~2024년]

구분	2022		2023		2024	
계약 사업자	㈜코리아퍼스텍, ㈜디앤디기술 컨소시엄		㈜코리아퍼스텍, ㈜디앤디기술 컨소시엄		㈜코리아퍼스텍, ㈜디앤디기술 컨소시엄	
계약 기간	22.1.1.~22.12.31.		23.1.1.~23.12.31.		24.1.1.~24.12.31	
계약 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계약 단가	101.031원		75.94원		80.33원	
예산액	582,000,000원		1,565,000,000원		2,214,000,000원	
계약 금액	최초:575,300,000원 변경:615,300,000원		최초:1,548,800,000원 변경:1,504,800,000원		2,214,000,000원	
계약 물량	스캔	비실명화	스캔	비실명화	스캔	비실명화
(최초)	4,577,216면	188,103면	16,396,490면	607,365면	25,188,713면	381,684면
(변경)	4,600,000면	251,000면	16,945,000면	437,000면		
불용금액	-		60,200,000원		-	

자료: 대법원

특히, 2025년 1월에는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개통으로 전국 법원이 전면 전자사본화가 실시되어 이 사업의 스캔 대상 물량 산정은 2025년 상반기(1~8월)에는 전자사본화 물량을 스캔하고, 하반기(9~12월)에는 증거기록을 제외한 전자소송 물량[22]을 스캔할 계획임.

2025년 9월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개통 이후에도 전자 사본화와 전자화는 일정기간 병존하게 되어 사본화 물량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등 계획된 스캔 물량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전자사본화는 공판 기록과 증거기록 모두 스캔하는데 반해, 전자화는 공판

22) 형사전자소송법이 적용되는(25.6.9.) 신건이 9월부터 법원에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여 1~8월까지는 전자사본화 물량을 산출(공판+증거기록) 하였고, 9월 이후에는 전자화 물량(공판기록 중 피고인등 종이제출문건)을 산출함

기록 일부만 스캔하는데 대체로 증거기록의 물량이 공판기록보다 더 많기 때문에 사본화 물량을 제외하게 되면 그 스캔 대상 물량이 감소할 여지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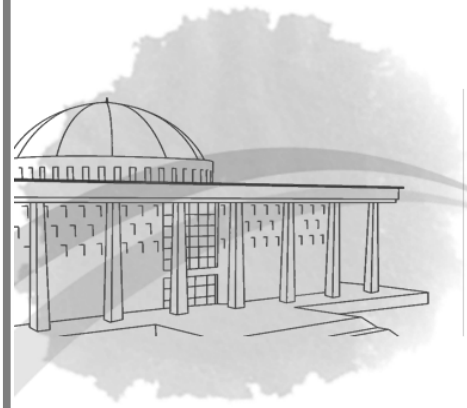
[전자사본화 및 전자소송 실시에 따른 대상 물량]

구분	형사전자소송법 ↓시행 (24. 10. 20.) / 형사전자소송법 ↓적용 (25. 6. 9.)	설명
①전자사본화	↓수사개시 ↓법원접수 수사기록(종이) / 종이사건 (전자사본화 要)	▸형사전자소송법 시행에도 불구, '25. 6. 9. 이전 수사개시 사건은 전자화 사각지대(법 부칙 3조) ⇨ 적극적 전자사본화 필요
②전자소송 (전자화)	⇨ 시간 흐름 ⇨ ↓수사개시 ↓법원접수 수사기록(전자) / 전자소송사건	▸당사자제출 종이서류 스캔은 법률상의무(법 제11조) ▸전체기록의 14%는 종이 접수 예상(민사전자소송의 예)

자료: 대법원

따라서 대법원은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및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의 오픈 등 환경변화에 따른 스캔 물량의 증감에 대비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총수입은 2억 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600만원(1,113.0%) 증가함.[1)]

[2025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0.2	2.8	2.6	1,113.0
총수입	0.2	2.8	2.6	1,113.0

2025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총지출은 6,747억원으로 전년 대비 143억원(2.2%) 증가함.

문의 : 양경화 예산결산조사관 yang717@assembly.go.kr (02-6788-5687)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6,604	6,747	143	2.2
총지출	6,604	6,747	143	2.2

나. 예산안

2025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산안은 총 2개 회계(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1개 회계(일반회계) 2억 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600만원(1,113.0%) 증가함.

[2025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0.2	2.8	2.6	1,113.0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	-	-	-
합 계	0.2	2.8	2.6	1,113.0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2개 회계(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749억원으로 전년 대비 143억원(2.2%) 증가함.

[2025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6,489	6,625	136	2.1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116	124	7	6.4
합 계	6,606	6,749	143	2.2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025년도 예산안에는 총 3개(25억 2,000만원)의 신규 사업이 편성됨.[2)]

그 중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운영’ 사업은 2025년 광복 80년을 맞이하여 범국가적인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1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국정현안 대응 및 정책조정’ 사업은 정책 현장에서 정부와 국민이 민생현안을 논의하는 현장방문형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예산안(계획안)
[일반회계]		
1	광복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운영	2,129
2	국정현안 대응 및 정책조정	199
3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192
총지출		2,520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한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 사업,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 ‘내부 정보화’ 사업 등 총 3개임.[3)]

[2025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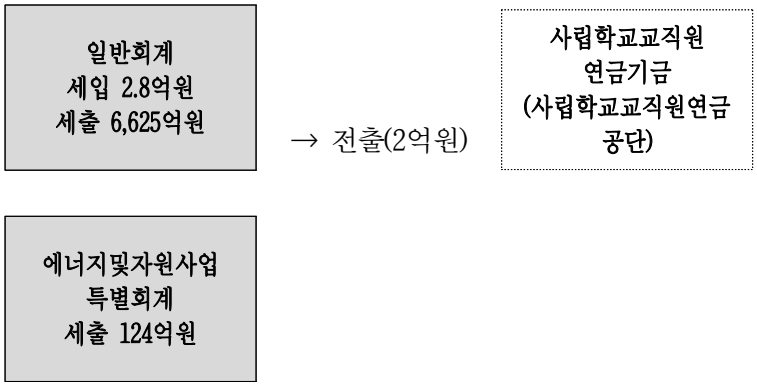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	88	537	449	510.2
2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	2,972	5,396	2,424	81.6
3	내부 정보화	1,655	2,472	817	49.4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등 1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주) 총계 기준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전체 사업 중 정부출연금과 인건비·기본경비의 비중이 높다는 점임. 74개 세부사업 중 30개가 정부출연금 사업으로, 금액으로는 6,749억원 중 5,460억원(80.9%)임.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예산은 1,289억원으로 이 중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745억원(57.8%)으로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함.

2025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운영 사업은 디지털기념관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하여 관리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편성 당시의 사업 목적 및 내용과 달리 해당 예산으로 홈페이지 신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예산 편성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둘째,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은 규제혁신추진단이 2025년 7월까지 존속예정임에도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임차료 및 홍보비가 존속기간 대비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존속기간을 고려하여 감액이 필요함.

셋째, 특별자치시·도 지원단 운영 사업은 특별자치시·도 지원단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할 예정이고 2024년 9월 기준 존속기한이 연장되지 않았음에도 존속기한 연장을 전제로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는데, 향후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먼저 존속기한을 연장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넷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중 일부 기관의 경우 수시연구사업비가 연례적으로 과다 이월되고 있으므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은 수시연구사업비가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운영 사업(신규): 디지털기념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편성의 적절성 검토 필요

가. 개 요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운영’ 사업은 2025년 광복 80년을 맞이하여 범국가적인 기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1억 2,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4)]

[2025년도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운영	-	2,129	2,129	순증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4. 7. 23. 제정 및 시행) 제12조에 따라 신설되어 같은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할 예정임.[5)]

---

4) 일반회계-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운영(7036-315)(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5)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범부처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국무조정실의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기획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획단에 관련 분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단 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ㅇ**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단 운영 21억 2,900만원**
- 일반수용비 13억 2,100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7,500만원
- 특근매식비 2,200만원
- 임차료 5억 2,200만원
- 관리용역비 1억원
- 기타운영비 600만원
- 직책수행경비 3,300만원
- 정책연구비 5,000만원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나. 검토의견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운영 사업은 디지털기념관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하여 관리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편성 당시의 사업 목적 및 내용과 달리 해당 예산으로 홈페이지 신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예산 편성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광복 80년 기념사업위원회의 디지털기념관 홈페이지를 메타버스, 챗봇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광복 60년·광복 70년 등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임. 특히 정부 정책 홍보 위주의 홈페이지가 아니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를 모아서 보여주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예정임. 이를 위하여 2025년 예산안에 디지털기념관 홈페이지에 기능을 추가·확대·개편하기 위한 관리용역비 1억원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디지털기념관 홈페이지는 2024년 10월 기준 아직 구축되지도 않은 상황임. 이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은 당초 전 부처 정책 홍보를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을 활용해 2024년에 디지털기념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계획을 변경하여 2025년에 이 사업에 편성된 관리용역비 1억원으로 신규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이라는 입장임.[6)]

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34755호, 2024. 7. 23.>
제2조(유효기간) 이 영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6) 국무조정실은 신규 홈페이지 구축을 위하여 관리용역비 중 일부를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할 계획임.

국무조정실은 광복 및 광복 80년 기념 사업에 대한 효과적 정보 제공 필요 등에 따라 디지털기념관 홈페이지의 신규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2025년 예산안 편성 시 신규 홈페이지 구축 시기, 예산 및 주관 부처 등 신규 홈페이지 구축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2025년 예산안에 신규 홈페이지 관련 구축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고 유지보수 관련 예산만 반영된 문제가 있음.

또한 예산안 편성 당시의 사업 목적 및 내용과 달리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홈페이지 신규 구축을 추진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디지털기념관 홈페이지 관련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운영 사업에 편성된 관리용역비의 적절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 추진단의 존속기간을 고려하여 임차료 등 감액 필요

가. 개 요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은 전직 공무원, 연구기관, 민간 등 민·관·연 협업을 통해 덩어리 규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억 1,100만원(△13.8%) 감액된 44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음.[7)]

[2025년도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5,154	4,443	△711	△13.8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4,282	3,821	△461	△10.8
규제혁신추진단 홍보	158	318	160	101.3

내역사업인 **‘규제혁신추진단 운영’**은 규제혁신추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추진단 운영 경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 6,100만원(△10.8%) 감액된 38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음.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38억 2,100만원**
- 추진단원 임금 16억 2,800만원
- 추진단 운영경비 2억 8,500만원
- 사무실 임차료 11억 3,900만원
- 업무추진비 1,400만원
- 직무수행경비 1,600만원
- 고용부담금 6억 9,600만원
- 추가 사무실 구성비 4,300만원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또 다른 내역사업인 **‘규제혁신추진단 홍보’**는 규제혁신추진단의 제도 활용도 및

7) 일반회계-규제혁신추진단 운영(7033-305)(규제혁신추진단)

규제혁신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6,000만원(101.3%) 증액된 3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음.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규제혁신추진단 홍보 3억 1,800만원**
- 인포그래픽・카드뉴스 등 제작 1,100만원
-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포털배너 광고 2억 700만원
- 홍보콘텐츠 제작 1억원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한편 규제혁신추진단은 정부의 규제혁신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규제혁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2022. 7. 20.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신설되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2025년 7월 19일까지 존속할 예정임.[8)]

나. 검토의견

첫째,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은 규제혁신추진단이 2025년 7월까지 존속예정임에도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임차료가 2024년 1년 기준 편성된 임차료와 동일하여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존속기간을 고려하여 감액이 필요함.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은 사무실 임차 등을 위하여 2025년 임차료로 1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24년에 임차료로 편성된 금액과 동일하여, 규제혁신추진단이 2025년 7월까지 존속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임차료가 실제 운영기간 대비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은 2025년 7월 규제혁신추진단의 운영이 종료되나, 종료 시기에 별도의 행사를 개최할 가능성이 있어 회의장소 임차 등을 위하여 전년과 같은 규모의 임차료를 편성하였다는 설명임.

그러나 행사의 개최 여부 및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고, 행사가 개최되더라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회의장 및 행사장은 공공시설을 우선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사를 위한 임차료를 별도 계상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9)]

8) 「규제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존속기한) 추진단은 이 훈령에 따라 설치된 날부터 3년간 존속한다. 다만,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2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둘째, 규제혁신추진단 홍보 사업은 규제혁신추진단이 2025년 7월까지 존속예정임에도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홍보비가 2024년 1년 기준 편성된 홍보비보다 많아 과다 계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홍보비를 일부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음.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은 2025년 홍보비로 3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24년에 12개월분 홍보비로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규제혁신추진단이 2025년 7월까지 존속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홍보비가 실제 운영기간 대비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임.

[2024년 및 2025년 규제혁신추진단 홍보비 예산 상세 산출내역]

24년 예산액(1억 5,800만원)	25년 편성액(3억 1,800만원)
-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등 콘텐츠 제작 800만원 - 포털 및 모바일(네이버, 유튜브, 카카오 등) 홍보 6,000만원 - 국민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4,000만원 = 1,000만원 ×4회 - 홍보콘텐츠 제작 5,000만원	-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등 콘텐츠 제작 1,100만원 = 1,800만원÷12개월×7개월 - 홍보콘텐츠 모바일(유튜브, 인스타그램) 홍보 1억 6,300만원 = (7,000만원×4회)÷12개월×7개월 - 포털(네이버, 다음) 배너 광고 7,900만원 = (3,400만원×4회) ÷12개월×7개월 - 국민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2,300만원 = (1,000만원×4회) ÷12개월×7개월 - 홍보콘텐츠 제작 1억원 = 5,000만원×2식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이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은 규제혁신추진단의 그동안의 추진성과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하여 규제 개선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규제혁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비를 증액편성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규제혁신추진단의 존속기간 종료 시점에서 그동안의 추진성과에 대한 홍보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년 그간의 추진 사항 및 추진성과에 대하여 규제혁신추진단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고, 규제 혁신은 각 부처의 정책을 통하여 구체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책 개편 시 해당 부처에서 직접 홍보를 하여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또한 2025년 예산안 상세 산출내역을 보면 포털 및 모바일 홍보 횟수를 2024년 대비 2.3배 증가할 계획이고, 홍보콘텐츠 제작 횟수도 전년 대비 2배 증가할 예정인데,

9)「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회의장 및 행사장은 각급 교육기관, 훈련기관 등 공공시설을 우선 활용하고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2025년에 7개월 존속 후 운영 종료되는 조직에 대한 홍보횟수와 홍보콘텐츠 제작 횟수를 전년 대비 증가하는 것도 합리적이라 보기 어려움.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의 홍보비는 일정 부분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음.

3. 특별자치시·도 지원단 운영 사업: 존속기한 연장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 부적정 등

가. 개 요

‘특별자치시・도 지원단 운영’ 사업은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특별자치시・도 지원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500만원(△7.3%) 감액된 4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음.[10)]

[2025년도 특별자치시·도 지원단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특별자치시・도 지원단 운영	481	442	△35	△7.3

특별자치시・도 지원단은 특별자치시・도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2022. 10. 27.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신설되었음.

[특별자치시·도 지원단 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특별자치시・도 지원단 운영 4억 4,200만원**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 6,570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6,060만원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3,560만원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3,560만원
- 지원단 운영비 2억 4,450만원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0) 일반회계-특별자치시・도 지원단 운영(7035-320)(특별자치시・도 지원단)

나. 검토의견

첫째, 특별자치시·도 지원단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할 예정이고 2024년 9월 기준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훈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존속기한 연장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향후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먼저 존속기한을 연장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특별자치시·도 지원단 운영 사업은 「특별자치시·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해당 훈령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에 따라 특별자치시·도 지원단의 존속기한도 2024년 12월 31일까지임.[11)]

그런데 2024년 9월 기준 아직 특별자치시·도 지원단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훈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5년에는 지원단의 존속 근거가 없음에도 2025년 예산안에는 지원단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이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은 '제주·세종·강원·전북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의 운영이 필요하고, 실질적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견인을 위하여도 권한 이양, 특례 등 제도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도 지원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이를 위하여 2024년 10월부터 「특별자치시·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여 11월까지 훈령을 개정함으로써 존속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정부 내부적으로 아직 존속기한의 연장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지원단의 예산을 존속기한 연장을 전제로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만약 훈령 개정 시기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존속기한이 1년 미만일 경우 필요한 예산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예산이 불필요하게 과다계상되기 때문임. 또한 훈령 개정 과정에서 지원단의 업무 범위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특별자치시·도 지원단 운영 사업은 존속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훈령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먼저 연장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11)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827호, 2022.10.27.>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둘째, 특별자치시·도 지원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근거조항의 유효기간이 도과하여 법률상 근거가 없음에도 국무총리훈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운영은 지원단 운영의 유효기간을 규정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2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조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단의 설치·운영상 근거조항임.[12] 정부도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을 마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단의 기능 및 구성 등을 규정하였음.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2는 유효기간이 2021년 6월 30일까지로, 2024년 9월 기준 별도의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특별법상으로는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2021년 7월부터는 법률상 근거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2는 2019년 법 개정으로 유효기간이 당초 2018년 6월 30일에서 2021년 6월 30일로 연장되었는데, 당시 유효기간을 2023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개정안과 상설화하는 개정안이 각각 발의되어 논의되었으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2019. 4. 4.)에서 한시 조직의 상설화 운영에 대한 지적 등으로 유효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

따라서 이러한 법률의 문언 및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단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훈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상설 조직처럼 운영되고 있어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2(사무기구의 설치) ①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6774호(2019. 12. 10.)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4. 협동연구지원 사업: 국제행사에 대한 국고 지원 요구 시 관련 절차 준수 필요

가. 개 요

‘협동연구지원’ 사업은 범국가적 정책과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미래전략, 글로벌 이슈 대응 등 多(다)학제적 융·복합 연구를 통해 정책대안을 개발·제시하고, 연구성과를 확산·공유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9억 7,500만원(198.3%) 증액된 44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음.[13)]

[2025년도 협동연구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협동연구지원	1,500	4,475	2,975	198.3

[협동연구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연구개발활동비 44억 7,500만원**
- 공공요금 140만원
- 수용비 3,470만원
-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700만원
- 여비 1,320만원
- 연구정보활동비 6억원
- 전문가활용비 9,100만원
- 회의비 2,940만원
-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42억 9,800만원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3) 일반회계-협동연구지원(1531-301)(경제·인문사회연구회)

나. 검토의견

협동연구지원 사업은 2025년 제13차 세계경제학자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국고 10억 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국제행사의 국고 지원 요구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문제가 있음.

2025년 8월 세계계량경제학회와 한국경제학회 주관으로 제13차 세계경제학자대회(World Congress of the Econometric Society)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2025년 협동연구지원 사업 예산안에는 제13차 세계경제학자대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10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음.[14)]

제13차 세계경제학자대회는 2025년 8월 18일~25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기조강연, 초청강연, 일반세션, 특별정책세션 등 본회의와 환영 리셉션 등 공식사교 프로그램, 그리고 전시회 등 부대행사로 구성될 예정임.

[제13차 세계경제학자대회 주요 일정(안)]

구분	8월 18일(월)	8월 19일(화)	8월 20일(수)	8월 21일(목)	8월 22일(금)
09:00 -10:45	Paired Invited Session	Paired Invited Session	Paired Invited Session	Paired Invited Session	Paired Invited Session
10:45 -11:15	Coffee Break	Coffee Break	Coffee Break	Coffee Break	Coffee Break
11:30 -12:45	Contributed Session	Contributed Session	Contributed Session	Contributed Session	Named Lecture
13:00 -14:00	Policy Session	Policy Session	Policy Session	Policy Session	Policy Session
14:15 -16:15	Contributed Session	Contributed Session	Contributed Session	Contributed Session	Contributed Session
16:15 -16:45	Coffee Break	Coffee Break	Coffee Break	Coffee Break	Coffee Break
17:00 -18:15	Presidential Address	Named Lecture	Named Lecture	Named Lecture	Named Lecture
18:30 -21:00	Welcome Reception			Gala Dinner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4) 세계계량경제학회는 1930년 Irving Fisher가 초대 회장으로 설립한 학술단체로 경제학의 거의 전 분야를 포괄하며, 2024년 현재 125개국 7,000명 이상의 기관 및 개인회원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세계경제학회임. 세계계량경제학회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학자들이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며, 석학회원 중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93명을 배출하고 역대 회장 중 28명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음. 또한 경제학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가지는 Econometrica를 학술지로 발행 중임.

세계경제학자대회 개최 지원과 관련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965년 첫 개최 이후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유치하지 못했던 행사로, 한국 경제성장의 성과를 홍보·전파하고 한국 경제학회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개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산업연구원(KIET) 등 경제 관련 소관 연구기관이 본회의 프로그램에서 연구 성과 등을 발표할 예정으로 관련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세계경제학자대회의 개최를 위한 국고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국제행사의 국고 지원 요구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지방자치단체·민간에서 주관하는 국제행사는 원칙적으로 국고지원을 금지하되, 범정부적인 행사 또는 국가대행·위탁행사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총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국고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음. 또한 20억원 미만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 주관 행사는 주무부처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예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중 국제행사 관련 발췌]

【기본지침】
□ 지방자치단체·민간에서 주관하는 국제행사는 원칙적으로 국고지원 금지
  ㅇ 다만, 범정부적인 행사 또는 국가대행·위탁행사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국고 지원
【항목별 지침】
① 국제행사
  ㅇ 20억원 미만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 주관 행사는 주무부처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요구
  - 행사 주관기관은 최초 국고지원이 필요한 연도의 전년도 3월말까지 국제행사개최계획서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
  - 주무부처의 장은 행사 주관기관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계획서를 첨부하여 예산 요구

그러나 제13차 세계경제학자대회 지원 예산은 이러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0억 1,000만원을 세계경제학자대회 개최를 위하여 지원할 예정이나 세계경제학자대회의 총사업비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국고 지원액이 총사업비의 30%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움.[15]

15) 이에 대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세계경제학자대회는 국내 연구기관·학술단체 등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는 행사이므로, 총 사업규모를 현 시점에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2025년 예산안에 편성된

또한 세계경제학자대회 개최 지원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지정된 기한(2024년 3월말)까지 국제행사개최계획서를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거나 계획서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도 않았음.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이 국제행사 지원 사업의 예산안 요구 및 편성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행사성 경비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행사의 개최 또는 지원은 자제하고, 국가정책적으로 개최 또는 지원 필요성이 있는 행사에 한하여만 적정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임.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제13차 세계경제학자대회 지원의 경우도 국제행사의 국고지원 요구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국가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지, 지원 규모는 적정한지 등에 대한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문제가 있음.

사업비는 경제정책·학술분야 컨퍼런스 개최를 위해 사용될 것이라는 입장임. 또한 세부 산출근거는 여러 주체들과 소관 연구기관 및 참여기관들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마련 중에 있다고도 설명함.

5.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청년친화도시와 지역특화 청년사업의 적절한 연계방안 마련 필요 등

가. 개 요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은 청년정책의 분석 및 이행상황 점검·평가, 청년과의 소통 활성화 및 청년참여 확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9억 5,000만원(△21.7%) 감액된 70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음.[16)]

[2025년도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8,984	7,034	△1,950	△21.7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2,270	2,770	500	22.0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운영	198	1,148	950	479.8

내역사업인 **‘청년통합지원 체계 구축’**은 중앙청년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의 공통업무와 지역특화 청년 사업 확대 추진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억원(22.0%) 증액된 27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27억 7,000만원**
- 지역센터 총괄 지원·관리 9억 2,600만원
- 청년정책 정보 수집·조사·연구 5,400만원
- **지역특화 청년사업 지원 17억원**
- 기타 홍보 및 성과확산 9,000만원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중앙청년지원센터와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는「청년기본법」제24조의4에 따라 지정·운영됨.[17)]

16) 일반회계-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7035-316)(청년정책조정실)

17)「청년기본법」

또 다른 내역사업인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운영’**은 청년친화도시 지정·평가, 조성계획 수립 지원 등을 위하여 전문가 컨설팅·교육, 지정도시 대상 실적 점검을 하는 한편, 청년친화도시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운영기반 마련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억 5,000만원(479.8%) 증액된 11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음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운영 11억 4,800만원**
- 제도운영 용역 1억 5,000만원
- 운영비용 4,800만원
- **청년친화도시 지원(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7억 5,000만원**
- 성과관리 방안 등 연구 2억원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의 개정 및 시행(2023. 3. 21. 개정, 2023. 9. 22. 시행)에 따라 제24조의6에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 관련 근거조항이 신설되면서 추진되는 것임.[18)]

제24조의4(청년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청년단체등 또는 청년시설을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년정책의 안내 및 홍보
2. 지역 청년단체, 청년시설 등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3. 지역의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과 관련한 조사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년지원 사업
5. 그 밖에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무총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센터의 사업을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단체를 중앙청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지역센터 및 중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8)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청년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청년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청년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절차,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첫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은 2025년부터 17개 시·도 지역 청년센터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청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이 증액편성되었으나, 2024년 9월말 기준 3개 시·도 지역의 청년센터 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2025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 청년센터 지정을 조속히 완료할 필요가 있음.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은 2025년부터 지역특화 청년사업을 확대 실시할 예정인데, 2024년까지는 중앙청년지원센터에서 각 지역 청년센터로부터 공모를 받아 선정 절차를 거친 후 각 지역센터에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17개 시·도(광역) 지역 청년센터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사업을 체계적으로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지역특화 청년사업의 2024년 및 2025년 예산안 산출내역 비교]

2024년(12억원)	2025년(17억원)
(12개 광역×4,000만원)+(30개 기초×2,500만원)	17개 시·도 × 1억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025년 개소별 사업비는 1억원으로 2024년 대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는 전국 센터별 공통사업 4,000만원과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사업 6,000만원으로 구성됨.

[2025년 지역특화 청년사업 센터별 사업비(1억원) 산출내역]

구분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공통 (표준화)	청년정책 연계 활성화 사업	4,000만원	- 청년정책진입상담: 3,000만원(30만원×100명) - 지역 청년자원협의체 운영: 1,000만원(250만원×연 4회)
자율	지역특성에 따른 청년사업 기획·운영	6,000만원	- 지역센터(17개소)에서 사업 직접운영 또는 관할 내 기초센터 프로그램 공모를 통한 운영
합 계		1억원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이와 같이 2025년 지역특화 청년사업은 2024년까지와는 달리 지역의 자율성을 보다 강화하여 17개 시·도 지역 청년센터에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이나, 2024년 9월말 현재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의 지역 청년센터 지정만 완료되고, 3개 시·도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19]

19) 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3개 시·도는 경북, 경남, 울산임.

이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른 청년지원센터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도가 있어 아직 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나,[20] 지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하여 2025년 1월까지는 17개 시·도 모두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는 설명임.

2025년 지역특화 청년사업은 17개 시·도 지역 청년지원센터가 운영상 기본 주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 지역 청년센터의 지정을 조속히 완료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무조정실은 2025년부터 청년친화도시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특화 청년사업과의 적절한 연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운영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추진되는데, 국무조정실은 2024년부터 매년 최대 3개 지역을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할 계획임. 청년친화도시의 지정기간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8제4항에 따라 지정일로부터 5년이고,[21] 국무조정실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하여 지정기간 동안 청년친화도시 조성방향 수립을 위한 자문·교육을 지원하며, 청년친화도시 관련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도 할 예정임.

2024년 9월말 현재 국무조정실은 청년친화도시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고, 2024년 12월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하여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청년친화도시를 운영할 예정임.

이를 위하여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운영 사업의 예산은 전년 대비 증액편성되었는데, 특히 청년친화도시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 7억 5,0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음.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청년친화도시 1개소당 2억 5,000만원씩 지원되는데 이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청년친화적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임.

그런데 청년친화도시의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과 앞서 논의한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의 지역특화 청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지역 청년사업

---

20)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5(청년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상담실 및 교육실을 각각 1개 이상 둘 것
2. 청년들의 교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둘 것
3.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와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부서를 둘 것
4. 종사자는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청년지원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21)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8(청년친화도시의 지정) ④ 청년친화도시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추진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유사한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은 청년친화도시는 지역 청년센터가 주도하는 지역특화 청년사업과 달리 기초자치단체 주도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역맞춤형 콘텐츠를 반영한 사업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두 사업 간 차별성이 있다는 설명임.

[청년친화도시 지원 사업과 지역특화 청년지원 사업의 차이점]

구분	청년친화도시 지원 사업	지역특화 청년지원 사업
추진주체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기초자치단체	광역 단위 청년센터(민간)
지원취지	- 청년정책 분야별 연계를 통한 도시 브랜드 창출 - 지역맞춤형 콘텐츠를 반영한 사업 모델 제시 - 청년, 민간 등 참여를 통한 지역 내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 확산	(공통) 정부 및 지자체 청년정책에 대한 안내·연결을 위한 정책상담과 지역사회 내 청년 자원에 대한 연계를 통한 청년정책 참여도·체감도 상승 (자율) 지역청년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청년사업을 청년센터가 직접 개발·운영하여 청년 삶의 질 향상 및 청년정책 발전 기여
2025년 예산안	7억 5,000만원(3개 지자체)	17억원(17개 시·도 지역 청년센터)
관리주체	국무조정실 (자치단체 경상보조)	지역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두 사업 모두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정책을 발굴·수행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성이 있고, 지역특화 청년지원 사업이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두 사업이 중첩되어 수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운영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두 사업 간 적절한 연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기관의 수시연구사업: 이월액 과다 발생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26개 기관의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7억 5,900만원(1.8%) 증가한 5,459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26개 기관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기관명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합 계	536,192	545,951	9,759	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8,777	22,122	3,345	17.8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6,914	17,123	209	1.2
국토연구원	22,185	24,387	2,202	9.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9,816	31,340	1,524	5.1
산업연구원	24,965	23,973	△992	△4.0
에너지경제연구원	11,631	12,374	743	6.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5,217	15,665	448	2.9
통일연구원	10,926	9,267	△1,659	△15.2
한국개발연구원	46,106	47,416	1,310	2.8
KDI국제정책대학원	25,608	21,407	△4,201	△16.4
한국교육개발원	22,219	22,079	△140	0.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5,327	26,154	827	3.3
한국교통연구원	18,858	18,515	△343	△1.8
한국노동연구원	15,849	16,244	395	2.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7,285	17,071	△214	△1.2
한국법제연구원	13,874	15,154	1,280	9.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3,871	23,786	△85	△0.4
육아정책연구소	8,135	8,503	368	4.5

기관명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6,087	16,933	846	5.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7,818	38,278	460	1.2%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2,543	23,586	1,043	4.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9,959	10,350	391	3.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1,305	21,103	△202	0.9
한국행정연구원	13,906	14,292	386	2.8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3,379	13,688	309	2.3
한국환경연구원	21,745	22,900	1,155	5.3
건축공간연구원	11,887	12,241	354	3.0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024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수시연구사업이란 기관고유 사업 중 기본연구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업연도 중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연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유관부처 등의 요청에 의해 기관 내부의 적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총액만 승인하는 예비 연구과제임. 수시연구사업은 각 기관별 기본연구비의 10~30% 범위에서 편성됨.[22)]

나. 검토의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중 일부 기관의 경우 수시연구사업비가 연례적으로 과다 이월되고 있으므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은 수시연구사업비가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0년~2023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수시연구사업비 집행 현황을 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3년 평균 실집행률이 70% 미만이고, 연내 집행되지 못한 연구비는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수시연구사업비가 연례적으로 과다하게 이월되고 있음.

22) 「2024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경제・인문사회연구회), p.2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중 수시연구사업비 과다 이월 기관(2024년 8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기관명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실집행률 (B/A)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2020	142	36	178	65	**113**	36.6
	2021	142	59	201	113	**88**	56.2
	2022	192	100	292	177	**115**	60.6
	2023	142	216	358	289	**69**	80.7
	2024	120	27	157	68	-	43.3
	2025(안)	133					
산업연구원	2020	201	127	328	184	**144**	56.1
	2021	201	176	377	215	**162**	57.0
	2022	201	84	285	128	**157**	44.8
	2023	271	136	407	244	**163**	59.9
	2024	175	275	450	129	-	28.8
	2025(안)	180					
한국개발 연구원	2020	150	41	191	89	**102**	46.8
	2021	180	79	259	125	**134**	48.2
	2022	100	105	205	156	**49**	76.0
	2023	70	22	92	20	**72**	21.4
	2024	89	-	89	8	-	8.7
	2025(안)	68					
한국교육 과정평가원	2020	255	307	562	251	**311**	44.6
	2021	245	399	644	342	**315**	53.0
	2022	245	454	699	265	**393**	37.9
	2023	245	482	727	318	**360**	43.8
	2024	159	330	489	229	-	46.8
	2025(안)	159					
한국노동연구원	2020	129	46	175	86	**89**	49.2
	2021	127	180	307	177	**130**	57.7
	2022	127	206	334	199	**134**	59.7
	2023	96	133	229	165	**65**	71.8
	2024	78	70	148	99	-	66.9
	2025(안)	116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2020	157	117	274	181	**93**	66.1
	2021	364	92	456	220	**236**	48.2
	2022	237	158	395	197	**198**	49.9
	2023	148	148	296	224	**72**	75.7
	2024	155	240	395	9	-	2.3
	2025(안)	117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수시연구사업은 기본연구사업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기본연구과제와는 달리 연초에 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연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적 성격이 있어 연내 전액을 집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은 있음.

그러나 수시연구사업에 예비비적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고려하였을 때 매년 연례적으로 과다한 규모의 이월이 발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수시연구과제는 주로 정책현안 과제인 경우가 많아 정책연구의 시의성을 고려하면 오히려 조속히 완료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따라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은 매년 연례적으로 과다한 규모의 이월액이 발생하는 수시연구사업비의 총액을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재조정하거나,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수시연구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지침상 수시연구사업비의 편성비율을 재검토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가보훈부

Ⅰ. 개 관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총수입은 2,158억원으로, 전년 대비 40억원(1.9%) 증가함. 예산은 101억원으로 전년 대비 1억원(1.0%) 증가하고, 기금은 2,057억원으로 전년 대비 39억원(1.9%) 증가함.[1)]

[2025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100	101	1	1.0
기 금	2,018	2,057	39	1.9
총수입	2,118	2,158	40	1.9

문의 : 정지현 예산결산조사관 jihyunjung95@assembly.go.kr (02-6788-5696)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총지출은 6조 4,814억원으로 전년 대비 757억원(1.2%) 증가함. 예산은 6조 2,635억원으로 전년 대비 844억원(1.4%) 증가한 반면, 기금은 2,179억원으로 전년 대비 87억원(△3.8%) 감소함.

[2025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61,791	62,635	844	1.4
기 금	2,266	2,179	△87	△3.8
총지출	64,057	64,814	757	1.2

나. 예산안

2025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예산안은 총 3개 회계(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3개 회계(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01억원으로 전년 대비 1억원(1.0%) 증가함.

[2025년도 국가보훈부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98.5	98.6	0.1	0.1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0.7	0.7	-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1	1.5	0.4	41.3
합 계	100	101	1	1.0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3개 회계(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조 3,561억원으로 전년 대비 843억원(1.3%) 증가함.

[2025년도 국가보훈부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62,562	63,438	876	1.4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133	99	△34	△25.7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3	24	1	3.0
합 계	62,718	63,561	843	1.3

주) 총계 기준

다.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2개 기금(보훈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8,454억원으로 전년 대비 963억원(12.8%) 증가함.

[2025년도 국가보훈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보훈기금	6,004	6,004	6,962	958	15.9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487	1,487	1,492	5	0.3
합 계	7,491	7,491	8,454	963	12.8

주) 총계 기준이며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국가보훈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총 2개(210억 7,200만원)의 신규 사업이 편성됨.[2)]

그 중 ‘광복80주년 기념사업’ 사업은 광복 80주년을 전 국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국민통합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범국민 감사캠페인, 국민통합 문화예술축제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97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국립서울현충원’ 사업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4.1.23.)으로,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24.7.24.)된 국립서울현충원의 운영 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13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국가보훈부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예산안(계획안)
[일반회계]		
1	광복80주년 기념사업	9,739
2	국립서울현충원	11,333
합 계		21,072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한편, 국가보훈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보상금’, ‘6·25자녀수당’, ‘국립묘지조성’ 사업 등 총 12개임.[3)]

‘보상금’ 사업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위해 지급 단가를 인상하고 보훈대상자 간 보상 격차 완화를 위해 7급 상이자는 추가 인상하여 전년 대비 1,125억 9,900만원이 증액된 3조 5,807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국립이천호국원’ 사업은 2017년 만장으로 증가하는 수도권 안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묘역확충 마무리, 안장 재개를 위한 인력 충원, 현충관 리모델링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3억 1,600만원이 증액된 208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음.

‘히어로즈패밀리프로그램’ 사업은 가족간 소통채널·국내 프로그램·국제교류캠프 운영, 민간후원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히어로즈패밀리 멘토 활동 지원 사업을 확대함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5,800만원이 증액된 8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국가보훈부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보상금	3,468,124	3,580,723	112,599	3.2
2	6·25자녀수당	403,289	428,693	25,404	6.3
3	대구보훈병원외래시설개선	1,130	7,490	6,360	562.8
4	보훈병원의료환경개선	478	1,068	590	123.4
5	현충시설관리	4,916	6,944	2,028	41.3
6	국립영천호국원	10,402	13,620	3,218	30.9
7	국립이천호국원	13,541	20,857	7,316	54.0
8	국립묘지조성	12,452	38,123	25,671	206.2
9	사회복무요원운용	542	836	294	54.2
[보훈기금]					
10	히어로즈패밀리프로그램	617	875	258	41.8
11	참전기념사업지원	456	687	231	50.7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2	독립운동관련문헌발간	267	589	322	120.6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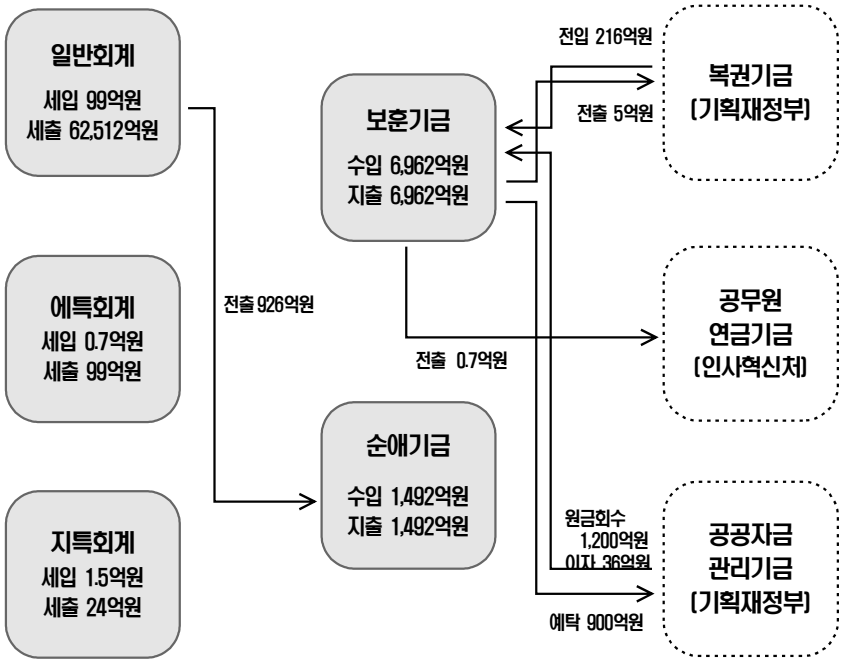
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국가보훈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 보훈기금·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등 2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으로 926억원이 전출되었음.

다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복권기금에서 보훈기금으로 216억원이 전입되었으며, 보훈기금에서 복권기금으로 5억원, 공무원 연금기금으로 0.7억원이 각각 전출되었음.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보훈기금으로 1,200억원의 예탁원금과 36억원의 예탁이자가 상환되었으며, 보훈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900억원이 예탁되었음.

[국가보훈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주) 총계 기준

4.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수준을 꾸준히 높이면서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강화와 함께 마지막 예우를 위한 국립묘지 확충에 노력하였으며,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 사업을 확대한 것을 들 수 있음.

2025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사업’은 국내 독립운동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라는 사업목적과, 사업부지 미확정 및 공사비 규모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예산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둘째, ‘독립의 전당’ 사업은 2024년 7월말 기준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2024년 기편성된 34억 400만원의 공사비가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5년도 예산안 70억 3,400만원이 2025년도 내에 집행가능한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셋째, ‘대구 보훈병원 외래시설개선’ 사업의 실시설계 기간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관한 지침」을 고려할 때 2개월 과소계상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우려되므로 집행가능한 공사비 소요액을 예산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사업(신규): 신규 사업 추진에 대한 종합적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사업은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국내 독립운동 계열 중심으로 기념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4억 3,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4)]

[2025년도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현충시설 건립	7,083	7,758	675	9.5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	439	439	순증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다양한 국내 독립운동 분야(교육・문화・계몽 및 학생운동 등 분야)의 선양・홍보를 위해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신규 건립을 추진할 계획임.

4) 일반회계-현충시설 건립(3146-405)(보훈문화정책실)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사업 개요]

○ 사업위치: 수도권 등(사업부지 미확정)
○ 사업기간: 2025~2027년(3년)
○ 총사업비: 245억원(설계비 13억 3,000만원, 공사비 206억원, 감리비 23억 7,000만원, 시설부대비 2억원)
○ 사업규모: 지하 1층 ~ 지상 2층(연면적 5,000㎡)
○ 사업내용: 다목적교육장, 전시실, 회의실 등 건축

자료: 국가보훈부

이 사업 2025년도 예산안은 총 4억 3,900만원으로, 기본조사설계비(420-01목) 3억 9,900만원, 시설부대비(420-05목)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 기본조사설계비(420-01목) 3억 9,900만원
: 총 설계비 13억 3,000만원×30%
○ 시설부대비(420-05목) 4,000만원
: 총 시설부대비 2억원×16%

자료: 국가보훈부

나. 검토의견

국내 독립운동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라는 사업목적과, 사업부지 미확정 및 공사비 규모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예산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국내에서 일어난 교육·문화·계몽 및 학생운동 등 다양한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선양·홍보의 장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 독립운동 전반에 대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린다는 사업 목적에 따라,

국내 독립운동의 활동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미래세대의 보훈의식을 고취시켜 일상속 보훈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신규로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다만,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① 먼저 사업부지와 관련하여, 현재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의 사업부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현재 수도권 내 국유지 및 시유지를 비롯해

다양한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고, 향후 부지가 확정되면 부지 및 주변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구체적으로, 국가보훈부는 2025년 1월부터 2월까지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위한 공모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부지를 확정하고, 3월에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2025년 8월부터 11개월간 설계용역을 실시하며, 2026년 7월 이후 착공 예정이라고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함.

[국가보훈부의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사업 추진계획]

○ (2025.1~2월) 공모 계획 수립 및 사전 절차(건축심의 등) 이행 ○ (2025.3~7월) 설계 공모 및 계약 ○ (2025.8~2026.6월) 기념관 설계 및 인허가 절차 수행 ○ (2026.7~2027.12월) 기념관 공사 및 준공

자료: 국가보훈부

그런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및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르면, 사업부지가 확정되지 않으면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기획업무[5]가 완료될 수 없어 순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2025년도 예산안의 기본조사설계비(계획설계 및 중간설계를 하기 위한 비목)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지연될 수 있음.[6]

또한, 추후 토지매입비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음.

② 다음으로 공사비 측면에서, 국가보훈부는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사업의 공사비를 206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국가보훈부는 연면적 5,000㎡의 지상1층/지상2층의 기념관 건립을 예정하며 면적당 공사비를 311만원/㎡으로, 이에 따른 총 공사비를 206억원으로 산출하고 있는데, 국가보훈부는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유사 시설 및 과거 보훈부에서 추진했던 공사 등을 적용하여 면적당 공사비를 311만원/㎡으로 산출한 것이라는 입장임.[7]

---

5) 기획업무는 건축물의 규모 검토, 현장조사, 설계지침 등 건축설계 발주에 필요하여 발주자가 사전에 요구하는 설계업무로서 공간계획(법규검토, 개략배치도, 대지종횡단면도, 개략평면도, 개략단면도), 현장조사(대지 및 주변현황 확인, 대지 및 주변현황 분석, 사용자 조사, 기존 시설물 분석), 설계지침서, 프로젝트 공정표, 기존 유사건물조사 비교 등의 내용이 포함됨.

6)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건축분야의 기본조사설계비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의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이 때,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 제6조(설계업무)에 따르면, 기획업무의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가 '계획설계'이고, '중간설계'는 계획설계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는 것임. 사업부지 미확정으로 인해 '기획업무'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음.

그런데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면적 5,000㎡의 전시·박물관을 신축하는 경우 면적당 공사비는 460만원/㎡이고,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전시·박물관)]

(단위: 천원/㎡)

구분	신축	증축(수평)	증축(수직)	비고
3,000㎡ 미만	4,811	4,571	4,137	전시물 및 전시대 설치비 제외
3,000㎡~5,000㎡	4,646	4,454	-	
5,000㎡~10,000㎡	4,578	4,363	-	
10,000㎡초과	4,519	4,293	-	
평균	4,598	4,366	-	

주)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2024년 2월 5일 기준 해당 자료가 최신의 가이드라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2024년 10월 9일 기준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배포되지 않고 있어 해당 가이드라인의 수치를 참고함
자료: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2022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경기도는 서울특별시의 해당 가이드라인(460만원/㎡)과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에서 유형별 예상공사비를 참고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에서 최근 3개년 전시시설 단위면적당 공사비 평균을 산출한 값은 355만원/㎡임.

[2021~2023년 연면적 5,000㎡ 상당 전시시설 단위면적당 공사비]

공고 일자	공사명	지역	층수		연면적 (㎡)	공사비 (백만원)	단위면적당 공사비 (천원/㎡)	계약금액 (백만원)
			지하	지상				
2023. 10.27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사업	경기	0	3	4,772	19,292	4,043	11,893
2023. 03.27	국토녹화 50주년 기념관 건립공사	세종	1	2	3,841	16,274	4,237	9,148
2023. 10.18	공주대학교 미래융합역사문화관 신축공사	충남	1	4	5,512	17,149	3,111	10,908
2022. 10.13	국립나주박물관 디지털복합문화관 건립 건축공사	전남	1	2	4,393	18,546	4,222	11,530
2022.	임당유적전시관	경북	1	2	4,942	18,183	3,679	9,829

7) 한편 국가보훈부는 전시면적을 포함할 경우 면적당 공사비는 412만원/㎡라고 설명함.(건립공사 단위면적당 공사비 311만원/㎡로 156억원, 전시공사 500평(1,650㎡) 당 1,000만원으로 50억원-전시공사 단가 기준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시관 구성 단가 1,000만원과 동일하게 산정)

공고 일자	공사명	지역	층수		연면적 (㎡)	공사비 (백만원)	단위면적당 공사비 (천원/㎡)	계약금액 (백만원)
			지하	지상				
09.26	건립 건축공사							
2022. 08.03	익산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사업	전북	1	2	4,385	13,086	2,984	7,723
2022. 04.19	달성 화석박물관 건립공사	대구	1	3	5,916	18,779	3,174	11,340
2021. 11.16	국립여수해양기 상과학관 건축공사	전남	1	3	5,377	16,087	2,992	9,915
평균 단위면적당 공사비(천원/㎡)							3,555	

주) 2021~2023년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에서 조회한 전시시설 공사비의 대상은 총 18개이나,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사업과 연면적이 유사한 수준(5,000㎡) 내외의 8개 공사를 대상으로 평균값을 산출함
자료: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하여는 국내 독립운동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라는 사업목적과, 사업부지 미확정 및 공사비 규모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예산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2. 독립의 전당 사업: 2025년도 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독립의 전당’** 사업은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의 정신을 기릴 위패봉안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8억 8,800만원(69.7%)이 증액된 70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음.[8)]

[2025년도 독립의 전당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현충시설 건립	7,083	7,758	675	9.5
독립의 전당	4,146	7,034	2,888	69.7

이 사업은 서대문독립공원 내 독립관의 ‘순국선열위패봉안관’이 협소·노후하여 새로운 위패봉안관 건립이 필요해짐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당초 국가보훈부는 2016년부터 독립의 전당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부지가 문화유산보호구역·공원 내에 위치하여 문화유산현상변경 승인 및 도시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건립이 지연되었음.

이에 따라 2016년~2017년 예산은 전액 불용되었고,[9)] 2018~2021년 동안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음. 이후 2022년부터 예산이 다시 편성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국가보훈부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내에 독립의 전당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독립의 전당 사업 개요]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부
○ 사업위치 : 서대문독립공원 내(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
○ 사업기간: 2022~2025년(4년)
○ 사업규모: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2,552㎡
○ 주요시설 : 위패봉안실, 체험 교육장, 사무실, 편의시설 등
○ 총사업비 : 11,900백만원(전액 국비)

자료: 국가보훈부

8) 일반회계-현충시설 건립(3146-405)(보훈문화정책실)

9) 2016년 예산 10억원 전액 불용된 이후 2017년 예산 20억원 전액 불용됨.

2025년도 이 사업 예산안 70억 3,400만원은 잔여 공사비(2년차) 60억 5,600만원, 감리비 9억 5,800만원, 시설부대비 2,000만원으로 구성됨.

나. 검토의견

독립의 전당 사업은 2024년 7월말 기준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2024년 기편성된 34억 400만원의 공사비가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5년도 예산안 70억 3,400만원이 2025년도 내에 집행가능한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독립의 전당 사업은 2024년 7월말 기준 예산현액 41억 9,500만원 중 100만원이 집행(집행률 0.02%)되었음. 이러한 저조한 집행 사유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독립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공원조성계획 심의에 기간이 소요되어 집행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함.

[2022~2024.7. 독립의 전당 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22	226	226	-	-	226	152	69	5	67.3
2023	494	494	69	-	562	421	49	93	74.9
2024.7.	4,146	4,146	49	-	4,195	1	-	-	0.02

자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는 2024년 9월 문화유산위원회 허가사항에 대해 변경허가가 결정되었고, 독립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관련 주요 인·허가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므로 2024년 11월까지 인·허가 관련 최종 조치 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한 후, 공사 관련 계약을 2024년 12월에 실시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2024년 예산액 41억 4,600만원 중 14억 6,800만원을 연내 집행 예정이며, 21억 7,300만원은 이월하고 5억 500만원을 불용할 예정으로, 연내 착공 및 선금 지급 검토 등을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2025년 내에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설명함.

[2024년 예산액 집행예상액 및 이월·불용예상액]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집행예상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공사비(420-03목)	3,404	1,191	1,788	425
감리비(420-04목)	638	223	335	80
시설부대비(420-05목)	104	54	50	-
계	**4,146**	**1,468**	**2,173**	**505**

자료: 국가보훈부

그러나,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입찰공고의 기간을 고려하면 2024년과 2025년에 국가보훈부의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집행될 것으로 보임.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입찰공고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계약하고 착공해야 하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라 입찰공고만 최소 40일이 소요됨.[10)]

그 외에 제안요청서 작성, 조달청 협의, 낙찰자 결정 후 협상 및 계약과정을 고려하면 통상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임. 이를 고려하면 착공까지 최소 2개월이 소요될 것이므로, 2024년도 내 공사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2024년 내 공사비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월예상액이 국가보훈부가 계획하고 있는 21억 7,300만원보다 큰 규모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전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이월 예상액 등을 고려하여 당초 소요보다 (공사비를) 축소하여 반영'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독립의 전당 사업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2025년도 예산안 70억 3,400만원이 2025년도 내에 집행가능한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10)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사업관리 노력을 철저히 하여 이월 금액을 최소화할 것이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긴급 공고 사유 등을 적용하여 최대한 공고기간 단축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입장임.

3. 국립연천현충원 조성: 적정 공사비 반영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국립연천현충원 조성’** 사업은 경기·강원권 안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연천 지역에 국립묘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43억 1,400만원(903.7%) 증액된 381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음.[11)]

[2025년도 연천현충원 조성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국립묘지조성	12,452	38,123	25,671	206.2
국립연천현충원 조성	3,797	38,111	34,314	903.7

국립연천현충원은 서울과 대전에 이어 국내 3번째로 조성하는 국립현충원으로, 봉안당 2만 5,000기, 봉안담 2만기, 자연장 5,000기 등 총 5만기 규모의 봉안시설을 갖출 예정임.

[국립연천현충원 조성 사업 개요]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부
○ 사업위치 :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95만 9000여㎡
○ 사업기간: 2019~2026년(8년)
○ 주요시설 : 봉안당 2만 5,000기, 봉안담 2만기, 자연장 5,000기 등 총 5만기 규모의 봉안시설
○ 총사업비 : 1,263억원(2019년 983억원→2023년 1,020억원→2024년 1,263억원)

자료: 국가보훈부

당초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979억 9,200만원이어서, 「국가재정법」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 사업이었으나,[12)]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23년에 재정당국 요청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였음.[13)]

---

11) 일반회계-국립묘지조성(3250-364)(보훈예우국)

12) 「국가재정법」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계획단계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거친 이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구상·기본계획 수립·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매 단계를 거칠 때마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협의할 필요가 있음. 이는 사업 추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사업규모·기간 등의 조정단계를 거치도록 하여 비효율적 예산운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국립연천현충원 조성 사업 시기별 주요 추진경과]

시기	주요 사업추진경과
2018.10.	경기·강원권 국립묘지 조상 예비타당성 면제 요구서 제출
2018.12.	예비타당성 면제 보류 판정(사유: 사업계획 구체성 미흡)
2019.1.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 총사업비 신규등록(979억 9,200만원)
2019.12.	기본계획 수립 완료
2020.11.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 실시협약(국가보훈부-경기도-연천군) 체결
2021.11.	계획설계 완료
2022.6.	설계보상비·건설보상비 부족분 발생 사유로 증액 조정(983억원 → 1,020억원)
2023.4.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이행(23.4.~23.11.)
2023.11.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이행 완료 및 총사업비 증액 조정(1,020억원 → 1,214억원)
2024.9.	총사업비 증액 조정(1,020억원 →1,263억원)

자료: 국가보훈부

2024년 9월 총사업비 조정 결과, 최종적으로 1,262억 9,700만원의 총사업비가 확정되었고, 공사비는 986억 9,600만원, 보상비는 165억 3,900만원, 설계비 65억 2,700만원, 감리비 43억 2,000만원, 시설부대비 2억 1,500만원임.

[국립연천현충원 조성 사업 총사업비 조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3.11. (A)	2024.9. (B)	증감 (B-A)
1. 공사비	74,216	98,696	24,480
2. 보상비 - 토지매입비 - 기타	16,539	16,539	-
3. 시설부대경비	11,205	8,444	△2,761
○설계비	6,527	6,527	-
○감리비	3,737	4,320	583
○시설부대비(관리비)	941	215	△726
합계	**101,960**	**126,297**	**21,576**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립연천현충원 조성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총 381억 1,100만원으로, 이는 공사비 360억 2,300만원, 감리비 17억 200만원, 설계비 4억원에 부대비 1,400만원을 제한 금액임.[14]

13) 국가보훈부는 동 사업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안장수요 급증 등으로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어 예산에 우선 반영하였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이행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사업규모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쳤다는 입장임.

14) 2024년 총사업비 조정결과 부대비가 9억 4,100만원→2억 1,500만원으로 감소하였는데, 사업시행 이후 2024년까지 기편성된 부대비가 2억 2,900만원임에 따라 차액인 1,400만원을 제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나. 검토의견

국립연천현충원 조성 사업은 2023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시행(2023.4.~2023.11.)으로 인해 2023년 이후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고, 2024년 10월 현재 공사 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2025년도 예산안에 적정 공사비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국립연천현충원 조성 사업은 2021년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집행이 저조하게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2022년까지 높은 집행실적을 보였음. 그러나 2023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시행하면서, 예산현액 163억 3,400만원 중 37억 200만원만 집행(집행률 22.7%)되고 123억 7,600만원이 불용되었음.

이에 따라 사업이 연쇄적으로 지연되어 2024년 9월말 기준 예산현액 40억 5,300만원 중 1억 7,400만원만 집행(집행률 4.3%)되었음.

[국립연천현충원 조성 사업 시행 이후 연도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19	1,518	1,518	-	-	1,518	1,467	-	51	96.6
2020	10,896	10,896	-	-	10,896	10,864	-	32	99.7
2021	5,938	5,938	-	△114	5,824	2,421	3,059	344	41.6
2022	1,115	1,115	3,059	-	4,174	4,075	-	99	97.6
2023	16,334	16,334	-	-	16,334	3,702	256	12,376	22.7
2024.9.	3,797	3,797	256	-	4,053	174	-	-	4.3
2025(안)	38,123								

자료: 국가보훈부

집행부진이 발생하고 있는 2023년부터 비목별 집행현황을 보면, 국가보훈부는 2023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인해 공사비 111억 1,400만원을 불용한 이후 2024년 37억 2,900만원의 공사비 예산현액 중 1억 1,800만원(집행률 3.2%)을 집행하고 있음. 이는 매장문화재 표본 및 시굴조사를 위해 집행되었음.

[2023~2024.9. 국립연천현충원 조성 사업 비목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본예산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현액	집행액('24.9.)
합계	**16,334**	**-**	**16,334**	**3,702**	**256**	**12,376**	**4,053**	**174**
건설보상비(410-00)	3,686	-	3,686	3,686	-	-	-	-
기본조사설계비(420-01)	743	-	743	-	47	696	47	-
공사비(420-03)	**11,232**	**-**	**11,232**	**-**	**118**	**11,114**	**3,729**	**118**
감리비(420-04)	566	-	566	-	-	566	115	-
시설부대비(420-05)	107	-	107	16	91	-	162	56

자료: 국가보훈부

현재 국가보훈부는 국립연천현충원 조성 사업의 본공사를 위한 입찰 중에 있는데, 국가보훈부는 조달청을 통해 이 사업 본공사 입찰공고를 2024년 6월 21일에 공고하여 2024년 10월 22일에 개찰을 실시할 예정으로, 2024년 11월 이후에야 공사 계약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를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2025년도의 공사가 1차년도 공사임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소요를 예산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사업: 실시설계 기간 과소계상

가. 개 요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사업은 개원 후 30년 경과로 노후화된 대구보훈병원 서관동을 철거 후 재건축(증축)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3억 6,000만원(562.8%) 증액된 74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음.[15)]

[2025년도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1,130	7,490	6,360	562.8

이 사업은 2023년 신규 추진된 사업으로, 노후화된 대구보훈병원 서관동 철거 후 지하2층~지상5층 규모로 재건축하는 것임. 2023년부터 2027년(5년) 동안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478억 7,500만원으로,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며 국비 70%·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자부담 30%인 사업임.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사업 개요]

○ 보조사업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사업규모)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10,482㎡, 110개 병상 * 면적 8,302㎡↑(2,180㎡→10,482㎡), 병상 22개↑(88개→110개), 주차장 60면(순증) 등 ○ (사업기간) 2023년~2027년 ○ (총사업비) 47,875백만원(국비 70% 지원) 공사비 39,431백만원, 보상비 850백만원, 설계비 1,740백만원, 감리비 4,509백만원, 시설부대비 185백만원, 기타 투자비 등 2,160백만원

자료: 국가보훈부

2025년도 예산안 74억 9,000만원은 3년차 사업의 공사비(1차년도 공사비) 소요액 96억 800만원 중 국고 부담액인 74억 9,000만원이 편성된 것임.

15) 일반회계-대구보훈병원외래시설개선(2156-393)(복지증진국)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설 사업 총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의료장비 등	계
2023			120 (87)		15		135 (87)
2024		850	1,620 (1,130)	366			2,836 (1,130)
2025	9,608 (7,490)			716	70		10,394 (7,490)
2026	19,215 (14,582)			2,164 (1,663)	100	410	21,889 (16,245)
2027	9,608 (6,380)			1,263 (1,263)		1,750 (910)	12,621 (8,553)
계	**38,431 (28,452)**	**850**	**1,740 (1,217)**	**4,509 (2,926)**	**185**	**2,160 (910)**	**47,875 (33,505)**

주) 괄호 안은 국비
자료: 국가보훈부

나. 검토의견

현재 국가보훈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구 보훈병원 외래시설개선 사업의 실시설계 기간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관한 지침」을 고려할 때 2개월 과소계상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우려되므로 집행가능한 공사비 소요액을 예산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대구 보훈병원 외래시설개선 사업은 2023년 3월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공건축 심의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음. 보조사업자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2023년 7월 설계 공모를 실시하여, 11월에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음. 현재 이 사업은 중간설계 마무리 후 실시설계를 예정 중에 있어, 2025년 3월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함.

[대구 보훈병원 외래시설개선 사업 추진현황]

일정	추진내용
2023년 3월	▸사업계획 수립
2023년 3월~7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약정 체결 등

일정	추진내용
2023년 7월~11월	▸ 설계업체 계약 추진
2023년 11월~2024년 5월	▸ 설계 실시(계획설계)
2024년 6월~10월	▸ 중간설계
2024년 11월~2025년 3월	▸ 실시설계 예정
2025년 7월	▸ 착공 예정

자료: 국가보훈부

이에 따라, 대구 보훈병원 외래시설개선 사업의 실집행현황을 보면, 사업 2차년도인 2024년부터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2024년 7월말 기준 보조사업자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교부현액 11억 3,000만원 중 2억 5,800만원(22.8%)을 실집행하였음.

[대구 보훈병원 외래시설개선 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국가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23	350	350	87	87	-	87	87	-	-	100.0
2024.7.	1,130	1,130	1,130	1,130	-	1,130	258	-	-	22.8

자료: 국가보훈부

그런데, 현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계획에 따르면 대구 보훈병원 외래시설개선 사업은 2025년 7월 착공 예정인데,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관한 지침」 상 공종별·설계단계별 공사비 대비 설계기간을 고려하면 현재 실시설계 기간(5개월)이 과소하게 계상되어 있어, 추가적인 사업지연이 예상됨.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3조제1항은 발주청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충분한 설계기간을 부여하여 최적의 설계품질이 확보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음.

이 고시는 공사의 규모와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종별 설계기간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478억 7,500만원 규모이고, 공사비가 384억 3,100만원인 대구 보훈병원 외래시설개선 사업은 기본설계에 4.5개월, 실시설계에 7개월을 적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공종별·설계단계별 공사비 대비 설계기간]

(단위: 개월)

공종	기본설계			실시설계		
	100-500억	500-1,000억	1,000억이상	100-500억	500-1,000억	1,000억이상
건축	**4.5**	7	9.5	**7**	7.5	8

자료: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관한 지침」[별표1]

그런데, 대구 보훈병원 외래시설개선 사업의 경우 5개월(2024년 11월~2025년 3월)의 실시설계 기간을 반영하고 있어, 충분한 설계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최적의 설계품질을 확보하려는 동 지침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할 소지가 있고, 추가적으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임.

동 지침에 따라, 2개월의 실시설계 기간을 추가로 고려하면 본공사 착공은 2025년 9월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그렇다면 2025년도에 최대 4개월 동안 1차년도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인데, 예정된 공사비 74억 9,000만원(전체 국비 투입 공사비의 26.3%)을 보조사업자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모두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임.

따라서, 2025년도 예산안에는 과소계상된 실시설계 기간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소요만큼의 공사비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5.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 연례적 집행부진에 따른 사업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은 보훈단체의 사무실 제공 및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친목도모와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인 지방보훈회관 건립을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7억 5,000만원(△46.7%)이 감액된 20억원이 편성되었음.[16)]

[2025년도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지방보훈회관 건립	3,750	2,000	△1,750	△46.7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부지와 지방비를 확보할 경우 국비로 보조금 정액을 지원하는데, 광역시·도는 총사업비의 50%(최대 15억원) 이내를 지원하고 시군구는 총사업비의 30%(최대 5억원) 이내를 지원함.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부터 지방보훈회관 건립이 추진된 5개소에 대해 12억 5,000만원이, 2025년 신규로 추진될 3개소(사천, 이천, 순창)에 대해 7억 5,000만원이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목)으로 반영되었음.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을 통해 구축된 지방보훈회관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신규 구축	9	12	7	3	8	3	5	4	2
누계	51	63	70	73	81	84	89	93	95

자료: 국가보훈부

16) 일반회계-지방보훈회관건립(1238-321)(보훈단체협력관)

나. 검토의견

2024년 신규로 지원된 후 2025년도 예산에 2차년도 사업비가 반영된 5개 지방보훈회관 중 4개소가 2024년 8월말 기준 예산액 전액이 실집행되지 않았고,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 관련 연례적으로 실집행부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가보훈부는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의 과도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예산안은 신규로 건립 예정인 3개소 외에 2024년부터 추진된 5개소(화순군, 인천 연수구, 고창군, 진안군, 대구 달서구)에 대한 2차년도 지원액이 12억 5,000만원 반영되었음.

해당 개소들은 2024~2025년 2개년도에 걸쳐 완공될 계획인데, 2024년 8월말 기준 진안군 국비 실집행액 9,200만원이 집행된 것을 제외하면 4개소에서 실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바, 대부분 사전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 중 2024년 신규사업(2개년도 사업) 실집행 실적('24.8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총사업비			국비 실집행 실적		
	국비	지방비	계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화순군 ('24~'25)	500	1,200	1,700	250	0	0
인천 연수구 ('24~'25)	500	8,425	8,925	250	0	0
고창군 ('24~'25)	500	3,800	4,300	250	0	0
진안군 ('24~'25)	500	3,400	3,900	250	92	36.8
대구 달서구 ('24~'25)	500	6,429	6,929	250	0	0

주) 2024년 신규 지원 개소 중 서울 송파구는 지방비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하였고, 동해시의 경우 2024년 단년도 사업으로 지원됨

자료: 국가보훈부

한편, 2023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어 2025년 이후 국비 투입이 없는 개소들의 경우에도, BF(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결과 지적사항 보완, 실시설계용역 등 지연으로 인해 2024년 내에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임.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 중 2023년 신규사업 실집행 실적('24.8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총사업비			국비 실집행 실적			비고
	국비	지방비	계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안동시 ('23~'24)	500	3,634	4,134	500	284	56.8	· 설계 용역('23.3.~'24.3.) · 착공 및 준공('23.12.~'25.2.) * 공정률 42%
김포시 ('23~'24)	500	9,630	10,130	500	250	50	· 설계 용역('22.3.~'23.3.) · 착공 및 준공('24.3.~'25.3.) * 공정률 35.8% · (사유)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결과 지적사항 보완, 실시설계용역 등 지연 * (당초) '20. 8. ~ '24. 10. ⇒ (변경) '20. 8. ~ '25. 3. / 5개월 지연
강진군 ('23~'24)	489	2,100	2,589	489	239	48.8	· 설계 용역('22.12.~'23.2.) · 착공 및 준공('24.5.~'25.4.) * 공정률: 28.8% · (사유)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심의지연, 연도 전환 자재값 상승으로 지방비 추가 확보 등 지연 * (당초) '22. 1. ~ '24. 3. ⇒ (변경) '22. 1. ~ '25. 4 / 1년 1개월 지연
속초시 ('23~'24)	500	5,893	6,393	500	286	57.2	· 설계 용역('23.5.~'23.7.) · 감사지적사항 절차 재이행 · 재착공 및 준공('24.8.~'25.9.) * 공정율 15% ·(사유) 감사 지적사항으로 미이행된 행정절차 (설계안정성 용역 등) 이행, 지방비 추가 확보 등 지연 * (당초) '22. 3. ~ '24. 6. ⇒ (변경) '22. 3. ~'25. 9. / 1년 3개월 지연
진천군 ('23~'24)	500	3,240	3,740	500	150	30	· 설계 용역('23.12.~'24.9) · 착공 및 준공('24.11.~'25.11.) * 공정율 5.9% ·(사유) 보훈단체와 설계 이견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등 지연 * (당초) '22. 3. ~ '24. 12. ⇒ (변경) '22. 3. ~ '25. 11. / 11개월 지연

(단위: 백만원, %)

구분	총사업비			국비 실집행 실적			비고
	국비	지방비	계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대구 동구 ('23~'24)	500	5,588	6,088	500	0	0	· 사업계획 변경(구입⇒임차)으로 '23 국비 반납, '24 국비 포기 예정
용인시 ('23)	250	11,732	11,482	250	250	100	· 설계 용역('20.12.~'21.12) · 착공 및 준공('22.7.~'24.12.) * 공정율 80%

자료: 국가보훈부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의 집행 부진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2020년 이후 이 사업 실집행 실적을 보면, 실집행률이 2020년 51.6%, 2021년 73.9%, 2022년 52.1%로 매년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은 실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차년도 예산안의 편성은 국고 예산의 연례적인 이월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집행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함.

[최근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 실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국가보훈부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이월액
2020년	2,250	2,000	2,000	1,234	3,234	1,670	51.6	1,564
2021년	1,955	1,955	1,955	1,564	3,519	2,604	73.9	915
2022년	2,605	2,250	2,250	915	3,165	1,649	52.1	1,516
2023년	3,344	2,989	2,989	1,516	4,505	1,980	43.9	2,280
2024.8.	3,750	2,250	2,250	2,280	4,530	1,714	37.8	-

자료: 국가보훈부

따라서 향후 국가보훈부는 이상의 연례적인 집행부진 현황을 고려하여,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의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보훈기금】

<수 입>

6. 기타재산이자외수입: 88골프장 매각 여부의 조속한 확정 필요

가. 개 요

‘기타재산이자외수입’ 은 「보훈기금법」 제4조제5호[17]에 따라 기금재산의 처분대금, 임대료, 이자수입금 등을 계상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72억 4,700만원(5.8%)이 증액된 1,320억원이 편성되었음.[18][19]

[2025년도 기타재산이자외수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기타재산이자외수입	124,753	124,753	132,000	7,247	5.8

국가보훈부는 88골프장 매각대금 총 3,727억원을 3개년으로 분할계상(1,180억원, 1,227억원, 1,320억원)하여 동 세입목에 반영하고 있는데, 2025년도 계획안에는 3년차인 1,320억원이 계상되었음.

[기타재산이자외수입 계획안 세부내역]

2024년	2025년(안)
○ 88골프장 매각대금 1,227억원 ○ 2023년 말 예상 예탁금(1,109억 7,000만원) x 2022년 말 기준 예탁금 중 중장기 여유자금 비율 x 예상수익률(2%) = 20억 5,300만원	○ 88골프장 매각대금 1,320억원
1,247억 5,300만원	1,320억원

자료: 국가보훈부

17) 「보훈기금법」
제4조(기금의 수입) 기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기금재산의 처분대금, 임대료, 각종 이자수입금

18) 보훈기금-기타재산이자외수입(54-547)(복지증진국)

19) 보훈기금 기타재산이자외수입은 2022년부터 기타재산수입이 폐지되면서 신설되었음.

나. 검토의견

국가보훈부는 매년 88골프장 매각대금을 보훈기금운용계획안 수입에 계상한 후 미수납하고 있는데, 이는 보훈기금운용계획의 정확성을 저해하므로 국가보훈부는 88골프장 매각 여부에 대한 조속한 판단을 내려 기금수입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008년 10월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88골프장과 88관광개발(주)의 민영화(매각)가 결정되었음. 이에 따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88골프장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고, 이후 2015년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88골프장 매각 방침을 재확인하였음.

국가보훈부는 88골프장 매각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재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88골프장의 매각이 사실상 중단된 사유에 대하여 88골프장이 연간 115억원 내외의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여 보훈기금 재원마련에 기여하고 있고, 상이군경 등 보훈단체의 반대가 있으며, 매각대금을 예탁금으로 운영할 경우 운용수익이 연간 순이익을 하회할 우려가 있어 현실적으로 매각이 어렵다고 설명함.

그러나 매각결정이 취소되지 않음에 따라 연례적으로 매각대금이 기금운용계획 기타재산이자수입(~2021년)·기타재산이자외수입(2022년~)에 계상되고 있고, 이에 따라 매년 계획액 대비 수납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연도별 기타재산수입·기타재산이자외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B)	수납률 (B/A)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A)						
2018년	159,719	159,719	159,719	1,050	1,050	0.7	-	-
2019년	135,373	135,373	135,373	950	950	0.7	-	-
2020년	120,757	120,757	120,757	1,673	1,673	1.4	-	-
2021년	129,419	129,419	129,419	1,988	1,988	1.5	-	-
2022년	132,000	132,000	132,000	5,096	5,096	3.9	-	-
2023년	118,000	118,000	118,000	10,749	10,749	9.1	-	-
2024.7월	124,753	124,753	124,753	-	-	-	-	-
2025년	132,000							

자료: 국가보훈부

이는 보훈기금의 수입규모를 왜곡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국회 결산심사 시에도 지속적으로 88골프장 관련 시정요구사

항이 의결[20]되었는데, 매각결정 취소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나 2015년 매각방침 재확인 이후 88골프장의 매각이 안건으로 논의된 바 없어 매각대금의 연례적 과다계상 후 미수납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향후 88골프장 매각여부 및 계획을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보훈기금운용계획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21]

20)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구분	시정요구사항
2020회계연도 결산	○ 국가보훈처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88골프장 매각 여부를 조속히 결정짓고, 최근 회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수입계획을 편성하여 국가재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할 것(제도개선)
2019회계연도 결산	○ 국가보훈처는 매각실현 의지와 가능성이 없는 88골프장 매각대금을 정부의 방침만을 근거로 보훈기금 수입으로 계상하여 보훈기금이 과다계상되는 것을 지양할 것(주의) ○ 국가보훈처는 88골프장 매각여부에 대하여 조속히 결정하도록 할 것(제도개선)
2016회계연도 결산	○ 국가보훈처는 구체적인 매각 계획 없이 관례대로 88골프장 매각대금을 기금수입과목에 계상하는 것을 지양할 것(제도개선) ○ 국가보훈처는 공공선진화 방안 등에 매각을 추진 중인 88골프장의 향후 기대가치,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강구할 것

21)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2015년 및 2017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서 88골프장 운영수익이 보훈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는 수익원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각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반면, 2020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서는 향후 골프장 가치의 하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각시점, 매각가격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여 일부 완화된 입장을 보였음. 이후, 2023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서는 골프장운영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과 수익, 골프장 매각을 위한 가치평가, 매각대금을 통한 기금사업수행 등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기금이 골프장 운영을 지속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기금에 유익한지, 매각 후 현금자산을 보유하여 자산운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기금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유익한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수 입>

7. 변상금: 면밀한 수입계획안 편성 필요

가. 개 요

‘변상금’ 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귀속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귀속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 수입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3,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22]

[2025년도 변상금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변상금	-	-	39	39	순증

주)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은 종래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을 재원으로 하였으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친일귀속재산을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였고,[23] 국가보훈부는 친일귀속재산(전, 답 등 토지)의 무단점유 및 사용에 대해 「국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24]할 경우 동 기금의 수입으로 수납처리하고 있음.

---

22)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변상금(57-571)(보훈문화정책관)

23) 2006. 12. 30. 법률 제8162호, 제2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제2항제2호

24)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사항증명서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이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밝혀져 국가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국가보훈부는 2023년 결산 결과 변상금 수납액이 3,900만원임에 따라 이와 동일하게 2025년도 변상금 수입 계획안을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나. 검토의견

국가보훈부는 연례적으로 변상금 수입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입계획에 편성하지 않다가 2025년 신규로 변상금 세입목을 편성하였는데, 2023년 수납액만을 기준으로 수입계획안을 편성하였으므로, 과거 3개년~5개년의 평균 수납액을 기준으로 수입계획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에는 변상금 수입이 장기간 계상되지 않고 있었으나, 친일귀속재산 토지 무단점유·사용에 대한 변상금이 매년 징수결정·수납되고 있었음. 2022년 1억 200만원·2023년 3,900만원, 2024년 7월말 기준 1,700만원이 징수결정 및 수납되었음.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변상금 징수 현황(2015~2024.7.)]

(단위: 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계획액	-	-	-	-	-	-	-	-	-	-
징수결정액	41	17	29	22	20	89	43	102	39	17
수납액	31	17	26	22	20	89	43	102	39	17
미수납액	10	-	3	-	-	-	-	-	-	-

자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는 변상금의 발생 여부 및 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과거 기금 수입계획안 편성 시 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세입과목에 이를 반영하여 종합적인 관리를 할 예정이고, 2023년 결산 결과 3,900만원의 수납액이 발생하여 해당 금액만큼을 2025년도 수입 계획안으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면밀한 수입 계획안 편성을 위해서는 단년도 수납액보다 최근 연도들의 수납액 발생 및 규모 추이 등을 고려하여 평균적인 수납액 규모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25)]

25) 참고로, 국가보훈부는 순애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목)은 2021~2023년 결산액 평균을 반영하여 계획

따라서, 최근 5개년(2019~2023년)의 수납액 평균이 5,860만원이고, 최근 3개년(2021~2023년) 수납액 평균이 6,100만원임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입계획안 편성을 할 필요가 있음.

[최근 변상금 수납액 평균 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7.
계획액	-	-	-	-	-	-
징수결정액	20	89	43	102	39	17
수납액	20	89	43	102	39	17

자료: 국가보훈부

안을 산출하였고, 건물대여료(51-512목) 및 토지대여료(51-511목)의 경우 위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수입 전망을 반영하는 등 평균적 수납액 규모를 고려하여 편성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5,394억원으로, 전년 대비 893억원(19.8%) 증가함.

[202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4,502	5,394	893	19.8
총수입	4,502	5,394	893	19.8

202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1,634억원으로 전년 대비 50억원(3.1%) 증가함.

[202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1,584	1,634	50	3.1
총지출	1,584	1,634	50	3.1

문의 : 김지수 예산결산조사관 kkjjss@assembly.go.kr (02-6788-5689)

나. 예산안

202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1개 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 예산안은 5,394억원으로 전년 대비 893억원(19.8%) 증가함.

[202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4,502	5,394	893	19.8
합 계	4,502	5,394	893	19.8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1,634억원으로 전년 대비 50억원(3.1%) 증가함.

[202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584	1,634	50	3.1
합 계	1,584	1,634	50	3.1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에는 신규사업이 편성되지 않았음.[1)]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세입예산안의 ‘과징금’이 있음. ‘과징금’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5,348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음.[2)]

[202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과징금	445,557	534,811	89,254	19.9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개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는 없음.

1)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2)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라 함) 사태 대응을 위해 ‘한국소비자원 출연’ 사업에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사업비 4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을 들 수 있음.

202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정책연구개발’ 사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정책연구 성과점검에서 2년 연속 미흡을 받았고, 정책연구과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비공개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정책연구과제를 적극적으로 등록·공개하여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한국소비자원 출연’ 사업은 티메프 사태 관련 피해자에게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처리시스템 증설 등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셋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사업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관련 양적 지표가 다소 악화되고 있으므로, 분쟁조정의 조속한 성립 및 조정률 제고를 위해 각별히 노력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정책연구개발사업: 정책연구용역의 등록·공개 확대 등 성과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정책연구개발사업’ 은 공정거래법령 및 관련 제도를 개선, 보완하기 위한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액 정책연구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000만원(△17%) 감액된 2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음.[3)]

[2025년도 정책연구개발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정책연구개발사업	349	289	△60	△17

나. 검토의견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으로 수행한 연구과제를 적극적으로 정책연구관리 시스템(PRISM)에 등록·공개하여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성과관리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정책연구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수행에 관한

3) 일반회계-정책연구개발사업(1231-310)(경쟁정책국)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는 각 부처에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두어 정책연구과제를 관리하고, 연구과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Policy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 Management)에 등록하도록 하며, 행정안전부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 대상 성과점검 결과를 각 부처, 기재부 및 감사원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4)]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결과보고서·평가결과서 등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5)]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과 2024년 모두 중앙행정기관 정책연구 성과점검 결과에서 미흡(2023년 76점, 2024년 72점)을 받았고, 2018년 우수 등급을 받은 이후 정책연구 성과점검 점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10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 정책연구 성과점검 결과]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등급	우수	미흡	미흡	우수	양호	양호	양호	양호	미흡	미흡
점수	90	67	61	94	88	85	85	83	76	7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4)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 2024.1.

5) 행정안전부의 중앙행정기관 정책연구 성과점검은 중앙행정기관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4단계로 구분하며, 각각 100점, 90점 이상 100점 미만, 80점 이상 90점 미만, 80점 미만에 해당함.

[2024년 중앙행정기관 정책연구 성과점검 결과 등급]

등급	기관명			
	부(19)	처(3)	청(18)	그 외 기관(18)
최우수 (16)	행정안전부	법제처 인사혁신처	국가유산청 국세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조달청 질병관리청 통계청 해양경찰청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교육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수 (15)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통 (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	관세청 검찰청 방위사업청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미흡 **(10)**	기획재정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	병무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정책연구 결과를 공동 활용하기 위해 정책연구관리시

스템을 통하여 정책연구의 계약체결 내용,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결과 및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등을 원칙적으로 등록·공개하여야 함.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로 하되, 비공개 대상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2023~2024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연구용역 집행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1건의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고,[6] 등록된 정책연구용역 과제 38건 중 공개 과제는 3건, 부분공개 과제는 7건, 비공개 과제는 28건으로, 대부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사유를 이유로 정책연구용역과제를 비공개로 등록하고 있음.

그러나 정책연구의 등록·공개는 연구정보의 제공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민원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정책연구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음. 또한 각 중앙행정기관이 연구 수행과정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중복연구를 방지하고, 예산낭비를 줄이며, 연구품질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음.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된 경우로서 분리가 가능한 경우 부분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7] 비공개 사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부분공개를 원칙으로 등록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PRISM 등록 시, 전체 비공개 대신에 가급적 ‘공개’ 또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부분공개’(제목, 사업기간 등)를 적극적으로 채택하는 한편, 비공개로 등록한 종전의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비공개사유가 없어지는 경우 전체공개 또는 비공개사유를 제외한 부분공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6) 2023년 수행한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선방안 연구」는 2024년 10월 현재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되지 않고 있음.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2. 한국소비자원 출연사업: 티메프 사태 관련 집단분쟁조정 소송지원액의 적정예산 편성 및 차질 없는 지원 필요

가. 개 요

‘한국소비자원 출연’ 사업은 수지차보전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 대하여 지출예산 총액에서 자체수입 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출연금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8억 5,400만원(1.6%) 증액된 536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음.[8)]

[2025년도 한국소비자원 출연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한국소비자원 출연	52,842	53,696	854	1.6

[2024년도 및 2025년도 한국소비자원 출연사업 세부산출내역]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수입	■ 한국소비자원 출연	52,842	53,696	854	1.6
	■ 자체수입	3,417	3,044	△373	△10.9
	수입 합계	56,259	56,740	481	0.9
지출	■ 인건비	36,559	37,950	1,391	3.8
	■ 운영비	4,509	4,517	8	0.2
	■ 사업비	13,840	12,885	△955	△6.9
	■ 예비비	1,351	1,388	37	2.7
	지출 합계	56,259	56,740	481	0.9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에 대한 상담 및 분쟁조정, 소비자안전 및 시험검사, 소비자정보제공 및 소비자교육, 소비자 정책연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8) 일반회계-한국소비자원 출연(1461-630)(소비자정책국)

2025년도 예산안의 특이소요로는,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사업에 19억 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지원 등을 위해 전년 대비 7억 3,400만원 증액되었음.[9][10]

[한국소비자원 출연사업의 사업출연금 중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관련 세부산출내역]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 (2024) 11억 7,100만원 → (2025) 19억 500만원
ㅇ 피해구제 : (2024) 3억 4,200만원 → (2025) 8억 6,100만원
- 소비자피해 상담 및 합의 권고 7억 6,100만원(9개 사업×8,460만원)
- 티메프 사태 피해 소비자 소송지원 1억원(소송지원 변호인 5명×2,000만원, 신규)

ㅇ 분쟁조정위원회 : (2024) 5억 6,100만원 → (2025) 7억 5,100만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일반 및 집단분쟁조정) 개최 4억 300만원(6개 사업×6,720만원)
- 티메프 사태 대응을 위한 집단분쟁조정 역량 강화 3억 4,800만원(신규)
  * 행정지원 용역 3,800만원(10명×2개월×190만원),
    사건처리시스템 용량 증설 3억 1,000만원(4개 서버×7,750만원)

ㅇ 지방소비자 : (2024) 2억 6,800만원 → (2025) 2억 9,300만원
- 수도권지원 피해구제 및 실태조사, 지역밀착형 정보제공 1억 3,200원(2개 지원×6,600만원)
- 지방지원 피해구제 및 실태조사, 지역밀착형 정보제공 1억 6,100만원(5개 지원×3,220만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구체적으로는, 티메프 사태 피해자 소송지원과 관련하여 1억원, 집단분쟁조정 처리를 위한 단기 행정지원용역 3,800만원, 집단분쟁조정 사건처리시스템[11] 증설 3억 1,000만원으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하여 총 4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음.

9)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공정위・소비자원, 티몬・위메프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2025년 예산안 증액 편성」, 2024.9.19.

10) 티메프 사태란, 2024년 7월 티몬・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가 판매자 대금을 지급・정산하지 않으면서 판매자가 판매대금 지연정산으로 인해 현금 흐름의 경색이 발생하고, 소비자도 판매자로부터 물품・서비스를 수령하지 못하거나 환불이 불가해져 소비자피해를 입은 사건을 의미함.
2024년 8월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한 결과, 위메프・티몬이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하는 미정산금액 총액은 1.3조원인 것으로 최종 집계됨. 주요 피해업종은 디지털・가전, 상품권, 식품업계 순으로 파악되었다. 피해업체 수는 약 4.8만 개사로 추산되며, 이 중 미정산금액 1천만원 미만 업체가 약 9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함. 다만, 금액 기준으로는 미정산금액 1억원 이상 업체(981개사)에 약 88%의 미정산금액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됨(관계부처 합동,「위메프 티몬 관계부처 회의 보도자료」, 2024.8.24.)

11) 집단분쟁조정 사건처리시스템이란, 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 사건 진행상황 확인, 사건 담당자와의 소통 및 자료 제출 등 대국민 서비스 기능, 소비자원의 사건처리 및 정보 분석 기능 등을 제공하는 한국소비자원 내 전산 시스템임.

나. 검토의견

첫째, 대규모 피해자가 일시에 접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 분쟁조정의 경우 분쟁조정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접수기간 내 집단분쟁조정을 참가·접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단분쟁조정처리시스템 증설 사업에 철저할 필요가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집단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12]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은 유사한 물품·서비스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게 되고,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판매자 및 소비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분쟁조정이 성립하게 되는 제도임.

---

12) 「소비자기본법」

제60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①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제도 개요]

ㅇ 기본 절차

- (개요) 물품 및 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면서 중요한 쟁점이 공통된 사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분쟁조정

[집단분쟁조정 절차]

집단분쟁조정 신청·의뢰 (50인 요건 충족)	→	개시여부 결정 (60일 이내)	→	개시 공고 (14일 이상)	→	소비자 참가신청 및 사실조사	→	소비자분쟁조정 위원회의 조정결정

(신청 및 의뢰) 한국소비자원, 국가지자체, 소비자단체, 소비자 및 사업자가 집단분쟁조정 사건을 신청함

(개시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신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개시여부를 결정함

*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의 결정 보류 가능(최대 60일)

(개시공고) 위원회의 개시 결정 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함

(참가신청)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의 집단분쟁조정의 참가를 위해 개시 공고 기간동안 추가모집을 할 수 있음(개시공고 기간 이내)

(위원회 결정) 개시공고가 종료된 이후 30일 이내 조정결정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회(각 30일 범위) 연장 가능

-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 사업자가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 집단분쟁조정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 가능

ㅇ 집단분쟁조정 효력

- 조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어 재판상 화해의 효력 발생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최근 5년간 집단분쟁조정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머지포인트 제휴업체 축소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관련 집단분쟁조정 5건[13]이 제기된 2021년에 11건의 집단분쟁조정에 대해 1만 3,010명이 신청하였고, 2024년에는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 티메프 사태 등 6건의 집단분쟁조정에 대해 2만 7,858명이 신청하였음.

[최근 5년간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 현황]

(단위: 건, 명)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8월
집단분쟁조정 건수	7	12	11	1	2	6
분쟁조정 신청자수	2,295	1,061	13,010	582	102	27,858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13) 머지포인트 사건 관련 집단분쟁조정 현황

특히, 2024년 8월 티메프 사태와 관련된 4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2만 1,981명의 소비자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였음.

[2024년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접수현황]

연번	집단분쟁조정 사유	세부 분야	접수기간 (조정요청일)	접수 건수(명)	집단분쟁조정 결정 결과	수용 여부
1	분양 아파트 유상옵션(드레스룸) 집단분쟁조정 신청	아파트	2024-01-18	73	불개시 (2024.4.15.)	
2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큐브) 확률 조작에 따른 피해배상 요구	게임	2024-02-22 ~ 2024-03-04	5,804	배상 (2024.8.13.)	수용
3	티몬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따른 구입대금 환급 요구[1)]	여행, 숙박, 항공	2024-08-01 ~ 2024-08-09	6,748	진행중	-
4	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따른 구입대금 환급 요구[1)]	여행, 숙박, 항공	2024-08-01 ~ 2024-08-09	2,256	진행중	-
5	티몬, 위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 구입대금 환급 요구[2)]	상품권	2024-08-19 ~ 2024-08-27	2,426	처리 예정	-
6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 불가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2)]	상품권	2024-08-19 ~ 2024-08-27	10,551	처리 예정	-

주 1) 집단분쟁조정 신청 기간 마감(8.1.~8.9.) 후 당사자 제출자료 검증 등 보정 작업 중에 있어 신청인 및 피신청인 수는 추후 변동될 수 있음.
2) 집단분쟁조정 신청 기간 마감(8.19.~8.17.) 후 당사자 제출자료 검증 등 보정 작업 중에 있어 신청인 및 피신청인 수는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연번	집단분쟁조정 사유	세부 분야	접수기간 (조정요청일)	접수 건수(명)	집단분쟁조정 결정 결과	수용 여부
1	머지포인트 제휴업체 축소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상품권	2021-09-09	2,460	손해배상(2022.6.14.)	불수용
2	머지포인트 제휴업체 축소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상품권	2021-09-09	884	손해배상(2022.6.14.)	불수용
3	머지포인트 제휴업체 축소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상품권	2021-09-09	2,601	손해배상(2022.6.14.)	불수용
4	머지포인트 제휴업체 축소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상품권	2021-09-09	429	손해배상(2022.6.14.)	불수용
5	머지포인트 제휴업체 축소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상품권	2021-09-09	1,840	손해배상(2022.6.14.)	불수용

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1개 사건으로 병합하여 처리하였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그런데, 티메프 사태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있던 2024년 8월 집단분쟁조정시스템 이용자수는 210만 5,846명으로, 2023년 월평균 이용자 수의 290% 수준에 육박하였음.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시스템 월별 이용자 수 현황]

(단위 : 천명)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22	654	524	1,132	897	753	718	964	963	1,035	986	976	865	10,465
2023	846	766	782	586	839	615	713	942	685	627	687	620	8,706
2024	719	756	797	686	690	704	833	2,106	-	-	-	-	7,29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이로 인해 2024년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시스템은 이용자 수 급증 등의 사유로 인해 7건의 장애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2019~2023년까지 총 8건의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정보시스템 장애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임.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시스템 연도별 장애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8월	합계
장애건수	1	1	2	1	3	7	15

주) 1시간 이상 발생한 대외·대내 업무 불가 장애를 집계한 것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집단분쟁조정은 온라인을 통해 집단분쟁신청을 받는 경우가 많고 접수기간이 한정되어, 집단분쟁을 신청하려는 이용자가 일시에 과도하게 분쟁조정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트래픽 증가로 인해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이용자가 집단분쟁조정을 접수기간 내 신청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추가 참가가 어렵다는 점에서 분쟁조정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이 티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 집단분쟁조정에 대해 차질 없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둘째, 집단분쟁조정은 다수의 당사자에 대해 분쟁조정안의 수락 여부 및 소송지원 등 행정절차 수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결정 이후 조정신청인(소비자)을 대상으로 조정결정문 송달, 결정내용 수락 및 소송지원 신청 의사 확인 등 후속 행정절차가 진행되는데, 신청인 전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문서 송달 및 전화확인이 필요한 상황임.

2024년 티메프 사건 관련 집단분쟁조정과 유사한 2022년 머지포인트 사건 관련 집단분쟁조정의 경우에도 집단분쟁조정 사건의 행정지원 목적으로 10인, 2개월분의 일용임금을 편성·집행한 바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집단분쟁조정 행정지원 인력을 2022년 10인의 2배 수준인 20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나, 티메프 사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인 규모는 머지포인트 사건의 3배 수준에 달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결정문 송달 및 수락여부 등 전화확인 등 행정업무의 지연으로 인해 소송당사자 참가 누락 등 소비자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사업: 분쟁조정의 조속한 성립 및 조정률 제고 노력 필요

가. 개 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사업은 수지차보전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하여 지출예산 총액에서 자체수입 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출연금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10억 1,500만원(8.6%) 증액된 127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음.[14)]

[2025년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11,742	12,757	1,015	8.6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6개 거래분야[15)]에서 발생한 사업자 간 분쟁에 대한 분쟁조정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쟁조정’을 주된 업무로 하고, 그 외에도 공정거래협약의 이행평가, 동의의결 및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가맹·대리점 종합지원센터 운영, 공정거래연구 등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024년도 및 2025년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사업 세부산출내역]

(백만원, %)

구 분		2024 예산 본예산(A)	2025 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B-A)/A
수입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11,742	12,757	1,015	8.6
	■ 기타수입 및 이월결산잉여금	1,269	609	△660	△52.0
	■ (공정위)수탁사업비	1,109	1,109	-	-
	수입 합계	14,120	14,475	355	2.5
지출	■ 인건비	7,622	8,504	882	11.6
	■ 운영비	2,591	2,698	107	4.1
	■ 사업비	2,798	2,164	△634	△22.7
	■ (공정위)수탁사업비	1,109	1,109	-	-
	지출 합계	14,120	14,475	355	2.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14) 일반회계-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1271-350)(경쟁정책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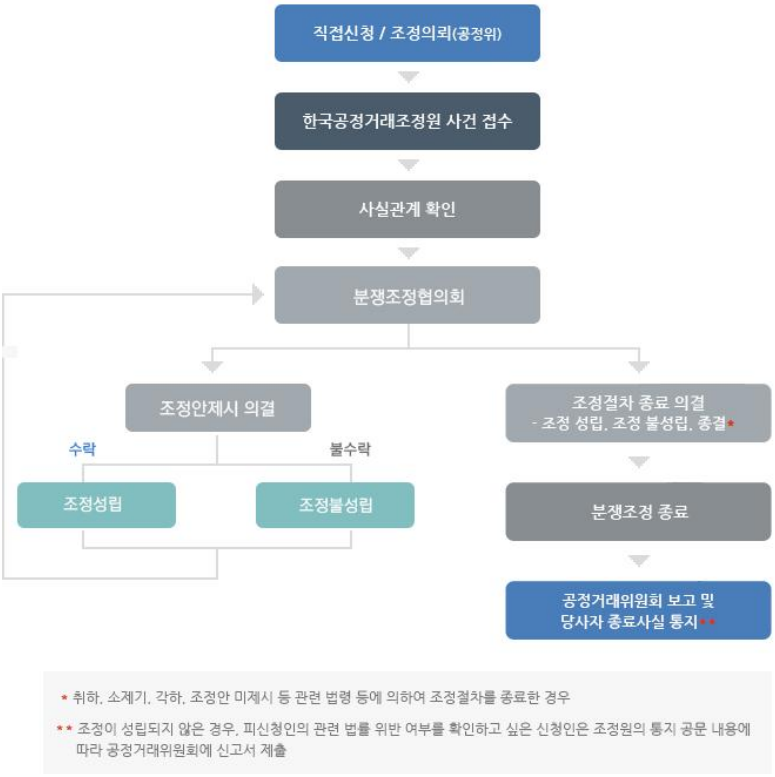
15) 일반불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대리점거래

나. 검토의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처리기간은 증가한 반면 분쟁조정 성립률은 하락하고 조정안 제시율 역시 낮은 수준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본연의 업무인 분쟁조정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가맹·하도급·대규모유통업·약관·대리점거래 등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을 조정하고,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16)]

[분쟁조정업무 수행절차]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2. 다른 법률에서 조정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분쟁의 조정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분쟁조정업무의 양적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첫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성립률은 2024년 8월 현재 75%로, 2022년 78%, 2023년 79%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분야별로 분쟁조정 성립률의 증감이 있으나, 2024년의 경우 약관분야의 분쟁조정 성립률이 55%로, 2023년 74%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음.

[2022~2024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건, %)

구 분		접수현황	처리현황 및 유형				성립률 [A/(A+B)]
		건 수	계 [A+B+C]	성 립 [A]	불성립 [B]	종 결 [C]	
2022년	**소계**	**2,846**	**2,868**	**1,202**	**339**	**1,327**	**78**
	공정	1,085	1,119	423	148	548	74
	가맹	489	513	230	54	229	81
	하도급	901	853	361	95	397	79
	유통	28	34	21	1	12	95
	약관	257	271	141	27	103	84
	대리점	86	78	26	14	38	65
2023년	**소계**	**3,481**	**3,151**	**1,278**	**350**	**1,523**	**79**
	공정	1,372	1,267	475	135	657	78
	가맹	605	575	263	62	250	81
	하도급	1,044	929	354	100	475	78
	유통	29	26	13	1	12	93
	약관	339	278	137	48	93	74
	대리점	92	76	36	4	36	90
2024년 8월	**소계**	**2,878**	**2,620**	**974**	**327**	**1,319**	**75**
	공정	1,331	1,077	418	105	554	80
	가맹	420	403	171	62	170	73
	하도급	767	783	263	81	439	76
	유통	21	17	11	1	5	92
	약관	297	281	86	71	124	55
	대리점	42	59	25	7	27	78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둘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야별·처리유형별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2024년 8월 분쟁조정 평균 처리기간은 49일로, 2023년 47일, 2022년 42일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22~2024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야별·처리유형별 처리기간 현황]

(단위: 일)

구 분		처리유형별 처리기간			평균 처리기간
		성 립[A]	불성립[B]	종 결[C]	
2022년	**소계**	**39**	**52**	**43**	**42**
	공정	38	54	48	45
	가맹	42	46	39	41
	하도급	42	52	42	43
	유통	51	57	37	46
	약관	29	40	32	31
	대리점	37	77	44	48
2023년	**소계**	**48**	**55**	**45**	**47**
	공정	41	57	44	44
	가맹	45	49	40	44
	하도급	54	53	43	48
	유통	44	13	36	39
	약관	51	57	54	53
	대리점	73	86	82	78
2024년 8월	**소계**	**46**	**54**	**50**	**49**
	공정	38	51	49	45
	가맹	43	39	44	43
	하도급	57	62	51	54
	유통	42	71	32	41
	약관	48	58	54	53
	대리점	83	112	67	79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 처리기간은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의 소관 법률에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17] 대리점 분야의 경우 평균 처리기간(79일)이 법정 처리기간을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7조(조정 등)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2. 제7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양쪽이 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로 한다)이 지나

도과하고 있는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함.[18)]

셋째, 2024년 8월 기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관련 조정안 제시 비율은 4.0%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9년 이후 처리 건수 중 조정안 제시비율은 5% 내외로 저조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2019~2024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관련 조정안 제시 및 수락현황]

(단위: 건)

연도	처리건	조정안 제시 및 수락 현황					
		합 계 (처리건 대비 조정안 제시 비율)		양당사자 수락	신청인 불수락	피신청인 불수락	양당사자 불수락
2019년	3,014	149	(4.9%)	76	52	13	8
2020년	2,972	139	(4.7%)	72	40	7	20
2021년	2,936	141	(4.8%)	70	51	12	8
2022년	2,868	149	(5.2%)	75	53	10	11
2023년	3,151	104	(3.3%)	53	34	10	7
2024년 8월	2,620	106	(4.0%)	38	14	46	8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종전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분쟁조정안을 제시하는 경우 신청인이 수락하지 않는 경우가 비교적 많았으나, 2024년의 경우 피신청인이 수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상황으로, 2024년부터 신청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분쟁조정 시 양 당사자가 모두 수락할 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겠으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조정안에 대하여 균형잡힌 조정안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조정안 제시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1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조정 등)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조정에 합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2.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정을 의뢰 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로 한다)이 지나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

Ⅰ. 개 관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3조 9,209억원으로, 전년 대비 4,497억원(△10.3%) 감소함. 예산은 1,011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억원(12.8%) 증가한 반면, 기금은 3조 8,198억원으로 전년 대비 4,612억원(△10.8%) 감소함.[1)]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896	1,011	115	12.8
기 금	42,810	38,198	△4,612	△10.8
총수입	43,706	39,209	△4,497	△10.3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1조 7,409억원으로 전년 대비 2,378억원(15.8%) 증가함. 예산은 1조 7,408억원으로 전년 대비 2,378억원(15.8%) 증가한 반면, 기금은 1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함.

문의 : 김지수 예산결산조사관 kkjjss@assembly.go.kr (02-6788-5689)

---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15,030	17,408	2,378	15.8
기 금	1	1	-	-
총지출	15,031	17,409	2,378	15.8

나. 예산안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1,011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억원(12.8%) 증가함.

[2025년도 금융위원회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896	1,011	115	12.8
합 계	896	1,011	115	12.8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4조 2,408억원으로 전년 대비 2,378억원(5.9%) 증가함.

[2025년도 금융위원회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40,030	42,408	2,378	5.9
합 계	40,030	42,408	2,378	5.9

주) 총계 기준

다.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6개 기금(공적자금상환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30조 2,642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 7,173억원(△10.9%) 감소함.

[2025년도 금융위원회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공적자금 상환기금	108,893	108,893	64,384	△44,509	△40.9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641	641	511	△130	△20.3
신용보증기금	114,703	114,703	119,508	4,805	4.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20,196	20,196	22,651	2,455	12.2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48,972	48,972	48,092	△880	△1.8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46,410	46,410	47,496	1,086	2.3
합 계	339,815	339,815	302,642	△37,173	△10.9

주) 총계 기준이며,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금융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총 6개(3,221억 6,9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 구축’ 사업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시행(2024.7.19.)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 제고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4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음.

‘금융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사업은 서민·취약계층의 근본적인 경제적 자립을 위해 금융 뿐만 아니라 고용·복지 등 복합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4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음.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생태계펀드)’ 사업은 반도체 소부장, 팹리스 분야의 집중 투자를 통한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300억원이 편성되었음.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 사업은 17조원 규모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함으로써 반도체 제조역량 구축 및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도록 산은에 현금 1조원 등 총 2조원을 출자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500억원이 편성되었음.

‘산업은행 출자(원전산업성장펀드)’ 사업은 초격차 기술력 개발 등을 통한 원전 산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400억원이 편성되었음.

한편,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제도 조사·연구’ 사업은 국내외 연구 및 제도 전파 등을 통해 신용보증제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교육 수행을 통해 금융소비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2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음.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2025년도 금융위원회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예산안(계획안)
[일반회계]		
1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 구축	430
2	금융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445
3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생태계펀드)	30,000
4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	250,000
5	산업은행 출자(원전산업성장펀드)	40,000
[신용보증기금]		
1	신용보증제도 조사·연구	1,294
총지출		322,169

한편, 금융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 ‘금융위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및 ‘일반보증대위변제’사업 등 총 20개임.[3)]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2025년도 금융위원회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330,000	500,000	170,000	51.5
2	자본시장국기본경비(총액)	59	115	56	94.9
3	금융위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1,058	3,012	1,954	184.7
[신용보증기금]					
4	일반보증대위변제	2,358,443	2,645,225	286,782	12.2
5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	397,104	596,887	199,783	50.3
6	미래성장성평가	2,335	6,335	4,000	171.3
7	팩토링금융	150,049	200,160	50,111	33.4
8	신용정보(정보화)	1,364	2,034	670	49.1
9	대환보증 대위변제	254,436	713,921	459,485	180.6
10	인건비	275,035	285,770	10,735	3.9
11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926,910	3,506,872	579,962	19.8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2	대위변제금	330,300	438,010	107,710	32.6
13	통화금융기관예치	1,607,373	1,713,874	106,501	6.6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4	구상권관리(주신보)	23,156	40,752	17,596	76.0
15	대위변제(주신보)	669,400	1,336,400	667,000	99.6
16	구상권관리(주연보)	1,121	2,167	1,046	93.3
17	대위변제(주연보)	31,450	88,814	57,364	182.4
18	사업수수료(주연보)	1,036	1,613	577	55.7
19	담보설정비용(주연보)	3,168	22,618	19,450	614.0
20	통화금융기관예치금(주연보)	223,344	282,862	59,518	26.6

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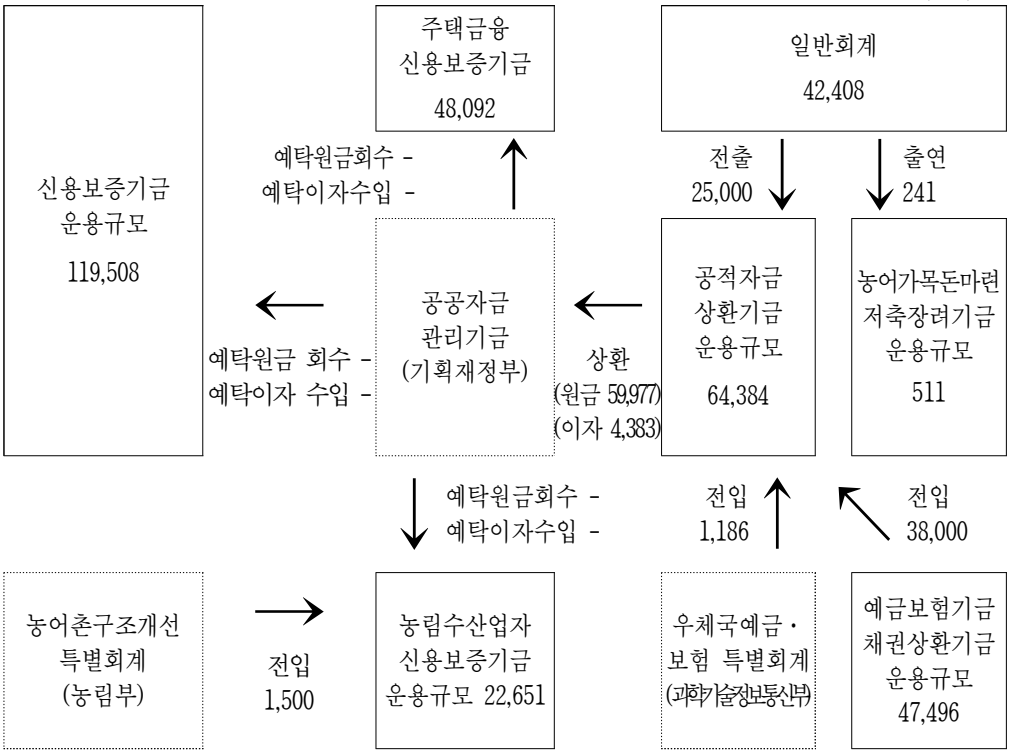
금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공적자금상환기금·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등 6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2조 5,000억원을 전출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으로 241억원을 출연함.

다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공적자금상환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5조 9,977억원의 예수원금과 4,383억원의 예수이자를 상환하며,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3조 8,000억원을 전출함.

[금융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단위: 억원)



주) 총계기준

4.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① 서민·소상공인·취약계층 금융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새출발기금),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등을 지원하고, ② 청년 자산 형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도약계좌와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위한 출연금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③ 미래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반도체생태계펀드, 혁신성장펀드, 원전산업성장펀드 등의 출자금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햇살론15)’ 사업은 기존 보증의 부실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연도 내 신규 보증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장단기적 사업개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의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은 그간 실적 부진에 따른 유보액과 기여금 확대방안의 적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적정 기여금 규모를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고, 청년도약계좌 콜센터의 상담실적이 부진하므로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은 새출발기금의 채권 매입계획이 과도한 것으로 보이고, 당초 사업설계 시와 달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계획대로 캠코채를 발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현물출자를 통해 캠코채 발행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넷째,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생태계펀드)’ 사업,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투자특별지원프로그램)’ 사업 및 ‘산업은행 출자(원전산업성장펀드)’ 사업은 반도체 및 원전 산업에 대한 투·융자지원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다섯째,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 구축’ 사업은 가상자산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 시 불공정행위 조사를 위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 보증 부실을 고려한 사업 개편 및 협약기관의 보증공급 관리 필요

가. 개 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은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특례 보증을 공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위변제를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560억이 편성되었음.[4)]

[2025년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56,000	56,000	-	-

최저신용자 한시특례 보증은 최저신용자(연소득 4,500만원 이하,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햇살론15 거절자)에게 3년 또는 5년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을 통해 최대 1,000만원까지 15.9%의 대출금리로 지원하는 제도임.

이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하게 56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예상사업손실률이 20%에서 33%로 상승함에 따라 연간 보증공급액은 2,800억원에서 1,700억원으로 감소할 예정임.

4) 일반회계-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1831-881)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60억원	2,800억원(연간 보증공급금액) × 20.0%(예상사업손실률) × 100%(보증비율) = 560억원	560억원	1,700억원(연간 보증공급금액) × 33.0%(예상사업손실률) × 100%(보증비율) = 560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나. 검토의견

첫째, 금융위원회는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의 부실로 인해 연도 내 신규 보증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1인당 보증공급 축소 등의 사업개편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금융위원회는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25년 예산안의 경우 사실상 연간 보증공급금액을 전년 대비 축소 편성하였음.

2022년 9월 동 상품이 출시된 이후 거치기간(최대 1년)이 도래하여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한 최저신용자가 증가하면서 대위변제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대위변제율은 2023년 6월 7.3%, 동년 12월 14.5%, 2024년 6월 22.0%로 상승 중임.

이에 금융위원회는 경기상황 악화, 대부업 등 민간 금융시장의 최저신용자 공급 축소 등을 고려하여 사업손실률을 20%에서 33%로 상향하고,[5] 연간 보증공급액 1,700억원 공급 시, 월 4,700건 및 1건당 평균 300만원 보증공급을 예상하고 있음.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분기별 지원실적]

(단위: 건, 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지원 건수	신청	34,943	30,521	33,793	19,223	34,861	19,191	14,692
	지원	34,208	28,776	28,382	17,647	37,204	19,754	13,940
총 대출액		10,019,490	6,946,380	6,785,680	4,889,000	10,613,940	5,152,020	3,321,220
평균 대출액		292	241	239	277	285	261	238

자료: 금융위원회

5) 참고로, 2023년 결산 심사 시 금융위원회는 2024년까지 대위변제율을 40%, 사업손실률을 20.6%로 추산하였으나, 2025년에는 고금리·고물가로 인하여 서민금융 부실이 심화됨에 따라 대위변제율을 53.5%, 사업손실률을 33.0%로 예상하였음.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관련 보증 공급 현황]

(단위: 백만원, %, 배)

구분[1]	2022년	2023년				2024년	
	4/4분기 (2022.9.29.~)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보증잔액(A)	96,689	158,128	198,906	219,746	291,795	303,227	293,036
신규보증액	100,195	69,464	67,857	48,890	106,139	51,520	33,212
보증해지액[2]	3,505	8,025	27,079	28,050	34,090	40,088	43,403
대위변제액[3]	8	211	17,360	36,017	57,093	79,428	104,851
대위변제율[4]	0.01	0.1	7.3	12.6	14.5	17.9	22.0
기본재산[5](B)	47,992	75,789	58,640	39,983	18,907	52,572	27,149
운용배수(A/B)	2.0	2.1	3.4	5.5	15.4	5.8	10.8

주 1) 각 기간 중 신규보증액 및 각 기간 말 보증잔액, 누적 대위변제액, 대위변제율 기준
2) 보증해지액 = (누적 신규보증액 - 보증잔액) - (전분기 누적 신규보증액 - 보증잔액)
3) 대위변제액 = 대위변제발생액 - 대위변제회수액 (월말 누적 기준)
4) 대위변제율 = (누적 대위변제발생액 - 누적 대위변제회수액) / 누적 보증공급액
5) 기본재산 = 누적 출연금 - 누적 대위변제액

자료: 금융위원회

2024년 상반기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제도의 신규보증액은 847억원 수준으로 2025년 예산안의 예상 보증공급액 1,700억원은 적정 규모라고 볼 수 있음. 다만, 대위변제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 보증잔액에 대한 사업손실률이 당초 예상(33%) 대비 높아지는 경우 신규 보증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이에 기존 보증잔액에 대한 부실 리스크를 관리하고 신규 보증공급 시 평균대출액 축소 등의 사업개편방안 등을 마련하여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이 연도 내 중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둘째,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의 보증공급 협약(MOU)을 맺은 금융회사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정 지방은행 편중이 과도하므로, 금융위원회는 기존 협약기관이 동 보증공급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의하는 한편, 사회적 금융약자가 제도권 금융으로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최저신용자 한시특례보증 협약기관이 2023년 8개사, 2024년 2개사가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금융기관의 특례보증공급 편중이 과도한 상황임. 해당 특례보증의

특정 지방은행(광주은행, 전북은행)의 공급 비율은 2022년 87.7%, 2023년 88.2%, 2024년 8월 80.1%임.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의 은행별 대출공급액 현황]

(단위: 백만원)

은행명	금융기관 분류	대출 출시일	2022년	2023년	2024년 8월
광주	지방은행	2022년 9월	26,636	126,179	43,227
전북	지방은행	2022년 9월	61,284	131,806	45,703
NH저축	저축은행	2022년 11월	12,275	1,396	176
DB저축	저축은행	2023년 3월	-	2,659	38
웰컴저축	저축은행	2023년 5월	-	15,969	1,609
우리금융저축	저축은행	2023년 9월	-	3,753	4,536
신한저축	저축은행	2023년 10월	-	1,726	5,356
하나저축	저축은행	2023년 10월	-	3,615	1,992
IBK저축	저축은행	2023년 10월	-	4,330	2,971
KB저축	저축은행	2023년 12월	-	-	1,898
BNK저축	저축은행	2023년 12월	-	917	3,046
융창저축	저축은행	2024년 5월	-	-	165
진주저축	저축은행	2024년 5월	-	-	325
소계			100,195	292,350	111,042

자료: 금융위원회

특례보증공급기관이 편중될 경우 정책수요자의 특례보증 접근성이 낮아져 제도권 정책금융을 활용하지 못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협약 금융기관이 특례보증공급을 균등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별 월별 한도액을 제시하는 방안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6)]

또한, 최저신용자 한시특례보증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제도권 금융의 한계선 상에 놓인 최저신용자가 이 사업을 통한 금융지원을 보다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6)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별 월별 한도를 제한할 경우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2. 서민금융진흥원 출연(햇살론15) 사업: 햇살론15 사업의 보증 부실 추세를 고려한 장단기 사업 개편 필요

가. 개 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햇살론15)’ 사업은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정책서민금융(햇살론15)을 공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900억원이 편성되었음.[7)]

[2025년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햇살론15)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햇살론15)	90,000	90,000	-	-

햇살론15는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있는 저신용·저소득자를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해 최대 2,000만원(당초 1,400만원이나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까지 15.9%의 이자율로 서민금융진흥원 100% 보증에 따라 대출을 공급하는 서민금융 제도임.

참고로, 햇살론15는 2023년까지 국민행복기금의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수행되었으나, 재원고갈 우려로 인해 2024년 확정예산에 900억원, 2025년 예산안에 900억원이 편성되었음. 실제로 햇살론15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으로 공급하였으나, 국민행복기금의 재원부족으로 2024년 7월부터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으로 공급하되 기존의 국민행복기금 보증과 지원요건 등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음.

7) 일반회계-서민금융진흥원 출연(햇살론15)(1831-884)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한시특례보증 제도 비교]

구 분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목적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있는 저신용·저소득자를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	연체경험 등으로 기존 정책서민금융마저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자금애로 완화 및 자금이용 기회 제공
지원대상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자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로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
대출한도	최대 2,000만원 (당초 1,400만원이나 코로나19 등을 고려하여 2,000만원으로 상향)	최대 1,000만원* * 최초 5백만원 이내에서 심사에 따라 지원하고, 6개월간 성실상환시 추가대출 가능
상환방식	3년 또는 5년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3년 또는 5년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최대 1년)
보증비율	서민금융진흥원 100% 보증	서민금융진흥원 100% 보증
대출금리	15.9%* *성실상환 시 1년마다 금리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미부과 (3년 약정 시 매년 3.0%p, 5년 약정 시 매년 1.5%p 인하)	15.9%* * 성실상환 시 1년마다 금리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미부과 (3년 약정 시 매년 3.0%p, 5년 약정 시 매년 1.5%p 인하)

자료: 금융위원회

국민행복기금의 햇살론15 보증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대위변제율은 2023년부터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4년 2/4분기에는 24.6%에 이르렀고, 신규보증액은 2022년 4/4분기 6,521억원을 공급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 2/4분기에는 1,756억원을 공급하였음.

[국민행복기금의 햇살론15 보증 공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1]	2022년				2023년				2024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보증잔액(A)	1,306,593	1,281,707	1,464,924	1,909,903	2,150,165	2,181,341	2,114,025	2,095,948	2,038,072	1,912,444
- 신규보증액	191,516	190,121	396,718	652,095	476,166	306,540	237,698	288,182	236,994	175,622
- 보증해지액	194,866	215,007	213,501	207,117	235,903	275,363	305,015	306,259	294,869	301,250
대위변제액[2]	403,406	468,672	537,297	602,194	677,219	794,550	948,306	1,107,097	1,235,492	1,381,334
대위변제율[3]	15.2	16.5	16.6	15.5	15.5	17.0	19.3	21.3	22.7	24.6

주 1) 각 기간 중 신규보증액, 각 기간 말 보증잔액, 누적대위변제액, 대위변제율 기준
2) 대위변제액 = 대위변제발생액 - 대위변제회수액(월말 누적 기준)
3) 대위변제율 = (누적 대위변제발생액 - 누적 대위변제회수액) / 누적 보증공급액

자료: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의 2024년 7~8월 햇살론15 보증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두 달간 신규 보증액은 1,680억원, 보증해지액은 46억원 발생하여 보증잔액은 1,634억원이고, 대위변제액은 발생하지 않았음.

나. 검토의견

첫째, 금융위원회는 단기적으로 햇살론15의 신규 보증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가 종료된 만큼 대출한도를 축소·운영하여 정책 대상자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 시기의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 사업손실율을 고려하여 2025년 사업손실률을 2024년과 마찬가지로 13.7%로 추산하였음. 그러나 대위변제율이 현재 추이대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예산안 편성 시에 비해 사업손실율이 높아질 수 있고, 이 경우 햇살론15의 신규 공급액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실제 2024년 6월 햇살론15의 보증기관이 국민행복기금에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변경되면서 전산시스템 개발 등으로 인해 5대 시중은행은 2024년 6월 28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햇살론15 상품을 공급하지 않아 일부 불편을 초래한 바 있었음.[8)]

또한, 햇살론15은 2022년 8월부터 한시적 대출한도 상향을 연례적으로 반복하고 있는데, 대위변제율 증가를 고려하여 대출한도를 당초 한도인 최대 1,400만원으로 환원하고, 보다 많은 정책수요자가 동 상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2021년 9월 햇살론15 상품 출시 당시 대출한도는 최대 1,400만원으로 설정되었으나, 2022년 8월 8일부터 2022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대출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하였다가, 2023년, 2024년 모두 대출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한시적 대출한도 상향을 연례적으로 반복하고 있음.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햇살론15의 연내 재원소진으로 인해 신규 보증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1인당 대출한도 조정을 통해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8) 금융위원회는 5대 은행의 햇살론15 상품 출시가 지연됨에 따라 일부 불편함은 있었으나, 다른 은행이 정상적으로 상품을 출시하여 햇살론15 상품 공급 전체가 중단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견임.

둘째, 금융위원회는 장기적으로 여러 햇살론 상품(햇살론 유스·뱅크·카드·근로자)의 사업목적, 재원조달방식 및 다른 재정사업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괄적인 서민금융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햇살론의 당초 취지는 제도권 금융사가 고금리를 통해 벌어들인 이자수입 중 일부를 출연하여 사회적 약자가 불법 사금융을 활용하지 않고 제도권 금융 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햇살론15의 건전성 회복 후에는 정부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햇살론15는 당초 국민행복기금의 여유재원을 기초로 하여 국민행복기금에서 운영하다가 2024년부터 재원 고갈로 인해 정부의 재정투입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증기관이 전환되었음.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이 취급하는 다른 햇살론 상품은 복권기금(햇살론유스, 근로자햇살론), 은행권 출연금(햇살론뱅크), 카드사 출연금(햇살론카드), 금융회사 출연금(근로자햇살론) 등 사행성 사업에서의 기금 수입과 금융회사의 사회적 환원 차원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음.

[최근 3년간 햇살론 시리즈 상품 실적]

(단위: 억원, 만건)

구분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뱅크		햇살론유스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2022	38,285	31.3	14,305	14.5	12,361	9	3,094	9.7
2023	34,342	34.6	13,086	13.9	13,329	13.3	3,016	10.7
2024.1~8	17,389	22.4	5,806	6.9	7,317	10.5	1,195	4.3

자료: 금융위원회

참고로, 2024년 9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은행권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비율의 하한이 0.06%로 규정됨에 따라 2025년 3월부터 은행권의 출연료율은 0.06% 이상으로 인상될 예정이고, 이로 인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보완계정에 대한 은행권 출연료율이 0.03%이었던 2023년에 대비하여 은행권 출연액이 연 986억원 이상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은 증가할 예정임.

또한, 햇살론15의 재정투입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최저신용자 한시특례보증(재정투입)과 햇살론15(국민행복기금→재정투입) 모두 재정투입을 통한 저신용자 보증공급 프로그램이라는 유사중복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장기적 사업개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9)]

9) 최근 금융위원회는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방안」(2024.10.2.)을 발표하면서,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 확대, 햇살론 뱅크 분할상환 지원, 햇살론유스 대상 확대 및 이자경감 등 정책서민금융 대상자의 상환부담을 줄이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 바 있으나, 이는 정책서민금융 제도의 통폐합 등 근본적인 내용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3.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 정부기여금 유보액 및 정책변경 등을 고려한 적정 예산안 조정 필요

가. 개 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정부기여금 및 시스템 구축·유지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7억 8,900만원(1.8%) 증액된 3,750억원이 편성되었음.[10)]

[2025년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청년도약계좌)	368,211	375,000	6,789	1.8

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25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5년간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를 지원하는 금융상품으로, 2023년 6월 사업을 개시하여 11개 은행에서 상품을 취급하고 있음.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예산안의 국회 제출 3일 전인 2024년 8월 29일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을 확대(월 최대 2.4만원, 5년간 최대 144만원→월 최대 3.3만원, 5년간 최대 198만원)하는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으나,[11)] 기여금 확대의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음.

2025년도 이 사업은 ①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3,628억 400만원, ② 인프라 구축 116억 9,200만원, ③ 청년도약계좌 운영지원 5억 400만원으로 구성됨.

10) 일반회계-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1831-882)(금융소비자국)

11)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2024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 개최」, 2024.8.29.

[청년도약계좌 사업 개요]

<table>
<tr><th>구분</th><th>내 용</th></tr>
<tr><td>사업목적</td><td>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td></tr>
<tr><td>지원대상</td><td>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최대 6년) 제외) 중
개인소득이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인 자</td></tr>
<tr><td>상품내용</td><td>월 최대납입 70만원, 5년 만기의 자유적립식 적금</td></tr>
<tr><td>금리</td><td>3년 고정금리, 2년 변동금리</td></tr>
<tr><td>지원내용</td><td>① 납입금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table>
<tr><td colspan="2">개인소득</td><td rowspan="2">본인
납입한도</td><td colspan="2">기여금 지급한도</td><td colspan="2">기여금 매칭비율</td><td colspan="2">기여금 한도</td></tr>
<tr><td>총급여 기준</td><td>종합소득기준</td><td>현행</td><td>예정</td><td>현행</td><td>예정</td><td>현행</td><td>예정</td></tr>
<tr><td>2,400만원</td><td>1,600만원</td><td rowspan="5">70만원</td><td>40만원</td><td rowspan="4">70만원</td><td>6.0%</td><td>6.0%
+3.0%</td><td>24만원</td><td>33만원</td></tr>
<tr><td>3,600만원</td><td>2,600만원</td><td>50만원</td><td>4.6%</td><td>4.6%
+3.0%</td><td>23만원</td><td>29만원</td></tr>
<tr><td>4,800만원</td><td>3,600만원</td><td>60만원</td><td>3.7%</td><td>3.7%
+3.0%</td><td>22만원</td><td>25만원</td></tr>
<tr><td>6,000만원</td><td>4,800만원</td><td>70만원</td><td>3.0%</td><td>3.0%</td><td>21만원</td><td>21만원</td></tr>
<tr><td>7,500만원</td><td>6,300만원</td><td>-</td><td>-</td><td>-</td><td>-</td><td>미지급</td><td></td></tr>
</table>
② 본인납입금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 및 비과세혜택</td></tr>
<tr><td>금리</td><td>취급 은행별 상이하고, 최대 6.0%</td></tr>
<tr><td>이자지급방식</td><td>만기일시지급</td></tr>
<tr><td>취급은행</td><td>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은행</td></tr>
</table>

자료: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 도표]



자료: 금융위원회

나. 검토의견

첫째, 청년도약계좌의 집행 부진으로 인한 서민금융진흥원 내 유보금 발생 및 기여금 확대방안의 적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2025년도 예산안을 집행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금융위원회는 2025년 기여금 지원 내역사업의 예산안 편성 시, 기여금 산출 산식은 제시하였으나[12] 미집행 유보금(2024년 말 2,843억원 예상)에 대한 명시적인 고려가 없었고, 2025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이 임박한 시점에 청년도약계좌의 기여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2024.8.29.)하면서, 정작 그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등의 협의를 거쳐 연내 마련하겠다고 유보하였음.[13]

금융위원회는 2025년 예산안 편성 시 '기여금 지원 확대' 사항이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기여금 확대의 적용 시기를 '2025년 연초부터' 또는 '가입 시부터 소급하여 적용' 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는데, 동 사항은 각각 900억원 내외의 기여금 증감 요인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사안임.[14]

이 사업은 청년도약계좌의 과다추계로 인한 실집행 부진이 연례적으로 지적되고 있고,[15] '기여금 지원 확대' 적용여부 및 적용시기에 따라 2025년도 청년도약계좌의 적정 기여금 규모가 달라지며, 과다편성된 기여금 예산안은 결국 실집행되지 못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 유보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적정 기여금 규모를 산정하고 예산안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음.[16]

---

12) 2025년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의 '기여금 지원' 내역사업 산출 근거

① 기여금 지원 : (2024) 3,590억 4,300만원 → (2025요구) 3,628억 400만원 - (요구)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이 납입한 금액에 개인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기여금을 매칭 지급 - (산출) 기가입자(2023~2024년) 및 2025년 신규가입자 x 매칭비율(최대 6%) x 납입액(월 최대 70만원) x 가입기간

자료: 금융위원회

13)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2024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 개최', 2024.8.29.

14) 금융위원회는 '기여금 지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 없이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예산안 심사단계에서도 이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 국회가 이 사업에 대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15)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1권, p.14.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결산 검토보고」, 1권, p.285.

16)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에 교부한 기여금이 집행되지 못하고 서민금융진흥원 단계에 유보되는 경우 단기 상품으로 운용되어 일부 이자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재정이 여의치 못한 상황에서 실제 필요한 수준보다 과도한 예산안을 계상하여 실제 사용되지 못한 채 출연기관에 유보되는 것은 예산의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이에, 2025년도 청년도약계좌 관련 기여금으로서 편성이 필요한 규모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음.

먼저, 2024년 8월 기준 청년도약계좌 수는 143만 8,000건이고, 세부집계가 가능한 7월 기준 계좌 유지건수는 125만 7,000건임.

[2024년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해지 실적]

(단위: 천건, 억원)

구분	2024년									2023~2024.8. 누적
	1월말	2월말	3월말	4월말	5월말	6월말	7월말	8월말	소계	
가입계좌 수	39	154	355	167	78	21	75	38	927	1,438
누적계좌 수	550	704	1,059	1,226	1,304	1,325	1,400	1,438	1,438	1,438
해지계좌 수(A)	10	10	15	18	15	16	17	집계중	101 (7월말 기준)	143 (7월말 기준)
누적계좌 수	52	62	77	95	111	126	144		144 (7월말 기준)	144 (7월말 기준)
해지율(A/B)	9.5%	8.8%	7.3%	7.8%	8.5%	9.5%	10.2%		10.2% (7월말 기준)	10.2% (7월말 기준)
계좌 유지 건수(B)	498	642	982	1,131	1,194	1,199	1,257		1,257 (7월말 기준)	1,257 (7월말 기준)
기간별 적금 납입액	2,621	13,390	18,591	8,732	5,584	5,095	5,468	집계중	59,481 (7월말 기준)	71,989 (7월말 기준)
가입유지계좌의 적금납입 총액(누적)	14,420	27,553	45,448	53,321	58,387	62,855	67,706		67,706 (7월말 기준)	67,706 (7월말 기준)
계좌당 월평균 적금납입액(천원)	565	2,213	2,180	1,022	637	581	581		1,111 (7월말 기준)	856 (7월말 기준)
정부기여금 지급액	94	455	636	307	198	181	194		2,605 (7월말 기준)	2,513 (7월말 기준)
1인당 월 정부기여금	21	77	76	36	23	21	21		39 (7월말 기준)	31 (7월말 기준)

주 1) 해지율 = {(일반중도해지자 수(누적) + 특별중도해지자 수(누적)/가입계좌 수(누적))}×100
2) 계좌 유지건수 = 가입계좌 수(누적) - (일반중도해지자 수(누적)+특별중도해지자 수(누적))
3) 계좌당 월평균 적금납입액 = 당월 총 납입금액 / 당월 납입계좌 건수
4) 특별해지자수는 2023년 말 기준 51명, 2024년 3월 말 기준 180명으로 미미한 수준으로 도표에서 생략함
자료: 금융위원회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23~2024년 청년도약계좌의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기여금 출연금 중 지급되지 않은 유보액이 발생하였음.

2023년도 기여금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유보액(미지급액)이 3,008억 1,600만원 발생하였고, 이에 더해 2024년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3,029억 9,300만원(청년희망적금 기여금 부족분 560억 5,000만원 제외)을 고려할 때,[17] 2024년 연말에는 약 2,843억원의 기여금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유보될 것으로 예상됨.

[2024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소요 예측현황]

(단위: 천명, 억원)

가입시기		예상 1인당 월평균 정부기여금	지급개월	예상 대상인원	예상 기여금 소요액 (환수액 미포함)	기초 기여금 유보액	예상 기말 지급 준비금
연도	월						
2023	7~12월	2.1만원	12개월	511	926	3,008	2,843[2]
2024	1~8월		5~12개월	648	1,145		
	9~12월 (가정)	2.1만원[1]	1~5개월	162	123		
	청년희망적금 일시납입	37.3만원	3~32개월	279	1,000		
연말 기준				1,600 (유지인원: 1,400)	3,194		

주 1) 2024년 8월 말 기준 1인당 월 평균 정부기여금인 2만 1,000원이 9월 이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2) 중도해지에 따른 예상 기여금 환수액 등은 포함되지 않음
3) 금융위원회는 2024년 2월부터 5월까지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를 대상으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허용하였는데,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 52만명이 연계가입을 완료하고 이 중 28만명이 일시납입하였음. 평균 일시납입액은 1,100만원, 일시납입기간은 16개월이며, 일시납입에 따른 정부기여금 매칭규모는 999억 7,000만원임

자료: 금융위원회

17) 금융위원회는 2024년 4월 청년희망적금의 저축장려금이 부족하자, 청년도약계좌 사업으로부터 560억 5,000만원을 내역변경한 바 있음.

[2024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사업 간 전용 내역]

(단위 : 백만원)

일자	변경 증액(A)			변경 감액(B)			변경 사유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금액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금액	
2024. 4.18.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희망적금)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희망적금)	56,050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56,050	(전용) 청년희망적금 저축장려금 지급을 위한 내역변경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25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소요를 추계한 결과, 2025년에는 70만명이 신규가입하여 연말에는 기존 가입자를 포함하여 190만명이 가입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함. 기여금 확대방안까지 적용되는 것을 고려한 경우에는 2025년 4,763~5,584억원의 기여금을 지급하고, 2025년 말에는 887~1,708억원의 지급준비금이 유보될 것으로 예상함.

이를 시나리오별로 보면, ① 기여금 확대 지급분을 2025년 1월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중 4,763억원이 지급되어 연말 1,708억원이 유보될 것으로 예상되고, ② 가입시부터 소급하는 경우에는 연중 5,584억원이 지급되어 연말 887억원이 유보될 것으로 예상됨.

[2025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소요 예측현황]

(단위: 천명, 억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가입시기</th><th rowspan="2">예상 1인당 월평균 정부기여금</th><th rowspan="2">지급 개월</th><th rowspan="2">예상 대상인원</th><th rowspan="2">예상 가입유지인원 (연도말 기준)</th><th rowspan="2">예상 기여금 소요액 (환수액 미포함)</th><th rowspan="2">예상 기초 기여금 유보액</th><th rowspan="2">예상 기말 지급준비금</th></tr>
<tr><th>연도</th><th>월</th></tr>
<tr><td rowspan="5">2025년</td><td>2023년</td><td>7~12월</td><td rowspan="4">2.55만원[1]</td><td rowspan="3">12개월</td><td>511</td><td rowspan="5">1,900</td><td rowspan="5">4,763
~5,584[3]</td><td rowspan="5">2,843</td><td rowspan="5">887~1,708</td></tr>
<tr><td rowspan="2">2024년</td><td>1~8월</td><td>927</td></tr>
<tr><td>9~12월</td><td>162</td></tr>
<tr><td>2025년</td><td>1~12월</td><td>1~12 개월</td><td>700[2]</td></tr>
<tr><td colspan="5">소계</td><td>2,300</td></tr>
</table>

주 1) 일시납입자 중 일반납으로 전환된 자의 경우 2만 7,500원으로 추산함
2) 금융위원회는 2025년 청년도약계좌 신규가입인원을 70만명으로 추산함
3) 예상 기여금 소요액은 2025년 청년도약계좌 신규가입인원의 범위와, 기여금 지원확대방안의 소급여부에 따른 기여금 범위를 추산한 것임

자료: 금융위원회

따라서 예산안 심사 단계에서 기여급 확대 방안의 적용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2025년 말 예상되는 유보액만큼 이 사업의 예산안을 감액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청년도약계좌 콜센터의 인원 대비 상담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므로, 인프라 구축 내역사업의 청년도약계좌 상담센터 운영 예산의 감액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문의응대·상담[18]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담사 200명 규모의 청년도약계좌 콜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음. 동 위탁용역을 위해 2023년 37억 8,000만원, 2024년 56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고, 2025년 예산안에는 59억 2,500만원을 편성할 예정임.

2023년부터 청년도약계좌 콜센터 월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후 청년도약계좌로 전환하는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평균 2시간 이내이고, 202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의 평균 시간은 1.52시간(1시간 31분)에 불과한 상황임.

이를 고려할 때, 2025년 청년도약계좌 콜센터 인력을 계획 대비 절반 수준인 100명으로 축소하더라도 평균 상담시간은 4시간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콜센터 인력을 적정 규모로 축소하기 위해 2025년도 인프라 구축 내역사업의 예산안 116억 9,200만원 중 일부를 감액 편성할 필요가 있고, 상담 수요 증가 시에는 단기 기간제 상담사 활용 등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청년도약계좌 콜센터 상담현황]

(단위: 건, 명, 시간)

구분	23.7.	23.8.	23.9.	23.10.	23.11.	23.12.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민원상담건수	90,484	54,753	32,037	41,574	39,174	26,469	65,402	128,579	108,355	50,451	34,885	40,123	62,583	76,710
외주인력 수	178	191	189	190	183	176	185	175	172	185	180	169	176	166
1인당 일 평균 상담수	35	19	13	17	14	11	24	57	46	19	14	18	23	33
1인당 일 평균 상담시간	2.50	1.40	0.97	1.10	0.96	0.90	2.36	6.01	4.70	1.48	0.85	1.22	1.60	2.33

주 1) 민원상담 건수 = 콜수(인바운드 응대콜 + 아웃바운드 상담콜) + 서류점검건수 + 채팅상담건수
* 서류점검건수(나이요건, 가족관계확인, 가구원 정정 등) 중 일부 업무는 미포함
** 채팅상담은 2024.7월 개시함에 따라, 2024.8월부터 실적에 포함됨
2) 외주인력수 = 관리자 및 상담사(반일제·전일제 근무) 총 인원
3) 1인당 일 평균 상담수 = 민원상담 건수 / (영업일 × 상담인원)
(상담인원 수는 외주인력 수에서 근무시간 환산(반일제는 0.5명) 적용)
4) 1인당 일 평균 상담시간 = 상담시간(후처리시간*포함) / 영업일 × 상담인원
*상담원이 고객상담 종료 후 시스템등록 등 업무처리하는 후처리시간 포함(채팅상담은 시간 산정 불가로 제외)
자료: 금융위원회

18) ① 지원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상품 관련 일반 문의 대응, ② 심사진행상황 상담, 법인(취급기관 및 은행) 대응 상담, 채팅상담 등, ③ 청년도약계좌 나이요건 확인, 가족관계 확인 등 가입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점검, 기타 민원 관련 업무처리 진행

4.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 새출발기금의 과도한 목표 및 캠코채 발행 문제

가. 개 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권매입형 채무조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700억원(51.5%) 증액된 5,000억이 편성되었음.[19)]

[2025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330,000	500,000	170,000	51.5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하 “새출발기금”이라 함)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신규 편성된 것으로,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인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추심 중단, 원금 조정, 장기・분할상환 전환, 금리 감면, 거치기간 부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SPC[20)] 형태의 새출발기금을 신설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채무조정 방식은 ‘채권매입형’과 금융사 동의 기반 ‘중개형’이 있음. 매입형은 새출발기금이 금융사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하여 직접 채무조정을 하는 방식이고, 중개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안을 바탕으로 금융사의 동의 하에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임. 한편,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원함.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최근 2026년까지 ‘40조원+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자 한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을 발표(2024.7.)한 바 있음.[21)]

---

19) 일반회계-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2432-303)(구조개선정책관)

20)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이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의미함.

[새출발기금 개편 현황]

구 분		당초(출범 시)	제1차 변경 (2024.2.1~)	제2차 변경 (2024.9.12)
적용 대상 요건 등	적용 기간	2022.10월 ~ 2025.9월 (최대 3년 간 신청접수, 1년 단위 연장 검토)	변동 없음	2022.10월 ~2026.12월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법인소상공인 누구나(휴·폐업자 포함)	변동 없음	변동 없음
	코로나 피해여부	코로나 피해 입증차주 (재난지원금·손실보전금수령자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이용자등)	코로나 피해 입증 폐지 (2024.2월부터 적용)	변동 없음
	업종 제한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 아닌 경우 제외	변동 없음	변동 없음
	사업영위기간	별도 제한 없음	2020.4.1. ~2023.11.30.	2020.4.1. ~2024.6.30.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연체된 차주	변동 없음	변동 없음
	부실우려차주	3개월 미만 단기연체중인 차주	변동 없음	변동 없음
조성규모		30조원	-	40조원 + a

자료: 금융위원회

정부 재정은 매입한 부실채권 등의 손실액 보전을 위해 출자됨.

금융위원회는 당초 2022년 총 30조원의 채권을 매입할 계획을 바탕으로 예상 채권 매입가율을 60%로 반영하여 18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였음. 이에 따른 채권매입 재원 18조원의 20%(예상 부도발생률)에 해당하는 3.6조원은 정부 현금출자로 조달하고, 나머지 14.4조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사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그간 사업 실적 등을 반영하여 채권 매입액, 채권매입가율, 예상부도율 등을 조정하여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구체적으로는, 채무조정규모를 40조원+a로 하고, 채권 매입이 필요한 비율을 83.5%로, 예상매입가율을 40.7%로, 예상부도율을 29.5%로 하여, 정부 출자금 규모는 예상 손실비용 규모인 4.01조원으로 증가하였고, 나머지 9.59조원은 캠코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할 계획임.

21) 관계 부처 합동,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2024.7.3.

[새출발기금 채권 매입 재원 조성 계획 변경 내역]

구 분	당초(2022.10.~)	변경(2024.9.12.)
채무조정 전체 규모	30조원	40조원+a
채무조정 대상 채권 매입 규모	30조원	33.4조원 = 40조원 × 83.5% (채권 매입 비율: 83.5%)
채권매입 소요재원	18조원 = 30조원 × 60% (예상 매입가율: 60%)	13.6조원 = 33.4조원 × 40.7% (예상 매입가율: 40.7%)
정부 출자	3.6조원 = 18조원 × 20% (예상 부도율: 20%)	4.01조원 = 13.6조원 × 29.5% (예상 부도율: 29.5%)
캠코채 발행 규모	14.4조원 = 18조원 - 정부출자금	9.59조원 = 13.6조원 - 정부출자금

자료: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의 월별 채권매입액 및 채권매입가액 실적 및 예상치]

(단위: 억원, 2024년 8월 말 기준)

연 도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 계	
2022	채권 매입액	(2022.10. 새출발기금 출범)									-	750	2,202	2,952	
	채권 매입가액										-	364	500	863	
2023	채권 매입액	1,693	2,222	1,777	2,114	2,130	1,859	576	2,784	2,819	2,868	2,695	2,608	26,145	
	채권 매입가액	406	611	826	947	976	796	311	1,432	1,410	1,320	1,119	1,155	11,309	
2024	채권 매입액	2,520	2,525	2,900	3,076	3,464	4,257	4,933	3,991	*11,984*	*11,984*	*11,984*	*11,984*	27,666 (8월)	*75,600 (12월)*
	채권 매입가액	1,209	1,158	1,350	1,306	1,596	1,861	2,313	1,830	*4,877*	*4,877*	*4,877*	*4,877*	12,623 (8월)	*30,769 (12월)*
2025	채권 매입액	*9,650*	*9,650*	*9,650*	*9,650*	*9,650*	*9,650*	*9,650*	*9,650*	*9,650*	*9,650*	*9,650*	*9,650*	*115,800*	
	채권 매입가액	*3,928*	*3,928*	*3,928*	*3,928*	*3,928*	*3,928*	*3,928*	*3,928*	*3,928*	*3,928*	*3,928*	*3,928*	*47,131*	

주: 기울임 표시는 변경계획 대로 채권매입한 경우 월평균 채권매입액 및 채권매입가액을 표시한 것임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 자료를 재가공

나. 검토의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캠코채 발행을 통한 자체재원 조달이 어려워 결과적으로 정부 재정출자분이 새출발기금의 주된 재원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계획대로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재원 조달의 규모와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새출발기금은 당초 사업 설계 시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캠코채 발행을 통해 대부분의 재원을 조달하고, 정부의 현금출자금은 손실보전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구조로 설계되었으나, 현재 정부출자분이 과다 기여하고 있음.

2022년 이후 새출발기금 재원 조달 계획 대비 실적을 살펴보면, 정부의 재정출자분은 계획대로 집행되었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체재원 조달분은 당초 계획 기준 14조 4,000억원, 변경 계획 기준 9조 6,105억원의 캠코채를 발행하고자 하였으나, 2024년 8월까지 1조 2,800억원만 발행하여 변경계획 대비 실적이 13.3%에 불과한 상황임.

그 결과, 2024년 8월 기준 새출발기금 조성액 2조 4,900억원 중 정부의 누적 현물출자금은 1조 2,10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캠코채 발행액은 1조 2,800억원임. 정부 재원 비중은 48.6%으로, 예상부도율 29.5%에 비해 높은 수치임.

[새출발기금 재원 조달 계획 대비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계 획		현 황				
	당 초 (2022.10.)	변 경 (2024.9.)	2022	2023	2024.8.	2022 ~2024.8. (누적)	변경계획 대비 투입비율
정부출자금(예산)	36,000	40,058	6,000*	2,800	3,300	12,100	30.2%
캠코채 발행액	144,000	96,105	-	3,600	9,200	12,800	13.3%
합 계	180,000	136,163	6,000	6,400	12,500	24,900	18.3%

주) 현물출자 5,000억원 별도
자료: 금융위원회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앞으로 캠코채 발행을 통해 자체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측면이 있음.

부실채권 매입계획에 따르면 캠코채 발행규모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채비율이 크게 높아질 예정인데, 실제로는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계획대

로 캠코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음.[22] 이로 인해 새출발기금의 계획대로 부실채권을 매입하는데 차질이 발생하고, 재정투입분이 사실상 해당 사업의 재원으로 기능하게 될 우려가 있음.

참고로, 새출발기금의 변경계획대로 사업이 수행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채비율은 2024년 227.2%, 2025년 267.6%로 공공기관 부채비율 상한(200%)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본 및 부채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자본 조달 방식		자본 (A)	부채 (B)	부채비율 (B/A)
	재정(현금출자)	캠코채 발행			
2022년 (결산)	새출발기금 출범(2022.10.)		34,289	58,470	170.5
	6,000	-	40,289	58,470	145.1
2023년	공사 고유사업 수행분		33,760	73,741	218.4
	2,800	3,600	42,560	77,341	181.7
2024년 (8월)	공사 고유사업 수행분		33,329	73,810	221.5
	3,300	9,200	45,429	86,610	190.6
2024년 (예상)	공사 고유사업 수행분		35,888	77,675	216.4
	3,300	27,775	47,988	109,050	227.2
2025년 (예상)	공사 고유사업 수행분		38,585	75,678	196.1
	5,000	41,947	55,685	149,000	267.6

자료: 금융위원회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채권 등을 새출발기금을 통해 차질없이 채무조정하여 금융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채권매입에 필요한 적정 예산안 규모를 고려하는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계획대로 캠코채를 발행하여 자체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출발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출자규모 및 출자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22) 새출발기금의 출범 시에는 코로나19 피해 요건, 상환유예·만기연장 등으로 인해 새출발기금의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하였는데, 이로 인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캠코채를 적게 발행하더라도 사업수행이 가능하였고 새출발기금 사업 수행이 오히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채비율을 낮추는데 기여하는 효과가 있었음.

5.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 사업: 재정모펀드 회수재원을 고려한 예산안 조정 필요

가. 개 요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 사업은 혁신성장 분야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혁신산업펀드 및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자금을 공급하는 성장지원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은행에 출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00억원(△16.7%) 감액된 2,000억원이 편성되었음.[23)]

[2025년도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산업은행 출자 (혁신성장펀드)	240,000	200,000	△40,000	△16.7

이 사업은 재정과 정책자금(산업은행 출자)과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차례로 모펀드와 자펀드를 결성한 후, 자펀드에서 민간기업에 투자하는 구조임.

금융위원회는 2023년부터 기존의 뉴딜펀드를 혁신성장펀드로 변경하면서 투자분야를 혁신산업펀드와 성장지원펀드로 나누었음. 각각의 펀드를 5년(2023~2027년)간 매년 1.5조원씩 조성할 계획으로, 2025년에는 예산안 2,000억원(재정출자비율 6.7%)을 투입하여 총 3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임.[24)]

나. 검토의견

첫째, 혁신성장펀드 관련 재정 출자액은 당초 필요수준인 3,000억원에서 산업은행 재정모펀드 회수재원 1,000억원을 차감한 2,000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2024년 회수재원 미사용분을 고려할 때 정부재정의 적정 투입규모를 산정할 필요가 있음.

23) 일반회계-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2414-318)(금융정책국)

24)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년 대비 정부안 감액분 600억원은 산업은행에 출자된 기존 정책펀드(혁신모험펀드 등)의 누적 회수재원을 활용할 계획임.

금융위원회는 2023년부터 5년간 연간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하면서, 매년 재정출자분을 펀드 조성규모의 10%인 3,000억원으로 편성하도록 계획한 바 있음.

그런데 2024년부터 과거 유사한 종류의 성장지원펀드(2018~2020), 소부장펀드(2020~2021), 뉴딜펀드(2021~2022)의 재정출자분으로 구성된 산업은행의 재정모펀드의 회수재원을 활용함에 따라, 2024년에는 성장지원펀드 450억원, 소부장펀드 150억원의 회수재원을 바탕으로 재정출자액을 2,400억원으로 편성하였음.

금융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정모펀드 회수재원 1,000억원을 활용하여 재정모펀드 출자액을 2,000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2024년 회수재원 미사용분 및 2025년 예상 회수재원을 고려할 때 회수재원의 활용폭이 다소 적은 것으로 보임.

참고로, 2024년 8월 기준 회수액 중 확정된 미사용분은 1,405억원이고, 2024년 말까지 206억원이 추가적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됨.

[산업은행 재정모펀드 회수액 등의 현황 및 예상 내역]

(단위: 억원)

펀드명	연도	재정 출자액	펀드 총결성액	회수액(재정모펀드 기준)			
				~2024.8. 회수액	2024년 재투자분	2024.9.~12. 회수예상액	2025. 회수예상액
성장지원펀드	2018	1,700	29,351	779	450	16	225
성장지원펀드	2019	1,000	32,034	235		-	22
성장지원펀드	2020	500	37,649	75		-	
구조혁신펀드	2020	750	14,482	61	-	-	
구조혁신펀드	2021	675	16,588	106	-	-	
소부장펀드	2020	2,000	7,809	351	150	65	442
소부장펀드	2021	2,400	5,261	233		-	74
뉴딜펀드	2021	5,100	64,437	111	-	15	773
뉴딜펀드	2022	4,500	45,329	54	-	-	23
뉴딜펀드	2022	1,500	8,556	-	-	10	26
혁신성장펀드(혁신산업)	2023	2,000	20,827	-	-	-	-
혁신성장펀드(성장지원)	2023	1,000	18,600	-	-	-	-
혁신성장펀드(혁신산업)	2024	2,000	-	-	-	-	-
혁신성장펀드(성장지원)	2024	1,000	-	-	-	-	-
합 계		26,125		2,005	600	206	1,585

주 1) 성장지원펀드와 소부장펀드는 단일 모펀드로, 재투자 재원을 연도별로 구분하지 않음
2) 기업구조혁신펀드는 구조조정 목적의 펀드로, 조성목적이 다른 정책펀드와 달라 혁신성장펀드에 재투자하지 않음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회수재원의 재투자는 미래 회수 예상금액을 반영하여 산정할 수 없고 예산안 제출 시 이미 회수된 금액을 기반으로 산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년도가 아니라 차차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그 기간 동안 대기자금을 안전자산 등에 활용하겠다는 의견임.

그러나 펀드의 운용기간 만료 등을 고려할 때 회수예상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될 수 있다고 보이고, 연이은 세수결손 등으로 인해 재정상황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투자재원을 대기자금으로 두는 것보다 조기에 재투자재원으로 활용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하도록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둘째, 2025년 예산안에 반도체생태계펀드, 원전산업성장펀드가 신규 편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는 2025년도 혁신성장펀드의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한정된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혁신성장펀드 중 혁신산업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에는 반도체・원전산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4년도 혁신산업펀드 결성 시 AI반도체를 포함한 AI 분야를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추가지정하는 경우 자펀드 운용사 선정에 우선 선정하도록 공고한 바 있음.

[혁신산업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 기준]

❶ 혁신성장공동기준(9대분야, 284개 품목) 품목 기업에 60% 이상 투자
❷ 신성장 4.0 또는 글로벌 초격차 및 미래유망산업에 정책출자금액이상(약 30%) 투자
- 초격차 산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차, 원전
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결성액의 60% 이상 투자

〈2024년 혁신산업펀드 한정〉
※환경・AI(AI 반도체 등)를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추가지정하는 운용사는 우선하여 운용사로 선정하여 자펀드 조성・앞선 ❶~❸에 더해 탄소중립・녹색경제 실현 관련 품목 또는 인공지능 관련 품목에 20% 이상 투자시 자펀드 운용사로 우선 선정(1,000억원 규모 펀드 1개씩 2개)

자료: 금융위원회

혁신성장펀드 중 성장지원펀드의 경우, 성장 중・후기 기업 투자유도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분야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고 반도체・원전산업에 대해서도 투자지원이 가능함.

[성장지원펀드 주목적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액	비고
❶ 창업 후 3년이상 경과 중소·중견기업	목표결성액 60% 이상	기존
❷ 투자전 기업가치 500억원 이상 중소·중견기업	목표결성액 60% 이상	기존
❸ 기업당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목표결성액 20% 이상	신규도입

자료: 금융위원회

실제 2023년 혁신산업펀드 자펀드 투자액 중에서 반도체 분야와 관련하여 320억원이 투자된 바 있음.

[2023년 혁신산업펀드 자펀드 투자액 중 반도체, 원전산업 관련 투자현황]

(단위: 억원, %)

분야		모펀드 운용	2024년 8월말 투자액	반도체 관련 투자액	원전 관련 투자액
혁신산업	혁신산업일반	한국성장금융	2,423	320 (13%)	-
	매칭		560	-	-
합 계			4,447	320 (11%)	-

자료: 금융위원회

2025년 예산안의 경우 반도체·원전 분야에 특화된 반도체생태계펀드, 원전산업성장펀드가 새롭게 조성되는 만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5년 이후 신규 혁신성장펀드(범용펀드)와 반도체생태계펀드·원전산업성장펀드(섹터펀드)가 각각의 사업목적에 맞게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6.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투자 고려 필요 및 자펀드 결성 촉진 필요

가. 개 요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은 재정의존도가 높은 단발적·소규모 지역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민간 주도의 지속가능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을 활용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하게 1,000억원이 편성되었음.[25)]

[2025년도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산업은행 출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100,000	100,000	-	-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모펀드는 재정,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하여 총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으로, 총사업비 기준으로 최소 3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가능하게 됨. 자펀드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가 출자하되 희망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출자가 가능하고, 자펀드는 프로젝트 SPC 자본금에 프로젝트 총사업비의 20% 이내에서 투자가 가능하며 투자 규모는 제한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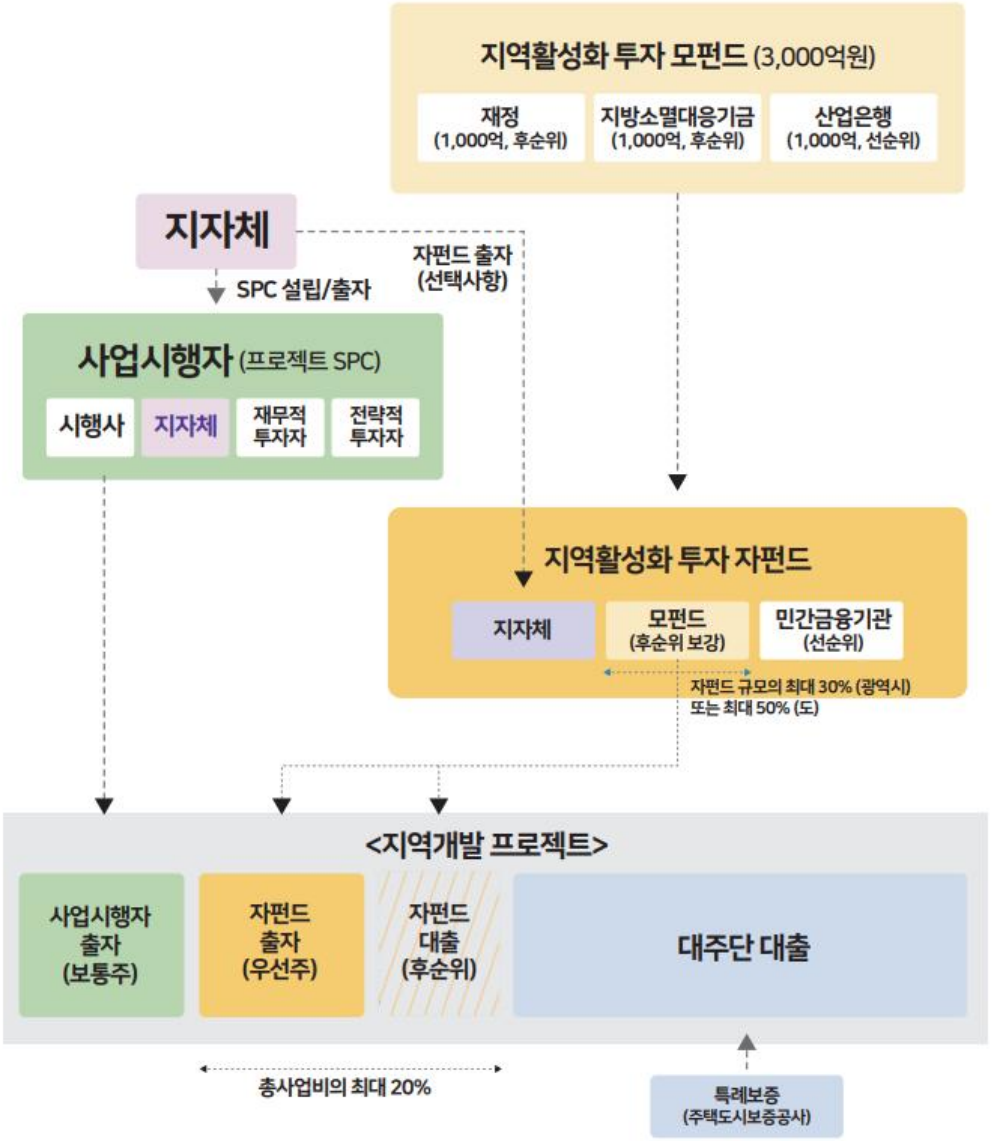
프로젝트 대상은 펀드 취지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선정 가능하고, 수도권 소재 사업, 단순 분양형 사업 등의 제외 사업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정하고 있음.[26)]

---

25) 일반회계-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2414-318)(금융정책국)

26)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사업, 향락시설 사업, 법률분쟁 중인 사업, 상업시설·공동주택 등에 대한 분양·매각 매출 합계가 총 사업비의 50% 이상인 사업(단, 분양수익이 문화, 체육, 예술, 복지 등 공공시설 개발재원으로 활용 시 예외 적용), 이미 준공된 사업 중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제외사업에 해당함.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구조도]



자료: 한국성장금융,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종합 안내」

나. 검토의견

첫째,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재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일부 투입(33%)됨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2025년도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 시부터

모펀드 투자심의위원회의 투자 결정 시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기반 조성’이라는 목적 아래 공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광역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의 투자 대상을 정하고 있고, 투자 결정 시 모펀드 출자기관(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산업은행 등)은 관여할 수 없고, 모펀드 위탁운용사[27] 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됨.

그러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재원의 33%를 차지하는 만큼 지방소멸대응 기반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28]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대응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기금으로,[29]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재원 중 적어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입분에 대해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추세의 반전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봄.

---

27) 2024년도 사업의 경우 모펀드 운용사 공고 후 한국성장금융이 선정되어 한국성장금융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였음.

28) 인구감소지역 지정제도 및 현황

○ 인구감소지역 지정 개요
- 법적 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지정 근거: 인구감소지수 지표 8개(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 지정 현황: 89개 시·군·구
- 지정 주기: 5년 단위 지정(2021.10. 최초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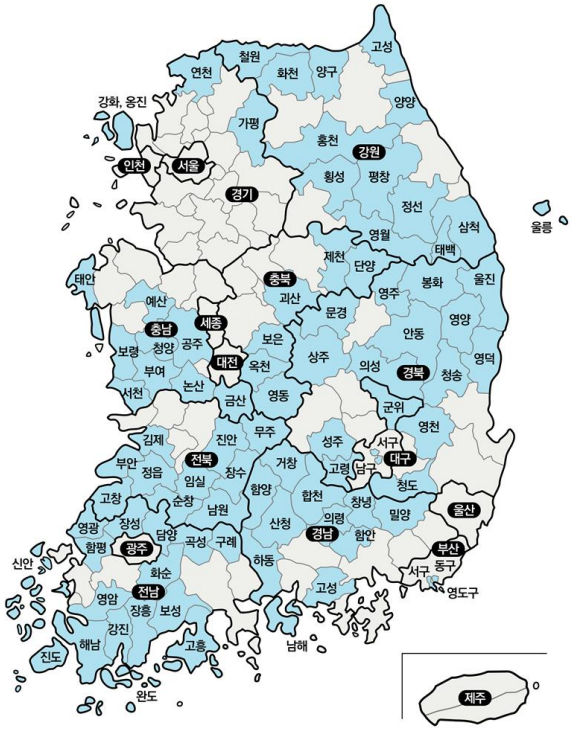
○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 (89개 시·군·구)
- **부산**(3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개)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5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결과
- **부산**(2개) 중구 금정구, **인천**(1개) 동구, **대전**(3개) 중구 동구 대덕구, **광주**(1개) 동구, **경남**(2개) 통영시 사천시, **강원**(4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경북**(2개) 경주시 김천시, **전북**(1개) 익산시, **경기**(2개) 동두천시 포천시

자료: 행정안전부

29)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요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89개 시군구)]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
- 목적: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 규모 및 기간: 연 1조원(광역 25%, 기초 75%) 10년간(2022~2031년) 지원
- 지원대상: 122개 지자체(광역 15개 시도, 기초 107개 시군구)
  * (광역) 서울, 세종 제외 / ** (기초)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 배분방법: ① 기초 지자체는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차등 배분, ② 광역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분
- 운용방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하여 관리운용업무 수행

○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기본방향
- 목적성 강화: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발굴
  ※ 지역의 인구·재정 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89개)에 집중 지원(기초계정의 95%)
- 자율성 제고: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에 맞는 투자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
- 성과 지향: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우수한 지역에 과감하게 투자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계획

지방소멸 대응기금 (연1조)	기초계정 (75%, 7,500억원)	인구감소지역 89개 (95%, 7,125억원)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차등배분
		관심지역 18개 (5% 375억원)	성과지향적 운용 추구
	광역계정 (25%, 2,500억원)	인구감소지수, 재정자립도 등 고려하여 배분 (1,500억원)	산식에 따라 정액배분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출자(2024년부터 매년 1,000억원)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운용 광역별 배분금액의 40% 출자

자료: 행정안전부

따라서 금융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사업 추진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2025년도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 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분에 대한 공익성을 감안하여 모펀드 운용사의 투자심의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최소 투자비율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사업설계를 내실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둘째, 2024년도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자펀드 결성이 아직 추진 중이므로,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정부재정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입분이 조속히 투자로 이어져 정책시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펀드 결성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자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운용사에게 프로젝트 펀드 출자 심사를 신청한 후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승인을 받게 되면, 최대 10개월(4개월+3개월+3개월) 이내에 자펀드를 결성하여야 모펀드로부터 자펀드에 자금이 납입되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특히, 펀드 결성시한과 관련하여 투자승인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자펀드를 결성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3개월씩 2회 최장 6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개요]

<table>
<tr><th>항목</th><th>세부 내용</th></tr>
<tr><td>위탁운용
금액</td><td>총 3,000억원 이내(프로젝트 펀드에 한함)</td></tr>
<tr><td>선정 운용사수
및 배정금액</td><td>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및 선정
자펀드별 모펀드 출자액은 투자대상사업 소재지에 따라 차등적용
<table>
<tr><th>투자대상사업 소재지</th><th>모펀드 출자비율</th></tr>
<tr><td>도</td><td>자펀드 결성총액의 최대 50%</td></tr>
<tr><td>광역시</td><td>자펀드 결성총액의 최대 30%</td></tr>
</table></td></tr>
<tr><td>펀드
결성시한</td><td>최종 선정일로부터 최초 4개월 이내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협의를 통해 3개월씩 2회, 최장 6개월 연장 검토 가능</td></tr>
</table>

자료: 한국성장금융, ‘지역활성화투자펀드 2024년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

실제 자펀드 구성과 관련해서는 모펀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승인을 받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SPC를 설립하고,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취득한 후에야 자펀드 결성이 완료됨.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업무흐름도]



자료: 한국성장금융,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종합 안내」

그러나 2024년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1·2호 프로젝트의 경우, 2024년 2월 충북 단양 및 경북 구미 프로젝트가 선정(투자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0월 현재 아직 자펀드가 결성되지 못하였고, 3호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전남 여수가 8월 선정되었지만 마찬가지로 자펀드가 결정되지 못한 상황임.

[2024년도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모펀드 투자심의위원회 심사 현황]

프로젝트	심사일	1차 연장기간	2차 연장기간
단양	2024.2.16.	2024.6.16. ~ 2024.9.19.	2024.9.19. ~ 2024.12.19.
구미	2024.2.22.	2024.6.22. ~ 2024.9.24.	2024.9.24. ~ 2024.12.24.
여수	2024.8.29.	-	-

자료: 금융위원회

프로젝트마다 자펀드 투자규모는 총사업비의 20% 이내, 이 중 모펀드의 출자비중은 자펀드 약정총액의 50%(도 프로젝트)이므로, 결국 해당 프로젝트마다 총사업비의 최대 10%가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서 투입되는데, 자펀드가 조속히 결성되어야 종국적으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모펀드에 투입된 재정(금융위원회 일반회계 1,000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원)이 지방 투자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정부재정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입분이 조속히 투자로 이어져 정책시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펀드 결성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7.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생태계펀드) 사업(신규): 반도체생태계 지원을 위한 면밀한 사업설계 필요

가. 개 요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생태계펀드)’ 사업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팹리스 분야의 집중 투자를 위해 반도체 전용펀드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3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30)]

[2025년도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생태계펀드)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산업은행 출자 (반도체생태계펀드)	-	30,000	30,000	순증

반도체생태계펀드는 반도체 제조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 및 스케일업・인수합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팹리스 중소・중견기업을 투자대상으로 하고, 연도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하위펀드 조성 시 블라인드 펀드[31)]와 프로젝트 펀드를 혼합하여 운영할 예정임.[32)]

이미 2023~2025년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펀드(민간펀드)가 조성 중에 있으나, 정부는 이에 더해 2025년부터 재정(2,000억원) 및 산업은행(2,000억원)의 출자금을 바탕으로 민간자금(4,000억원)을 매칭하여 2027년까지 8,000억원의 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총 1조 1,0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임.[33)]

즉, 종전 펀드에서는 정부재정이 투입되지 않았으나,[34)] 2025년도부터 동 펀드를 확대 개편하면서 정부재정 25%, 산업은행 25%, 민간자금 50%의 자금을 확충하여 반도체

30) 일반회계-산업은행 출자(반도체생태계펀드)(2414-321)(금융정책국)

31) 블라인드 펀드(Blind Fund)란, 투자대상을 미리 확정하지 않고 펀드 설정 후 운용사가 투자대상이 확보되는 경우 투자를 진행하는 펀드를 일컫음.

32) 프로젝트 펀드(Project Fund)란, 투자대상을 사전에 정해 놓고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방식의 펀드를 일컫음.

33) 관계 부처 합동,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2024.6.

34) 현행 ‘반도체생태계 펀드’는 산업계(삼성전자 500억원, SK하이닉스 250억원), 정책금융기관(성장사다리 펀드 300억원, 산업은행 250억원, 기업은행 200억원) 등의 출자를 통해 2023~2025년 3년간 총 3,000억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고자 함.

생태계 펀드를 새로이 확대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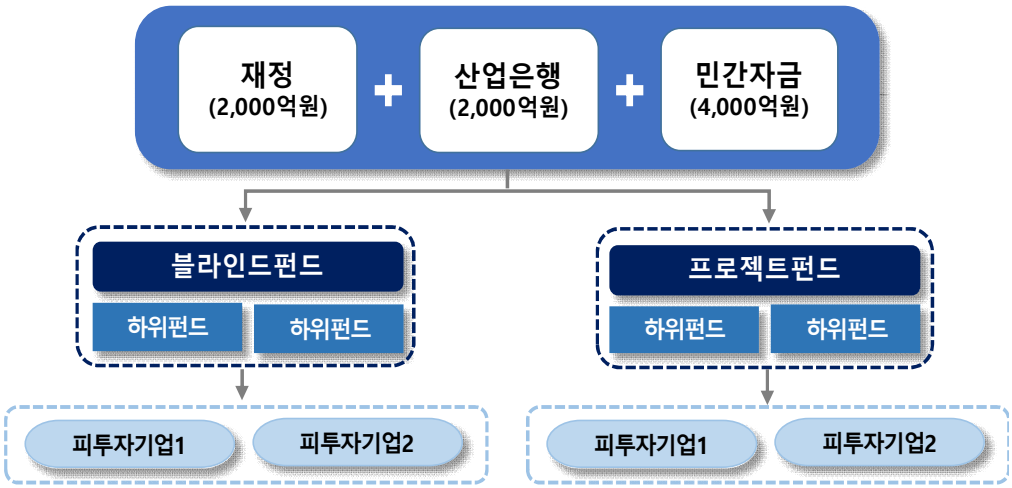
[기존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 계획안]

(단위: 억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정책금융(산은·기은 등)	140	305	305	750
반도체 기업(삼성·SK)	60	345	345	750
민간매칭	200	650	650	1,500
합 계	400	1,300	1,300	3,000

자료: 금융위원회

[신규 반도체 생태계펀드 구조도]



자료: 금융위원회

나. 검토의견

첫째, 금융위원회는 기존 반도체생태계펀드와 혁신성장펀드 등을 고려하여 반도체 생태계펀드 확대 시 연도별 투자수요를 면밀히 예측할 필요가 있고, 이를 고려하여 적정한 재정투입 규모 및 펀드 운용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집중된 산업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파운드리, 팹리스 등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산업경쟁력이 비교적 높지 않아,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미국·일본·EU 등 주요국은 자국 중심의 첨단 생태계 구축을 위해 경쟁적으로 정책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정부도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정책지원으로서, 소부장·팹리스·R&D·인력양성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수도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35]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26조원 규모의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17조원 저리 대출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팹리스·소부장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펀드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개요]

1. 금융지원

대출	■ 17조원 저리대출 프로그램 신설 - '24.7월부터 즉시 가동 - 일반 대출 대비 △0.8~△1.5%p 우대 - 현금 1조원 + 현물 1조원 출자
펀드	■ 반도체 생태계 펀드 1.1조원+α로 확대 - 기존 펀드(~'25, 3,000억원) '24.7월 지분투자 개시 - 신규펀드 8,000억원 신설

2. 세제지원

적용기한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3년 연장 및 첨단반도체 소부장 기술 추가 검토
적용범위	■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 SW 대여구입비, 연구시설 임차료 등 추가 - 국가전략기술외 일반 R&D 동시 연구인력에 대해 연구시간으로 안분하여 공제
감가상각	■ R&D용 기계장치 가속상각 강화(5→3년)

3. 재정지원

연구개발	■ 대규모 R&D 예타 신속 완료, 글로벌 R&D 확대
사업화	■ 국산 AI반도체 실증·상용화 등 지원, 첨단 설계성능 검증장비 공동이용 지원
인력	■ 반도체 특성화대학(18개)·대학원(6개) 및 AI반도체 대학원(3개) 확대

4. 인프라 지원

도로	■ 용인 국가산단 국도 45호선 이설·확장 예타 면제 추진 및 국비 지원
용수	■ 용인 국가일반산단 통합 용수관로 구축 - 예타 면제 추진 및 수자원공사 비용분담
전력	■ 용인 국가일반산단 전력 적기공급 - 산단 내 LNG 발전소 건설 및 장거리 송전선로 구축

자료: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2024.6.26.

35)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2024.6.26.

이 사업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반도체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을 통해 국내 반도체 생태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긍정적인 정책 목적이 있음.

다만, 기존 반도체생태계펀드의 결성 및 집행이 계획 대비 부진하다는 점에서, 2025년도에 정부재정 투입을 통해 해당 펀드의 결성규모를 확대하는 경우 당초 계획처럼 신속한 민간자금 매칭과 투자집행이 가능하다고 단언하기가 어려워 보임.

기존 '반도체생태계 펀드'는 2023~2025년 3년간 총 3,000억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1차년도(2023년) 사업에 프로젝트 펀드(200억원)만 조성되고 블라인드 펀드(200억원)는 연내 미조성되고 차년도로 이월하여 진행되었음.[36] 또한 2차년도(2024년) 사업의 경우 블라인드 펀드는 2024년 6월 위탁운용사 2개사를 선정하여 9월 현재 아직 펀드 조성을 진행 중에 있고, 프로젝트 펀드 역시 2024년 6월 위탁운용사 1개사를 선정하였고 추가 운용사 선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 계획(안)]

(단위: 억원)

투자 분야	1차년도[1]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2] (2025)	합계
모펀드 출자 (A)	200	650	650	1,500
블라인드	-	300	300	600
소부장	-	300	300	600
프로젝트	200	350	350	900
소부장	100	150	150	400
팹리스	100	200	200	500
민간 매칭 (B)	200	650	650	1,500
하위펀드 조성 (A+B)	400	1,300	1,300	3,000
블라인드	-	600	600	1,200
소부장		600	600	
프로젝트	400	700	700	1,800
소부장	200	300	300	800
팹리스	200	400	400	1,000

주 1) 해당 연도 프로젝트펀드 미조성 되어 200억은 2024년도로 이월하여 진행
2) 「반도체생태계종합지원 추진방안(2024.6.26.)」에 따른 반도체생태계펀드 확대 개편 내용* 반영 시, 2025년 총 조성액은 2,500억원임(+1,200억원)
* 기존 반도체 생태계 펀드(3천억원)에 2025년부터 3년간 8,000억원(재정 2,000억원, 산업은행 2,000억원 포함)을 추가하여 1조 1,000억원으로 확대 개편
⇒ 2023년 400억원, 2024년 1,300억원, 2025년 2,500억원, 2026년 3,400억원, 2027년 3,400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36) 산업은행은 반도체생태계펀드 출자자 간 협의에 따라 2024년에 개시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는 의견이고, 해당 프로젝트 펀드의 경우 2024년 7월에야 지분투자를 개시하여 2024년 9월 현재 투자실적이 1건 30억원(모펀드 30억원, 성장사다리 70억원)임.

또한, 반도체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능한 다른 정책펀드의 투자여력도 상당한 수준이므로, 신규 반도체생태계펀드 없이도 기존 정책펀드의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음.

소부장펀드(2020~2021년), 뉴딜펀드(2021~2022년), 혁신성장펀드(2023년~)의 경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팹리스 기업 등에 투자가 가능한데, 동 펀드 결성 후 미투자 잔액은 총 9조 1,568억원으로, 펀드 총결성액의 30.43%가 아직 투자되지 않았음.[37]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기 조성된 펀드의 경우, ① 정책펀드는 다수의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범용펀드로 반도체 분야에 투자를 한정할 수 없어, 반도체생태계 지원을 위한 특수목적 펀드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② 종전 정책펀드는 투자대상이 정관(규약)에 명시되어 있어 미투자재원의 반도체 분야 투자를 강제할 수 없어, 별도의 펀드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임.[38]

37) <최근 5년간 산업은행 재정출자 펀드의 투자 현황>

(단위: 억원)

펀드명	연도	펀드 총결성액	투자집행액	미투자잔액	미투자비율
성장지원펀드	2018	29,351	28,216	1,135	4%
성장지원펀드	2019	32,034	30,603	1,431	4%
성장지원펀드	2020	37,649	32,983	4,666	12%
구조혁신펀드	2020	14,482	13,357	1,125	8%
구조혁신펀드	2021	16,588	13,659	2,930	18%
소부장펀드	2020	7,809	7,235	574	7%
소부장펀드	2021	5,261	3,888	1,373	26%
뉴딜펀드	2021	64,437	46,057	18,380	29%
뉴딜펀드	2022	45,329	26,157	19,172	42%
뉴딜펀드	2022	8,556	1,514	7,042	82%
혁신성장펀드(혁신산업펀드)	2023	20,827	2,983	17,844	86%
혁신성장펀드(성장지원펀드)	2023	18,600	2,703	15,897	85%
혁신성장펀드(혁신산업펀드)	2024	-		-	
혁신성장펀드(성장지원펀드)	2024	-		-	
합 계		300,923	209,355	91,568	30.43%

자료: 금융위원회

38)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은 유한책임사원(LP)으로 자본시장법상 GP 앞 운용지시가 불가하고, 투자대상의 변경을 위해서는 민간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나, 투자대상을 축소한정하는 변경에 대해 민간출자자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의견임.

그러나, 이미 운영 중인 범용펀드의 자율적인 투자 과정에서 반도체 분야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 펀드의 투자 지원 중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설계를 전제될 필요가 있고, 분야별 투자지원의 적정규모를 검토하여 특정 분야에 대해 범용펀드와 특수목적펀드의 중첩된 지원으로 인해 과잉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금융위원회는 반도체생태계펀드에 대한 정부재정 투입 시, 기존 반도체생태계펀드에 비해 주목적 투자대상에 대한 의무투자비율(주목적투자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기존 반도체생태계펀드의 경우, 블라인드 펀드의 주목적 투자비율은 60%, 프로젝트 펀드는 그 성격상 100%인데, 주목적 투자비율 60%는 다수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범용펀드인 소재・부품・장비 펀드, 뉴딜펀드 및 혁신성장펀드와 동일한 수준임.

금융위원회는 반도체생태계펀드는 반도체라는 특정 분야에만 투자할 수 있는 펀드로 혁신성장펀드에 비해 펀드 조성 및 투자 집행 난이도가 높아 앞으로도 주목적 투자비율을 60%로 설정하겠다는 의견임.

그러나 특정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의 재정펀드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투자는 예외적으로 용인되나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하고, 특히 범용 펀드에 비해서 예외를 둘 필요성은 더 낮을 것으로 보임.

벤처투자모태조합의 다양한 계정 중 투자분야가 비교적 한정되는 관광계정(관광기업 육성), 해양계정(해양 신산업), 환경계정(그린스타트업, 사업화, 스케일업), 교육계정(대학 창업)의 경우 주목적 투자비율을 65~80%로 다른 계정의 주목적 투자비율(6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하고 있음.[39)]

이를 고려할 때, 반도체생태계펀드에 재정 투입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정부 재정이 반도체 생태계 지원이라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만큼 주목적 투자비율을 종전에 비해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39) 한국벤처투자, 「2024년도 벤처투자모태조합(모태펀드) 운용계획」, 2024.1.

8.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 사업(신규): 반도체 설비투자 유도의 필요성 및 산업은행 건전성을 고려한 사업 검토 필요

가. 개 요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 사업은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을 위한 저리대출 프로그램(17조원)을 신설하기 위해 산업은행에 출자(현금 1조원, 현물 1조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동년도 4조 2,500억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 조성을 위해 2,5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40]

[2025년도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산업은행 출자 (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	-	250,000	250,000	순증

정부는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2024.6.)을 발표하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금융·세제·재정·인프라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산업은행이 반도체설비투자에 대해 저리대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음. 2024년 7월부터 산업은행 자체재원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2025년부터 현금·현물출자를 실시하여 산업은행의 대출공급 여력을 확충하고 저리대출을 지원하고자 함.

금융위원회는 2025년 예산안 편성 시 산업은행이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 재원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정책금융을 수행할 수 있도록 BIS 비율 등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산업은행에 대한 출자금을 편성하였음.

40) 일반회계-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2414-322)(금융정책국)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개요]

○ (운용목적) 반도체 산업의 제조역량 구축 지원 및 경쟁력 제고
○ (운용규모) 3년간(2025~2027년) 17조원

구 분	2025년	2026~2027년	합 계
운용규모	4조 2,500억원	12조 7,500억원	17조원
현금출자 요청액*	2,500억원	7,500억원	1조원

*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2024.6.26) 上 현물출자계획 1조원은 미반영
** 2024년 7월부터 산업은행 자체재원으로 저리대출 프로그램 가동

○ (지원대상) 국내에 신규 투자하려는 반도체 全분야(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의 국내외 기업(중소·중견·대기업 모두 포함)
○ (자금용도) 설비·R&D 투자자금 등 시설자금(장기대출 위주)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의 대환이 아닌 신규투자에 대해 자금지원
○ (대출한도) 현행 「산업은행법」상 동일계열 여신한도*까지 지원
* BIS개별자기자본(기본자본 +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 × 25%
○ (금리조건)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우대(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 제공 목표)
- 대기업 △0.8~△1.0%p, 중소·중견 △1.2~△1.5%p 우대

자료: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2024.6.)과 금융위원회 제공자료를 재가공

[저리대출 프로그램 우대금리(예시)]

(2024.6. 현재 기준)

	산업은행 일반대출	2024년	2025년 이후	비교지표
대기업 (신용등급 AA, 5년 고정금리)	4.3%	3.5% (△0.8%p)	3.3% (△1.0%p, 0.2%p↓)	국고채(5년): 3.2% 회사채(AA): 3.6%
중소·중견 (신용등급 BBB, 3년 고정금리)	5.3%	4.1% (△1.2%p)	3.8% (△1.5%p, 0.3%p↓)	

주: 실제 대출금리는 글로벌 금리 수준, 만기, 담보여부, 신용등급,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자료: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2024.6.

나. 검토의견

첫째, 금융위원회는 2025~2027년 반도체 대출수요 17조원을 전제로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을 구상하였는데, 반도체 설비투자 수요의 예측 및 반도체 기업의 대출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리대출 프로그램 전체 규모 및 동 예산안의 적정성에 대해 예산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첨단산업의 핵심으로 반도체 산업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미국·일본·대만 등 주요국의 반도체 지원현황에 견주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각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이 중 17조원 규모의 대규모 저리대출 사업은 금융지원의 핵심사업임.[41]

[주요국 반도체 분야 지원정책 개요]

주요국	주요 지원 내용
미국	○「반도체과학법」 제정(2022.8)을 통해 반도체 제조,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을 위한 527억달러(약 73조원) 규모의 보조금·대출·보증 재원 마련 ※ 美 반도체 보조금 지원 사례: ❶BAE시스템스(英) 3,500만달러(2023.12), ❷마이크로칩(美) 1.6억달러(2024.1), ❸글로벌파운드리스(美) 15억달러(2024.2), ❹인텔(美) 200억달러(2024.3) 등 ○「국세법(IRC)」 개정(2022.8.)으로 반도체 장비·제조시설 투자 시 25% 세액공제 혜택 제공
일본	○ '반도체 산업기반 긴급강화 패키지'(2021.11)를 통해 총 1.7조엔* (약 15조원) 규모의 제조시설 보조금 재원 조성 ※ (2021) 6,170억엔, (2022) 4,500억엔, (2023) 6,322억엔 ○반도체 등 5대전략분야를 대상으로 생산량에 따라 법인세 최대20% 감면 발표(2023.12)
대만	○「산업혁신조례」 개정(2023.1) 등을 통해 R&D 및 첨단 공정용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입지·인프라(전력·용수 등) 지원
중국	○역대 최대인 3,440억 위안(약 65조원) 규모의 반도체 3차 빅펀드 조성 발표(2024.5) * 과거 사례: 1차 펀드(2014, 1,390억 위안), 2차 펀드(2019, 2,040억 위안) 조성 ○반도체 분야 첨단기술 보유 기업에 최대 10년까지 법인세 면제 및 집적회로 생산설비 부품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등 세제혜택 제공

자료: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2024.6.) 자료를 재가공

정부는 주요국이 자국 상황에 맞게 보조금이나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것에 대응하여, 반도체 전분야에 걸쳐 국내 기업이 시설자금, 신규투자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 사업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다만, 2024년 9월부터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42] 및 반도체 설비투자 계획의 축소[43]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 예산안과 같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대규모의 조속한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무리한 설비 증설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역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반도체 관련 기업의 설비투자 시, 재원조달의 방식으로서 해당 기업의 현금성 자산을 소진할지 혹은 동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활용할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기업이 전자를 택하는 경우 당초 계획과 달리 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의 수요가 크지

41)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2024.6.

42) 모건스탠리 반도체 시장 전망 보고서

않을 가능성도 존재함.[44]

따라서, 주요국과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반도체 설비투자 수요 및 동 프로그램의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예산안의 적정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둘째,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산업은행 현금출자 규모에 대해서도 산업은행의 적정 BIS 비율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4년 2/4분기 기준 산업은행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은 14.25%로, 2023년 말 13.70%에 비해 0.55%p 상승하였음.

[산업은행 분기별 재무현황]

(단위: 억원, %)

연 도	2023				2024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위험가중자산	2,978,229	2,895,391	2,955,498	3,012,369	3,177,417	3,203,016	미정	미정
자기자본	390,526	408,562	403,859	412,721	441,028	456,414	미정	미정
BIS 비율	13.11	14.11	13.66	13.70	13.88	14.25	미정	미정
고정이하 여신비율	0.78	0.62	0.80	0.81	0.82	0.66	미정	미정

자료: 금융위원회

일자	보고서 제목	주요내용
2024.7.21.	시장평균으로의 하향조정 (Downgrading to In-Line)	아시아 반도체 전망 중립(시장평균)으로 하향 조정 주가의 급격한 상승, 한국 반도체 수출 데이터의 고점 근접, 본도체 사이클의 특성상 고점 예상
2024.8.20.	고점에 대비하라 (Preparing for a Peak)	내년 IT 기기 매출 증가율 둔화, 2024년 3분기가 반도체 사이클의 정점 하드웨어 수익은 2025년 1분기가 정점
2024.9.15.	겨울이 다가온다 (SK Hynix/Winter Looms)	2024년 4분기 이후 D램과 낸드플래시의 평균판매가격 하락 2024년 자본지출 급증으로 D램과 HBM 위험 과소평가
2024.9.15.	메모리-겨울은 항상 마지막에 웃는다 Memory-Winter Always Laughs Last	한국의 기술주를 시장평균에서 주의로 하향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목표주가 하락

자료: 머니투데이, “AI 슈퍼사이클 외치더니... 반도체 보고서 180도 뒤집다”

43)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 역시 신규 생산설비투자(평택 P4・P5)를 보류하고 파운드리 생산라인(P2・P3)의 일부를 가동 중단한 상황임.(조선비즈, “삼성전자, 파운드리 생산라인 줄줄이 셧다운... 설비투자도 보류”, 2024.9.27.)

44) 참고로, 2023년 결산(IFRS 연결 기준) 시 삼성전자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만기 3개월 이내)은 69조 809억원, 단기금융자산(만기 1년 이내)은 22조 6,909억원이고, 하이닉스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7조 5,873억원, 단기금융자산은 5,725억원임.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에 대한 출자규모 산정 시 산업은행의 건전성 비율을 유지하면서 17조원의 신규 대출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자액을 도출하였다는 의견임. 구체적으로는 대출 17조원 실행 시 산업은행의 BIS 비율은 약 68bp 하락하고, 현금·현물출자가 각각 1조원씩 이루어지는 경우 BIS 비율이 약 55bp 상승할 것으로 추산하였음.[45]

그러나,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산업은행에 대한 총 출자규모의 적정성과 현물 및 현금출자의 비중 설정에 대해서는 종국적으로 예산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봄.[46]

셋째, 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특정 대기업에 저리대출 혜택이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한편, 반도체 분야 다른 대출·보증 등 정책금융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패키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반도체설비투자지원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국내에 신규 투자하려는 반도체 관련 전 분야의 국내외 기업으로, 중소·중견·대기업이 모두 포함됨. 참고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 산업은행이 자체재원으로 수행한 반도체설비투자지원프로그램의 경우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 17개 사 8,000억원 규모의 대출이 승인되었는데, 이 중 반도체 대기업 역시 동 프로그램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짐.[47]

이 사업은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기업 역시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특정 대기업에 저리대출 혜택이 편중되지 않고 중소·중견기업도 자금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출한도 설정 등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반도체 분야의 다른 대출·보증·보험 프로그램과 반도체생태계펀드 등의 포괄적인 패키지 지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여 반도체생태계 활성화라는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45) 이는 2023년 말 기준으로, BIS 비율 민감도는 산업은행의 BIS 비율 수준 및 대출기업 신용도 등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

46) 금융위원회는 현금출자가 현물출자에 비해 다음과 같은 바람직하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금출자와 현물출자를 병행한다는 의견임. 구체적으로는 현물은 현금에 비해 BIS 비율 계산시 불리한 만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더 많은 현물출자가 필요하고, 현물회사의 실적에 따라 산은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만큼 BIS비율 등 건전성 지표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며, 현금은 그 자체로 대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현물은 대출재원 활용이 불가능하므로 조달금리에 차이가 있다는 입장임.

47) 연합뉴스, “SK하이닉스, 산은 반도체 저리대출로 수천억원 조달”, 2024.9.10.
산업은행, “산은, K-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반도체 산업 CEO 간담회」개최”, 2024.9.10.

[반도체 분야 대출·보증 등 정책금융 현황]

○ (현황) 반도체 분야에 2024년 7조 9,000억원 지원 계획 등 향후 3년간(2024~2026년) 24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도약 프로그램’ 추진 중

- (대출) 반도체 기업의 설비·R&D 투자, M&A 및 운영자금 등에 대해 대출금리 우대 및 한도 확대 등 지원(산은, 기은, 수은)
- (보증) 반도체 기업의 신용도, 기술력에 기반하여 보증료 감면 및 보증비율 상향 등 지원(신보, 기보)
- (보험) 수출대금(매출채권) 미수령액 손실보상, 기업의 설비 구매용 대출에 대한 보험서비스 등 지원(무보)

[2024년 반도체 분야 정책금융 공급계획]

(단위: 조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합계
공급금액	2.5	0.4	2.1	2.0	0.7	0.2	7.9

자료: 금융위원회

9. 산업은행 출자(원전산업성장펀드) 사업(신규): 원전산업에 대한 기존 정책지원을 고려한 신규 펀드 조성사업 검토 필요

가. 개 요

‘산업은행 출자(원전산업성장펀드)’ 사업은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대외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전산업성장펀드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4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48)]

[2025년도 산업은행 출자(원전산업성장펀드)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산업은행 출자 (원전산업성장펀드)	-	40,000	40,000	순증

원전산업성장펀드는 중소·중견기업의 소형모듈원전(SMR)[49)] 등 원전 신산업 진출 지원 및 민간자금 유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정책펀드로, 재정(400억원) 및 한수원 등 원자력 공공기관 자금(300억원)의 출자금을 바탕으로 민간자금(300억원)을 매칭하여 2025년 단년도에 한해 1,000억원의 펀드를 신규 조성하려는 것임.

48) 일반회계-산업은행 출자(원전산업성장펀드)(2414-323)(금융정책국)

49) 소형모듈원전(SMR, Small Modular Reactor) 모듈형 원자로 제작 후 현장 설치가 가능한 모듈당 전기출력 300MW 전후 규모의 원전을 뜻하며, 유연한 출력조절 및 열·수소생산 등 다양한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이 가능함.

[원전산업 성장펀드 개요]

ㅇ (추진 배경) SMR 등 원전산업을 국가 차원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펀드 조성 ㅇ (사업내용) 정부 주도의 정책펀드를 조성하여 6~8년간 국내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고, 이후 회수 예정 ㅇ (조성 규모) 원전산업에 특화된 정책 펀드 최대 1,000억원 조성 - 정부 재정 400억원 + 한수원 등 공공기관 300억원 + 민간 300억원 목표 ㅇ (펀드 구조) 정부 재정 등 출자로 산업은행에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자금 매칭하여 최대 1,000억원 규모 펀드 조성 - 산업은행이 모펀드 운용사를 공모로 선정하고, 모펀드 운용사가 산업은행의 펀드 운용계획 확정 이후 전문 위탁운용사를 선정하여 자펀드 운용 ㅇ (투자대상) SMR 등 원전 분야의 기업 (설계·기자재·정비 등) ㅇ (투자방식) 블라인드 (다수 기업 소규모 투자) ㅇ (향후 계획) 2025년 상반기 중 모펀드 조성(최초 출자금 납입), 운영사 설정 및 투자개시 목표

자료: 금융위원회

나. 검토의견

첫째,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과 기존 정책펀드 및 원전 관련 금융지원·수출보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전산업 성장에 필요한 정책 수단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해 예산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2024년 3월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TF'를 구성하고 연내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임.[50] 2025년도 예산안에는 SMR 등 원전 분야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편성되어 있음.

---

50)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주요내용 구성방안>

ㅇ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원전정책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원전 정책 방향을 마련 - 중장기 원전 건설·운영 기본방향, 계속운전 추진정책, 기자재 및 핵연료 공급망 강화방안 등이 포함 ㅇ 원전산업 질적 고도화 방안을 수립 - 국내 원전 산업의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한 투자 기반 강화, 2050 연구개발(R&D) 추진 방향, 원전산업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방안 등이 담길 예정 ㅇ 원전 수출경쟁력 강화방안도 정립 - 2050년 원전 수출 목표를 수립하고, 설비·연료·운영·정비 등 수출 다각화 및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독자적 수출 능력 강화전략을 마련 ㅇ 소형모듈원전(SMR) 조기 상용화 및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SMR 선도국 도약 전략을 마련 - 민간이 참여하는 SMR 사업화 방안과 글로벌 파운드리 기반 구축방안 등이 제시될 계획 ㅇ 더욱 강력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로드맵 수립 근거 등을 포함하는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정책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수립 착수」, 2024.3.

특히, 원전산업성장펀드 사업은 원전 분야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중소·중견기업의 SMR 등 원전 신산업 진출을 지원하고, 민간 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하는 것으로, 원전 산업 육성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사업취지가 있음.

특히 2024년 7월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한국이 선정되는 등 원전 수출이 확대되는 추세이고,[51]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서버 등에 필요한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원전산업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52] 원전산업에 대한 지원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현재 원전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다른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5년도 단년도에 원전산업 분야만을 지원하기 위한 섹터 펀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먼저, 기존 정책펀드의 운용사 공고 시 원전사업에 대한 투자지원을 우대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금융위원회는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및 SMR 산업의 조기 육성 등의 정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은행의 혁신성장펀드와 차별화된 원전산업 특화 정책펀드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그러나 2024년 혁신성장펀드는 자펀드 운용사 공고 시 환경·인공지능(AI 반도체 등)을 주목적 투자대상에 포함하는 경우 동 자펀드를 우선 선정하도록 공고한 바 있는데, 이를 고려하여 2025년 혁신성장펀드 공고 시 원전 산업을 주목적 투자대상에 포함하는 자펀드를 우선 선정하는 방안을 신규 펀드 조성의 대안으로서 고려해볼 수 있음.[53]

다음, 2024년 예산 및 2025년 예산안 모두 원전산업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금융지원(융자) 사업과 수출보증 사업이 편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전산업에 대하여 투자지원(펀드)을 추가적으로 조성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은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인력채용, 자재 구매 및 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시중은행 대비 낮은 금리(2%대)로

51)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분야 수출 현황에 따르면, (2009) UAE 바라카 원전 건설사업 20조원, (2021)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변압기 공급 100억원, (2022) 이집트 엘다바 원전 기자재 공급·터빈 시공 3조원, (2023)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삼중수소 제거 설비 사업 2,600억원 등이 있었음.

52) 조선일보, "세계가 원전 르네상스... 원자력 기업 주가 사상 최고 기록", 2024.10.23.
조선비즈, "'AI 전력 수급난' 소형 원전에 손뻗는 빅테크들", 2024.10.17.

53) 현재 운용 중에 있는 혁신성장펀드의 경우 원전산업은 이미 주목적 투자대상의 일부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나, 2023~2024년도 혁신성장펀드의 경우 원전 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실적은 부재한 상황임.

대출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은 1,000억원이 편성되었고 2025년도 예산안으로는 1,500억원이 계상되었음.[54]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원전수출보증’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원전 관련 수출계약 시 보증서 발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무역보험공사가 보증보험을 지원(운용배수 5배 고려 시 총 1,250억 규모)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은 250억원이 편성되고, 2025년도 예산안 역시 250억원이 편성되었음.[55]

이를 고려할 때 원전산업 분야 지원의 필요성과 범용펀드·융자·수출보증 등 다양한 정책지원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전산업 분야에 특화된 정책 펀드 조성의 필요성을 예산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예산안과 같이 2025년부터 원전산업성장펀드를 추진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주목적 투자대상을 면밀히 설계하고, 주목적 투자비율 역시 특정 목적 펀드의 전문성 및 공공부문 출자분 비중(70%)을 고려하여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54)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탈원전 기간 어려움을 겪은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원전 분야 신규 투자 촉진을 통한 원전 생태계 경쟁력 제고
ㅇ (주요내용)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융자지원
ㅇ (지원규모) 2024년 1,000억원, 2025년(안) 1,500억원
ㅇ (사업기간) 2024년 ~ 계속
ㅇ (지원대상) 원전 중소·중견기업 중 원자력산업협회 추천을 받은 기업
ㅇ (대출금리) 분기별 국고채 3년물 평균수익률과 연동되는 대표대출금리에서 1.25%p를 차감한 금리 적용 * 2024년 3분기 기준, 2.0%(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동일)
ㅇ (지원비율) 필요자금의 90%(중소기업), 70%(중견기업) 이내
ㅇ (자금용도)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중복수혜 가능)
* 대출한도 : 시설자금 최대 100억원, 운전자금 최대 10억원 대출기간 : 시설자금 최대 10년(5년 거치), 운전자금 최대 2년(1년 거치)
ㅇ (지원방식) 취급 은행(시중은행)을 통한 간접대출

자료: 금융위원회

55) <원전 수출 보증 사업 개요>

ㅇ (사업내용)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보증(입찰·이행·선급금·하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원전 사업에 특화된 수출보증보험 신설
* 국내 원전기업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도 재무상황·과거 수주실적 등으로 수출보증보험 발급에 어려움 호소
ㅇ (지원대상) 원전 관련 수출계약을 체결한(예정인) 중소·중견 원전기업
ㅇ (지원규모) 2024년·2025년 각각 1,250억원*(1社당 1,500만불 이내)
* 출연예산 250억원 × 운용배수 5배 = 1,250억원
ㅇ (운영주체·예산)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력기금에서 무보기금으로 250억원 출연
ㅇ (기존 보험과의 차이점) 한도 우대(최대 3배, 1,500만불 이내), 보험료 할인(중소 40%, 중견 32% 할인), 심사 간소화(2백만불 이하)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원전산업성장펀드에 대한 상세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않았으나, 주목적 투자 대상을 원전 분야의 설계·기자재·정비 등 중소·중견기업으로 하고, 기존 한국수력원자력의 에너지혁신성장펀드와 같이 주목적 투자비율을 50%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 중임.

먼저 투자대상과 관련해서는, 소형모듈원전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홍보하면서도 투자대상은 원전산업 전반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주목적 투자대상에 원전산업 전반을 포함하더라도 소형모듈원전에 대한 투자 시 투자인정비율을 높이는 등 주목적 투자대상을 면밀히 설계할 필요가 있음.

다음 주목적 투자비율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 출자비중이 70%로 높은 상황을 고려할 때 금융위원회는 이 사업의 모펀드 운용사 공고 시부터 주목적 투자비율을 최소 70% 이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이 펀드가 특정 분야에 대한 지원펀드라는 점을 고려하고 민간부문의 원전산업 투자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목적 투자비율을 공공부문 출자비중보다 더 높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56)]

특정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의 재정펀드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투자는 예외적으로 용인되나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하고, 특히 범용펀드에 비해서 예외를 둘 필요성은 더 낮을 것으로 보임.

한편, 이 사업은 금융위원회가 정부재정을 산업은행에 출자하는 다른 정책펀드인 혁신성장펀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및 반도체생태계펀드 등과 달리, 산업은행의 출자분 없이 정부재정만 투입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산업은행의 정책펀드 운용역할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재정 비중을 축소하고 산업은행의 자체재원 출자분을 일부 신규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56) 금융위원회는 원전산업의 특수성 및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오히려 신규 펀드의 주목적 투자 비율을 기존 정책펀드 대비 완화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원전산업 분야는 반도체, 조선업 등 타 산업 대비 매출규모와 기업 수가 상대적으로 협소하며 SMR이 시장 형성 초기인 점, 동 펀드는 정부 재정이 최초로 투입되는 원전 특화 정책펀드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목적 투자 비율을 기존 대비 완화하여 설계할 필요
- 아울러, 기존 한수원의 에너지혁신성장펀드도 공공 출자 비중이 70%(445억원 중 300억원)에 달하였으나, 주목적 투자 비중은 50%였음

그러나, 금융위원회 의견과 달리 공공출자 비중에 비해 주목적 투자비율은 같거나 높을 필요가 있음. 민간투자 활성화를 이유로 민간 자금을 유치하면서, 해당 분야가 아닌 사업에 정부재정 부분까지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간 투자 활성화와 정부 재정투입의 합목적성 차원에서도 부적절함.

10.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 구축(신규): 신규 장비 도입 시 장비 활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 구축(신규)’ 사업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포렌식 장비 등의 조사 인프라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4억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57)]

[2025년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 구축	-	430	430	순증

금융위원회는 2024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25년 말까지 한시조직인 가상자산과[58)]를 신설하여 가상자산시장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미공개중요정보 등을 이용해 가상자산의 매매 등에 활용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면서, 금융위원회에 위반 혐의자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영치 및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있음.[59)] 이에 따

57) 일반회계-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 구축(7135-322)(디지털금융정책관)

58) 가상자산과는 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 2024.6.25.부터 2025.12.31.까지 한시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임. 가상자산과의 정원은 4급 1인, 5급 5인, 6급 2인, 7급 1인임.

59)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라 금융위원회는 조사 대상자 등이 임의제출한 전자자료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활용하여 동일성과 무결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에 대해 영치(임의제출된 물건의 계속 점유)할 수 있음.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의 경우에는 수사권과 특수사법경찰권을 보유한 것과는 달리,[60]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의 경우에는 강제적 수사권한(압수・수색 등)이 없는 상황이므로, 가상자산 관련 디지털포렌식 수요는 가상조사 대상자 등의 임의제출 자료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됨.

2025년 예산안에는 동 법에 따른 영치권 행사 및 조사를 위해 포렌식 장비와 온체인 데이터 거래분석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하여 이 사업을 신규편성 하였음.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 6,500만원과 온체인데이터 거래분석 서비스 이용료를 납부하기 위한 일반수용비 1억 6,500만원으로 구성됨.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3. 조사에 필요한 장부 ·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제10조를 위반한 사항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된 장부 ·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2.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대한 출입을 통한 업무 · 장부 ·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

6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7조(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 · 수색)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소속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조사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심문하거나 물건을 압수 또는 사업장 등을 수색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압수 · 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 · 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49. 금융위원회에 근무하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 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나. 검토의견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관련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 후 가산자산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내부 규정 완비 등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를 위해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데,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조사단에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다수의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구입하여 운용한 경험이 있음.

그런데 2022년도 예산안 및 결산 심사 시 자본시장조사단 포렌식 장비 도입의 수요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활용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61]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 시 장비도입 후 활용률이 낮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임.

참고로, 자본시장조사단 포렌식 장비(2017, 2022, 2023년 도입)의 최근 활용 실적은 2023년의 모바일 포렌식 장비 활용의 이상추이를 제외하면 점진적인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24년 8월 기준으로 포렌식 장비 활용 실적은 95건(연 환산 시 142.5건)으로 2023년에 비해 저조한 상황임.

[자본시장조사단 포렌식 장비 활용 실적]

(단위 : 건)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8
모바일포렌식	49	34	19	232	27
디스크포렌식	-	10	15	36	67
클라우드포렌식	-	-	-	2	1
합 계	49	44	34	270	95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단 포렌식 장비 도입 및 운용 경험을 기초로, 장비 도입 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시 곧바로 포렌식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61) “자본시장조사단 직접조사 수행과정에서 클라우드 포렌식이 필요했던 사례가 전무하며, 클라우드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면 향후 지속적인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클라우드포렌식 장비 도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1권, 2021.11., p.295.)
“자본시장조사단은 중요사건의 직접 조사를 위해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였으나, 클라우드포렌식(2022.9. 도입)은 도입 이후 활용 실적이 없으며 디스크포렌식(2020.8. 도입)도 직원 역량 부족을 사유로 자체 활용실적이 없어 도입의 필요성이 낮았음.”(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검토보고」, 1권, 2023.8., p.338)

인력[62]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교육을 충실히 실시하는 등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한편, 금융위원회는 내부적으로도 가상자산 불공정행위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통한 자료수집의 방식 및 절차에 대한 내부규정을 완비하여야 할 것임.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관련 행정조사 시, 디지털 증거능력의 확보 등을 위해서는 디지털 증거수집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세부적인 행정규칙 등의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63]

그러나 2024년 10월 현재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관련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일반적 규정만 마련하였을 뿐,[64] 포렌식 장비를 운용하는 다른 부처와 같이 별도의 포렌식 관련 규정을 완비하지 않은 상황임.[65]

특히,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와 달리,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디지털포렌식에 대해서는 종전의 「자본시장법 및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대검찰청 예규)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 디지털 증거 수집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62) 가상자산과는 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 2024.6.25.부터 2025.12.31.까지 한시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임. 가상자산과의 정원은 4급 1인, 5급 5인, 6급 2인, 7급 1인임.

63) 조사 및 수사의 디지털포렌식은 수집부터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사용하는 도구와 기술의 신뢰성이 인정받아야 하며, 대상자들에게 수집된 정보들을 교부 및 확인을 받아야 하고, 참여권 보장에 관한 절차가 있으며, 디지털포렌식의 모든 절차는 디지털포렌식 전문가가 수행해야 한다. 조사 및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절차는 표현이 다를 순 있으나, 조사와 수사의 디지털 증거수집 방법과 요구되는 적법절차는 동일하다. 디지털 증거라는 새로운 개념과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최초로 다룬 대법원 판결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수사기관의 사건임을 알 수 있다. 수사절차를 기반으로 발전한 디지털 증거와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조사기관 및 조사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수행하는 것을 위의 비교를 통해 조사와 수사의 디지털포렌식이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집행하는 디지털포렌식 절차는 디지털 증거가 갖는 특성으로 인하여 그 정도의 범위는 동일하거나 강제수사에 준하는 정도로 집행되어야 한다. 디지털포렌식은 조사기관은 수사기관과 같은 수준의 적법절차 준수,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조사기관의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임효진, 「금융감독원의 디지털포렌식 조사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과학조사학과 학위논문, 2020.4., p.23.)

64) 금융위원회 고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6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 예규 「디지털 증거수집 분석 및 관리 규정」
대검찰청 예규 「자본시장법 및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국민권익위원회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11.2억원으로, 전년 대비 2.2억원(25.1%) 증가함.[1)]

[202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8.9	11.2	2.2	25.1
총수입	8.9	11.2	2.2	25.1

202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1,054.4억원으로 전년 대비 61.6억원(△5.5%) 감소함.

문의 : 양경화 예산결산조사관 yang717@assembly.go.kr (02-6788-5687)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1,115.9	1,054.4	△61.6	△5.5
총지출	1,115.9	1,054.4	△61.6	△5.5

나. 예산안

202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1개 회계(일반회계) 11.2억원으로 전년 대비 2.2억원(25.1%) 증가함.

[202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8.9	11.2	2.2	25.1
합 계	8.9	11.2	2.2	25.1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1개 회계(일반회계) 1,054.4억원으로 전년 대비 61.6억원(△5.5%) 감소함.

[202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115.9	1,054.4	△61.6	△5.5
합 계	1,115.9	1,054.4	△61.6	△5.5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에는 총 1개(67억 8,4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신규사업인 ‘통합콜센터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은 공공기관별로 구축된 콜센터 시스템을 통합한 범정부 통합콜센터 시스템과 정부민원안내 110콜센터의 전산 인프라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67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1	통합콜센터시스템운영(정보화)	6,784
총지출		6,784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청렴권익국제교류’ 사업, ‘행정심판운영’ 사업 등 총 2개임.[3)]

[202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청렴권익국제교류	391	691	300	76.7
2	행정심판운영	1,177	1,543	366	31.1

‘청렴권익국제교류’ 사업 예산의 주요 증액요인은 ‘국제회의 개최’ 내역사업의 신설(3억 100만원)이며, 이는 2025년도 범정부 APEC 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것임.

‘행정심판운영’ 사업 예산의 주요 증액요인은 ‘행정심판운영지원’ 내역사업의 증액(2억 1,400만원)임.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음.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그간 확대한 부패방지 분야가 아닌 고충처리·행정심판 분야 투자에 집중하였다는 점임. 19개 세부사업 중 부패방지 분야 5개 사업의 2025년도 예산 규모는 3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8억원(△4.8%) 감소한 반면, 고충처리·행정심판 분야 2개 사업의 규모는 32.2억원으로 7.2억원(28.9%) 증가함.

이는 고충민원 처리 주무부처로서 악성민원으로 대두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민원 중점관리 예산을 편성하고, 준사법 기능을 가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 예산 등을 편성한 데 기인함.

202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행정심판통합추진 사업에 편성된 홍보비는 국민권익위원회 전체 홍보비 예산 편성 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사업으로의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은 통합가능한 118개 행정심판위원회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구축 중이나 2024년 9월말 기준 통합에 동의한 기관이 93개에 불과한데, 당초 시스템 구축 취지 및 사업목적을 고려하여 통합 미동의 기관을 동의 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타 기관의 협조 또는 동의를 전제로 하는 사업은 사전에 협조와 동의를 완료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1. 기타경상이전수입: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율 제고를 통한 세입 예산 증대 노력 필요

가. 개 요

‘기타경상이전수입’ 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 상환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계상되는 세입과목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400만원(29.9%) 증가한 8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음.[4)]

[2025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682	886	204	29.9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안 세부내역]

○ **기타경상이전수입 8억 8,600만원**
-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액 7억 7,200만원
-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 8,300만원
- 보조금 집행잔액 1,000만원
- 과오지급금 반환 등 2,100만원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4) 일반회계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운영지원과)

나. 검토의견

기타경상이전수입 중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액은 공공기관에 3개월 이내 상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율이 최근 4년 평균 70.1%로 저조한 상황이므로 상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통하여 세입예산의 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국민권익위원회의 기타경상이전수입은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액,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 보조금 집행잔액, 과오지급금 반환 등으로 구성됨.

이 중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액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제70조의2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로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온 경우 등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이를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 상환을 요구하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상환받은 금액이 수납되는 것으로, 공공기관은 법에 따라 부패신고 보상금의 상환 의무가 있음.[5)]

그런데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액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실적을 보면 상환율이 저조한 상황임. 2020년~2023년 평균 상환율이 70.1%에 불과하고 특히 2021년에는 48.2%에 불과하여 매우 저조하였음. 2023년에는 상환율이 91.8%로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미수납액 6,800만원이 발생하여 미수납액 규모로 보면 상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

---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0조의2(보상금 등의 상환 및 환수) ① 위원회는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2020년~2024년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액 수납실적(2024년 8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B)	수납률(B/A)	미수납액
2020년	30	30	14	9	64.3	5
2021년	30	30	628	303	48.2	325
2022년	180	180	890	678	76.2	212
2023년	540	540	826	758	91.8	68
2024년 8월	558	558	363	154	42.4	209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상환 대상 공공기관에 대하여 상환을 독려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임.

그러나 부패신고 보상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3개월 이내 상환 의무가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공공기관이 상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6)]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국민권익위원회는 납부 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납부 안내 및 독촉 등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액의 상환율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통하여 세입예산의 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보상금 등의 상환 및 환수)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환 또는 반환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세 출>

2. 행정심판통합추진 사업: 예산 편성 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한 홍보비 통합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행정심판통합추진'** 사업은 중앙행정심판 및 특별행정심판 통합, 행정심판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국민편의 중심의 행정심판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4,000만원(194.4%) 증액된 2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음.[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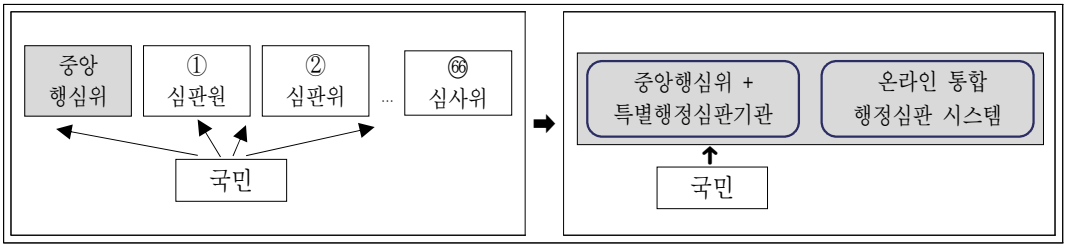
[2025년도 행정심판통합추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행정심판운영	1,177	1,543	366	31.1
행정심판통합추진	72	212	140	194.4

국민권익위원회는 66개로 분산된 특별행정심판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구제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의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인 행정심판 이용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중복투입 해소를 통한 정부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심판기관의 통합(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을 추진하고 있음.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체계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7) 일반회계-행정심판운영(1137-370)(행정심판국)

[행정심판통합추진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행정심판통합추진 2억 1,200만원**
- 회의 운영비 등 7,200만원
- 대국민 홍보비 1억 4,000만원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나. 검토의견

행정심판통합추진 사업에 편성된 홍보비는 국민권익위원회 전체 홍보비 예산 편성 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사업으로의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과 개별법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특별심판의 체계적 통합을 통해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기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2025년 예산안에는 행정심판통합추진 사업에 대국민 홍보비 1억 4,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6월로 예정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1단계 구축 및 서비스 개통에 따라 시스템 및 국정과제의 추진 경과를 홍보하고, 행정심판 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대국민 홍보가 필요함에 따라 홍보비를 편성하였다는 설명임.

[대국민 홍보비(1억 4,000만원) 상세 산출내역]

○ **대국민 홍보비 1억 4,000만원**
- SNS이벤트 600만원
- 홍보물 제작 2,000만원
- 뉴미디어 광고 5,800만원
- 옥외 광고 5,600만원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그런데 이 사업을 제외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 및 정책 관련 홍보비는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사업에 일괄로 편성되어 있는데,[8] 이는 홍보 예산을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편성·운영하기 위한 것임.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사업은 부패방지·고충처리·행정심판·제도개선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반부패·권익구제 기능과 정책을 알리기 위한 대언론·대국민 홍보 사업으로, 행정심판 관련 홍보비도 2025년 이 세부사업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음.

8) 일반회계-청렴권익정책알리기(1131-300)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세부사업(14억 4,500만원)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

① 권익증진 정책홍보 4억 3,900만원 - 부패방지 제도 홍보 9,700만원 - 고충민원 제도 홍보 5,800만원 - 행정심판 제도 홍보 1,900만원 - 권익개선 제도 홍보 3,900만원 - 위원회 소식지 발간 7,200만원 - 홍보물 제작 1억 1,300만원 - 구독료 및 스크랩 서비스 1,900만원 - 홍보마인드 제고 200만원 - 업무추진비 1,900만원 ② 디지털소통팀 운영 7억 5,600만원 - 부패방지 제도 홍보 1억 2,700만원 - 고충민원 제도 홍보 9,600만원 - 행정심판 제도 홍보 3,200만원 - 권익개선 제도 홍보 9,600만원 - 기타 제도 홍보 3,200만원 - 디지털 소통 콘텐츠 홍보 3억 1,800만원 - 온라인 소통창구 강화(SNS 이벤트 등) 3,900만원 ③ 인건비 1억 5,000만원(홍보전문요원, 온라인소통강화 요원,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요원) ④ SNS 위탁관리 등 전문업체 용역 8,000만원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제출자료

이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체 홍보비 예산 편성 및 관리 체계를 고려할 때, 이 사업과 같이 별도의 세부사업 내에 홍보비를 신규편성하는 것은 기존 예산 편성 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통합을 추진하는 정책부서에서 홍보를 직접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으로 이 사업에 홍보비를 별도로 편성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행정심판통합추진 사업의 홍보비는 국민권익위원회 전체 홍보비 예산 편성 및 관리 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사업으로 편입함으로써 홍보비 예산을 통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운영 사업: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통합 동의 기관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운영’** 사업은 80여개 행정심판위원회가 공동 활용하는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과 국정과제인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55억 2,700만원(△84.0%) 감액된 29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음.[9)]

[2025년도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22,372	7,700	△14,672	△65.6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운영	18,491	2,964	△15,527	△84.0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운영 29억 6,400만원**
-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9억 7,600만원
-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구축(2단계) 19억 8,800만원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 창구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들이 쉽고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이용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에 대한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임.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구축 추진 계획]

(1단계) 2024년 통합시스템 구축: 통합 홈페이지 구축, 기반 인프라 구성 등
(2단계) 2025년 고도화: 다국어 지원, 원격 화상·구술심리시스템, 빅데이터 통계 분석 등
(3단계) 2026년 지능화: 청구서, 답변서, 검토의견서 등 보고서 자동화 지원시스템 등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9) 일반회계-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1132-320)(행정심판국)

나. 검토의견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은 통합가능한 118개 행정심판위원회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구축 중이나 2024년 9월말 기준 통합에 동의한 기관이 93개에 불과한데, 당초 시스템 구축 취지 및 사업목적을 고려하여 통합 미동의 기관을 동의 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타 기관의 협조 또는 동의를 전제로 하는 사업은 사전에 협조와 동의를 완료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체 일반·특별 행정심판위원회 123개 중 특성상 통합이 곤란한 5개 위원회를 제외하고, 「행정심판법」을 적용 또는 준용하여 유사한 업무 절차를 가진 118개 행정심판위원회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통합 가능한 행정심판위원회 현황]

구분	일반·특별 행정심판위원회 현황(총 123개)
통합 가능 (118개)	- 대통령소속(4), 국회사무처, 헌법재판소, 법원행정처, 감사원, 중앙선관위, 공수처, 국가정보원, 국가인권위, 교정청(4), 고등검찰청(6), 중앙, 시도(17), 시도교육청(17) 등 57개 일반행정심판 - 소청·시도(17)·시도교육청(17)·교원·국회·법원·헌재·선관위·중앙군인사·육군·공군·해군·군무원·변호사징계 등 46개 소청 특별행정심판 - 조세심판원·국세·관세·중토위·건강보험분쟁조정·장기요양·산업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공무원재해보상연금·군인재해보상연금·어업재해보상보험·광업조정·지리적표시·품종보호 등 16개 특별행정심판
통합 곤란 (5개)	(법원 1심 및 업무적 특성) 특허심판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공정거래위원회 이의신청 (언어적 특성) 난민위원회 (업무적 특성) 중앙노동위원회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그러나 2024년 9월말 기준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으로의 통합을 동의한 기관은 이 중 93개이고 21.2%에 달하는 25개 기관은 통합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통합 미동의 행정심판위원회 현황]

구분	기관명
일반 (8개)	감사원, 국가정보원,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 (4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소청 (11개)	중앙,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중앙 군인사, 군무원인사, 육군본부 군인사, 공군본부 군인사, 해군본부 군인사, 법무부 변호사징계
토지 등 (2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광업조정위원회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통합 미동의 기관 중 국가정보원, 각 군 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국가안보 또는 군사 보안 등의 사유로 통합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향후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당초 목표한 118개 행정심판위원회 전부를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으로 통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10)]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은 118개 기관 전부를 이용 대상으로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어 일부 비효율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음.

당초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이 국민의 행정심판 청구의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추진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초 시스템 구축 취지의 구현을 위하여 통합 미동의 기관을 동의 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또한 향후에는 타 기관의 협조 또는 동의를 전제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기관 간 사전에 면밀히 협의하여 협조와 동의를 완료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음.

10) (통합 미동의 주요 사유)
- 국가정보원: 국가안보 관련 정보수집과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특성상 국가정보원 조직・인원 등과 관련된 사항의 외부 노출 제한
- 육군본부・공군본부・해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군에서 운용하는 소청심사위원회는 전국 각직에 있고 무기・방호장비・군사보안 등으로 통합시스템 이용 부적절

4. 특별민원 중점관리 사업(신규):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특별민원 중점관리’** 사업은 특별(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민원 상담요원 운영, 교육 및 컨설팅 운영, 특별민원 피해현황 실태조사·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등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억 4,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1)]

[2025년도 특별민원 중점관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고충민원조사활동	1,324	1,680	356	26.9
특별민원 중점관리	-	145	145	순증

특별민원 중점관리 사업은 특별(악성) 민원에 대한 공직사회 불안 확대와 사회적 경각심이 증대함에 따라 고충민원 총괄기관으로서 특별민원 상담요원을 운영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특별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특별민원 중점관리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특별민원 중점관리 1억 4,500만원**
- 특별민원 상담요원 운영 5,000만원
- 워크숍·역량강화 교육·심층 컨설팅 4,500만원
- 특별민원 피해현황 실태조사·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5,000만원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11) 일반회계-고충민원조사활동(1135-350)(고충처리국)

나. 검토의견

특별민원 중점관리 사업의 경우 2025년에 특별민원 피해현황 실태조사·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므로,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정책연구 결과 도출 후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사업 운영 및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별민원 중점관리 사업은 2025년 신규사업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악성) 민원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처를 위하여 2025년에 특별민원 전담 상담요원을 운영하고, 특별민원 대응을 위한 워크숍과 교육 및 컨설팅을 운영하는 한편, 특별민원 피해현황 실태조사·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할 예정임.

최근 특별(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가 언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악성) 민원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는 사전에 사업 계획 및 관리방안을 체계적으로 명확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에 특별민원 관련 각급 기관의 피해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정책연구를 추진할 예정임.

향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하려는 상담요원 운영 및 관리 체계 마련, 민원처리 공무원 대상 교육 및 컨설팅 실시 등은 정책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 후 실시하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사업의 효과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41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억원(0.4%) 증가함.[1)]

[2025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408	410	2	0.4
총수입	408	410	2	0.4

2025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646억원으로 전년 대비 8억원(△1.2%) 감소함.

문의 : 김지수 예산결산조사관 kkjjss@assembly.go.kr (02-6788-5689)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654	646	△8	△1.2
총지출	654	646	△8	△1.2

나. 예산안

2025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1개로 구성됨. 세입예산안은 41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억원(0.4%) 증가함.

[2025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408	410	2	0.4
합 계	408	410	2	0.4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646억원으로 전년 대비 8억원(△1.2%) 감소함.

[2025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654	646	△8	△1.2
합 계	654	646	△8	△1.2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는 총 2개(31억 2,8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신뢰기반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R&D)’ 사업은 AI 학습·서비스 제공 및 활용 등 AI 전 단계에서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지원,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한 프라이버시 수준 진단 등 다양한 AI 대응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을 개발하려는 연구개발(R&D)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5억원이 편성되었음.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사업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사업자 행정조사에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도입·적용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도입하고 담당 조사인력을 교육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6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1	신뢰기반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R&D)	1,500
2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1,628
총지출		3,128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사업 및 ‘개인정보기술표준개발지원(R&D)’ 사업 등 총 2개임.[3)]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2025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1,461	2,376	915	62.6
2	개인정보기술표준개발지원(R&D)	1,228	2,000	772	62.9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는 없음.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2025년 제47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개최 사업비를 반영하고, 연구개발(R&D) 및 디지털포렌식 구축 등에 중점적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과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 예방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을 들 수 있음.

2025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제 컨퍼런스 운영’ 사업 중 2025년 GPA 총회 홈페이지 운영사업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규제 대응’ 사업은 현재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 인증제도 시 발생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인증을 지원하고 있으나, 수수료 전액 면제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사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행정조사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디지털포렌식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국제컨퍼런스 운영 사업: 2025년 GPA 총회 홈페이지 운영사업의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 재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국제 개인정보 협력센터 운영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억 5,000만원(93.0%) 증액된 17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음.[4)]

[2025년도 국제컨퍼런스 운영 내내역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1,461	2,376	915	62.6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596	1,746	1,150	93.0
국제컨퍼런스 운영	200	1,400	1,200	600.0

내내역사업인 **‘국제컨퍼런스 운영’**은 2025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47차 글로벌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Global Privacy Assembly) 총회[5)]를 개최하기 위하여 행사 준비, 총회 기획 및 운영, GPA 총회 홈페이지 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12억원(600.0%)이 증액된 14억원이 편성되었음.

---

4) 일반회계-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1031-305)(기획조정관)

5) 글로벌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Global Privacy Assembly)는 개인정보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국제협의체로, 92개국 140개 회원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은 2002년부터 참여하고 있음. 동 협의체는 연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워킹그룹(11개) 활동을 통해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이슈를 논의하고 결의안 채택 등 공동 대응 및 협력활동을 수행함.

구체적으로는, 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GPA 총회 관련 초청, 행사장 임차, 회의장 조성, 행사 구성, 인쇄 및 홍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용역비(210-14) 비목으로 13억 6,000만원과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이 GPA 총회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업출연금(350-02) 비목으로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국제컨퍼런스 운영 내내역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일반용역비(210-14) : 1,360백만원 - 초청 : 기조연설, 좌장 등 주요 인사(10명) 초청 항공권, 숙박, 차량임차 등 200백만원 - 행사장 임차 : 개·폐회식 등 4일 간 행사부스 및 이벤트 장소, 오·만찬장 등 임차 400백만원 - 회의장 조성 : 개·폐회식, 전체회의, 오·만찬장 등 조명, 음향, 동시통역시스템 등 300백만원 - 행사 구성 : (700명 기준) 오·만찬 식음료, 문화행사, 기념품 제작 등 300백만원 - 디자인 및 인쇄 : (1,000명 기준) 초청장, 프로그램북 등 디자인 및 제작 80백만원 - 홍보비 : 유튜브 등 SNS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80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 40백만원** - GPA총회 홈페이지 관리 : 40백만원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명자료를 재가공

나. 검토의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GPA 총회 관련 홈페이지 운영사업 수행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감독기구 국제협의체인 GPA 총회를 2025년 서울에 개최하기로 유치(2023.10.)하고, 2024년에는 '2025 GPA 총회 홍보기반 조성'을 위해 5,000만원, 2025년에는 '국제컨퍼런스 운영'을 위해 14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2025년 제47차 GPA 총회 서울 개최 계획안]

○ (시기 및 장소) 2025. 9. 16.(화) ~ 19.(금), 4일간 / 서울 시내 호텔(미정) ○ (참석규모) 감독기구, 산업계, 학계 등 국내외 전문가 1,000명 이상 ○ (주제) 일상화된 인공지능으로 일어날 개인정보 이슈 ○ (행사구성) 환영 리셉션, 개·폐회식, 초청 강연, 공통 세션 및 분야별 세션(병렬), 감독기구 간 비공개회의, 부대행사 등으로 구성 ○ (예산안) 2024년 5,000만원, 2025년 14억원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년 제47차 GPA 총회 행사구성(안)]

공개세션(9.16.~17.)	비공개 세션(9.18.~19.)	부대행사
Explainable AI: Building a Sustainable Trustworthy AI ecosystem	총회 정례의제 논의 〈회의〉 - 총 11개 워킹그룹 활동 (결의안, 보고서 등) 보고, - 신규 회원기관 및 옵저버 승인 - 신임 집행위원 선출 〈행사〉 - 올해의 개인정보 보호 시상 등 각종 시상 및 우수기관 발표 - 2026년 총회 주최기관 소개 - 2027년 총회 주최기관 발표 등	기업 모범사례 소개
Toward a New AI Paradigm: Beyond Current Technical Barriers		개발자 세션 (*해커톤 등)
A Win-win Strategy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AI		PET 기술 적용 사례 전시
Privacy and Trade: Emerging Challenges and Policy Implications		데이터 이동권 적용 사례 전시
How to convert ad-tech ‘vicious cycle’ into a ‘virtuous cycle’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인식 제고 행사
Data Processing Requirement Revisited: Emerging Privacy Issues in Metaverse		OECD 워크샵, FPF 및 CIPL 주최 전문가 간담회 등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GPA 총회와 관련하여, ① 위원회는 총괄 업무(행사 준비 및 기획 총괄, 공개・비공개 세션 구성 및 협의, GPA 집행위 및 사무국 대응 등), 운영 업무(PCO 관리, 국내외 초청장 관리, 용역 계약 등), 홍보 문화 업무(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 등), 기획 업무(양・다자간 면담, MOU 문건 검토)를 수행하고,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은 GPA 총회 홈페이지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임.

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인정보 포털, 개인정보 배움터, 글로벌 협력센터 등 누리집 구축・운영을 담당한바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GPA 총회 홈페이지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4,000만원을 출연하겠다는 것임.

그러나,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GPA 홈페이지 운영업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출연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사업비의 대부분을 출연하고 있어 과도한 출연비중을 낮추고 직접수행 비중을 높이라는 내용의 지적을 연례적으로 받고 있으므로,[6)]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출연사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기술적 전문성이 필요한

6)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2024.8. 1권, p.372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22.11. 1권, p.319

사업에 한정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는바, GPA 총회 홈페이지 관리·운영사무는 단순 홈페이지 관리업무에 불과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이버보안·개인정보침해신고 등 관련 기술적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임.

또한, 2024년 GPA 총회 홈페이지 제작 당시, 제작비용 2,000만원을 사업출연금이 아니라 일반연구비로 편성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홈페이지 구축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움.

2.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규제 대응사업: CBPR 인증제도의 수수료 전액 면제정책의 재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규제 대응’**은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동향을 연구하고,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동등성평가, CBPR 인증 심사·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원(△38.8%) 감액된 3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음.[7)]

[2025년도 국제컨퍼런스 운영 내내역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1,461	2,376	915	62.6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규제 대응	515	315	△200	△38.8
국제 기준 호환 지원	118	118	-	-

내내역사업인 **‘국제 기준 호환 지원’**은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제도와 관련하여 국외 이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 인증제도[8)]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1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음.

7) 일반회계-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1031-305)(기획조정관)

8)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 Cross-Border Privacy Rules)은 국가 간 안전하고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전 확대를 위해 APEC 회원국(21개국)이 프라이버시 9원칙을 바탕으로 개발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율 인증제도로, 우리나라는 2017년 6월 가입하였음. 참고로, 2022년 5월 글로벌 CBPR 포럼이 출범하여 각국이 CBPR을 유효한 국외이전 수단으로 인정하도록 CBPR을 확산하고자 노력 중이며, 2024년 연내 글로벌 인증을 목표로 작업 중에 있음.

[2025년도 국제 기준 호환 지원 내내역사업 세부편성내역]

○ 일반수용비(210-01) : 1,900만원
-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체 운영 (12회×1,583천원=19,000천원)
○ 임차료(210-07) : 1,600만원
-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장소 임차 (4회×4,000천원=16,000천원)
○ 사업출연금(350-02) : 8,300만원
- CBPR 인증제도 운영 (12개월×6,917천원=83,000천원)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나. 검토의견

지금까지 제도 안착을 이유로 면제된 CBPR 인증 수수료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징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9][10] 제도와 관련하여, APEC CBPR 회원국이 인정하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율 인증제도(CBPR)를 운영하고 있음. CBPR 인증은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가 APEC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기반으로 신청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전반을 평가해 인증하고,[11] 해당 기업이 CBPR의 인증을 받은 경우 CBPR을 국외 이전 수단으로 인정한 다른 국가의 인증기업과 자유롭게 데이터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관련 국제적 통용 인증임.

국내 CBPR 인증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집행기관으로 국내 CBPR 운영 정책을 총괄하고 인증기관을 관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019년 12월부터 CBPR 국내 인증기관으로서 인증위원회 운영 및 인증심사원 관리 등 국내 CBPR 인증업무를 실질적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음.

---

9) 개인정보 국외 이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처리 위탁·보관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의 직접 적용이 어려운 국가(지역)로 이전됨을 의미함. 해외 제3자에게 제공(조회 포함)하거나, 해외의 개인정보 전문 처리 기업에게 처리를 위탁하거나, 해외 서버 등에 보관하는 경우가 포함됨.

10)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위탁·보관(이하 이 절에서 "이전"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5.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11) 9개의 프라이버시 원칙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관리 체계 수립,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이용·제공·위탁, 정보주체 권리, 무결성, 보호 대책 등 50개의 인증 기준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을 발급함.

[CBPR 인증심사 단계]

① 심사 준비	⇨	② 인증 심사	⇨	③ 인증 결정	⇨	④ 사후 관리
서류 사전검토 예비점검		인증심사팀 구성 결함 보완조치		인증위원회 구성 인증 부여		관리·감독 민원 해결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CBPR 인증심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2025년 1개사 기준 1,2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현재 인증 수수료는 제도 도입 초기에 따른 인증 활성화 및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예산 부족으로 2023년 9월부터 인증심사 신규 신청 접수를 중단하고, 현재 기존 인증을 받은 기업의 갱신(1년) 심사만 진행하고 있음.

[CBPR 인증심사 예산 산정내역]

□ 인증심사 예산 산정 근거(1개사 기준) : 12백만원(2025년 정부예산안 기준)
- ㅇ 인증심사원 수당 : 400천원 × 4.5명* × 4일 = 7,200천원
  * 기업규모·인증범위 등에 따라 인증심사원을 4인 또는 5인 투입
- ㅇ 인증심사원 출장비 : 300천원 × 5일* = 1,500천원
  * 본 심사 4일 + 예비점검 1일 = 5일
- ㅇ 인증심사 회의비 : 750천원 × 1회 = 750천원
- ㅇ 결함보완 자문 : 450천원 × 3명 = 1,350천원
- ㅇ 인증위원회 개최 : 400천원 × 3명 = 1,200천원

주: 동 소요예산은 CBPR 인증의 글로벌 인증으로의 전환 및 인증 요건 개선에 따른 인증 심사 난이도 상승을 고려하여 종전의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계상하였음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CBPR 신규인증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인증수수료를 징수하고 CBPR 인증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2년 5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CBPR 인증을 개시한 지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제도 안착을 이유로 수수료 면제를 지속하는 것은 설득력이 낮음. 특히, 인증수수료 면제로 인해 예산 배정 여부에 따라 CBPR 인증심사 가부가 결정되어 효율적인 적기 인증심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는 등 인증 수수료 면제가 오히려 인증 활성화 및 안정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CBPR 인증을 받거나 인증심사를 검토하는 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중견기업으로 1,200만원 수준의 인증수수료가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인증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CBPR 인증심사 관련 인증기업 및 수요기업의 인증·상담 현황]

순번	기업명	기업분류	심사일 (인증 기업)	인증일(인증 기업) 상담일(수요 기업)	분류
1	Naver	대	2023.11.	2024.3.	갱신
2	Naver Cloud	대	2023.12.	2024.6.	
3	네이버웹툰	대	2024.3.	2024.9.	
4	NCSOFT	중견	2024.3.	2024.8.	
5	넷마블	대	2024.3.	2024.8.	
6	현대디에프	대	2024.4.	2024.9.	
7	KB국민은행	대	2024.4.	2024.9.	
8	비바리퍼블리카	중소	2024.5.	2023.3.	
9	스푼라디오	중소	2024.9.	2023.10.	
10	위메이드	중견	-	2023.12.	
11	NH투자증권	대	2023.10.	2024.3.	최초
12	카카오게임즈	대	2023.11.	2024.3.	
13	뉴스킨코리아	중견	2023.10.	2024.6.	
14	쿠팡	대	2023.11.	2024.8.	
15	H사	대	-	2024.3.	수요 기업 (2024년 기준)
16	N사	대	-	2024.3.	
17	N사	대	-	2024.3.	
18	N사	대	-	2024.3.	
19	W사	대	-	2024.4.	
20	I사	중견	-	2024.4.	
21	M사	중견	-	2024.5.	
22	L사	대	-	2024.5.	
23	S사	대	-	2024.6.	
24	C사	중소	-	2024.7.	
25	L사	대	-	2024.7.	
26	K사	대	-	2024.8.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CBPR 인증수수료를 한국인터넷진흥원 자체수입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계획 중으로,[12] 이를 위해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수지차 예측 후 예산안과 관련해 기재부 등 관련 부처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 제도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일단 2025년에는 정부안대로 편성·집행하고, 1년 가량의 준비를 거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자체수입사업으로 편성한 이후 인증 수수료를 징수하겠다는 의견임.

12) CBPR 인증 수수료 징수 체계 마련방안 추진일정(안):
① 2025년 1사분기: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인증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② 2025년 2사분기: 자체수입 예산 편성 관련 기재부 협의
③ 2025년 3사분기: 2026년 예산안(정부안) 마련 및 수수료 징수 준비
④ 2025년 4사분기: 예산 확정 및 인증 수수료 징수 계획 공표
⑤ 2026년 이후: 인증 수수료 징수 실시

3.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사업(신규): 행정조사를 위한 포렌식 장비 설치 필요성 검토 및 공공기관의 포렌식 업무 위탁 부적정

가. 개 요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사업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사업자 행정조사에 디지털포렌식 기술[13]을 도입·적용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포렌식 랩을 구축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16억 2,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4]

[2025년도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	1,628	1,628	순증

이 사업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자료의 무결성(증거능력) 확보 및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조사분석 환경을 구축하고, 조사관의 디지털포렌식 관련 기술교육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사업출연금을 전액 지원하는 것임.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사업출연금(350-02) : 16억 2,800만원
- 디지털포렌식 조사·분석 환경 구축 (11억 9,800만원)
  · 디지털 증거수집 및 분석 환경 구축 : 898,000천원×1식=898,000천원
  · 대용량 로그분석 환경 구축 : 300,000천원×1식=300,000천원
- 디지털포렌식 룸 구성비 (3억 5,000만원)
  · 디지털포렌식 룸 구성 공사비 : 200,000천원×1식=200,000천원
  · 디지털포렌식 룸 구성 기본 기자재 : 150,000천원×1식=150,000천원
- 조사관 기술교육비 (8,000만원)
  · 디지털포렌식 초급 : 4,000천원×10명=40,000천원
  · 디지털포렌식 고급 : 8,000천원×5명=40,000천원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3)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s)’은 법의학 분야에서 사체 조사를 통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분석하는 절차를 디지털 증거분석 분야에 차용한 것으로, 디지털 증거를 획득·분석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정에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과학적·기술적 기법을 사용하여 증거가치 상실이 없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 과정을 일컫음(임효진, 「금융감독원의 디지털포렌식 조사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과학조사학과 학위논문, 2020.4., p.8~9.)

14) 일반회계-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2034-302)(조사조정국)

나. 검토의견

첫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행정조사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디지털 증거 수집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제63조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권한을 갖고 있으나, 자료제출 거부 및 거짓자료 제출 등의 경우 벌칙 규정만 있을 뿐 강제적 조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15] 또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수사법경찰관리 권한을 규정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정조사를 넘어서는 별도의 수사(압수・수색 등) 권한은 부여받지 않은 상황임.

이를 고려할 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는 강제적 수사가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행정조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며, 디지털포렌식 장비는 임의제출된 자료에 대한 무결성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활용성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음.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부적으로도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통한 자료수집의 방식 및 절차에 대한 내부규정 역시 완비하지 못한 상황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가 행정조사라고 하더라도, 디지털 증거능력의 확보 등을 위해서는 디지털 증거수집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세부적인 행정규칙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16]

---

15)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 및 해당 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6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5. 제63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검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6) 조사 및 수사의 디지털포렌식은 수집부터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사용하는 도구와 기술

그러나 2024년 10월 현재 개인정보위원회는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일반적 규정만 마련하였을 뿐,[17] 포렌식 장비를 운용하는 다른 부처와 같이 별도의 포렌식 관련 규정을 완비하지 못한 상황임.[18]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침해사고 등에 대한 행정조사 시 임의적 자료제출에 따른 전자자료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구축·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디지털포렌식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수집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세부규정 역시 완비할 필요가 있음.[19]

둘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제하더라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위탁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업무는 위탁할 것이 아니라 정부 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하고[20] 이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디지털포렌식 조사분석공간을 구축하고 디지털포렌식 관련 조사관 교육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2025년도 예산안 16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음.

의 신뢰성이 인정받아야 하며, 대상자들에게 수집된 정보들을 교부 및 확인을 받아야 하고, 참여권 보장에 관한 절차가 있으며, 디지털포렌식의 모든 절차는 디지털포렌식 전문가가 수행해야 한다.

조사 및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절차는 표현이 다를 순 있으나, 조사와 수사의 디지털 증거수집 방법과 요구되는 적법절차는 동일하다. 디지털 증거라는 새로운 개념과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최초로 다룬 대법원 판결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수사기관의 사건임을 알 수 있다. 수사절차를 기반으로 발전한 디지털 증거와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조사기관 및 조사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수행하는 것을 위의 비교를 통해 조사와 수사의 디지털포렌식이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집행하는 디지털포렌식 절차는 디지털 증거가 갖는 특성으로 인하여 그 정도의 범위는 동일하거나 강제수사에 준하는 정도로 집행되어야 한다. 디지털포렌식은 조사기관은 수사기관과 같은 수준의 적법절차 준수,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조사기관의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임효진, 「금융감독원의 디지털포렌식 조사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과학조사학과 학위논문, 2020.4., p.23.)

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1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예규 「디지털 증거수집 분석 및 관리 규정」
대검찰청예규 「자본시장법 및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재 사업자가 임의제출한 자료에 의존하는데, 이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사고 직후 시스템을 초기화하거나 제출자료를 조작하는 경우 진위 여부 확인이 어려워 디지털포렌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지털포렌식 업무가 민간위탁 및 민간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인정보보호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권한이 위탁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

[디지털포렌식 조사분석 공간 구성계획]

ㅇ 위치 : (1안)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인터넷진흥원 나주청사
(2안)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78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가락동)
- 구축 위치는 현재 논의중으로 변동가능
ㅇ 면적 : 5m x 7m = 35제곱미터
ㅇ 디지털포렌식 수행인원 구성 현황
- KISA 개인정보안전활용본부 개인정보조사단 유출사고 조사지원 업무 수행인원 15명

구분	총원	연구위원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주임연구원
인원	15명	1명	-	3명	7명	4명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포렌식 장비 구성안]

연번	장비내용	예상가액 (백만원)	내용연수
1	이동식 디스크 복제장비	50	6년
2	이동식 디스크 복제장비(SCSI, PCIe 등 특수 인터페이스용)	20	6년
3	대량 디스크 복제장비	30	6년
4	대용량 로그 분석용 서버	300	6년
5	분석용 워크스테이션	20	4년
6	개인정보 유출 악성코드 분석용 샌드박스 솔루션 동작서버	50	6년
7	개인정보 유출 악성코드 분석용 샌드박스 분석 솔루션	20	유지보수 비용 연갱신
8	삭제 파일 복구장비	50	6년
9	삭제 파일 복구 소프트웨어 Set	8	2년
10	DB 복구 솔루션 Set	10	1년(연갱신)
11	복제 이미지 파일 분석 소프트웨어	35	3년
12	분석용 가상화 환경구축 소프트웨어	0.6	3년
13	웹 취약점 탐색 솔루션	150	유지보수 비용 연갱신
14	디스크 복제파일 보관용 스토리지	30	8년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시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지원할 수 있거나 위탁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해당 법령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원사항을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디지털포렌식이 기술적 자문사항에 불과한지 여부에 대해 이견이 제기될 수 있음. 또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업무에 관한 위탁 규정에서도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하여 자진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디지털포렌식 업무까지 위탁하였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21][22]

또한, 디지털포렌식 업무는 증거 수집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검증 참여 보장,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동일성·신뢰성·전문성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 수행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정부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21)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9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보호위원회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 침해 사실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지정한다.
제60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2조(업무의 위탁) ③ 보호위원회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4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8. 법 제6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중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가.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에 대한 기술지원
나. 법 제62조에 따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상담
④ 보호위원회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인터넷진흥원

22) 위탁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업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자진 신고 시에 대해서는 기술적 지원이 가능하나, ②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상담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규율되어 있어 행정조사 시 포렌식 근거가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권으로 위법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된 경우에는 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조사업무를 위탁할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참고로, 현재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에서도 소속 부처의 공무원이 직접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운용하고 있음.[23)]

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타 부처의 인력 운영방안, 전문성 확보 현황 등을 참고하겠다는 의견임.